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INTERNATIONAL
DOCUMENTS OF PEACE

서보혁·용혜민 엮음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INTERNATIONAL
DOCUMENTS OF PEACE

서보혁·용혜민 엮음



※ 본 번역집에 수록된 내용은 비공식 번역임을 밝힙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통일연구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INTERNATIONAL
DOCUMENTS OF PEACE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을 발간하며

고 유 환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연구원에서 이번에 내놓는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은 평화와 안보,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공동체의 염원과 실천 방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다.

이 책에 실은 국제문서는 모두 8개인데 탈냉전 이후부터 오늘날 국제사회의 관심과 정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문서들 가운데 엄선한 것이다. 식량 및 물 부족과 핵전쟁 위험은 1970년대부터 들려왔지만, 기후위기, 각종 인권침해 그리고 불평등에 관한 우려는 경제적 세계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를 거쳐 새천년(New Millennium)에 들어 근본적인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인류의 생존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 보편가치에 관한 통합적, 상호의존적 인식이 절실했다.

남북 통일과 평화로운 한반도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정향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국제협력을 이끌어냄은 물론 한반도 평화구축이 세계평화의 중차대한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번역집이 그런 연구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연구자들에게 내놓는다.



<hr/>	
1. 평화를 위한 의제: 예방 외교와 평화의 조성 및 유지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A/47/277-S/24111 (1992)	1
<hr/>	
2. 발전 및 국제 경제 협력: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 Agenda for Developmen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48/935 (1994)	25
<hr/>	
3. 유엔 밀레니엄 선언(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A/RES/55/2 (2000)	71
<hr/>	
4. 밀레니엄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Follow-Up to the Outcome of the Millennium Summit) A/59/565 (2004)	83
<hr/>	
5. 경제·사회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주요 유엔 컨퍼런스 및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조율되고 통합적인 이행 및 후속 조치 (Integrated and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and Follow-Up to the Outcomes of the Major United Nations Conferences and Summits in the Economic, Social and Related Fields) A/59/2005 (2005)	177
<hr/>	
6. 세계의 변혁: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2015)	241
<hr/>	
7. 환경 악화의 영향(Impact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 (2020)	281
<hr/>	
8. 평화를 위한 경로(Pathways for Peace) 세계은행 (2018)	337



01

평화를 위한 의제: 예방 외교와 평화의 조성 및 유지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A/47/277-S/24111
(1992)





A/47/277-S/24111
1992년 6월 17일

1992년 1월 3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에 따른 사무총장 보고서

평화를 위한 의제: 예방 외교와 평화의 조성 및 유지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도입

1. 본인은 각 국 및 정부의 정상들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첫 회의에서 채택된 1992년 1월 31일의 성명에서, “현장의 틀과 조항 내에서 예방 외교와 평화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분석 및 권고할 것”을 요청받았다.
2. 유엔은 주권 국가들의 모임이며, 유엔의 역량은 이 국가들의 합의에 기반을 둔다.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된 냉전으로 인해 당초 기구가 천명했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92년 1월 개최된 정상회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정치적 수준에서 현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 전례 없이 재천명하는 자리였다.
3. 지난 수개월 간 크고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 유엔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며, 현장에 명시된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을 촉진할 수 있다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왔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과거 처럼 기구가 또다시 무력해져서는 안 된다.
4. 본인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본인의 사무총장 임기 초에 본 보고서를 마련하도록 요청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본 보고서는 여러 국가의 정부, 지역 기관, 비정부기구, 기관 및 개인들이 본인에게 전달한 아이디어와 제안에 기초한다. 이들에게 감사하며, 본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
5. 갈등과 전쟁의 깊은 뿌리는 도처에 만연해 있다. 그 뿌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고통을 완화하고,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개최된 최대 규모의 정상회담인 유엔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얼마 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으며, 내년에는 제2차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가 개최된다. 1994년에는 세계인구발전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5년에는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가 열리고, 세계사회발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사무총장 임기 동안 본인은 이 증대한 이슈들을 모두 다룰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 보고서에서 위원회가 특별히 요청한 사안인 예방 외교, 평화 조성 및 평화 유지 그리고 여기에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인 분쟁 후 평화 구축을 다룰 것이다.

6. 회원국들의 협력 의지는 우리의 공동 노력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힘의 원천이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본 보고서는 평화를 추구하고 보존하는 기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다루고 있지만, 이 새로운 공동체 정신이 각급의 기회에 요구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는 의지에 의해 추동되지 않는다면 개선된 메커니즘과 기술에 대한 탐색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모든 회원국이 명심해야 한다.
7. 감사한 마음으로 본 보고서를 유엔 회원국들에 제출한다.

1. 환경 변화

8. 수십 년 동안 불신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장벽, 불가분의 동반자였던 파괴를 위한 끔찍한 도구가 지난 몇 년 동안 와해되었다. 세계적 차원의 경제 불평등 문제(소위 남북문제)가 더욱 첨예화되면서 정부로부터의 최고 수준의 관심이 요구되지만, 냉전기 동서 양 진영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공동 안보에 대한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9. 권위주의 체제는 민주주의 세력과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에 비해 경쟁력을 잃었다. 이러한 과정의 형태, 범위, 강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르지만 전 지구적 현상처럼 세계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함께 많은 국가들이 보다 개방경제 정책을 추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역동성을 창출하고 있다.
10. 유엔 창설 이후 탈식민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수억 명의 인구가 독립을 쟁취했고, 뒤이어 최근 수백만 명이 자유를 얻었다. 새로운 국가들이 총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기본적 실체로서 주권 국가의 중요성과 필수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11. 우리는 유례없는 모순으로 특징지어지는 글로벌 전환의 시기에 들어섰다. 지역 및 대륙 국가 연합은 협력을 강화하면서 주권 및 민족주의적 경쟁의 논쟁적 요소를 완화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첨단 통신과 글로벌 상거래, 그리고 보다 크고 공동의 정치 결사체에 주권적 특권을 부여하려는 국가의 결정에 의해 국경이 흐려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민족주의와 주권에 대한 새롭고 격한 주장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결속은 난폭한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언어적 분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새로운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수단을 통해 진화와 변화를 훼손하려는 테러 행위에 의해 사회 평화는 도전 받고 있다.

12. 평화의 개념은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모순의 패턴이 발생하는 국제 안보의 개념은 보다 복잡하다. 주요 핵강대국들이 군축 협정을 시작했지만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인종 차별이 파괴적인 힘으로 인식되며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폐지되었지만 새로운 문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고 폭력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적 진보는 전 세계적으로 삶의 본성과 기대를 바꾸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인해 세계는 의식적이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불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연대의식으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진보는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위험, 즉 생태계 파괴, 가족 및 사회 생활의 혼란, 더욱 심각해진 개인의 삶과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을 초래하고 있다.
13. 새로이 직면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통제가 불가능한 인구 증가, 엄청난 부채 부담, 무역 장벽, 마약, 빈부 격차의 확대와 같은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문제들이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빈곤, 질병, 기근, 탄압, 절망이 넘쳐나면서 1,700만 명의 난민, 2천만 명의 실항민, 국경 인근의 대량 이주민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갈등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유엔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 것이 적군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가뭄과 질병은 전쟁에서의 무기만큼 무자비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이 순간에 평화, 안정, 안보를 구축하려는 기구는 지난날의 분쟁과 전쟁의 족쇄를 끊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에서 보듯이 오늘날 무력 분쟁은 인류에게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종식하기 위해 긴급히 개입해야 한다.
14. 1945년 유엔이 창설된 이래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주요 분쟁으로 약 2천만 명이 사망했다. 유엔은 그 기간의 분열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279건)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데 무기력했다.
15. 냉전이 종식되면서 1990년 5월 31일 이후 그러한 거부권 행사가 없어지자 유엔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다. 한때 유엔군은 창설 이전 혹은 상황을 통제할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제 기능을 하지 못 했지만, 이윽고 분쟁의 방지 및 해결과 평화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시도한다.
 -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을 야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 조성에 참여한다.
 - 분쟁이 중단되면 평화 유지를 통해 평화를 수호하고 관계자들이 달성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돕는다.
 - 다양한 맥락에서 평화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즉, 내전과 분쟁으로 붕괴된 국가의 제도와 인프라를 재건하고 과거 전쟁을 치렀던 국가들 간에 평화로운 상호 이익의 유대를 구축한다.
 -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분쟁의 심층 원인인 경제 궁핍, 사회 불의, 정치 억압을 해결한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도덕의식은 점차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본 기구의 노력으로 성립된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편적인 도덕적 인식을 인지할 수 있다.
16. 이처럼 세계 기구의 보다 광범위한 임무를 위해 개별 국가, 지역 기구 및 비정부기구, 그리고 현장이 요구하는 균형과 조화 속에서 역할하는 주요 기관들을 포함한 유엔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일치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현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받았다. 넓은 의미에서 이 책임을 총회와 세계 기구의 모든 기능적 요소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 각 요소들은 인류의 안보를 위한 통합 접근 방식에서 특별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사무총장의 기여도는 그와 유엔의 심의 기관들 사이에 확립된 신뢰와 협력의 패턴에 달려 있다.
17. 이 작업의 기초는 국가이며 반드시 견재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적인 주권과 통일성에 대한 존중은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주권의 시대는 끝났다. 그 이론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이를 이해하고 내부 거버넌스(Governance)의 훌륭한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갈수록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세계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의 임무이다. 상업, 통신, 환경 문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그 경계의 안쪽은 개인이 경제, 정치, 사회적 삶의 첫 번째 질서를 따르는 곳이다. 유엔은 폐쇄적이지 않다. 하지만 모든 민족, 종교 또는 언어 집단이 국가의 지위만을 고집한다면 세계의 통합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두를 위한 평화, 안보, 경제적 복지의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1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 종교, 사회 또는 언어적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감수성을 가지고 소수민족의 인권에 전념해야 한다. 국제연맹은 소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했다. 총회는 곧 소수 민족의 권리 선언을 앞두고 있다. 이 선언문은 인권을 다루는 유엔의 효율적인 기구와 함께 소수 민족의 상황과 국가의 안정을 향상시킬 것이다.
19. 글로벌리즘과 민족주의를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대립구도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현대의 바람직한

세계화는 우선 견고한 정체성과 기본적인 자유를 요구한다. 확립된 국제 체제 내에서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독립과 중대한 가치인 민족자결주의는 앞으로 서로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모든 수준의 사회적 존재에서, 즉 공동체, 국가, 국제 공동체에서 민주적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일관된 임무는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틀을 찾는 동시에 각자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 정의

20. 예방 외교, 평화 조성, 평화 유지라는 용어는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예방 외교는 당사자 간 갈등을 예방하고, 기존 갈등이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분쟁 발생 시 확산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 평화 조성은 본질적으로 현장 제6장에 명시된 평화적 수단들을 통해 적대적 당사자들을 합의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 평화 유지는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에 유엔 주둔군을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유엔군 및/또는 경찰과 민간인도 포함된다. 평화 유지는 분쟁 예방과 평화 조성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술이다.
21. 또한 본 보고서는 분쟁 후 평화 구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쟁으로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평화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경향의 구조를 식별하고 지원하는 조치에 대해 다룰 것이다. 예방 외교는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분쟁을 멈추고 평화가 달성된 이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조성과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평화의 조성과 유지는 분쟁 후 평화 구축 기회를 강화하여 국가와 민족 간 폭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22. 이 4가지 행위 영역은 모든 회원국의 지원 하에 함께 수행되며 현장의 정신에 따라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일관되게 기여한다. 유엔은 이 분야들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유엔은 탈식민지화,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인구, 질병 퇴치, 군축, 국제법의 성장에 관한 정책들을 포함하는 여타 많은 정책들은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여했다. 세계는 종종 분쟁으로 인해 분열되고 엄청난 인류의 고통과 결핍으로 시름했지만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경험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만 아니라 미래 시대가 제시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국제 안보를 유지하는 유엔의 잠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예방 외교

23.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외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긴장을 완화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예방 외교는 사무총장에 의해 독자적으로, 또는 고위 간부나 전문 기관 및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 및 지역 기구가 유엔과 협력하여 수행될 수 있다. 예방 외교는 신뢰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 및 공식/비공식적 진상 조사에 기반한 조기 경보가 필요하다. 또한 예방 전개와 일부 상황에서는 비무장 지대가 필요할 수 있다.

신뢰구축 조치

24. 상호 신뢰와 선의는 국가 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군사 임무의 체계적인 교환, 지역 또는 소구역에 위험경감센터 설립,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 지역 무기 협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있다. 본인은 모든 지역기구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추가 조치가 적용될지 고려해서 그 결과를 유엔에 알리도록 요청하는 바, 현재 또는 과거, 그리고 잠재적 분쟁 당사자 및 지역 기구와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사무국이 제공할 수 있는 자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진상 조사

25. 예방 조치는 사실에 대한 시의 적절하고 정확한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올바른 분석에 기반한 발전 및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가 필수적이다. 많은 잠재적 분쟁의 경제, 사회적 뿌리를 고려할 때 이제 유엔은 위험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의 전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동향에 대한 정보도 확보해야 한다.

(a) 현장 제99조를 포함한 현장에 따른 유엔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은 현장에 따라 착수되었거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가 착수하는 진상 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엔 진상조사단을 자국 영토로 파견해달라는 국가의 요청은 지체 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b) 회원국 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사무총장은 관심 사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인은 모든 회원국이 효과적인 예방 외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갖출 것을 요청한다. 본인은 수도 또는 기타 지역에서의 협상 임무에 고위 관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연락책을 보완

할 것이다. 이러한 접촉은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c)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가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들은 직할 하에 조사단을 파견하거나 사무총장에게 특사 지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사단은 추가 조치를 위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경우에 따라 기구(특히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사안을 국제 안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이거나 잠재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분쟁 당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분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d) 예외적인 경우 이사회는 현장에 따라 본부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정보 보고를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기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조기 경보

- 26. 최근 몇 년 동안 유엔 시스템은 환경 위협, 원전 사고 위협, 자연 재해, 대규모 인구 이동, 기근, 질병 확산에 관한 조기 경보 시스템 네트워크를 개발해 왔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정치적 지표와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는 유엔의 다양한 전문 기관과 직능 사무소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본인은 예방 조치에 대한 분석결과와 권고사항을 안전보장이사회 및 기타 유엔 기관에 제공할 것이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편되면서 활력을 되찾은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현장 제65조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경제 및 사회적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 27. 지역 협정 및 지역 기구는 조기 경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인은 아직 유엔에서 관찰자 지위를 추구하지 않은 지역 기구들과의 적절한 협정을 통해 그들이 유엔의 안보 메커니즘과 연결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예방 전개

- 28. 유엔은 일반적으로 위기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후 활동해왔으나, 이제 예방 전개의 상황에 대비할 때가 도래했다. 예방 전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 또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요청 및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국가 간 분쟁에서 국경 양쪽에 유엔을 주둔시킴으로써 양국이 상대국가의 적대 행위가 억제될 수 있다고 보거나, 한 국가가 위협을 느끼고 국경을 따라 유엔 주둔군을 배치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예방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단 각각의 상황에서 유엔 주둔군의 임무와 구성은 신중하게 고안되고 모두에게 명확해야 한다.

29. 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이나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방 전개는 고통을 완화하고 폭력을 제한 및 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기여할 수 있다. 이때 공정한 인도적 지원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군대, 경찰, 민간인 등을 통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은 인명을 구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유엔은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화해에의 노력을 도울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유엔은 유엔 시스템의 전문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때로는 비정부기구의 참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
30. 이러한 내부 위기 상황에서 유엔은 당사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의 원칙에 대해 회원국이 이해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기구는 1991년 12월 19일 총회 결의안 46/182에 첨부된 지도 원칙에 대해 협상된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지침은 특히 인도적 지원이 인류애, 중립성,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따라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단일성이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적 지원은 대상 국가의 동의하에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요청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지침은 또한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의 희생자를 돌보아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침에 비추어 볼 때, 유엔의 개입을 요구하는 정부의 요청 또는 개입에 대한 동의는 해당 국가의 주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며, 본질적으로 국가의 국내 사법권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는 헌장 제2조 제7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31. 국가 간 분쟁에서 양 당사국이 동의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각 국가의 영토에 유엔 주둔군의 예방 전개를 통해 인접국 간의 적대 행위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예방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임무의 성격에 따라 유엔 주둔군의 구성이 결정된다.
32. 한 국가가 국경을 넘는 공격을 두려워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 국가의 동의에 따라 유엔이 국경에 주둔하는 것이 분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라면 예방 전개를 권고한다. 여기서도 상황의 특성에 따라 임무와 필요한 인력이 결정된다.

비무장지대

33. 과거에는 분쟁이 종료되면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평화 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에 유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 교전국들을 분리하는 수단으로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국경의 양측, 또는 공격을 위한 구실을 제거할 목적으로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경의 한 쪽에 예방 전개의 형태로서 비무장지대가 가지는 유용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

4. 평화 조성

34. 분쟁 예방 임무와 평화 유지 임무 사이에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적대적 당사자들을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현장 제6장은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들이 포괄적으로 열거된 목록을 제시한다. 이 수단들은 총회에서 채택된 다양한 선언에서 상세히 서술된다. 국제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에 관한 1982년 마닐라 선언¹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분쟁 및 상황의 예방 및 제거 그리고 유엔의 역할에 관한 1988년 선언²이 이에 해당된다. 이 수단들은 또한 현장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국제 평화, 안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1989년 11월 15일 결의안 44/21을 포함하여 총회의 다양한 결의안의 주제였다. 유엔은 이러한 평화적 수단의 적용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부적절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우선 현장 제6장에 제시된 수단들을 통해 대립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중재자가 개입하는 경우에 중재자의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가 무관심하거나 해당 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되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구의 역량을 향상하려면 주로 이러한 영역을 살펴보아야 한다.
35. 현장에서 예견된 방식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현재 결정으로 인해 이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적대적인 당사자들을 협상으로 이끄는 영향력과 설득력이 생겼다. 이사회가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 또는 방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현장의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서 분쟁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도록 촉구한다.
36. 안전보장이사회와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총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보편적 포럼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고려하고 권고하는 총회의 역량은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총회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억제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37. 중재와 협상은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다. 유엔은 평화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저명한 정치가들을 활용한 오랜 역사가 있다. 저명한 정치가들은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명성을 이용해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발휘할 정치인들은 많으며,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본인은 그들을 계속 활용할 것이다. 종종 사무총장이 직접 임무를 수행한다. 중재자의 효과는 이사회, 총회, 국가적

1 총회 결의안 37/10, 부록.

2 총회 결의안 43/51, 부록.

역량으로 활동하는 관련 회원국의 확실한 지원을 통해 향상되지만, 사무총장의 중재는 경우에 따라 심의 기관과 독립적으로 수행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의 영향력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을 충분히 인식하여 특정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제사법재판소

38. 국제사법재판소의 사건 일람표는 분주해졌지만 분쟁에 대한 평화적 판결에 재판소가 여전히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재판소에 보다 의존하는 것은 유엔의 평화 조성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현장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즉 회원국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 제출, 중재 또는 기타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고한다. 본인은 현장 제96조 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재판소의 자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과, 이미 그런 권한을 가진 다른 유엔 기관이 더 자주 재판소의 자문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39.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권고한다.

(a) 모든 회원국은 2000년에 유엔 10년 국제법이 종료되기 전에 유보 없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반 관할권을 수락해야 한다. 국내 체계가 이를 막는 경우, 회원국은 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사안의 포괄적인 목록에 양자 또는 다자간으로 합의해야 하며 다자간 조약의 분쟁 해결 조항에서 관할권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

(b) 분쟁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의 관할권을 사용해야 한다.

(c) 회원국은 분쟁을 재판소에 회부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탁 기금을 지원해야 하며, 그러한 국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원을 통한 개선

40. 때때로 갈등이나 분쟁을 조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를 통해 평화 조성이 촉진된다. 예를 들어 실항민에 대한 지원이 해결책에 필수적이라면 유엔은 모든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엔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또는 사무총장이 그러한 적극적인 영향력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 시스템의 공동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없다. 본인은 이 문제를 유엔의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집행 책임자들을 소집하는 조정관리위원회에 제기했다. 우리는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재 및 특수한 경제 문제

41. 평화 조성이 헌장 제41조에 따라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수한 경제 문제에 직면한 국가는 제50조에 따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시스템의 금융기관과 기타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에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조치는 형평성의 문제이며 국가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군사력 사용

42. 평화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위반 또는 공격 행위”에 직면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제7장에 규정된 조치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헌장에 포함된 집단 안보 개념의 본질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지금까지 가장 강압적인 조치, 즉 제42조의 군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상황에서 이사회는 이사회를 대신해서 회원국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헌장은 이제 모든 회원국의 관심을 끌만 한 상세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43. 헌장 제42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모든 평화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조치에 대한 선택은 국제 안보의 보증인으로서 유엔의 신뢰성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협상을 통해 헌장 제43조의 특별 협정이 성립될 필요가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제42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에 군대, 지원, 시설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다. 헌장이 채택된 이래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이제는 이러한 특별 협정 체결에 대한 오랜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 군대의 사용 가능성은 그 자체로 평화의 위협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잠재적인 침략자는 이사회가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제43조에 따른 군대는 정교한 무기로 무장한 주력군의 위협에 대처할 만큼 충분히 규모가 있거나 무장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군대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는 유용할 것이다. 본인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참모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 43조에 따라 협상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군사참모위원회는 헌장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원될 수 있다. 군사참모위원회의 역할은 평화 유지 작전의 계획이나 수행이 아니라 제7장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집행부대

44. 제43조에 따른 군대의 임무는 압박하였거나 실제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한 군대는 당분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 종종 휴전이 합의되었지만 준수되지 않았으며, 유엔은 휴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군대의 파견을 요청받았다. 이러한 임무는 때때로 평화 유지군의 임무와 평화 유지군 기여자들의 예상을 넘어설 수 있다. 본인은 이사회가 명확하게 정의된 상황과 사전에 명시된 위임사항 하에 평화집행부대의 활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회원국에서 파견한 평화집행부대는 비상 대기 부대이며, 이런 복무를 위해 자원한 병력으로 구성된다. 평화집행부대는 평화 유지군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중무장이 필요하며 이들은 자국군에서 광범위한 준비 훈련을 받아야 한다. 평화집행부대의 배치와 운용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하에, 그리고 평화 유지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은 평화집행부대가 현장 제40조에 따라 잠정 조치로 보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집행부대를 침략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제43조에 따라 구성될 수 있는 부대 또는 정부가 평화 유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기시킬 수 있는 병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45.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활동들에 외교가 지속되듯이, 평화 조성과 평화 유지 사이에 경계선이 없을지도 모른다. 평화 조성은 종종 평화 유지의 전주곡과 같다. 즉 유엔 주둔군이 현장에 배치되면 분쟁 예방의 가능성이 커지고 평화 조성 작업이 촉진되며 많은 경우 평화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5. 평화 유지

46. 평화 유지는 유엔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 유지는 세계의 수많은 긴장 지역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왔다.

증가하는 요구

47. 1945~1987년에 걸쳐 13차례의 평화 유지 활동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13차례가 더 있었다. 약 528,000명의 군인, 경찰, 민간인이 1992년 1월까지 유엔의 기치하에 복무했다. 43개국의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기구를 위해 복무하다가 사망했다. 운영비용은 1992년까지 약 83억 달러에 달했다. 이 비용에 대한 미지급 체납액은 8억 달러가 넘는데, 이는 기구가 파견 국가에 진 빚을 의미한다. 현재 승인된 평화 유지 활동은 12개월 동안 3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느리다. 이에 반해 지난 10년 간 글로벌

국방비는 연간 1조 달러, 즉 분당 2백만 달러에 달했다.

48. 유엔 평화 유지비용과 그 대안인 전쟁 비용(기구의 요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단 사이)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세계의 안정과 기구의 신뢰성에 그다지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이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 점점 더 유엔의 평화 유지 지원에 기대하고 있으며, 지원이 불가할 경우 책임을 지우는 시기이기에,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인은 평화 유지에 대한 평가의 현재 가치와 예측 불가능성이 일부 회원국에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평화 유지 분담금을 외교와 예산이 아닌 국방에서 조달하자는 일부 회원국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권고한다. 또한 총회 역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49. 유엔의 평화 유지, 평화 구축, 활동에 대한 요구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무국과 회원국의 역량, 정치 및 재정적 의지, 창의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평화 유지 활동 임무의 증가와 확대를 환영하는 바이다.

평화 유지의 새로운 출발

50. 평화 유지 활동의 성격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변했다. 평화 유지의 기존 원칙과 관행은 최근 몇 년 간의 새로운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며,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 즉,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권한, 권한 이행 시 당사국들의 협력,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또한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포함하여 군인, 경찰, 민간인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지원, 본부 및 현장에서의 유엔군 사령부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적절한 재정 및 군수 지원이다. 국제적인 분위기가 변하고 평화 유지 활동이 점차 평화 조성자들이 협상한 해결책 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군수, 장비, 인력, 재정과 관련하여 일련의 새로운 요구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와 문제들은 회원국들이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의향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인력

51. 회원국은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군 관찰관과 보병은 항상 필요한 규모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병참 부대의 경우 장기간 유지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 모든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한 병력을 명시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거의 대부분이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모든 회원국에 솔직하고 신속한 답변을 다시 요청한다. 사무국과 회원국은 서신을 통해 회원국들이 유엔에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의 종류와 규모를 공유함

으로써 새로운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기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52. 더욱 공고한 평화 유지를 위해 민간 정치 공무원, 인권 감시자, 선거 관리, 난민, 인도적 지원 전문가, 경찰이 군대의 중심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최근 경찰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회원국의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다양한 역량, 그리고 사무국 시설을 이용하여 평화 유지 인력(민간인, 경찰, 군대)을 훈련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파견 국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들은 기구와 함께 복무할 수 있는 경찰 파견대를 위한 언어 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유엔의 경우에는 평화 유지 활동에 복무하려는 사무국 직원들의 신속한 전근을 허용하는 특별 인사절차(인센티브 포함)를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중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사무국에서 복무하는 군인의 힘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군수

53. 모든 정부가 해외 복무에 필요한 장비를 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장비는 부대 파견 국가가 제공하지만, 장비가 부족한 국가는 그렇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포함한 많은 양의 장비를 유엔에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유엔에는 그만한 장비의 재고가 없으며, 장비를 제조업체에 주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활동을 시작할 때 최소한 일부 차량, 통신 장비, 발전기 등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화 유지를 위해 사전 배치된 기본 장비의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 또는 정부는 사무총장이 지정한 특정 장비를 필요 시 유엔에 즉시 판매, 대여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4. 이것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회원국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무료로 또는 상업적 요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유엔에 항공 및 해상 수송을 제공해야 한다.

6. 분쟁 후 평화 구축

55. 평화 조성 및 평화 유지 활동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고 사람들의 자신감과 행복감을 증진하는 구조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내전 종식 협정을 통해 과거 분쟁 당사자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무기를 보관 및 폐기 하며, 난민을 송환하고, 보안 인력에 대해 자문 및 훈련을 지원하고, 선거를 감시하며, 인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정부 기관을 개혁 또는 강화하며 정치 참여의 공식 및 비공식 절차를 장려할 수 있다.

56. 국제 전쟁의 여파로 분쟁 후 평화 구축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에 근본적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둘 이상의 국가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여러 국가를 한 데 모아 농업 발전, 교통체계 개선, 물이나 전기와 같은 공유자원의 활용, 그리고 자유 여행, 문화 교류 및 상호 유익한 청소년/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 장벽을 낮추는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들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 교류와 커리큘럼 개혁을 통해 적대적 인식을 줄이는 것은 새로운 적대 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문화적, 국가적 긴장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57. 평화를 위한 노력의 범위를 조망할 때 새로운 환경을 건설하는 평화 구축은 평화 조성 조건의 붕괴를 피하기 위한 예방 외교의 대응 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평화 조성 및 평화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노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후에는 근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달성된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예방 외교는 위기를 피하는 것이며, 분쟁 후 평화 구축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58. 내전 또는 국제 분쟁 이후의 평화 구축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지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데, 수천만 개의 지뢰가 과거 또는 현재의 전투 지역에 흩어져 있다. 지뢰 제거는 평화 유지 활동의 관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평화 구축이 진행 중일 때 활동 회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뢰 제거 없이는 농업을 되살릴 수 없으며, 교통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재매설을 막기 위해 표면이 단단한 도로를 깔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사이의 연결 고리가 분명해지고 있다. 비무장지대가 분쟁을 막기 위한 예방 외교 및 예방 전개의 이유를 제공하듯, 안보 의식을 높이고 당사자들이 사회의 평화 복구 작업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인 비무장화는 평화를 유지하거나 분쟁 후 평화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9. 요청 시 유엔이 발전 및 제공할 의무가 있는 기술 지원에 대한 새로운 필수 조건이 있는데 바로 부족한 국가 구조와 역량의 변화를 위한 지원과 새로운 민주적 제도의 강화를 위한 지원이다. 이 분야에서 유엔 시스템의 권한은 사회적 평화가 전략적 또는 정치적 평화만큼 중요하다는 합의에 기반한다. 법치 및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같은 민주적 관행과 새로운 안정적 정치 질서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훌륭한 거버넌스의 이러한 요소는 국제 및 국가 정치 공동체의 모든 수준에서 촉진되어야 한다.

7. 지역 협정 및 지역 기구와의 협력

60. 국제연맹규약 제21조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지역적 이해의 타당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장의 제8장은 지역 활동에 적합하고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지역 협정 또는 지역 기관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냉전으로 인해 제8장은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실제로 당시 지역 협정은 때때로 현장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반대했다.
61. 현장은 의도적으로 지역 협정 및 지역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 그룹이 유용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회 또는 단체에는 유엔 창립 전후에 설립된 조약에 기반한 기구, 상호 안보 및 방어를 위한 지역 기구, 일반적인 지역 발전 또는 특정 경제적 주제 또는 기능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기구, 특정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안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 등이 있다.
62. 이와 관련하여 유엔은 최근 다양한 보완 노력을 장려했다. 모든 지역이 제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협력 작업의 설계와 분업은 각 사례의 현실에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3개의 지역 그룹(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 이슬람국가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이 소말리아와 관련하여 유엔과 협력했다. 아시아의 경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여러 지역의 개별 국가들이 유엔과 협력하기 위해 파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캄보디아 분쟁 당사자들과 함께 모였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사무총장의 친구(The Friends of the Secretary-General)”라는 독특한 협정이 사무총장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니카라과 전쟁의 종식에는 지역 지도자들을 시작으로 개별 국가, 국가 그룹, 미주기구가 매우 복잡다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지원 하에 유럽 공동체와 그 회원국이 기울인 노력은 발칸 반도 및 주변 지역의 위기를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63. 과거에는 보편적인 집단 안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지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지역 협정들은 세계 기구의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연대 의식을 가지긴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목적이 어긋나게 기능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새로운 기회의 시대에는 지역 협정이나 기관의 활동이 현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유엔,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와의 관계가 현장 제8장에 따라 유지될 경우 그들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4. 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역 기구와 유엔의 공식적인 관계 패턴을 제시하거나 특정 분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지역 협정이나 기관이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기능, 즉 예방 외교, 평화 유지, 평화 조성, 분쟁 후 평화 구축을 수행하는 데 활용해야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현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나, 분권화, 위임, 유엔과의 협력 등의 지역적 조치는 이사회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에 대한 참여, 합의, 민주화 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65. 당초 지역 협정 및 기관이 부분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역할을 위해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오늘날 지역 협정 및 기관은 새로운 의식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유엔과 지역 협정 또는 기관 간의 협의는 문제의 성격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동 사업에서 유엔과의 보완적 노력에 참여하는 지역 기구들은 해당 지역 밖의 국가들이 지원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지역 협정이나 기구를 특별히 승인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유엔이 지역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현장과 본 보고서의 제8장에서 구상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설명된 접근 방식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의 모든 수준에서 민주화가 장려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을 것이다.

8. 인력의 안전

66. 예방 외교, 평화 조성, 평화 유지, 평화 구축 또는 인도적 목적을 위해 유엔 인력이 분쟁 상황에 배치되면 유엔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사망자수가 가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휴전 체결에 따라 추가적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유엔 경비대는 이라크의 불안정한 상황을 지원하도록 요청받았다. 경비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유엔 인력과 보급품을 보호했고, 또한 새로운 분쟁을 예방하는데 일조했다. 상황의 특성에 따라 보안을 위한 배치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협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엔 인력이 직면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67. 돌이켜보면 적대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유엔의 활동이 늘 충분했던 것은 아니었다. 위험 지역에서의 임무는 항상 위협을 수반하기 때문에 유엔 인력은 때때로 위협에 처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유엔 인력이 보여주는 용기, 헌신, 이상주의는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하며, 이들이 수행하는 위험한 임무는 그에 걸맞은 인정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과 그 가족의 이익 역시 충분히 고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68.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유엔 인력을 긴급히 보호해야 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기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 주둔군을 즉시 철수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본인은 유엔 인력을 위협에 빠뜨린 세력에 대한 조치를 이사회가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관해 제7장에 따른 조치들을 포함하여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집단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유엔 활동의 목적이 체계적으로 좌절되고 적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행해야 한다.

9. 자원 조달

69. 본 기구에 맡겨진 임무와 기구에 제공된 재정적 수단 사이에 틈이 생겼다. 이 문제는 우리의 자원 조달이 근시안적인 한, 우리의 비전이 밝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여기서의 주된 관심 영역은 장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구의 능력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요건이다.

70. 모든 측면에서 유엔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 사무총장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주지시켰고 총회 46차 회기에 여러 제안을 했다. 이들은 아직 총회에 계류 중이며 본인이 동의하는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제안1: 불충분한 운전자본준비금 문제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미지급 분담금으로 인한 현금 흐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다.

(a) 정시에 미지급된 의무 분담금에 대한 이자 부과

(b) 예산 잉여금의 보유를 허용하는 유엔의 재정 규정 중단

(c) 운전자본기금을 2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늘리고 기금 수준이 정기 예산 하에서 연간 평가액의 약 25%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지지

(d) 기여금 수령 시까지 평화 유지 활동의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5천만 달러 수준의 임시평화유지준비기금 설립

(e) 다른 현금 출처가 부적절할 경우 사무총장이 상업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권한.

- 제안2: 인도적 비상 상황에서 사용될 5천만 달러 정도의 인도주의회전기금(Humanitarian Revolving Fund)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이행되었다.

- 제안3: 초기 목표가 10억 달러인 유엔평화기부기금(United Nations Peace Endowment Fund)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의무 기여금과 자발적 기여금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며, 자발적 기여금의 경우 정부, 민간 부문, 개인이 기부한다. 기금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원금 투자 수익금은 승인된 평화 유지 활동, 기타 분쟁 해결 조치, 연관 활동의 초기 비용을 조달하는 데 사용된다.

71. 이러한 제안 외에도 최근 몇 달 동안 진행된 공개 토론 과정에서 다른 제안들이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의 무기 등록부 유지와 관련될 수 있는 무기 판매에 대한 부과금, 평화 유지에 의존하는 국제 항공 여행에 대한 부과금,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평화와 발전은 상호의존적)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유엔의 권한, 재단, 기업, 개인의 유엔 기부금에 대한 일반 면세, 평화 유지 활동의 평가 규모에 대한 계산 공식 변경.
72. 이러한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기구의 재정적 기반이 날마다 취약해져서 새로운 필수 활동을 수행할 정치적 의지와 실제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기구의 자원 조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은 의무 분담금을 전액 및 제때에 지불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73.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회원국들이 평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본인은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5천만 달러의 회전하는 평화유지준비기금의 즉각적인 설립
 - (b) 안전보장이사회가 활동을 결정하는 즉시 새로운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예상 비용의 1/3이 총회에서 책정된다는 합의. 이는 사무총장에게 필수적인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적절한 현금 흐름을 보장한다. 비용의 잔액은 총회가 활동 예산을 승인한 후에 책정될 것이다.
 - (c)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및 운영상의 고려 사항으로 인해 사무총장이 경쟁 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회원국의 인정.
74. 회원국들은 기구가 최대한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본인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에 생산성을 높이면서 중복과 중첩을 피하기 위해 사무국을 간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변경 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유엔 시스템의 확대와 관련하여 본인은 조정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기구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중의 강화된 인식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인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책임자들에게 이 전체 주제를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본인은 현장에 따라 재정 및 예산 문제에 대해 총회가 가지는 특별한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본인의 의견과 함께 책임자들의 조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0. 평화를 위한 의제

75. 유엔의 국가와 민족이 국제연맹과는 다르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제연맹과 달리 우리는 현장에 따라 세계를 건설할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았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는 세계를 위협하고 우리 기구를 마비시키던 대결 국면에서 벗어났다.
76. 이런 상황을 축하하는 한편, 지난 40년간의 교훈을 배우고 그 오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이유로 위기에 처한 지구에는 세 번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77. 앞으로의 과제는 유엔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 즉 총회, 기타 주요 기관, 기구, 프로그램의 에너지와 관심을 한 데 모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균형 잡힌 계획 하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78. 다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동성(시험 후에 얻은 속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거부권의 위협이나 특정 국가 그룹의 권력이 아니라 공유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진정한 합의 정신이 이사회의 업무를 지배해야 한다. 따라서 상임 이사국 간의 합의는 이사회의 다른 회원국들의 강한 지지를 받아야 하며, 이사회의 결정이 효과적이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수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79. 1992년 1월 31일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상회의는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특한 포럼을 개최했다. 본인은 총회에서 일반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사회 회원국들의 국가 및 정부 수반이 격년으로 만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만남은 당면한 도전과 위험에서 교류를 허용하고 유엔이 평화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극할 것이다. 또한 본인은 최근 몇 년 간 효과적으로 그랬듯이 여건이 허락되는 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외교부 장관급 회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
80. 권력은 특별한 책임과 유혹을 수반한다. 유엔이 성공하려면 강대국들이 일방주의와 고립주의의 이중적이면서도 상반되는 요구들을 거부해야 한다. 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일방주의가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흔들 수 있듯이, 정치적 선택이든 헌법적 상황에서 기인하든 고립주의는 글로벌 사업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고 개별 사회를 시급히 재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평화와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유엔은 크고 작은 모든 회원국이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1. 국가 내 민주주의는 현장에 명시된 대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존중과 특히 여성 및 아동과 같은 보다 취약한 사회 집단의 요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생산적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안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조건에서 육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내의

참여 기관들이 필요하다. 이런 기관들을 장려한다는 것은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유엔의 초점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본인은 특정 국가들에서 유엔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관을 합리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 국가의 유엔 고위 관리는 필요한 경우 주최 당국의 동의하에 특정 관심 사안에 대해 나를 대표해서 복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82.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는 세계기구 자체에서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구의 업무에 크고 작은 모든 국가의 완전한 협의와 참여가 필요하다. 유엔의 모든 기관은 모든 국가와 민족의 신뢰를 유지하고 받을 자격이 있도록 완전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아 수행해야 한다. 현장의 원칙은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인식되면 신뢰가 약해지고 현장의 가장 크고 가장 독특한 특성인 도덕적 권위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수준의 민주주의는 번영과 정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평화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83. 신뢰는 또한 세계기구가 신속하고 확실하며 공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치적 기회주의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취약함으로 인해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이는 청렴성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독립적인 국제 행정 조직과 현재의 궁핍한 상태에서 기구를 완전히 구제해 줄 확실한 재정적 기반을 전제로 한다.
84. 유엔의 각 기관이 현장에서 구상된 균형 잡힌 조화로운 방식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의미의 평화는 유엔 시스템이나 정부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비정부기구, 학술 기관, 의원, 비즈니스 및 전문 커뮤니티, 언론 및 일반 대중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는 가장 광범위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세계기구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더 깊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계에 유엔의 정책을 전달하고 그 업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다.
85. 개혁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개선에는 한계가 없다. 하지만 본 기구의 개선에서 현 단계가 1995년 (창립 50주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 따라서 유엔이 이 시대의 특징인 역사의 가속도보다 앞서 나가려면 속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선례가 현명한 길일지라도 선례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요구와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형태와 내용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
86. 본인은 회원국과 사무총장 간의 광범위한 대화를 약속한다. 그리고 본인은 현장의 목표를 더 잘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본 기구가 부분의 합 이상일 수 있도록 기구의 모든 기관과 요소 간에 완전하고 개방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엔은 위대하고 대담한 비전으로 창설되었다. 지금은 유엔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유엔에 기여하는 남녀들이 미래를 위해 기회를 포착할 때이다.



02

발전 및 국제 경제 협력: 사무총장 보고서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 Agenda for Developmen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48/935
(1994)





A/48/935
1994년 5월 6일

유엔
총회

48차
의제 91

배포: 회원국 일반
영어
원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발전 및 국제 경제 협력 개발을 위한 의제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사무총장 보고서 (An Agenda for Developmen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머리말

1. 총회는 1992년 12월 22일 결의안 47/181에서 본인에게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발전을 위한 의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발전 주제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견해를 모으기 위해 본인은 모든 회원국, 유엔 시스템의 기관 및 프로그램에 제출을 요청하고 세계의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장려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아이디어는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었다.
2. 1993년 12월 21일 총회 결의안 48/166의 제5항에서 요청된 대로, 본인은 1994년 경제사회위원회 실질회의의 논의와 총회 의장이 장려하는 논의 중에 제시된 견해를 고려하여 49차 총회 동안 발전을 위한 의제에 대한 결론과 권고를 제시할 것이다.

1. 도입: 왜 발전을 위한 의제인가?

3. 발전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평화를 위한 가장 안전한 기반이다.
4. 이러한 원칙에 대한 검토 과정과 발전을 위한 본인의 강한 개인적 약속과 역사의 이 시점에서 유엔이 인정할 필요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발전을 위한 의제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다.
5. 발전의 개념과 빈곤, 문맹, 질병,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수십 년 간의 활동은 금세기의 위대한

업적이다. 하지만 공동의 명분인 발전이 우리 의제의 최전선에서 사라질 위험이 있다. 냉전 시대의 세력 경쟁은 발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동기가 항상 이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는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최빈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은 끝났다. 많은 기부자들이 이 과제에 지쳤다. 가난한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다. 발전이 위기에 처해 있다.

6. 최빈국들은 훨씬 뒤처지고 있다. 계획 경제에서 개방 경제로 전환하는 국가는 엄청난 난관에 직면해 있다. 번영을 이룬 국가들의 경우 성공에 뒤이은 사회, 환경, 문화, 경제적 측면의 새로운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전 수준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조차 꺼려한다.
7. 현 상황은 보다 폭넓은 이해, 더 확고한 도덕적 약속, 보다 효과적인 정책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상당한 발전이 훼손될 수 있다. 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열악한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운명을 일관된 방식으로 형성하는 능력을 점점 더 잃게 될 것이다.
8.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안이 상당히 제시되었고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엔 시스템은 발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풍부한 연구와 보고서를 생산했는데 이는 정말 귀중한 자원이다.
9. 이에 기반을 두어 본 보고서는 발전 전망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모든 측면에서 논의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10. 유엔 헌장은 발전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정교화시킬 수 있고, 20세기의 마지막 10년 간 우리에게 남은 책무는 발전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11. 유엔이 발전 문제보다 평화 유지를 더 강조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규 예산이나 평화와 발전에 참여하는 직원 수를 보고 이런 우려가 생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화유지기금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면서 일부 회원국은 유엔의 발전 활동에 대한 분담금을 인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발전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를 전망할 수 없다.
12. 국가 정부가 발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반면, 유엔은 이 과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유엔이 발전에 참여한 것은 40년에 이르며, 그 대상은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성격의 세계적 문제들을 망라한다. 발전의 모든 범주와 수준에서 참여한다.
13. 따라서 본 의제는 유엔 고유의 경험에 기반한다. 2장에서는 중요하고 상호 연결된 발전의 5가지 차원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발전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와 이러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발전 차원이 연결되는 데 유엔이 도울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본 보고서의 부속서 I는 유엔의 발전 참여 규모를 보여준다. 유엔의 발전 참여를 논의하면서 본인은 주로 기금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유엔 자체로 한정했다. 유엔 시스템의 전문 기관의 작업은 본질적으로 본 보고서의 초점이 아니다.

14. 새로운 발전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유엔의 발전 참여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은 크고 작은 모든 국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들을 수 있고, 비국가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가장 많은 청중에게 알릴 수 있는 토론장이다. 함께 나아가갈 때이긴 하지만 보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지체될수록 비용은 증가하고 이행은 어려워지고 있다.
15. 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국가는 없다. 마찬가지로 빈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은 없다.

2. 발전의 차원

A. 발전의 토대: 평화

16. 전통적인 발전 방식은 평화의 조건에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다. 평화의 부재는 세계 여러 곳에서 만연한 현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거나 현재의 분쟁 또는 분쟁의 위협 속에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최근의 참화와 지속되는 민족 분쟁의 짐을 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군비 확산 및 국지전이라는 현실과 적대적인 영향권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발전 수준에 따른 국가 분류에는 분쟁 국가의 분류가 추가되어야 한다. 유엔은 인도적 지원, 난민 지원, 평화 활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의 토대로서의 평화에 깊고 불가분하게 개입되어 있다.
17. 군사적 관심이 삶의 중심에 있거나 가까이 있는 사회에서는 발전이 쉽게 진행될 수 없다. 경제적 노력의 상당 부분을 군비 생산에 기울인 사회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한다. 평화가 부재하면 사회는 의료, 교육, 주택 발전에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군대에 투자하게 된다. 전쟁 준비는 자원을 과도하게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
18. 발전의 부족은 국제적인 긴장을 야기하고 군사력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는데, 이 둘은 번갈아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런 악순환에 빠진 사회는 대결, 분쟁 또는 전면전으로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9. 일부 국가에서는 군 복무가 일반 사회 생활을 위한 교육 및 직업 기술 습득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로이며, 군비 생산이 민간용 첨단 기술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 예산은 평화와 인간 안보에 보다 잘 기여한다.
20. 분쟁 상황에서는 평화로운 조건에서와는 다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상황의 특성에 따라 발전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국제전 상황에서의 발전은 게릴라전 상황에서의 발전이나 정부 기관이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의 발전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21. 발전 활동은 평화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낳지만 적대 행위가 끝나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긴급 구호 및 발전을 대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된다. 구호 요건은 처음부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난민과 실항민을 위한 캠프는 단순한 이재민 수용소 그 이상이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예방 접종 캠페인, 문해력 증진, 여성들의 상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중요하다. 긴급 구호가 제공되는 동안에도 모두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 역량 강화 조치는 적대 행위의 공식적인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긴급 전시 서비스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끔찍한 분쟁이 증대한 개혁과 통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 이상, 인권 존중, 사회 정의를 위한 대책이 이 단계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할 수 있다.
22. 평화 구축은 분쟁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평화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구조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방 외교는 분쟁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평화 구축은 분쟁 중에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작된다. 근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협력 작업을 통해서만 달성된 평화가 공고해질 수 있다. 분쟁의 여파로 재건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3. 평화 구축은 모든 발전 단계에서 국가의 문제이다. 분쟁에서 벗어난 국가들에게 평화 구축은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정치, 사법 제도를 수립할 기회를 제공한다. 농지 개혁 및 사회 정의를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으며, 과도기 국가는 평화 구축 조치를 국가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로에 설정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비교적 부유하고 강한 국가들은 부분적 동원 해제와 국방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 단계에서 내린 결정은 국내와 국제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4. 평화 구축을 위한 가장 긴급 한 과제는 전쟁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식량 지원, 의료 및 위생 시스템 지원, 지뢰 제거, 현장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한 물류 지원은 첫 번째 평화 구축 과제이다.
25. 이 단계에서도 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타협하기보다는 촉진하는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식량이 제공되면 식량 생산 능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구호 물자 전달과 관련하여 도로 건설, 항만 시설의 복구 및 개선, 지역 재고 및 유통 센터 설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6. 지뢰 제거는 독특한 분쟁 후 사업이다. 세계는 지뢰 확산이 발전에 주요한 장애물이며 중단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다. 지뢰는 적대 행위가 끝나도 오랫동안 분쟁 지역에 남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불구로 만들기 때문에 대규모 토지 사용을 어렵게 하고, 분쟁 후 국가의 가정과 의료

인프라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준다. 대부분의 경우 지뢰 제거와 불발병기의 제거는 모든 분쟁 후 평화 구축 활동의 전제 조건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다. 지뢰 제거는 다년 간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관리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뢰 제거를 수행, 감시, 평가하고 국제 지침에 따라 국가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립해야 한다.

27. 전투병의 재통합은 어렵지만 분쟁 후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많은 분쟁에서 군인은 아주 어린 나이에 모집되었다. 그 결과 전직 전투병들이 평화를 되찾은 사회에 돌아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사회의 발전 전망을 약화시킨다.
28. 전투병의 효과적인 재통합은 평화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직 전투병이 생산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신용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밀반침되어야 한다. 민간 사회로의 재진입을 위한 기본 교육, 특수 직업 프로그램, 실무 교육, 농업 기술 및 관리 기술 교육은 분쟁 후 평화 구축의 핵심이다. 일정 정도 군인들이 습득한 일부 기술은 국가 재건에 중요할 수 있다.
29. 분쟁은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분쟁 후 활동은 매커니즘의 복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 사회의 핵심 제도인 사법 시스템은 강화되거나 심지어 새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공정화 시스템,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 기반, 민간 기업 운영 규칙과 같은 다양한 정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30. 분쟁의 뿌리를 뽑는 것은 분쟁 후 즉각적인 요구 사항과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를 복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분쟁을 초래한 근본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분쟁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수단들이 있어야 한다. 평화 구축은 평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 개혁, 용수 공유 계획, 공동 경제 기업 구역, 공동 관광 프로젝트, 문화 교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고용 성장을 회복하면 청년들이 전쟁에 대한 소명의식을 포기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31. 군비 절감은 발전과 평화의 사슬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이다. 세계의 군비 지출이 계속해서 생산 자원 및 용량을 지나치게 소비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진전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1987~1992년에 5천억 달러(산업 국가 및 과도기 국가에서 4,250억 달러, 개발도상국에서 750억 달러)의 누적 평화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이 평화 배당금 중 일부는 발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32. 무기 수출에 대한 수치는 90년대 초에 실질적으로 현저한 감소를 보이지만,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군사 시설을 빠르게 축소하는 국가에서 수입된 재래식 무기 재고가 제3국으로 향하고 있다.

박격포, 기관총, 로켓 발사기와 같은 비교적 정교하지 않은 무기는 심지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손에 있어도 엄청난 죽음과 파괴를 초래했다.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무기 재고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그런 현상의 원인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은 현재 세계 각국으로 공급되는 무기 공급의 86%를 차지한다.

33. 군비 수입은 종종 자본이나 소비자 구매에 대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군비를 축소하면 발전 자금을 조달하고 소비자 요구와 기본적인 사회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군비를 절감하면 예산을 개혁할 수 있으며 거시 경제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노력을 통해 군사적 우위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이고 평화로운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전환할 수 있으며 더불어 국제적 긴장과 경쟁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군비의 축소가 발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상당하다.
34. 훈련 비용이 사회적 평균보다 상당히 높고 에너지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군사 하드웨어의 운용에 집중되는 사회에서, 군대는 가장 재능 있는 일부 구성원을 흡수한다. 군비 생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 기술과 역량을 활용한다.
35. 과도기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의 조달이 무너졌고 대부분의 군비 지출은 연금을 포함한 인건비이다. 방위 산업에 의존하던 전체 사회가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적응할 수 없다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계속되는 실업률 증가에 대한 두려움은 군축을 늦추고, 군사 산업은 전반적인 거시 경제 목표를 해치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36. 비무장화는 또한 산업화된 시장 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했지만, 과도기 국가들보다는 덜 심각했다. 특정 지역과 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은 경제의 다른 부문에 쉽게 흡수되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대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려웠고 재교육은 여전히 산발적이다.
37.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가 소규모 군대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군비 축소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공공 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이 필요한 경제 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전환은 단기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38. 냉전 종식이 군비 지출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점점 더 민족 분쟁과 경제 불안정으로 점철된 분위기 속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극단적인 군비 경쟁이 끝날 때의 안도는 재래식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가 여러 지역에 축적될 것이라는 경고로 대체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특히 중동과 아시아에서 군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유 자원을 둘러싼 대립에 대한 두려움, 국내 불안정, 중무장한 이웃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 요인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초강대국의 개입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지역적 반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무기 거래가 수익성이 좋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은 전 세계에 지뢰와 그 부품의 생산 및 이전에 대한 금지 요구를 지지한다.

39. 군비통제 및 군비해제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파괴, 경제 쇠퇴, 긴장의 위협을 감소시킨다. 군비 지출 감소, 군사 시설 감소, 무기 재고 감소, 군사 관련 활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감소가 이루어진 세상은 그 자체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40. 오늘날 심지어 원격 분쟁도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안보 및 발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인식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하고, 분쟁 중에도 국가를 발전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을 때는 발전이 평화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임을 의미한다.

B. 경제: 진보의 엔진

41. 경제 성장은 발전의 엔진이다. 경제 성장 없이는 가계 또는 정부 소비, 민간 또는 공공 자본 형성, 보건, 복지, 보안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 어떤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분배 선택을 하든, 분배 선택 역량은 가난한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한되고 경제 성장에 의해 강화된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발전의 다른 측면인 평화, 환경, 사회, 민주주의의 진전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경제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은 자원 기반을 확장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경제, 기술, 사회 변화를 위한 조건이다.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거나 물리적 환경이 보호되는 것을 경제 성장이 보장하지는 않지만, 경제 성장 없이는 환경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물적 자원도 존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다. 경제 성장의 장점은 인간의 선택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43. 하지만 경제 성장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성장이 지속되고 지속가능한 것이 중요하다. 성장은 완전 고용과 빈곤 감소를 촉진해야 하며 기회의 평등을 통해 소득 분배의 패턴을 개선시켜야 한다.
44. 빈곤이 지속되거나 증가해서 인간의 조건을 무시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 사회적 긴장은 안정을 위협할 것이다.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의 혜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특정 지역, 부문 또는 인구 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는 발전이 필요하다.
45. 고용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고 교육, 의료, 주거가 개선되면, 빈곤과 그 영향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는 모두 생산적인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있어 필수 요소이다. 기아와 영양 실조의 퇴치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야 한다.

46.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즉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호의적인 국제 분위기가 필요하다. 적절한 국가 정책이 없다면 양자간, 다자간 할 것 없이 아무리 많은 지원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지원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호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국내 정치 개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혁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은 더욱 고초를 겪을 것이다.
47. 국가 경제 경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정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시장이 모든 해답을 제공할 수 없는 곳에서 정부가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려는 필요를 완화시켜야 한다.
48. 정부는 더 이상 최고의 경제 주체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시장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규제 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적절한 경우에 개입해야 한다. 인프라에 투자하고, 생산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간 기업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사회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 장기적인 전망을 계획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49.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처방은 없다. 공공 및 민간 지출이 항상 서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종종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에 해당한다. 건전한 거시 경제 체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 경제 정책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견고한 미시 경제 기반에 기초해야 한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필수 복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도 실패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권한을 가진 민간 부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50. 정부의 경제 방향과 민간 주도의 적절한 조화를 찾는 것은 아마도 경제 발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는 개도국이나 과도기 경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가 계획 경제와 자유방임주의 사이에 놓인 어려운 길을 찾는 과정에 있다. 경기 침체가 되풀이되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주요 시장 경제도 이 과제에 직면해 있다.
51.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긍정적인 성장 자극과 부정적인 충격의 전달 속도가 빨라졌다. 그 결과 국가 차원의 경제 문제를 이제는 세계적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국내 경제 정책과 국제 경제 정책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성공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의 인구 통계, 환경, 경제, 사회, 군사적 문제로부터 고립될 수는 없다. 지구상의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곤, 질병, 분쟁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지구적 차원의 발전이 진행될 때까지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다.
52. 많은 국가가 국제 경제 시스템에 불완전하게 통합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국가는 시스템의 일부

이며, 일부 국가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매우 취약하다. 발전은 외부 부채 문제, 외부 자원 흐름의 감소, 무역 조건의 급격한 위축, 시장 진입 장벽의 증가로 인해 방해 받는다. 기술 협력이 부족하면 많은 국가가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세계 경제로 통합되지 못하게 된다.

53. 국제 무역의 확장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서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상업과 무역 증가의 이익(낮은 거래 비용), 더 큰 경제적 기회, 향상된 국제적 신뢰, 신뢰 및 안보의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54. 세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면 발전에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저임금의 이점을 제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주요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55. 경제 활동의 국제화, 시장 세력에 대한 의존도 증가, 민간 주도권이 경제 성장의 강력한 힘이라는 광범위한 인식, 개발도상국 및 과도국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엄청난 노력은 규칙과 규율이 존중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무역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특정 경제 활동에서 뚜렷한 비교 우위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투자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제품이 다른 시장에 침투할 때 새로운 보호주의 조치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
56. 하지만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무역과 금융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자금, 인력, 아이디어의 이동에서 더 큰 개방성을 향한 강력한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들은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국가 환경을 조성했다.
57. 국제 경제 환경을 조성할 만큼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거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발전 노력에 반드시 요구된다. 세계 금융에서 주요 경제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안정성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은 특히 중요하다. 환율 변동성은 금리, 외환 거래 수익, 준비금, 부채 상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부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주요 경제국의 국내 정책은 국제 자본 시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58. 주요 경제국들이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자체 목표로 삼지 않으면 이는 성공할 수 없다. 주요 경제국들이 세계적 관점에서 자국 경제 구조를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또는 책임감 있는 경제, 재정, 통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다.
59. 현재 주요 경제국들의 경제 정책 조율은 선진 7개국 그룹을 중심으로 한다. 현재 7개국에 15개국을 연결한 그룹(남남 협의 및 협력을 위한 정상급 그룹)을 창설하려는 개발도상국들의 거듭된 노력은 실패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이 더 이상 세계 발전의 유일한 동력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경제 정책 조율 과정이 더욱 광범위해지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60. 국제적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경제 정책과 국가의 성장을 통합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발전되지 않았다. 우선순위는 국제 부채의 심각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 보호주의 경향을 억제하는 정책, 개발도상국이 새로운 세계 무역기구 체제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것 등이다.
61.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 부족은 부채 위기로 악화되어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부채가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3%를 해외로 이전해야 했다. 어떤 경우에는 GDP의 6%이상에 달했다. 반대로 일부 개발도상국은 이제 자원의 순수출국이 되었다.
62. 부채 문제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일부 국가는 상업 은행에 많은 금액을 빚지고 있다.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공식적인 양자간 및 다자간 채권자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상업 부채를 재조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양자간 공식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다자간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부채 상환 부담은 크지만 채무 불이행 상태는 아닌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63.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단일 공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발전에 대한 개념이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등장한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특정 요소들이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을 위한 전략적 결정의 필요성이다. 국가는 행동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64. 발전은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모든 사회는 과거의 개발들, 유권자, 생산 구조, 외부 환경과의 관계, 문화적 가치, 발전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 성장 패턴은 이러한 요소의 영향과 그에 수반되는 타협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65. 지난 몇 년 간 급속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의 경험은 성장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한 국가의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 발전을 장려하거나 인프라 및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국가 정책의 영향은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 기관의 주도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는 성장을 촉진한다. 하지만 성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자체가 아니라 경제이다.
66. 국가는 성장을 유권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해야 한다. 어떤 생산 방식을 택하든, 물적, 인적, 제도적 자본의 축적에 의존하는 지속 성장은 현재 소비의 일정한 희생을 수반할 것이다. 예상되는 미래 수익을 위해 소비를 연기하는 결정은 개인이 저축을 결정하는 만큼 정치적 선택이다.
67. 최근 수십 년 간 얻은 기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조건, 환경,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메커니즘도 달라야 한다. 성장에는 정치적 약속과 비전이 필요하다. 유엔은 촉진자이자 의사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개별 국가와 국내 및 국제 파트너의 약속을 대신할 수는 없다.

C.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 환경

68. 평화, 경제, 사회, 민주주의와 같은 환경은 발전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며 국가의 모든 발전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생태적 압력이 장기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많은 과도기 국가들에서 수십 년 동안 환경에 대한 경시로 인해 넓은 지역이 오염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소비 패턴이 세계 발전의 미래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세계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69. 발전과 환경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며, 하나를 참조하지 않고는 다른 하나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없다. 환경은 발전을 위한 자원이다. 환경 조건은 중요한 척도이며 환경 보전은 발전의 지속적인 관심사이다. 발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고려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수용되었다. 유엔환경개발회의는 발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활동 모델을 제시했다.
70. 가용성을 보존하고 지구의 천연 자원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개인, 사회, 국가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문제 중 하나이다. 국가의 천연 자원은 종종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발전 자산이다. 이러한 천연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문제는 발전 및 사회의 발전 잠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71. 발전의 맥락에서 각 사회는 천연 자원의 장기적인 잠재성을 보호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야 한다. 경합하는 요구와 이익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 경제적 요구는 장기적인 자원 가용성 또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의존하는 생태계의 생존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72. 환경 파괴는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자원의 양과 질을 모두 감소시킨다. 천연 자원의 파괴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대가는 치명적일 수 있다. 수질 오염은 어업에 피해를 입히고 염분과 표토의 침식이 증가하면 작물 수확량이 감소한다. 농업의 황폐화와 삼림 벌채는 가뭄과 토양 침식을 촉진했으며, 영양 실조와 기근은 특정 지역에서 점점 더 흔한 일이 되었다. 해양 자원의 남획과 고갈로 인해 고대 공동체는 위기에 처했다. 과도한 벌목과 열대 우림 파괴는 중요한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고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훼손했다. 천연 자원 추출 시 범했던 건전하지 못한 관행은 넓은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오염시켰다.
73. 가장 놀라운 사실은 황폐화가 어떤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지구의 건강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관행을 시급히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74.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제한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고를 위한 가치 있는 인센티브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과학과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다 효율적인 생산 과정과

함께 부유한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의 변화는 보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발전 패턴에 기여할 것이다.

75. 천연 자원 관리와 보전을 국가 발전에 통합하면 광범위하게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많은 국가가 의존하는 관광은 중요한 인프라 구축, 직간접 고용 증가, 외환 수입 증대, 환경 의식 강화, 국제적 노출 증가,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독특한 기회 등 중요한 혜택을 초래할 수 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76. 현재 여러 회원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은 모든 발전 활동에서 지역 사회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단지 부수적인 수혜자라기보다는 인센티브 파트너로 삼음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많은 곳에서 그 결과가 유의미했고, 천연 자원 보존의 혜택에 대한 공감감이 커지고 관광 자산 보존에서 지역 사회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농촌 소득이 높아졌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77. 하지만 환경과 발전 사이의 연결은 천연 자원의 건전한 이용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포한다. 환경의 생태적 균형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다.
78. 사회 복지는 공기 및 수질 악화와 기타 환경 위협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조기 사망으로 인해 저하된다. 오염 물질은 직접적인 노출이나 간접적인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위협은 자외선에 대한 노출 증가부터 식품 및 수질 악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79. 독성 화학 물질과 중금속은 강과 기타 물 공급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의 대부분은 표준 정화 기술을 통해 식수에서 걸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음식이 오염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 산업 재해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과 오염 위험 또한 환경과 발전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80. 환경의 유형적, 물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종종 다른 혜택에 대한 논의를 가리지만, 자연 자체의 내재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자연 환경을 향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무형적 만족을 인식해야 한다.
81. 자연 재해는 발전 활동에 막대하고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 재해는 힘들게 얻은 성과를 순식간에 집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비의 경우 불가피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 구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고 경제적 정책이 영구적으로 무산되지 않으며 자연 재해 피해자가 외부 지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
82. 환경 관리를 개선하려면 기업, 가정, 농부, 국제사회, 정부의 행동 방식이 변해야 한다. 환경적

가치를 경제 활동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 및 민간 기업은 그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는 건전한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83. 제도의 미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발전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 정책을 설계, 실행, 집행하기 위한 국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84.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참여를 상호 연계시키는 것은 국가적 맥락에서 발전의 환경적 측면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빈곤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높은 설득력을 가진다. 비록 가난한 지역 사회가 종종 오래된 토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강력한 관리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구 증가 압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종종 환경 악화를 막기 어렵다. 근근이 살아가는 극빈층은 매일의 생존에 몰두하고 있다. 종종 이들은 환경 악화의 피해자인 동시에 행위자이다. 예를 들어 환경을 개선하고 수질 오염을 줄이는 정책은 종종 극빈층에게 가장 큰 긍정적인 혜택을 준다. 빈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정책은 인구 증가를 줄이고 환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85. 기술 협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입과 산출의 관계와 경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열쇠는 반드시 적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산하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자연의 고갈이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피해를 복구하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86. 개인과 지역 사회는 종종 환경적 영향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저렴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 및 지역 사회는 환경 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취시켜야 한다는 의식은 환경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87. 지속가능한 발전이 성공하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부문의 관심사이자 약속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약속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덜한 제품 및 생산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유해하고 에너지 집약적인 화학 물질의 남용을 피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및 사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생태 균형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88. 국제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특히 복잡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국가들이 부담할 수 있으며,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는 국가들에게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89. 모든 수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오존층 손상과 같은 일부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국경을 넘는 산업 오염은 지역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식수 오염은 지역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에서 규제와 인센티브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규범과 더불어 직접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금과 면허를 이용하는 것도 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90. 삼림 벌채와 환경 파괴는 극심한 분쟁을 초래했다.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빈곤, 자원 황폐화, 분쟁이 너무나 익숙한 삼각 고리가 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환경 파괴와 고갈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은 이미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도시 지역에 부담이 되고 있다.
91. 하지만 자원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환경과 발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동 지분이 과장되지만, 광범위한 공동의 환경 및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환경 파괴의 영향이 국경을 넘어설 때, 개별 국가에서처럼 공동의 법률 체계, 통일된 규제, 공유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국가 정부의 강압적 권력에 의존할 수는 없다.
92.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설득과 협상을 통해 뒷받침되는 주권 국가 간의 공동 원칙과 협력 규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웃 국가들이 강이나 지역 바다와 같은 공동의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 정치적 의미의 지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자간 행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대기 및 해양과 같은 지구 환경 자원도 있다. 한 국가에 속하지만 국제사회에 가치가 있는 자원(예: 생태 서식지 및 희귀종)의 경우, 해당 국가는 공동 유산의 보존을 위해 국제 협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
93. 지속가능성은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발전 활동의 모든 층위에서(국가 행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층위간, 국제기구, 정부, 비국가 행위자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요컨대, 인간과 자연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D. 사회의 기둥: 정의

94. 발전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추상적인 토대 위에 구축되지도 않는다. 발전은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및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전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모든 측면이 발전에 기여하거나 저해한다. 경제 성장과 기술 변화는 인간관계, 사회 구조, 가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인적 자원 개발은 사회와 경제 사이의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고 포용성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장기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견고한 적응 기반을 제공한다.

95. 발전 활동은 기존의 사회적 조건에서 출발하며, 대체로 사회적 조건은 발전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빈곤, 질병, 교육 및 지속가능한 생계는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강력한 우선순위가 된다. 많은 과도기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쇠퇴하는 산업 및 인프라, 심각한 사회 혼란은 발전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끊임없이 불만을 품은 하층민의 성장,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 외국인 혐오증의 증가, 배타적 태도는 이러한 사회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다.
96. 사람들은 국가의 주요 자산이다. 그들의 웰빙은 발전을 정의한다. 사람들의 에너지와 주도권이 발전을 주도한다. 사람들의 특성은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의 본질과 방향을 결정한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의 이점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 이상이다.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은 시민은 한 국가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삶과 문화의 모든 측면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97. 세계 인구의 5분의 1은 절대 빈곤, 기아, 질병, 문맹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의 원인과 증상에 대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발전 과제는 있을 수 없다. 행동과 약속이 필요한 과제이다. 발전 활동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배분하고, 광범위한 기반 전략을 실행하며, 국가의 명성보다는 사람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에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의제이다.
98. 인구 성장률은 사회의 소비 및 생산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특정 시점을 넘어 지속불가능하고 지탱할 수 없는 인구 증가는 전 세계의 발전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물, 목재, 연료, 공기와 같은 천연 자원의 사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효과는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99. 출산율과 사망률은 인구수를 넘어서는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의 감소는 가정의 축소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정규 교육을 계속 받고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은 취업 기회를 더욱 증가시키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선택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낮은 사망률과 출산율은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노동력, 부양률, 사회 복지 서비스, 의료 전달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100. 분쟁이 확대되면 인구 특성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아와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듯이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수가 증가한다. 이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즉각적이고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이들이 없으면 사회 자체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 단위가 재건되고 취약하고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 돌봄을 받으면, 이들은 더 넓은 범위의 발전 활동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101. 발전에 대한 우선순위 중 하나인 사회 통합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발전 범위에 있는 국가들에서 그 중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회 통합이 결여된 현상(차별, 광신, 편협함, 박해)은 익숙하다. 그 결과(사회적 불만, 분리주의, 미시적 민족주의, 분쟁)도 익숙하다.
102. 사회 통합은 이제 점점 더 국제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은 국내 및 국제 의제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 기근, 자연 재해를 피해 도피하고, 추가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하고 있다. 이민 규제는 대부분의 수용국에서 논쟁적인 정치 문제가 되었고, 이민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대부분의 출국 국가에서 사회, 경제적 긴장을 가중시켰다. 이민자에는 고도로 숙련되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자원 및 투자의 심각한 손실을 의미한다.
103. 세계 규모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규모 인구는 이동을 통제하거나 방해하더라도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 이동할 것이다. 일부 사회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분개가 증오와 무관용의 불꽃을 부채질했고, 공식 정책은 종종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분리주의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곳에서는 이민자 그룹이 사회 통합에 저항했다. 이주민에 대한 대우는 대부분의 양국 관계에서 상당한 긴장의 문제가 되었다.
104. 질병에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 모든 생각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엄청난 발전 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다. 문맹이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는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경쟁을 바랄 수 없다. 여성이 차별을 받거나 공평한 기회가 없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105. 물질 자본에 대한 투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측면이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경쟁력에 대한 투자이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단지 경제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강력하고 필요한 추진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안정된 경제와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없다. 강력한 사회 구조는 지속가능성의 전제 조건이다.
106. 자산과 기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사회 발전과 사회 발전 정책의 이행에 비중을 둘 수 있는 정치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모든 사회 기관의 주된 책임이다. 정부는 시장 경제의 틀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인적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교육, 의료 서비스, 주택 공급, 사회 복지는 종종 정부 조치가 필요한 특정 분야이다.
107. 활발한 시민 사회는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사회 발전은 사회

자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 발전을 주도하고 촉진해야 하지만, 사회 발전을 위한 유일한 힘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비정부기구(NGO), 지역 사회 단체, 민간 기업, 노동자 단체, 기타 단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비정부 기구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그들의 요구, 선호, 비전을 표현할 수 있는 발언권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기구를 정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보아야 한다. 시민 사회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시민 사회 강화가 공공 정책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

108. 사회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대중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가장 적절한 발전 경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 기구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109. 민주주의와 활발한 시민 사회는 정부가 정책의 사회 비용에 민감해지도록 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불가피하게 치렀던 경제적 구조 조정 과정은 사회적으로 가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고용 및 소득 감소는 구조 조정과 변화의 가장 즉각적인 효과였다. 이러한 시련이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강도 높은 예산 긴축의 결과로 사회 부문의 정부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110. 구조 조정은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처방이다. 하지만 인간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구조 조정과 변화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제학 법칙은 바꿀 수 없지만 사회적 결과는 완화될 수 있다.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정부가 구조 조정 과정을 유지하도록 격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개혁의 심각한 결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1. 생산적인 고용의 확대는 빈곤을 완화 및 감소시키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요소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과거보다 높은 실업률로 인해 고용인의 실질 임금이 크게 감소했다. 과거 완전 고용이 공식 규범이었던 국가들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실업은 심각한 경제, 사회적 영향과 더불어 엄청난 심리적 영향을 초래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간의 경제 침체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고용 불안감이 더욱 만연해졌으며, 25억 명의 세계 노동력 중 약 30%가 비생산적 고용에 해당했다.
112. 실업을 해결하거나 생산적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단일 청사진을 제공할 수는 없다. 노동 시장 대책,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목표가 명확한 고용 창출 계획, 거시 경제 정책은 모두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설계된 인센티브 구조는 고용 성장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의 임무 중 하나는 민간 부문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체계, 안정적인 투자 환경, 기본 인프라 유지가 필수적이다.

113.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이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및 농업 외 활동의 범위를 확대 및 다양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전 우선순위로 간주해야 한다. 식량 가격 정책, 농업 기술, 고용 연계를 통한 농촌의 비농업 활동, 농촌 인프라, 친환경적인 보전 프로그램은 농촌 부문에 대한 지원의 필수 요소이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농업 연구는 계속 지원해야 한다.
114. 고용 잠재성은 또한 국제 경제 상황 및 환경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무역 장벽은 생산국의 생산적인 일자리와 생계를 빼앗고 경제 성장의 잠재성을 지체시키는 역파급 효과를 초래한다.
115. 오늘날 고용 문제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과도기 국가들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일시적으로 더 높은 실업률을 발생시킨 과정인 시장 경제 원칙을 향해 필요한 움직임이 있었다. 가장 부유한 선진국들에서 구조적 실업이 증가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의 성장으로 많은 산업이 퇴락하고 수천 개의 방위 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 상황에서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재교육해야 한다. 두 경제 유형 모두에서 직업 이동은 고용 창출의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직업 이동은 사회, 심리적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 기업, 노동 조합의 경우 노동자의 적응 및 이동을 촉진하고 과도기에 교육 및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책임이 증가한다.
116. 초등 및 중등 수준의 우수한 일반 교육은 광범위한 지식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보다 좁게 정의된 기술을 습득하고 개인과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에 더 잘 맞도록 이러한 기술을 개선, 조정 또는 변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더 큰 형평성에 기여한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교육은 발전의 모든 차원(정치, 경제, 환경, 사회적)에서 발전을 위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
117. 발전에 있어 사회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실천해야 한다. 국내외의 사회 발전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각국은 자국 사회에서 사회 발전을 다룰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과제에 대한 보다 국제적인 해결책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과도한 이념적 긴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현 시기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회를 잡아서 활용해야 한다.

E. 좋은 거버넌스: 민주주의

118. 발전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은 직관적이긴 하지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경험적으로 민주주의와 발전은 장기적으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과정 사이의 인과 관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민주화 추세가 이어졌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민주화가 경제 혁명을 이끌었다.
119. 발전의 맥락에서 민주주의를 볼 때 사건보다는 과정과 추세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과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발전이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과정인 것처럼, 민주주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민주주의, 발전, 인권 존중이 서로 강화하는 상호 관계임을 강조했다.
120. 민주주의와 발전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폭력적인 내부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경합하는 민족, 종교, 문화적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유일한 장기적 토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발전은 연결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발전 활동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버넌스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발전은 연결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기본권이며, 인권의 발전은 그 자체 중요한 발전의 척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발전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발전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발전은 연결되어 있다.
121. 경제적 절망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킬 민주적 수단이 부족하면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에서조차 폭력적, 파괴적 충동이 촉발되거나 심화됐다. 내전은 점점 더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되고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민족적 적대감, 종교적 무관용, 문화적 분리주의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사회의 통합과 국가의 통일성을 위협한다. 소외되고 안전하지 못한 소수 민족들이, 심지어 다수 민족들도 사회, 정치적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점 더 무력 분쟁으로 빠져들었다.
122.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많은 정치, 사회, 경제, 민족적 긴장을 중재하고 규제하는 유일한 장기적 수단이다. 경쟁을 위한 토론장이자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주의가 부재하는 경우, 발전은 취약해져서 영원히 위협에 처할 것이다.
123. 불안과 분쟁은 수년에 걸쳐 공들인 발전을 수개월 안에 파괴할 수 있다. 해묵은 원한을 갚기 위해,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서두르는 경우, 어떤 이익을 얻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124. 선거는 민주화의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회원국들은 탈 식민지화를 촉진함으로써 자결권을 구현하고,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를 설계하고, 분쟁에 대한 민주적 대안을

구축하는 데 있어 유엔의 지원을 요구해서 받았다. 유엔은 또한 헌법을 작성하고, 행정 및 재정 개혁을 실시하고, 국내 인권법을 강화하고, 사법 구조를 향상시키고, 인권 담당자를 훈련시키고, 무력 저항 운동을 경쟁력 있는 민주 정당으로 변모하도록 돕는 활동을 지원했다.

125. 거버넌스의 개선 및 향상은 발전 의제나 발전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거버넌스는 개별 국가의 통제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발전 변수일 수 있다.
126. 발전의 맥락에서 거버넌스의 개선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거버넌스의 개선은 포괄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설계와 추구를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개선은 현대 국가의 핵심 기관들의 역량, 신뢰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개선은 실행 시스템 관리를 포함한 정부 정책 및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개선은 행동에 대한 책임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127. 이데올로기, 지리적 위치 또는 발전 단계에 관계없이 민주주의가 부족한 사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산층, 침묵하는 다수, 종종 제도화된 부패 시스템의 관리를 통해 이익을 보는 과두제 집권층으로 서로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민중은 부정부패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거버넌스 개선은 관료적 절차가 공무원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8. 민주주의가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국가 발전 목표가 광범위한 사회적 열망 및 우선 순위를 반영할 가능성을 높인다. 민주주의는 정부 계승을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과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는 행정 조직, 법률 시스템, 민주 절차 자체를 포함한 핵심 국가 기관의 역량, 신뢰성, 독립성을 보호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립함으로써 정책과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민주주의는 정부가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특정 정부가 대중의 관심사에 더 잘 반응하도록 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29. 국민의 통치권은 정당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국민의 통치권이 기술이나 지혜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가 즉각 좋은 거버넌스를 산출할 수도 없고, 민주 정부가 즉각 성장률, 사회적 조건 또는 평등을 크게 개선할 수도 없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정부를 국민에게 더 가깝게 만든다. 분권화와 지역 사회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발전 결정과 관련된 지역 요인을 더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130. 민주주의는 안주할 여지가 없다. 민주적 전통이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에서도 반민주적 관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성적으로 낮은 투표율, 특수 이해관계를 통한 후보자에게 정치 자금 조달, 특정 정부 기관의 투명성 부족이 이에 해당한다.

- 마찬가지로 영구적인 하층 계급의 존재는 가장 부유한 사회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외국인 이민자의 존재로 인해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일부 사회에서 외국인 혐오, 초국가주의, 근본적 반민주주의 운동이 부활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안전하다고 여겨져 온 사회에서도 정치 발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131. 다른 곳에서는 수십 년 간 일당 통치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다당제 선거와 지속적인 민주주의 사이에서 혼란이 초래됐다. 다원주의와 의회는 민주 정부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당 국가의 몰락이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민족 사회가 분열되고 시장 경제로의 전환 초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려는 반민주적 경향이 부활했다.
 132. 경제적 성과에 실망한 대중에게 호소하는 반민주주의 세력의 부상은 풍요로운 사회나 과도기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회는 이제 민주주의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경제 개혁에도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대감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도 민주화에 도전이 되고 있다. 많은 경우 내전 또는 국제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정치 발전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종종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투쟁이 정치적 진보를 가로 막기도 한다.
 133.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와 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간 관계 및 국제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국가 간의 상호 지원과 존중을 구축하는 유일한 기반을 제공한다. 국제 관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없다면 평화는 지속되지 않고 만족스러운 발전 속도를 보장할 수 없다.
 134.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는 유엔 헌장에 구상된 국제 관계 시스템에 있어 필수 원칙이다.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는 크고 작은 모든 국가에 협의 및 참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원칙이다.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는 유엔 자체 내에서 민주적 원칙의 적용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는 유엔의 모든 기관이 완전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는 유엔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상호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135. 국제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유엔 밖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에서 민주적 원칙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양자간 위협이 아닌 양자간 논의를 의미한다. 국제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다른 국가들의 독립성과 주권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국제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상호 관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조율을 의미한다. 국제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의미한다.
 136. 대화, 토론, 동의를 까다로운 활동이다. 하지만 대화, 토론, 동의는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민주

주의의 본질이다. 무엇보다 대화, 토론, 동의는 국가 사회가 공동 의지를 표현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요 수단이다.

137. 정보, 지식, 의사소통, 지적 교류가 경제, 사회적 성공에 중요한 새로운 시대에 민주주의는 이상이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일한 경로를 제공한다. 국제 체제 내 민주화는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다 민주적인 세계는 발전 의제에 대한 협력 작업을 촉진할 수 있다.
138. 여기에서 설명된 5가지 발전 차원인 평화, 경제, 환경, 사회, 민주주의는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 5가지 차원은 유엔이 정부, 기구, 사람들과 함께 수행한 반세기의 실제 작업에서 나온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발전을 위한 더 큰 일관성, 합의, 협력의 달성에 대해 다루어질 것이다.

3. 유엔의 발전 참여

A. 행위자 인정

139. 개별 국가가 더 이상 발전의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지만, 각 국가는 자국 발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계속 지고 있다. 국가의 책임으로 표현되든 국민의 권리로 표현되든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정부 리더십, 일관된 국가 정책, 강력한 대중의 약속이 필요하다.
140. 하지만 도움을 받지 않고 발전의 모든 측면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는 거의 없다.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며 다른 행위자들이 국가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양자간 지원은 연간 약 62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지원은 종종 “조건부 원조”의 형태로 제공된다.
141. 각 국가는 발전에 대한 고유한 접근 방식이 있다. 단일 정부 내에서도 발전 관련 문제는 종종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제 개발기구에서 정부는 농업, 환경, 재정, 경제, 외교 부처를 통해 다양하게 대표될 수 있다.
142. 아이디어, 기금, 프로젝트, 참여 그룹의 범위를 보면 발전이 국제적인 노력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전에 참여하는 행위자, 즉 공공 및 민간 행위자, 국내 및 국제 행위자의 수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정말 다양한 행위자와 대리인이 현재 일부 사회에서 발전 활동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 전반적인 발전 노력은 더욱 일관되어야 한다. 다양한 발전 사이의 자원 배분은 여전히 불균형하고, 특히 사회 발전 분야에서 많은 활동이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련 단체가 각각 특정한 목표, 의제, 유권자, 운영 방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 및 우선순위 지정이 중요하다. 평화, 경제, 환경,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국내 자원의 동원과 외부 지원(기술 및 재정 모두)을 촉진하는 국제 협력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43. 유엔의 기관들은 현장에 따라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수준의 조율을 요구하는 일련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총회는 현장 4, 9, 10장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국제 경제와 사회 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갖는다. 첫 반세기 동안 총회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 문제에 대한 토론과 행동을 위한 보편적 토론장으로 부상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현장 10장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통해 발전 관련 문제를 연구, 착수, 조율하는 다양한 책임을 가진다. 7장의 조항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가 적용되는 국가, 인접 국가, 기타 국가의 발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무국은 발전 계획, 정책, 통계, 에너지, 천연 자원, 공공 행정과 같은 분야의 발전 요구에 대한 기술 자문 및 지원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지원의 원천이다(본 보고서의 부속서 I 은 유엔과 그 기금 및 프로그램의 예상 지출을 보여준다). 책임 소재가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율과 일관성이 확실히 중요하다. 지역위원회를 통해 사무국은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부문 간 프로그램의 조율과 기술 협력을 촉진한다.
144. 유엔의 프로그램과 기금은 운영 활동을 위해 연간 36억 달러를 배정한다(부속서 II 참조). 프로그램과 기금이 운영되면서 새로운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주제별 기금 및 특수 목적 기금을 설립하는 추세로 인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든 차원을 일관되게 다룰 수 있는 수혜국 정부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생긴다. 또 다른 추세는 발전에서 구호 활동으로 강조점이 전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사상 최대의 톤수를 전달하는 동안 약 3/5이 장기적인 개발보다는 단기적인 긴급 구호를 위해 전달되고 있다. 폭력, 사회적 곤경 또는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된 약 2천만 명의 난민과 2,500만 명의 내부 실향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 1993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런 이유로 약 11억 1,500만 달러를 지출했다.
145. 유엔 시스템의 전문 기관에는 자체 규정, 예산, 관리 기구가 있다. 전문 기관들은 양허성 투자에 63억 달러와 비양허성 대출에 78억 달러를 순 지출로 제공한다. 전문 기관들은 유엔 프로그램 및 기금에서 운영 기금의 약 40%를 얻는다. 회원국들도 전문 기관들에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수년 동안 브레튼우즈기관(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은 주로 거시 경제 안정성 및 경제 성장 등의 당면 문제에 중점을 두며 발전에 대한 장기적, 사회적 측면은 유엔의 기관에 맡기고 있다고 여겨졌다. 국제적 발전의 과정과 성격이 변화되면서 이러한 이분법은 재평가되고 있다. 첫째, “하드한” 문제와 “소프트한” 문제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따라서 브레튼우즈기관들은 현재 조정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 발전 및 사회 안전망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IMF는 고품질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기적 맥락에서 조언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제 대출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사회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한다. 둘째, 국제 대출 및 투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계은행의 대출 결정이 발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민간 자본 시장의 신용도가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됐다. 셋째, 융자 조건은 정부의 정책 결정 자유를 감소시켜 국내 불안정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종합하면 이러한 추세는 브레튼우즈기관들의 정책 조언과 국가별 운영 사이에, 그리고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행위자들의 접근 방식과 관행 사이에 상호 작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46. 지역 협정과 기구는 세계적 현상이며 매년 약 55억 달러의 발전 원조를 제공한다. 지역주의는 유엔이 표명한 국제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대안도 아니다. 지역 협력은 모든 곳에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무역 협회는 국내 기업에 확장된 시장을 제공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간 협정을 장려한다. 지역 원조는 정치적 경계를 넘어 발전을 다루며 실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수자원, 전기화, 교통, 통신, 보건 시스템은 모두 지역 차원의 접근 방식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역적 조율은 초국가적 타협을 할당하고 하위 수준의 관료적 경쟁을 초월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화는 또한 보호주의와 관료적 계층화의 위험을 수반한다. 지역화가 포괄적인 발전이 요구하는 더 큰 조율을 촉진하려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147. 비정부기구는 연간 70억 달러가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오랜 기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비정부기구들은 종종 초기 단계에서 분쟁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를 즉시 구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전쟁으로 황폐화된 사회의 재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유연한 구조, 민간 기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동기 부여가 높은 직원들을 가진 비정부기구는 발전을 위한 막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 간 비정부기구의 성장과 영향력은 경이로웠다. 비정부기구는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으며 이번 10년 동안 대규모 국제회의의 핵심 구성 요소임을 입증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와 유엔의 활동을 점차 생산적인 협의와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
148. 국제적인 민간 투자 흐름은 연간 1조 달러에 달하여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교육 가능성, 무역 촉진을 위한 엄청난 잠재성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역동성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발전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출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과거 공공 기관의 특수 분야로 간주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통신, 운송, 전력, 폐기물 재활용, 물 공급과 같은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경우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조건부 보조금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에게 서비스의 실제 비용이 청구될 수 있고 공급은 더 광범위한 요구를 다루기 위해 전용될 수 있다.

149. 학술 및 과학 커뮤니티는 수세기 전에 생산적인 장학 프로그램 및 연구를 위한 국제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오늘날 수천 개의 이러한 센터가 사고, 실험, 창의성, 거의 즉각적인 지적 교류의 네트워크로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이러한 센터의 작업은 학문적, 정치적 경계를 가로지르며, 오래된 범주를 사회적 효용을 가지는 새로운 패턴으로 재배치하고 통합한다. 과학 커뮤니티는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특정 기본 관심사, 가치, 표준을 공유한다. 과학 커뮤니티는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이다. 과학 기술 센터는 축적된 과학적, 인본주의적 성취를 통해 확보된 장기적인 관점을 현재 문제에 반영하면서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과학은 새롭고 안전하며 간단하고 효과적인 가족계획 방법의 발전,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의 발전, 농업 기술 및 질병 통제의 개선,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발전을 위한 선택을 확장할 수 있다. 잘 인식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사회 과학 연구, 즉 인문학과 예술이다. 인문학과 예술은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듯이 인간의 존재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 공동체에서 삶의 본질적인 특성과 요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150. 종교 공동체, 주민협의회, 자조 단체와 같은 풀뿌리 조직은 경제, 사회, 인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다. 풀뿌리 조직은 간과되기도 하는 소규모 공동체의 요구를 다루기 때문에 발전에서의 학습 과정은 요구의 방향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요구의 방향에서 나오기도 한다. 풀뿌리 조직 및 지역 사회 단체는 낮은 수준의 재정 지원으로 힘든 상태이며, 종종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기금은 주로 지역에서 모금되어야 하지만 유엔은 풀뿌리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미시적 수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51. 오늘날 발전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 행위자의 활동이 반영하는 국제 추세, 문제에 대한 상호 관계 및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약속의 강화는 모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B. 정보, 인식, 합의

152. 국제적 발전 과제를 해결하려면 발전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립하고 발전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해야 한다. 인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면 “발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발전 문화를 정의하는 것은 공유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보편적 접근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전 문화는 모든 행동을 발전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말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보편적 발전 문화를 바탕으로 유엔은 행동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점점 더 효과적인 토론장이 되고 있다.
153. 보편적인 회원과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은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킬 책임과 능력이 있다. 유엔은 빠르거나 쉬운 해결책에 민감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경고하고, 알리며, 국제적인 관심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엔은 환경 활동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영향을 다루며,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의 모든 측면에 국제적인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154. 건전한 정보 기반은 경제 정책의 모든 측면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계획 및 의사 결정은 그것이 정확한 최신 정보에 의존할 경우에만 효과를 낼 수 있다. 경제, 사회, 정치 활동에 대한 대중의 참여는 잘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155. 적절한 정보 기반이 없는 국가는 양자간 및 다자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국제 경제, 인구 통계, 사회 및 환경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접근권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고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156. 데이터와 통계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유엔 시스템은 회원국들에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활용도가 낮은 정보 자산이다. 유엔 시스템은 정보 및 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술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최전선에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가치가 있지만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57. 기구는 데이터의 체계화 및 구조화에 대한 공통적이고 비교 가능한 접근 방식을 형성하고, 기술 통신을 위한 통일된 표준을 촉진하며, 데이터 수집 방법을 개선하고, 국제 데이터 및 정보의 상호 유익한 교환을 촉진하며, 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돕고, 정보 이용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한다.
158. 유엔 시스템은 인구 계획, 의료 서비스, 거버넌스 및 공공 행정, 일자리 창출, 임금 및 소득 문제, 사회 복지 요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이용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이끌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모두 국민과 정부가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유엔은 1인당 국민총생산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인간 발전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발전을 정량화하려고 한다. TJNDP 인간개발보고서는 발전을 측정하는 매개 변수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
159. 국가의 경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경제, 사회, 환경 변화를 추적하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정보에 기초한 의사 결정과 성공적인 국가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유엔은 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연합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가 경제 통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를 선도했다.
160. 환경 통계 및 지표를 수집 및 전파하는 새로운 방법이 다양한 유엔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테스트 되고 있다. 국가 간 데이터 가용성, 품질, 일관성, 접근성의 격차가 증가

함에 따라 이러한 작업은 특히 중요하다. 정보 부족은 환경 및 발전과 관련하여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는 많은 경제국의 능력을 계속해서 손상시킨다.

161. 정보 수집 및 분석은 정보에 기초한 논의뿐만 아니라 수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신뢰할 수 있고 표준화된 정보는 모두가 발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제공한다. 만약 정보에 대한 신뢰가 조성되지 않고 정보 이용할 수 없다면, 그리고 정보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워지면서 성공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162. 최근 몇 년 동안 국제회의는 회원국들과 다른 국가들에게 발전 과정에서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선택에 대해 함께 생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합의에 기반을 둔 발전 문화를 장려했다. 이러한 국제회의는 최고 수준의 전략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회원국들이 자국의 정책을 국제사회 전체가 승인한 가치와 원칙에 부합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국제회의는 국제 활동에 정책 방향과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하고, 국가, 조직, 사람들에게 영감과 격려를 제공한다.
163.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세계 지도자들은 미래를 위한 공동 목표(의제 21¹,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그램에 포함된 환경 및 경제 발전 조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제적 합의와 정치적 약속을 표현하는 최초의 국제 협약)에 전례 없는 약속을 했다.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환경 문제는 발전 문화의 주류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1994년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바베이도스에서 개최된 군소도서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군소도서국과 국제사회의 책임을 정의했다.
164. 세계인권회의는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인권회의는 비엔나선언과 실행계획²에서 “개발권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발권은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기본권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재확인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선포부터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창설 결정에 이르기까지 총회는 합의된 국제 인권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5. 1994년 9월 카이로에서 개최되는 국제인구개발회의는 인구 통계적 요인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진정한 사람 중심의 발전을 조성하는 과제를 맡을 것이다.
166. 유엔 창설 50주년인 1995년에 개최되는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중화행사가 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높은 수준의 실업을 용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안정된 사회는 전체 집단이 발전의 성과에서 배제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1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보고서, 리우데자네이루, 1992년 6월 3-14일(A/CONF.151/26/Rev.1 (Vol. I and Vol. I/Corr.1, Vol. II and Vol. III and Vol. III/Corr.1)) (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93.I.8 및 정정) 권 I: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 결의안 1, 부속서 II.

2 A/CONF.157/24 (Part I), III 장.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없이는 안전한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약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단호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는 지난 성과를 일관된 전체로 통합시키고 협력을 위한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국내 및 국제 제도를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을 경제 분야의 제도와 조율하도록 촉진하고, 적절한 재정 지원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 의제를 경제 성장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167. 이 과정은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4차 세계여성회의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유엔은 주로 1946년에 설립된 여성지위위원회를 통해 여성의 평등권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발전하는 데 기여했고 정책 발전, 정치적 약속, 제도 발전의 최전선에 있었다. 또 다른 이정표는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채택이었다. 현재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조항의 이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132개의 당사국이 가입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과 세계인권회의의 비엔나선언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시했다. 다음 세기에 대한 비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젠더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168. 1996년에 인간 정착에 관한 해비타트 2차 회의인 “도시 정상회담”은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건강하고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을 만들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69. 국제적 발전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회원국을 너머보다 넓은 국제사회를 포괄해야 한다. 발전 문화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기여는 유엔환경개발회의와 세계인권회의에서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비정부기구와 관련 개인들은 발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요구했다.
170. 국가 내에서 정당, 노동조합, 국회의원,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시민 사회의 요소들은 한편으로는 발전 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을,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발전 원조를 창출하고 획득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는 비공식적인 집단화와 움직임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발전 정책의 방향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데 기여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 형성이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한다.
171. 모든 수준의 행위자는 주도권을 가지고 특정 현안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사에 대한 국제 활동의 결과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민과 정부가 진보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가져야만 비로소 지속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C. 규범, 표준, 조약

172. 적극적인 국제 행동은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국제법은 아이디어와 의도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수단과 틀을 제공한다. 국제 행위자의 권리, 의무, 책무, 원칙을 성문화할 때 국제법은 협력이 구축되는 실제적인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협력의 조건과 한계도 정의한다.
173. 구속력이 없는 규범의 형태이든,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형태이든, 또는 구속력 있는 의무의 형태이든 간에 다자간 협정을 구축하는 것이 국제법의 핵심이다. 정치적 인지도와 문제에 대한 대중의 주목도를 높임으로써 다자간 협정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의 초점이 될 수 있다.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통의 틀을 조성함으로써 다자간 협정은 조율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촉진할 수 있다. 공통 매개 변수와 기본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다자간 협정은 국제적 상호 작용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행동을 위한 공통의 법적, 정치적 틀을 확립함으로써 다자간 협정은 국제적 활동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합의를 이루고 해결책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으로서 다자간 협정은 발전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국제 행동을 달성하기 위한 열쇠이다.
174. 총회는 발전 협력을 위한 국제적 틀을 확립하기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을 위한 의제에 관한 총회 결의안 47/181은 국제 경제 협력에 관한 선언,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발전 활성화, 제4차 유엔개발10년을 위한 국제 발전 전략, 카르타헤나 협약, 1990년대 유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 1990년대 최빈국을 위한 행동 계획,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다양한 합의, 협정, 협약, 특히 의제 21을 언급한다.
175.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의 초점이 되는 것은 많은 다자간 협정의 목적이자 영향이다. 합의 형성 및 성문화 과정은 국가와 유권자가 제안된 합의를 통해 특정 이해관계, 관점, 의제를 발전시키거나 방어하려고 할 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인지도를 높인다. 국제적인 토론과 논의는 자주 현안에 대한 대중의 주목도를 높이고 종종 새로운 대중의 인식, 관심, 참여를 유발한다.
176. 유엔환경개발회의와 관련하여 채택된 조약, 협약, 표준은 국제적 합의 형성 및 성문화 과정의 광범위한 영향을 예증한다. 수년간의 연구 및 준비, 최고 수준의 세계 모임이 유발하는 촉매 효과, 특정 행동 및 약속을 성문화하기 위한 추진력은 우리가 처한 환경의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추구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환경 문제를 전 세계 국가들의 의제로 만들고, 국가들이 조항과 제안을 숙고하도록 함으로써 유용하고 절실히 필요한 조치가 도출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확장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 가치 있는 공공 정책 평가가 이루어졌다.

177. 관심과 의견을 불러일으키는 것 외에도 다자간 협정은 행동의 초점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엔해양법협약³은 이제 해양 및 해양 자원 사용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발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자원에 대한 갈망이 해양 자원을 발전하는 국가의 능력을 증가시키게 됨에 따라 협약은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적 틀과 계속 제기될 수많은 문제와 과제에 대한 합의된 일련의 원칙을 제공한다. 항해 및 비행에서 자원 탐사 및 발전, 보존 및 오염, 어업 및 해운에 이르기까지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적인 심의와 행동을 위한 초점을 제공한다.
178. 다자간 협정 및 이해의 틀과 국제 협력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인도적 활동에는 “긴급 구호 수송회랑” 확립, 인도적 임무를 위한 유엔 평화 유지군의 파견 증가, 무고한 민간인 학살 방지, 국제법 위반 혐의 조사, 국가 화해 촉진과 같은 조치가 포함되었다. 국제 협력의 실질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규범, 협약, 표준을 운용함으로써 국제사회는 행동을 위한 촉매제와 결과 달성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다자간 협정의 큰 잠재성을 드러냈다.
179. 또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국제법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조율을 강화하고 정책의 입안 및 설계에서 일관성을 촉진해야 한다. 직간접적으로 다자간 규범, 표준, 조약은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80. 개별 조치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에 불충분하거나 다른 조치와의 협력이 조치의 효과를 뚜렷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경우, 조율은 분명히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국제 항공 운송을 규제할 때 개별 조치는 효과적이지 않다 마찬가지로 오존층의 추가 파괴를 방지하는 것은 개별 활동과 조치가 조율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다자간 협정은 반드시 조율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181. 국제 정책 입안에서 일관성과 양립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된 목표이자 똑같이 필수적인 목표이다. 다자간 협정이 특정 정책 옵션을 배제하고 다른 정책 옵션을 촉진하며 타협과 합의 형성을 통해 이질적인 정책 전략의 범위를 좁히는 한, 그러한 협정은 국제 정책 입안에서 일관성과 양립 가능성을 촉진한다. 특정 관행은 보상하고 다른 관행은 처벌하며, 특정 조치는 금지하고 다른 조치는 장려하며, 특정 원칙은 고수하고 다른 원칙은 거부하는 것은 규범, 표준, 조약이 작동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정책 일관성과 양립 가능성이 확립되는 메커니즘이다.
182. 예를 들어, 다자간환경협약은 생물 다양성을 촉진함으로써 반드시 일부 국가의 발전 옵션과 정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다른 옵션과 정책을 제한하거나 제거한다. 다자간 협정은 특정 오염

3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공식 기록, 권 XVIII (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84.V.3), 문서 A/CONF.62/122.

배출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특정 유형 또는 수준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설계된 특정 정책을 반드시 발전시키고 그러한 표준과 양립할 수 없는 발전 또는 산업 전략을 배제한다. 두 경우의 결과는 정책 입안에서 더 큰 국제적 일관성과 일치성이다.

183. 사람들이 국경의 한계를 넘어 점점 더 상호작용하는 세상에서, 국제적 성격의 사적 법률 관계를 통제하는 절차와 일련의 규칙이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공통 절차를 확립하고 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에 동의하는 것은 상업을 촉진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협력을 위한 이러한 활동은 상호 작용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법률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규제에 실질적인 일관성을 가져다준다.
184. 특정 국제 협약은 이제 점점 더 광범위한 민간 국제 교류와 관련하여 작동하고 있다. 법적 영역에서 국제 협약은 이제 소장의 송달, 증거 수집, 판결 집행, 국제법상의 분쟁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가정법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 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상업 영역에서 국제 협약은 금융 거래에서 상품 판매에 대한 국제 규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185. 공동 행동의 중요성은 국가 간 상호 작용을 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규칙과 원칙을 확립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서 특히 분명하다. 다자간 협정은 국제 노동 기준의 이행을 감독하고, 항공로 관리를 통제하며, 국제 통신 주파수 사용을 규제하고, 우편물의 국제 교환을 촉진하며, 세계 기상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기타 다양한 중요 분야에서 국제 상호 작용을 촉진한다.
186. 다자간 협정은 또한 세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무역 규칙을 수립하려는 기존 활동을 반영하고 구체화한다. 유엔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 통해 일반특혜관세제도를 확립하여 개발도상국이 수출에 대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거래제한 행위의 통제를 위해 합의된 원칙과 국제상품협정의 채택을 장려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최근 완료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은 다자간 협력이 상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장려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준다. 우루과이 라운드 동안 합의된 결과로 세계 무역이 50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 전체에서 이러한 자극이 고용, 생산, 무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187. 우루과이 라운드는 국제 무역과 상업을 촉진하고 장려함으로써 다자간 협정이 발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다른 중요한 사례에는 내륙국의 통과 무역에 관한 유엔 협약, 해상물품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 있다.
188. 발전 지원이든 다른 분야에서든 국제 활동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다자간 협정을 추구하는 중요 이유이다. 국제 협정의 결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의 노동 관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⁴ 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제적 검토와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에 기여한다. 이러한 경우와 다른 많은 경우에서 다자간 협정은 정보 수집, 준수여부 모니터링, 집행 과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반을 제공한다.

189. 특히 인권 분야에서 국가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권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 다자간 협정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다자간 협정은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합의된 국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다자간 협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인류의 존엄성이 국경과 국가적 차이를 초월하는 문제라는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190. 실제로 국제사회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개념은 국제법의 위대한 지성적 성취 중 하나이다. 국제법의 메커니즘과 절차를 통해 국제 규범, 표준, 규약, 조약은 이제 인권 및 인도 주의적 명분을 지지하는 국제 행동에 대한 책임의 기준과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191. 문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 방식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동의하는 것이 다자간 협정이 이루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다. 국제법은 국제 협력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발전의 거의 모든 측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기여하고 있다. 이질적인 정책과 활동의 조율, 목적과 목표의 고취, 규범과 표준의 확립, 조약과 협약의 협상을 통해 국제법은 협력을 위한 수단과 행동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192. 국제법의 주요 지지자이자 국제 협력의 가장 중요한 토론장으로서 유엔은 다자간 협력의 범위와 효과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국제 규범, 표준, 원칙에 협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에서 유엔은 국제 협정 또는 문서의 협상, 이행, 검토, 거버넌스와 관련된 모든 국가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D. 활동, 약속, 변화

193. 유엔은 정치적 합의 형성을 위한 포럼, 국제 협력의 수단, 정책 분석 및 정보의 출처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유엔은 실질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활동 기구이기도 하다.
194. 개발도상국, 과도기 국가 또는 곤경에 처한 국가에서 유엔은 사람들에게 직접 발전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현지 활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사무국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기금을 통해 기구는 발전 사업을 설계하고, 발전 계획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기술 교육과 역량 구축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정부를 지원한다.

4 A/AC.237/18 (Part II)/Add.1 및 Corr.1, 부속서 I.

195. 회원국은 자국 발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엔 발전 활동은 정부 및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수행된다. 지역 인프라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활동이 비정부 기구 및 기타 비국가 기관들을 통해 수행된다. 다른 노력은 기구가 직접 수행한다.
196. 유엔은 현지 활동을 통해 매우 필요하고 종종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구의 현장 활동은 국제적 결정을 지역의 행동과 전략으로 전환하고, 유용한 비상업적 발전 사업을 지원하며, 민감한 부문의 발전 노력을 발전시키고, 발전 원조의 새로운 영역 및 유형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7. 인류가 직면한 엄청난 과제는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협정은 행동의 출발점일 뿐이다. 유엔 현장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국제 협정의 수립과 이러한 협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국가의 능력을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 회원국들이 현대 사회가 직면하는 광범위한 공통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유엔의 국제적 경험과 관점을 통해 기구는 실질적인 지원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많은 회원국이 문제에 대한 정통함이나 진행에 필요한 즉각적인 행동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결과에 따라 유엔은 요청 시 회원국이 필요한 행동을 파악하고 규칙 및 정책을 수립하며 환경 목표를 모니터링하고 집행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98. 발전 측면에서 요구되는 많은 부문에 있어 오직 유엔만이 결과 달성에 필요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다. 공공 행정, 거버넌스, 민주화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 정책들이 중요한 예이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부와 사회는 원조가 결국 외부 압력이나 통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외부 원조를 주저할 수 있다. 발전의 많은 중요 부문에서 유엔은 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오랜 기간 축적한 감수성, 공정성,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많은 회원국이 유엔의 이러한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기구는 계속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99. 유엔의 현장 활동도 발전 원조의 새로운 유형과 영역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후 시기에는 해외 전문가 및 컨설턴트가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이 점점 더 국가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유엔은 초기 역점을 둔 영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했지만 새로운 지원 영역을 발견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 유엔의 전면적인 개입을 계속 정당화시키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평가해야 한다.
200. 기구 자체와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 전 세계에 걸친 유엔의 현장 활동과 기구의 적극적인 발전 활동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국제 문제에서 유엔의 지위와 도덕적 권위, 그리고 인간의 발전 과제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기관으로서 유엔의 능력은 기구의 현지 주둔 및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 유엔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근본적인 약속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자격과 신뢰성을 가장 확고하고 확실하게 확립한다. 세계 곳곳에서 펼쳐이는 유엔의 깃발은 평화와 진보를 위한 약속의 상징이다. 발전을 위한 기구의 약속과 기구 활동에 대한 주목도는 기구의 전반적인 노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화시키며, 이러한 도덕적 약속은 유엔의 지원을 고대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유엔의 활동을 계속 규정한다. 이 도덕적 권위는 추상적 개념 위에 세워질 수 없으며 다만 사람들에게 대한 진정한 봉사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202. 기구에서 그리고 기구의 모든 활동에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험은 균형, 관점, 이해의 귀중한 원천이 된다. 발전 의제 자체는 인간의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광범위한 저장고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203. 기구의 현장 사무소에서 이론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검증된다. 보다 실제적인 맥락에서 문제가 고려된다. 기구는 현지 주둔을 통해 사람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기구의 지원 대상인 사람들로부터 직접 배운다.
204. 하지만 유엔의 발전 활동이 전 세계의 모든 발전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 또는 모든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누적 결과를 달성하고 부분적인 해결책조차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도록 실제적인 활동을 설계해야 한다. 요컨대, 발전을 위한 운영의 기본 개념은 곤경에서의 구제를 넘어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05. 특정 전략의 정확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단기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유엔에게 발전은 장기적인 약속이다. 현장에서 노력의 영향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보건 서비스에 대한 강조는 천연두 퇴치, 아동의 광범위한 예방 접종, 전 세계 아동 사망률의 극적인 감소에 기여했다. 공동 문화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아부 심벨, 아크로 폴리스, 앙코르 와트와 같은 유적을 보존하려는 노력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황폐화되고 있는 지구의 상태를 알림으로써 인식을 전환시켰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206. 국가 역량 강화는 발전의 핵심 요소였다. 대부분의 경우 유엔의 현지 발전 활동은 발전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켰다.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기구의 주둔은 때때로 발전 활동의 무산을 막고 심각한 격차를 메우고 악화된 인프라를 보충했다.
207.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반세기의 기술 협력과 교육은 지역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이러한 기여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발전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고 발전은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208. 발전 활동을 위한 환경, 틀, 보호막을 조성함으로써 유엔은 발전에 직접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행위자의 발전 활동을 촉진한다. 기구의 주둔은 발전 협력에 보다 수용적이고 다른 행위자들에게 보다 고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긴장과 불안정의 시기에 유엔이 상징하는 국제 주둔군은 발전을 추구할 추진력과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209. 보다 일반적으로 유엔이 확인한 우선순위들은 종종 다른 행위자가 관여하고 참여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기구가 협상한 협정은 종종 다른 행위자도 참여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했다. 기구 자체와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 유엔의 현지 주둔군은 발전 복무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자산이다.

E. 우선순위 설정 및 조율

210. 본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발전 개념은 상호 연관된 여러 차원과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며, 우선 순위 설정과 조율은 필수 요소이다.
211. 발전의 각 차원은 모두의 성공과 인간 중심 발전이라는 핵심 개념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성공적인 발전은 어느 하나의 차원을 별개로 추구함으로써 달성될 수 없고, 발전 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차원을 배제할 수도 없다. 평화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인간의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제 성장이 없다면 어떤 문제에 적용할 자원이 부족할 것이다. 쾌적한 환경이 없다면 생산성은 인간 발전의 기반을 파괴할 것이다. 사회적 정의가 없다면 불평등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집어삼킬 것이다. 자유를 위한 정치적 참여가 없다면 사람들은 개인과 공동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발언권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212. 제한된 자원과 국내의 제약은 선택과 우선순위 설정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발전의 일부 측면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개혁의 단기 효과가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213. 활동과 지원을 조율하는 것은 발전 자원의 영향을 극대화하고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진정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수이다. 조율은 책임의 명확한 배분, 발전과 관련된 많은 행위자 사이의 효과적인 분업, 공통되고 양립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행위자들 각자의 약속을 의미한다. 개별 발전 행위자는 자신의 활동이 고립되거나 경쟁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듯 조율은 각 행위자의 행동과 이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214. 국가, 지역, 국제적 참가자들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의제에는 국제 평화 및 안보, 경제 발전,

환경, 사회 정의, 민주주의, 훌륭한 거버넌스 등이 있다. 모든 의제는 단일한 노력의 일부여야 한다. 과거에 국제사회는 질병 및 기근 퇴치, 환경 보호,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억제 과정에서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활동을 조율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모든 활동 수준에서 발전 활동의 우선순위 설정과 발전 행위자들의 조율이 필요하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과의 투쟁과 같은 전 세계적 문제는 국가, 국제 및 지역 기구, 비정부기구, 기관 간의 조율을 필요로 한다. 다른 경우에는 조율이 사회의 특정 지역이나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부자들은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수혜자들은 자국 시스템 내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215. 발전은 다방면의 개방형 사업으로 이해해야 하고 발전 활동은 특정 국가의 필요, 우선순위, 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 이론이나 우선순위 집합을 한 번에 모든 국가의 발전 활동에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발전에는 우선순위와 강조되는 사안 사이의 끊임없는 균형, 필요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발전은 국제적인 노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그 중요성과 영향이 특정 국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는 문제이다.
216. 정부에게는 어려운 정책을 지원할 시기와 국내외 강력한 압력에 저항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훌륭한 정부는 시장의 힘이 작용하도록 해야 할 시기, 시민 사회가 주도하도록 해야 할 시기,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시기를 아는 지혜와 역사적 책임이 요구된다.
217. 국가 발전 전략은 발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일관되고 통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행위자와 의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열과 불일치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가적 과제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발전 비전을 수립하며, 국제적 과제는 국가 발전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과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218. 각 사회가 발전을 위한 선택을 고려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압력이 아닌 설득이 가장 단호한 활동과 가장 지속적인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정부가 주로 발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 임무의 복잡성을 인식하는 것은 지원하는 국제 발전 행위자의 첫 번째 책임이다.
219. 성공적인 조율은 함께 일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중복, 중첩, 불일치 영역을 다루기 위해 메커니즘과 구조를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메커니즘과 구조가 협력을 강요하거나 보장할 수 없고, 정치적 의지를 대체할 수도 없다. 기부자가 경쟁보다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이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일할 용의가 없는 경우, 기구가 달성하는 발전을 통해 활동의 성공을 측정할 용의가 없는 경우, 중복, 중첩, 불일치로 인해 계속해서 발전 활동이 방해받을 것이다.

220. 국제사회가 발전 우선순위 또는 발전 모델을 특정 민족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활동에서 얻어야 할 교훈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국제적인 발전 자원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발전 행위자들 사이에서 더 큰 일관성과 조율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야 한다.
221. 국가 전략 노트는 조율 강화를 위한 새로운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각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발전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발전 기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을 발전 원조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발전 협력의 모든 대외적 측면을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간 및 비정부 간 국제 발전 활동의 우선순위 설정과 조율은 여전히 시급한 요구 사항이다.
222. 상주조정관 시스템은 발전 원조를 전체 국가 프로그램 틀에 더 잘 통합하기 위한 귀중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유엔 시스템 전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상주조정관은 기구의 광범위한 운영 역량이 국가 목표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역량을 구축하는 데 완전히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주조정관은 경제 및 사회 연구, 정책 분석, 운영 활동, 인도적 지원, 인권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차원에서 서로를 지원 및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상주조정관 시스템은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223. 보편적인 회원과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은 국제적인 발전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을 촉진하고 수많은 발전 행위자 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식 제고, 정보 제공, 합의 형성을 위한 토론장 제공, 규범, 표준, 조약 수립을 통한 협력 강화, 특히 현장 행위자로서 유엔은 발전 활동에 기여한다.
224. 우선순위 설정과 조율은 모든 기구와 기관에 필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이러한 요구 사항은 유엔 처럼 구성이 다양하고 권한이 광범위한 기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
225. 유엔 현장은 유엔 시스템에서 조율의 특별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회의 권한 하에 운영되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유엔 및 유엔의 수많은 전문 기관의 정책과 활동을 조율하는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를 배정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발전을 위한 국제 자원 할당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준비되고 잠재적으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조율은 정부와 정부 간 기관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발전에 참여하는 중요한 많은 비정부 행위자의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
226. 많은 유엔 기구가 이미 기업, 노동, 소비자, 기타 단체 대표들의 참여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들을 발전 활동의 모든 수준에서 심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227. 수년에 걸쳐 총회에서 명확한 정책 지침이 없었고 경제사회이사회와 효과적 인 정책 조율과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서 전반적으로 결속력과 집중력이 떨어졌다. 중앙 기관, 프로그램, 지역위원회의 모든 수준에서 부속 기구들이 꾸준히 확산되면서 점차 정책 일관성이

떨어졌다. 재활성화 된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시스템 전체에서 정책 일관성과 조율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228. 유엔 시스템은 개발도상국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비할 데 없는 기구로 여겨지고 있다. 유엔 시스템의 힘을 국가 수준에서 결집시키려면 통일된 목적 하에 조율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유엔개발계획의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기구의 운영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가 우선순위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고유한 국가 사무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29. 브레튼우즈 기관들은 전문 기관으로서 유엔 시스템의 필수 부분이다. 브레튼우즈 기관들은 발전 금융 및 정책 조언의 중요한 원천이다. 브레튼우즈기관들은 유엔개발계획의 재정 지원 역할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 지원에서, 그리고 다른 전문 기관에 역량이 있는 분야에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과 시스템의 다른 기구들이 비교 우위를 가진 각자의 영역을 기반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브레튼우즈 기관들의 자본 지원을 유엔개발계획과 전문기관들이 제공하는 기술 지원 자금과 함께 조율하고, 보완하고, 상호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운영 활동에서 보장된다.
230. 본 보고서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된 상호 관계를 자체 정책 및 활동에 반영하는 유엔의 능력은 대부분 유엔의 조율 메커니즘 및 구조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 하지만 유엔은 회원국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본 의제의 목적은 각 회원국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4. 결론: 발전의 약속

231. 삶의 모든 중요한 차원을 발전의 측면으로 간주하는 발전 문화는 엄청난 활동의 결과로 등장하고 있다. 공동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조율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32. 지난 몇 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된 세계적 환경에서 평화, 자유, 정의, 진보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거의 보편화되었다. 발전 문화는 이러한 목표들을 행동을 위한 하나의 포괄적인 비전과 틀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문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현장의 근본적인 약속이 있다. 유엔의 제도는 대체할 수 없다.
233. 발전의 방향은 세계의 모든 개인을 향해야 한다. 이를 넘어 인류 공동체가 미래 세대를 포함한다는 인식이 생겨나야 한다. 이번 세기의 역사는 유토피아적 미래를 위해 살아있는 자들이

고통을 감내하도록 요구받을 때, 또는 현 세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복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극단이 금세기 초반 몇 십 년의 특징이라면, 다른 극단은 최근에 우리의 비전을 가로 막았다.

234. 글로벌 발전 시대의 징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징후는 역설적이다. 이제 정보, 통신, 첨단 기술의 시대가 농업 및 산업 혁명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과거 주어진 것으로 간주했던 시간, 장소, 자원의 한계에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조건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험하는 오래된 힘(자연 재해 및 인재, 인구 변동, 질병, 정치적 대립, 문화, 종교적 적대감, 실업 및 생태적 붕괴)을 동반한다. 이 재앙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그 형태와 조합은 치명적이었다.
235. 기존에 자금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서 가지지 못한 자로 이전하는 것으로만 이해됐던 발전은 이제 인간의 모든 노력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재정, 사회, 인구통계, 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값을 수 없는 부채를 발생시킴으로써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앞선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힘들게 얻은 아이디어, 이상,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현세대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진보는 인간의 조건에 내재된 것이 아니다. 퇴보는 상상도 할 수 없다.
236. 인류 공동체가 계속 발전하려면 우리가 물려 받은 것을 존중하고, 현재의 성과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남겨둔 작업이 복구가 필요한 구조가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수사학의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유엔 발전 작업 목록이 본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부속서 I 및 II 참조).
237. 이 비전의 성취 여부는 현 세대와 그 지도자들이 유엔을 발전시키느냐 실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측정될 것이다. 만장일치로 창설되어 창설자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목적에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장 포괄적인 최고의 목적을 구현하고, 실제적인 결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기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다.
238. 현재 세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기의 복잡한 성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집단 안보, 기본권, 국제법, 모두를 위한 사회적 진보라는 개념은 민족 중심주의, 고립주의, 문화적 적대감, 사회경제적 약화로 인해 부식되고 있다. 국제 협력의 초석이 되는 국가의 개념조차도 이를 배제적인 용어로 정의하는 이들과 국가의 현대적 타당성과 유효성을 의문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239. 이러한 우려는 전례 없는 세계적 변화의 맥락에서 감지된다. 생태, 기술, 인구 통계, 사회 측면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국제적 관리 능력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도전에 직면해서 일부는 심지어 과거의 무력 정치, 세력권, 기타 신뢰할 수 없으며 위험한 기술로 복귀하기 위해 현대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240.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유엔은 회원국들의 국제 협력을 위한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유연성, 정당성, 보편적인 행동 범위를 가지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활용한다면, 유엔은 성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면서 세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이다.
241. 현재 유엔 메커니즘은 제한적 주기에 빠져 있다. 국가 통제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자주의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평가가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리고 완벽한 명료함과 제한된 기간의 보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242. 새롭고 강력한 집단 비전이 없다면 국제사회는 이 주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재활성화 된 발전 비전을 모색하는 데 첫 번째 기여를 하기 위한 것이다.
243. 본 보고서에서 본인은 발전 활동의 성격과 범위를 모두 설명했다. 본인은 새로운 비전과 발전 문화가 출현하기를 희망하면서 발전 과정의 차원들과 참여 행위자들을 모두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발전에 대한 합의된 목표와 약속에 확고한 기반을 두어야 하며, 지속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입증된 결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유엔은 그러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엔은 기록의 범위가 비할 데 없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발전의 많은 행위자와 차원을 통합할 수 있는 고유한 잠재성을 가질 수 있다.
244. 이 약속이 이행되려면 모든 기관과 단체가 현장에서 할당한 역할을 완전히 수행해야 한다. 역할이 명확하게 기술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의도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245. 현장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영감을 받아 총회에서 채택한 약속과 목표를 유념하면서 국제사회는 이제 새로운 발전 비전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새로운 발전 문화의 발전을 위한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다가오는 유엔의 첫 반세기 기념 행사는 모든 인류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부속서 I: 1992-1993년 기구 및 부문 별 유엔의 예상 지출, 모든 자금 출처^{주1)}

(백만 달러)

부문	유엔 ^{주2)}	유엔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 ^{주3)}	유엔인구기금	유엔난민구제사업국	세계식량계획
일반적인 발전 문제	693.0	48	658.1			
일반 통계	161.5	11	11.1			
천연 자원	119.6		174.5			242
에너지	62.3		48.0			
농업, 임업, 어업	34.7		294.5			342
산업	49.9		147.7			
운송	47.1		135.1			39
정보통신	152.1	7	21.2			
무역 및 발전	459.9		58.2			
인구	70.9	8	1.7	323.4		
인간 정주	106.3	4	101.1			28
건강		1 106	141.5			209
교육		251	73.0			296
고용			42.3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관리	2 518.6	248	84.4		601.3	1 850
사회 발전	358.8	124	88.5	10.0		
문화			6.7			
과학 및 기술	35.3		81.4			
환경	370.8	3	55.5			
합계	5 240.8	1 810	2 231.5	333.4	601.3	3 006

출처: 조정관리위원회의 보고서(E/1993/84).

주1) 보고 기구들이 재정 지원하고 다른 보고 기구들이 집행한 활동은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집행 기구의 수치에 포함된다.

주2) 수치는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한 유엔의 정규 예산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이외의 유엔의 자원을 포함한다(아래 참조). 따라서 수치에는 특히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환경계획, 유엔훈련연구소, 유엔대학, 지역위원회, 유엔인간정주센터(해비타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유엔마약통제계획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정규 예산이 50%까지 지원되는 국제무역센터의 총 자원도 포함된다. 유엔 정규 예산으로 수행되는 평화 유지 활동의 예상 비용이 표에 포함되어 있다. 유엔 정규 예산 외의 평화 유지 활동의 경우 이러한 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간 추정치만 사용할 수 있다. 표에 포함되지 않은 1992년 이러한 활동의 예상 비용은 17억 달러였다. 이 수치에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위임이 완료된 경우 최신 위임 기간 동안 승인된 금액의 비례 배분법에 기반한 추정치가 포함된다. 또한 전적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 1992년 유엔키프로스평화유지군(UNFICYP)의 예상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3)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인구기금(UNFPA)은 자원 조달 기구로서 발전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지출은 다른 기구를 통해, 유엔개발계획 또는 유엔인구기금에 의해 직접 또는 다른 대리인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부속서 II: 유엔의 운영 활동과 유엔의 기금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1992

(백만 달러)

1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재정 지원 ^{주1)}	1 026.8
2	유엔개발계획의 관리 기금에서 재정 지원	137.6
3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 재정 지원	128.2
4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재정 지원	743.8
5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재정 지원 ^{주2)}	1 575.2
6	유엔 정규 예산에서 재정 지원	16.6
	합계 ^{주3)}	3 628.2

출처: 유엔, 총회 결의안 47/199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의 경과 보고서, 부록, 표 B.1 및 B.5(E/1994/64/Add.2).

주1) 즉, 정부의 비용 부담 기여금에서 지원 받은 지출을 포함한 유엔개발계획의 중앙 자원이다.

주2) 세계식량계획의 예산외지출, 발전 활동 및 비상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 지출을 포함한다. 후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은 국제비상식량보유고에서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세계식량계획 일반 자원에서 지원 받았다.

주3) 전문 기관의 정규 예산에서 지원 받은 지출(2억 2500만 달러)과 예산외 출처에서 지원 받은 전문 기관의 지출(7억 2720만 달러)은 이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속서 III. 경제, 사회, 인권 분야의 주요 유엔 정부 간 기구 및 전문가 기구

1. 총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조약 기구

합계 9^{주1)}

주요 위원회	2위원회(경제 및 금융), 3위원회(사회, 인도, 문화적)
조약 기구	인종 차별 철폐, 인권(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여성 차별 철폐, 고문, 아동의 권리

주1) 또한 현재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 유엔 50주년, 국제인구개발회의, 군소도서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 유엔인간정주회의(해비타트 II)를 위한 준비 기구가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의 정교화를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경계왕래성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어류자원에 관한 유엔 회의도 있다.

2. 경제사회이사회와 부속 기구

합계 73^{주2)}

기능위원회	통계, 인구, 사회 발전, 인권(차별 방지 및 소수 민족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포함), 여성 지위, 마약, 발전을 위한 과학 및 기술, 지속가능한 발전,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상임 기구 및 전문가 기구	초국적 기업, 인간 정주,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원, 비정부기구, 프로그램 및 조율, 천연 자원, 발전 계획, 위험물 운송, 조세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공공 행정 및 재정, 회계 및 보고의 국제 표준, 지명
지역위원회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유럽 경제위원회,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주2) 이 합계에는 지역위원회에 보고하는 45개의 부속 기구가 포함된다.

3. 기타 유엔 프로그램, 기관, 기금

합계 23 / 총계 =105

유엔무역개발회의:	회의: 무역개발이사회 기타 유엔무역개발회의 상임위원회 및 임시 작업 그룹 (11)
유엔국제마약통제계획:	국제마약통제위원회
유엔개발계획:	집행위원회
유엔환경계획:	관리위원회
유엔인구기금:	(유엔개발계획과 동일한 위원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집행위원회
유엔아동기금:	집행위원회
유엔여성개발기금:	자문위원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	자문위원회
세계식량위원회:	
세계식량계획:	식량 지원 정책 및 계획 위원회



03

유엔 밀레니엄 선언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A/RES/55/2
2000년 9월 18일





A/RES/55/2
2000년 9월 18일

총회
유엔 55차
의제 60 (b) 배포 회원국 일반

유엔 밀레니엄 선언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본위원회(A/55/L.2)에 회부하지 않음] 총회는 다음 선언을 채택한다.

유엔 밀레니엄 선언

1. 가치와 원칙

1. 국가 및 정부의 정상인 우리는 2000년 9월 6일~8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 모여 새 천년의 여명기에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며 정의로운 세계의 불가결한 토대로서 유엔 기구와 그 현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2. 우리는 각자 개별 사회에 대한 책임 외에도 국제적 차원에서 인간 존엄성, 평등, 형평성의 원칙을 수호해야 할 집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로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3.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것으로 입증된 유엔 현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실제로 국가와 민족 사이의 상호 연관성 및 상호 의존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목적과 원칙이 가지는 시의성과 영감을 주는 역량이 확대되었다.
4. 우리는 현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전 세계에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기로 결심했다. 이에 우리는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을 지키기 위한 노력, 영토 보전 및 정치 독립성에 대한 존중, 평화적 수단과 정의 원칙 및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 식민지 지배와 외세 강점 하에 있는 민족에 대한 자결권, 국가 내정에 대한 불간섭,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대한 구별 없이 모두의 평등한 권리 존중,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재차 다짐한다.
5.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이 되도록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믿는다. 세계화는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재 그 혜택은 매우 불균등하게 공유되고 비용은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경제 전환기의 국가가 이 핵심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온전히 포용적이며 공평한 세계화는 모든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에 기반해서 공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개발도상국 및 경제 전환기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고 이들 국가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 및 실행되는 국제적 차원의 정책과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우리는 21세기 국제 관계에 필수적인 기본 가치를 고려하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자유:** 남녀는 기아, 폭력, 억압 또는 불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며 자녀를 존엄하게 양육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의지에 기반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는 이러한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한다.
- **평등:** 어떤 개인이나 국가도 발전 혜택을 누릴 기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연대:** 형평성과 사회 정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비용과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과제를 다루어야 한다. 고통 받거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 **관용:** 인간은 신념, 문화, 언어의 다양성에 있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사회 내부와 사회 간의 차이를 두려워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며,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 모든 문명 간 평화와 대화의 문화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 **자연에 대한 존중:**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생물 종과 천연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한 헤아릴 수 없는 자원을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현재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은 미래의 복지와 후손의 이익을 위해 변화되어야 한다.
- **공동 책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관리하는 책임은 세계 각국이 공유해야 하며 다자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대표적인 기구인 유엔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7.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 주요 목표를 확립했다.

2. 평화, 안보, 군축

8.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5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전쟁의 참화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9.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다짐한다.

- 국내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특히 회원국들이 당사자인 경우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할 것.
- 분쟁 예방,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 유지, 분쟁 후 평화 구축, 재건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유엔이 평화와 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할 것.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유엔 평화 활동에 관한 패널의 보고서¹에 주목하고 총회에 패널의 권고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 현장 8장의 조항에 따라 유엔과 지역기구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
- 군비 통제, 군축, 국제인도법, 인권법과 같은 분야에서 당사국의 조약 이행을 촉구하고, 모든 국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²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
-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해 공동 조치를 취하고 관련 국제 협약에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할 것.
- 세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
- 인신 매매, 자금 세탁 등 모든 차원에서 초국가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유엔 경제 제재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러한 제재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제재가 제3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할 것.
- 대량 살상 무기, 특히 핵무기의 폐기를 위해 노력하고, 핵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열어둘 것.
- 소형 및 경량 무기의 불법 거래에 관한 유엔 회의의 모든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특히 무기 이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지역 군축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소형 및 경량 무기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할 것.
- 모든 국가가 대인 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³ 및 재래식 무기 협약의 개정된 지뢰 의정서⁴에 가입하도록 촉구할 것.

1 A/55/305-S/2000/809: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기록, 55년차, 2000년 7월, 8월, 9월의 부록, 문서 S/2000/809 참조.

2 A/CONF.183/9.

3 CD/1478 참조.

4 지뢰, 부비 트랩, 기타 폭발물 사용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해 개정된 의정서(CCW/CONF.I/16 (I부), 부속서 B).

10. 우리는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개별적, 집단적으로 올림픽 휴전(Olympic Truce)을 준수하고, 스포츠와 올림픽의 이상을 통해 평화와 인간 이해를 증진하려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3. 개발과 빈곤 퇴치

11. 우리는 현재 10억이 넘는 인구가 겪고 있는 극심한 빈곤에서 비롯된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발전 권리를 현실로 만들고 전체 인류를 빈곤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12. 따라서 우리는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개발과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13.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특히 각 국가의 좋은 거버넌스와 더불어 국제적 수준의 좋은 거버넌스와 금융, 통화, 무역 시스템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하고, 예측 가능하며, 차별 없는 다자간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14.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지속적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요소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2001년에 개최될 발전 자금 조달에 관한 국제 및 정부 간 고위급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5. 우리는 또한 최빈국의 특별한 요구를 다룰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01년 5월에 개최될 제3차 유엔 최빈국 회의를 환영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에 다음을 요청한다.
 - 가급적 회의 때까지 최빈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정책을 채택할 것.
 -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부채가 많은 빈곤국을 위한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빈곤 감소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는 대가로 해당 국가의 모든 공식적인 양자 부채를 탕감하는 것에 동의할 것.
 - 특히 빈곤 퇴치에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보다 관대한 발전 원조를 제공할 것.
16. 우리는 또한 장기적으로 부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국가 및 국제 조치를 통해 저소득 및 중소득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17. 우리는 또한 바베이도스 행동계획5과 22차 총회 특별 회의의 결과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함

5 군소도서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군소도서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글로벌 회의 보고서, 브리짓타운, 바베이도스, 1994년 4월 25일~5월 6일(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94.I 및 정정). 1장, 결의안 1, 부속서 II).

으로써 군소도서개도국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다루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취약성 지수 발전 시에 군소도서개도국의 특별한 요구 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18. 우리는 내륙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요구와 문제를 인식하고, 양자 및 다자 공여국 모두 이 국가들에 대한 재정,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여 특수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리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19. 우리는 추가로 다음을 다짐한다.

- 2015년까지 하루 소득이 1달러 미만인 세계 인구의 비율,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일 것.
- 2015년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전 세계의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 전체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남아와 여아가 동등하게 모든 수준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현재 비율의 3/4까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2/3까지 줄일 것.
- 2015년까지 에이즈, 말라리아, 인류를 괴롭히는 기타 주요 질병의 확산을 저지시키고 역전시킬 것.
- 에이즈로 고아가 된 아동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할 것.
- 2020년까지 “빈민가 없는 도시” 계획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최소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을 크게 개선할 것.

20. 우리는 또한 다음을 다짐한다.

- 빈곤, 기아, 질병을 퇴치하고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양성 평등과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를 촉진할 것.
-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할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
- 제약 산업을 장려해서 개발도상국에서 필수 약품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보다 보편적으로 약품을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발전 및 빈곤 퇴치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것.
- ECOSOC 2000 각료 선언⁶에 포함된 권고 사항에 따라 신기술, 특히 정보 및 통신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E/2000/L.9.

4. 공동 환경의 보호

21. 우리는 인간 활동에 의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더 이상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지구에서 살아야 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인류와 특히 우리의 자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2. 우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합의된 의제 217에 명시된 원칙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23. 따라서 우리는 모든 환경 활동에서 보존과 관리의 새로운 윤리를 채택하기로 결심하고 첫 번째 조치로 다음을 다짐한다.
 - 가급적이면 200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10주년까지 교토 의정서를 발효하고 필요한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 착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 모든 유형의 산림의 관리, 보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
 - 생물다양성협약⁸ 및 특히 아프리카에서 극심한 가뭄 및/또는 사막화가 진행 중인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 협약⁹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할 것.
 - 지역, 국가, 지방 수준에서 공평한 접근과 충분한 공급을 촉진하는 물 관리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불가능한 수자원 개발을 중단할 것.
 - 천재 및 인재의 빈도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
 - 인간 계층 서열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할 것.

5. 인권,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24. 우리는 개발권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5.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다짐한다.
 - 세계인권선언¹⁰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
 - 모든 국가에서 시민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전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칙과 관행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의 역량을 강화할 것.

7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보고서, 리우데자네이루, 1992년 6월 3~14일(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93.I.8 및 정정), 권 I: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 결의안 1, 부속서 II.

8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환경법 및 기관 프로그램 활동 센터), 1992년 6월, 참조.

9 A/49/84/Add.2, 부속서, 부록 II.

10 결의안 217 A (III).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싸우고 여성차별철폐협약¹¹을 이행할 것.
- 이주민,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 및 보호하고, 많은 사회에서 증가하는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사회에서 조화와 관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보다 포괄적인 정치 과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모든 국가의 모든 시민이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미디어의 자유와 대중의 정보 이용 권리를 보장할 것.

6. 취약계층 보호

26. 우리는 자연 재해, 대량 학살, 무력 분쟁, 기타 인도적 비상사태의 결과로 고통 받는 어린이와 모든 민간인이 가능한 한 빨리 일상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보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다짐한다.

- 국제인도법에 따라 복잡한 비상사태 시 민간인 보호를 확대하고 강화할 것.
- 난민 수용 국가의 부담 분담 및 인도적 지원의 조율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난민과 실향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고향으로 귀환하고 자신들의 사회에 순조롭게 재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아동권리협약¹²과 무력 분쟁에 아동의 투입,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부가 의정서¹³의 비준과 전적인 이행을 장려할 것.

7. 아프리카의 특별한 요구 사항 해결

27. 우리는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항구적인 평화,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를 세계 경제의 주류로 이끌 것이다.

28.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다짐한다.

- 아프리카 신흥 민주 국가의 정치 및 제도적 구조를 전폭 지원할 것.
- 분쟁을 예방하고 정치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및 하위 지역 메커니즘을 장려하고 유지하며, 아프리카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 흐름을 확보할 것.
- 부채 탕감, 시장 접근성 개선, 공적개발원조 강화, 외국인 직접 투자 흐름 증가, 기술 이전 등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것.

11 결의안 34/180, 부속서.

12 결의안 44/25, 부속서.

13 결의안 54/263, 부속서 I 및 II.

- 아프리카가 에이즈 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의 확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유엔의 강화

29. 우리는 유엔이 전 세계인의 개발을 위한 투쟁, 빈곤, 무지, 질병에 맞선 투쟁, 불의에 대한 투쟁, 폭력, 테러, 범죄와의 투쟁, 그리고 우리의 공동 안식처의 악화와 파괴에 맞선 투쟁 등 이 모든 우선순위를 추구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30.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다짐한다.
- 유엔의 주요 심의, 정책 결정, 대표 기관으로서 총회의 핵심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것.
 - 경제사회이사회가 현장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근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더욱 강화할 것.
 - 국제 문제에서 정의와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를 강화할 것.
 - 유엔 주요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정기적인 협의와 조율을 장려할 것.
 - 기구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시의 적절하고 예측 가능하게 제공할 것.
 - 사무국이 총회에서 합의한 명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최상의 관리 관행과 기술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의 합의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
 - 유엔 및 관련 직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¹⁴을 준수하도록 장려할 것.
 - 평화와 발전 문제에 대해 완전히 조율된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 유엔, 유엔의 기관, 브레튼우즈 기관, 세계무역기구, 기타 다자 기구 간 정책 일관성과 협력을 강화할 것.
 - 평화와 안보, 경제 및 사회 개발, 국제법과 인권, 민주주의와 젠더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엔과 국제의회연맹을 통한 국가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할 것.
 - 기구의 목표 및 프로그램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 비정부기구, 시민 사회 일반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
31. 우리는 총회가 본 선언의 조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전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 총회의 검토와 추가 조치의 근거로서 정기 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한다.

14 결의안 49/59, 부속서.

32. 우리는 이 역사적인 행사에서 유엔이 인류 공동체의 없어서는 안 될 공동 안식처임을 엄숙히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평화, 협력, 개발을 위한 우리의 보편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공통 목표를 위한 우리의 아낌없는 지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약속한다.

제8차 본회의

2000년 9월 8일



04

밀레니엄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Follow-Up to the Outcome of the Millennium Summit)

A/59/565
(2004)





A/59/565
2004년 12월 2일

유엔 59차 배포: 회원국 일반
총회 의제 55 원본: 영어

밀레니엄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Follow-Up to the Outcome of the Millennium Summit)

사무총장 기록

1. 2003년 9월 총회 연설에서 본인은 우리가 유엔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 명시된 모두에게 집단 안보를 제공하려는 열망에 직면했다. 본인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성격과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무력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난 회원국 간의 깊은 분열에 주목했다. 본인은 회원국들에게 유엔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요청했다. 본인은 중요한 문제의 진행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본인에게 제공할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고위급 패널을 소집하기로 발표했다.
2. 본인은 전 태국 총리인 Anand Panyarachun에게 위협, 과제,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음과 같은 세계 각국의 저명 인사들이 포함되는데, 바로 Robert Badinter(프랑스), João Baena Soares(브라질), Gro Harlem Brundtland(노르웨이), Mary Chinery Hesse(가나), Gareth Evans(호주), David Hannay(영국 및 북아일랜드), Enrique Iglesias(우루과이), Amre Moussa(이집트), Satish Nambiar(인도), Sadako Ogata(일본), Yevgeny Primakov(러시아 연방), Qian Qiqian(중국), Salim Salim(탄자니아 공화국), Nafis Sadik(파키스탄) 및 Brent Scowcroft(미국) 등이다.
3. 본인은 고위급 패널에게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현재의 위협을 평가하고, 우리의 기존 정책 및 기관이 이러한 위협에 대처한 방식을 평가하며, 21세기에는 모두에게 집단적 안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엔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도록 요청했다.
4. 본인은 이제 새로운 세기를 위한 광범위한 집단 안보 체계를 제시하는 패널의 보고서를 회원국에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본 보고서는 넓은 범위를 깊이있게 다루면서 보안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정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위협 간의 연결고리와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결과 및 권고

5. 본 보고서는 유엔 기관을 개조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인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집단 안보 개념, 즉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오래된 위협과 모든 국가의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개념에 대한 핵심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의 안보에 대한 현대적 위협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패널의 주장은 특히 중요하다. 테러, 내전 또는 극심한 빈곤 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 간의 상호 연결성은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전략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유엔은 좁은 선입견을 극복하고 일치된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6. 본 보고서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국가들이 오늘날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현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임무가 중요하고 시급하며, 유엔이 이를 더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패널의 견해에 공감한다. 본인은 이 분야에 대한 패널의 권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7. 본인은 보고서에서 발전을 새로운 집단 안보의 필수적인 토대로 강조한 점을 지지한다. 극심한 빈곤과 전염병은 그 자체로 위협이지만 내전을 포함한 다른 위협의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도 조성한다. 시민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하려면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당한 관심과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8. 본인은 보고서에서 생물학적 안보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주목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안타깝게도 보고서에서 에이즈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충격적일 정도로 뒤늦었고, 부끄러울 정도로 자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부분은 너무나 정확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필요한 원조가 계속 부족한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글로벌 보건 시스템의 악화,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취약성, 생명 공학 발전의 약속과 위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패널은 개발도상국의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공중 보건 역량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공중 보건을 재건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실시하도록 촉구한다. 보고서가 강조하듯이, 이런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뿐만 아니라 생물 테러와 치명적인 전염병의 자연 발생에 대한 효과적인 글로벌 방어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9. 패널의 지적처럼, 우리의 주요 초점은 위협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위협이 발생하면 우리는 대처할 준비가 더 잘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개선해야 할 두 가지 수단은 제재와 중재이다. 본인은 회원국들이 패널의 권고 사항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10. 패널은 또한 무력 사용 기준을 권고한다. 본인은 이 매우 중요한 토론 사항에 대해 패널이 기여한 점을 환영하며 회원국들이 패널의 권고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새로운 집단 안보 시스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1. 보고서는 유엔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패널이 정당하게 옹호하는 것처럼, 유엔은 법치와 보편적 인권 준수를 존중하는 효과적이고 원칙적인 대테러 전략을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장애물 중 하나는 회원국들이 테러의 정의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는 정의를 제안하며, 이점이 우리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12. 패널은 핵비확산체제의 불안정한 상태에 긴급한 주의를 촉구하고 미래에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경고한다. 추가 의정서를 통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국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발전을 포기하도록 국가에게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시한부 유예, 비무기 및 무기로서의 용도로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종료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의 협상 등에 대한 패널의 권고 사항은 모두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의 핵 공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긴급한 행동을 요구한다.
13. 패널이 21세기 유엔의 비전을 제시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포함하여 각 주요 기관의 변화를 권고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본인은 오랫동안 보다 대표적인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10년이 넘도록 거의 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패널의 보고서는 위원회 확장을 위한 2가지 방식을 제안한다. 본인은 이 방식들이 논의를 촉진하고 회원국들이 2005년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4. 본 보고서는 기존 기관의 개혁 외에도 새로운 정부 간 기구인 “평화구축위원회”를 제안한다. 본인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감안할 때 분쟁 후 평화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패널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 분야의 업무와 자원은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새로운 정부 간 기구와 사무국의 헌신적인 역량에 대한 아이디어를 환영하는 바이다. 분쟁 직후, 장기적인 재건 및 발전로의 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평화구축위원회가 회원국의 요청 시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15. 패널은 또한 인권위원회의 변경을 권고한다. 세계인권선언은 기구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우리는 국제 인권 규범과 표준을 발전하는 데 있어 유엔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 메커니즘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회복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에 다시 집중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본인은 패널의 권고 사항들이 변화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16. 본인은 보고서가 사무국 강화를 촉구한 것도 기쁘게 생각하며 각각의 권고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다. 본인은 자신의 권한을 수행할 적절한 수단과 함께 최고의 인력을 갖추지 않은 사무국을 회원국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패널의 믿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심의와 행동의 필요성

17. 보고서의 권고 사항은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
18. 보고서의 일부 권고 사항은 유엔 외부의 전문 기관 및 정부 간 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패널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사회가 추가 의정서를 기구 보호를 위한 오늘날의 표준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권고 사항 및 이와 유사한 다른 권고 사항에 대해 본인은 해당 기관의 수장과 협의해서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조기에 고려하고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사회가 직접 조기에 조치하기를 원할 수 있다.
19. 본인은 사무총장으로서 본인의 권한 내에서 이러한 권고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행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이다. 예를 들어, 포괄적이며 원칙적인 새로운 대테러 전략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권고를 유념하고, 새해에 회원국들의 고려 대상인 이러한 전략의 비전을 밝힐 것을 다짐한다.
20. 사무국과 관련된 다른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유엔 입법 기구의 승인과 지원이 필요하다. 당면한 과제에 대해 자원과 구조를 갖춘 유능하고 효율적인 사무국은 집단 안보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다. 본인은 회원국들이 분쟁 예방, 중재, 평화 구축, 전략 분석 분야에서 사무국의 역량 강화에 대한 패널의 권고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본인은 회원국들에게 보다 상세한 의견과 회원국들의 지침에 기반한 이행 계획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21.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권고는 유엔의 정부 간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에 따라 채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널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원인, 결과, 상호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심의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안보 위협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촉구한다.
22. 또한 최고 수준의 정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집단 안보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무력 사용을 통제하는 규칙과 규범에 대한 합의는 오늘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로서 우리의 대처 여부와 방식에 근본적이다. 본인은 2005년 3월 회원국들에 제출한 보고서의 권고 사항, 즉 유엔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념에 대해 핵심을 찌르고 내년 9월 정상회담의 중심 주제가 될 권고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23. 본인은 모든 행동이 9월까지 동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신속히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권고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패널은 생물학적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권고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에이즈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관한 두 번째 특별 회의에서 패널의 권고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질병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누적 효과에 집중할 수 있다. 동시에 세계보건총회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자원을 늘리라는 권고를 고려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공여국은 국가든 재단이든 상관 없이 세계 공중 보건을 재건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패널의 중요한 권고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시급한 사안으로 9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결론

24. 본인은 패널의 보고서를 추천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새로운 세기의 화급한 문제들에 대한 답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패널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간 활발한 논의와 조기 결정이 촉진되기를 바란다. 국제사회는 집단 안보의 미래와 유엔에 필요한 변화에 관한 새로운 합의에 시급히 도달해야 한다.
25. 마지막으로 본인은 패널 위원장과 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들은 세계를 분열시키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다양하고 저명한 인사로 구성된 패널들이 장기적이지만 실행 가능한 권고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보며, 그들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지닌 우리 지구 역시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위협, 과제,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보낸 2004년 12월 1일자 전송 서한

코피 아난(서명)

본인은 “더 안전한 세상: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는 제목의 위협, 과제,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보고서를 당신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세계 곳곳에서 체감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모든 주요 위협을 다루는 본 보고서는 집단 안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우리의 연구와 협의를 통해 현 시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과 약자와 강자 간의 상호 취약성이 비할 데 없이 상호 연결된 시대라는 점이 밝혀졌다. 우리는 유엔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인정받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21세기에 모두를 위한 집단 안보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해지려면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으로는 개별 분쟁에 대한 심층 조사가 불가능했고, 우리는 그 지침을 존중했다. 하지만 유엔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오래된 위협과 새로운 위협을 다루는 방식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해도,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새로운 위협을 끌어 터지도록 계속해서 방치하고 키우고 있는 수많은 오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유엔은 현장에 따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패널 위원들은 자신들의 불찰이라고 믿을 것이다. 이러한 분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카슈미르, 한반도 문제이다.

패널 구성원들은 보고서의 모든 특정 요점과 세부 사항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원이 보고서를 지지하며 일반적으로 보고서의 결과물에 동의한다. 하지만 본인은 안전보장이사회 확장을 위해 제시된 모델과 안전보장이사회 회원 자격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패널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당신이 주목하리라고 생각한다. 패널의 일부 위원들은 비록 거부권이 없더라도 상임이사국 확대를 포함하는 모델을 통해서만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세기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다른 위원들은 선출되고 장기적인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대안 모델이 더 나은 진행 방법이라고 똑같이 굳게 믿는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에 기대지 않는 변화, 타당성, 생존 능력을 위해 제시된 다른 많은 제안에 대한 결정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은 중요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우리의 보고서는 당신에게 전달되지만 많은 권고 사항은 정부 수반들의 약속과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서만 우리는 보고서에 설명된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합의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심의는 전 세계 정부, 학계 전문가, 시민 사회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제시된 조언에 기반을 두었다. 광범위한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의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래의 정부들은 우리 작업에 관대한 재정적 기여를 했다: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모리셔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연방,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아래의 재단과 싱크 탱크는 우리 작업에 재정적 또는 현물 기여를 했다: 뉴욕 카네기 재단, 포드 재단, 국제평화학회, 존 D.와 캐서린 T. 맥아더 재단, 뉴욕대학 국제협력센터, 록펠러 형제 기금, 록펠러 재단,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스탠리 재단, 유엔 재단, 윌리엄 및 플로라휴렛 재단.

이 중요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준 영광에 대해 본인과 패널의 다른 위원들을 대신하여 가장 따뜻한 감사를 표하며, 결론을 내리고 싶다. 본인은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성찰 과정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구 책임자인 Stephen Stedman과 패널 비서인 Loraine Rickard-Martin 그리고 이들의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들의 노력과 지적 기여가 없었다면 현재 보고서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아난드 판야라춘
위원장

보다 안전한 세상: 우리 공동의 책임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위협, 과제,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보고서*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 본 보고서에 대한 각주 및 주석은 온라인 www.un.org/secure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요

새로운 안보 합의를 향하여

유엔은 1945년에 무엇보다도 “전쟁의 참화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즉 세계 대전의 공포가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6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직면할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침략 전쟁을 벌이는 국가를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안보 위협은 빈곤, 전염병, 환경 파괴, 국가 내 전쟁 및 폭력 핵, 방사능, 생화학 무기의 확산 및 사용 가능성, 테러, 초국가적 조직범죄로 확장된다. 위협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서 인간 및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유엔 창립자들은 국가 안보에 몰두했다.

그들이 새로운 집단 안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말했을 때, 전통적인 군사적 의미였다. 즉, 국가들이 연합하여 일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고 다같이 맹세하고 그러한 공격 시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인간 안보의 개념이 통용되기 훨씬 전에 안보의 불가분성, 경제 발전, 인간의 자유를 잘 이해했다. 현장의 서두에 나와 있듯이 유엔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더 나은 삶의 기준을 촉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21세기의 핵심 과제는 집단 안보가 의미하는 것, 즉 집단 안보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 약속, 전략, 제도 등 이러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 새로운 광범위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안보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직면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오래된 모든 위협을 최전선에서 다루는 행위자는 여전히 유엔 현장이 그 역할, 책임,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별 주권 국가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집단적 전략, 집단적 제도, 집단적 책임감은 필수적이다.

오늘날 집단 안보는 3가지 기본 축에 기반한다. 오늘날의 위협은 국경을 넘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자국의 노력만으로 오늘날의 위협에 안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항상 자국민을 보호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을 다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집단 안보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파악하는 위협 중 일부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실제로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에이즈가 끔찍한 질병이라고 믿지만 안보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는 테러는 일부 국가에 위협이긴 하지만 모든 국가에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는 아프리카의 내전은 인도주의적 비극이긴 하지만 확실히 국제 안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는 빈곤은 발전의 문제이지 안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력, 부, 지리적 위치의 차이는 우리가 생존과 안녕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을 결정한다. 초점의 차이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모든 위협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묵살하게 된다. 위협에 대해 불공평하게 대응하면 분열을 가속화한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통용되는 집단 안보가 단지 부국 및 강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집단 안보를 구축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위협에 대한 상호 인식 없이는 집단적 안전이 있을 수 없다. 자립이 지배하게 되고 불신이 우세해지며 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오래된 동맹들, 부국과 빈국, 확대되는 문화적 간극에서 불신에 찬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합의이다. 합의의 본질은 간단하다. 우리 모두 서로의 안보를 위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합의의 검증은 행동이 될 것이다.

집단 안보 및 예방 과제

대규모 사망 또는 생존 확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국제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국가를 약화시키는 사건 또는 과정은 국제 안보의 위협이다. 현재와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가 우려해야 할 6가지 위협군이 있다.

- 빈곤, 전염병, 환경 파괴를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위협들
- 국가 간 분쟁
- 내전, 대량 학살, 기타 대규모 잔혹 행위를 포함한 내부 분쟁
- 핵, 방사능, 화학, 생물 무기
- 테러
- 초국가적 조직범죄

지난 60년 동안 유엔은 국제 안보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줄이거나 완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크게 실패하고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성공과 기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21세기의 새로운 과제들에 기구가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유엔과 회원국의 주요 과제는 열거된 범주에 속하는 모든 위협 중에서 먼 미래의 위협이 임박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임박한 위협이 실제로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위협들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에이즈에서 핵 테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협이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조기에 단호하고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국내 및 국제 수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방 과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우리는 예방을 증시하는 집단 안보 시스템의 필수적인 기반인 발전에서 시작한다. 발전은 여러 기능을 한다. 발전은 수백만 명을 죽이고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빈곤, 전염병, 환경 파괴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발전은 거의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국가 역량의 약화를 막거나 역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발전은 내전을 예방하고 테러와 조직범죄가 번성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부이다.

집단 안보와 무력 사용

평화적 예방이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예방 조치가 전쟁과 혼돈을 막지 못한다면? 먼 위협이 임박하게 되면? 또는 임박한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또는 임박하지 않은 위협이 매우 현실화되고 군사력 사용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정부 상태가 아닐 경우에 참전 결정을 통제해야 하는 국제법의 규칙부터 시작하여, 효과적인 집단 안보를 위해 군사력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들을 다룬다. 국가가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상황, 국가가 국경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 위협이 주로 내부적이고 문제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관련된 상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유엔 헌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현장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51조는 오랫동안 이해된 범위의 확장도 제한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제7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협을 다룰 수 있도록 완전한 권한을 부여한다. 임무는 권한의 원천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가진 것보다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무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양심과 양식의 문제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및 이러한 결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가 군사력을 승인할지 또는 적용할지를 고려할 때 항상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지침(5가지 정당성 기준)을 확인한다. 이러한 지침(위협의 심각성, 정당한 목적, 최후의 수단, 비례적 수단, 결과의 균형)의 채택은 버튼식 예측 가능성으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분열적이었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평화 집행,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포함하여 폭력 분쟁 중에 그리고 후에 발생하는 기타 주요 문제를 다룬다. 되풀이되는 중심 주제는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동원 가능한 군사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데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의상 하는 행동은 너무나 쉽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집단 안보 시스템은 진정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유엔

유엔은 유토피아적인 운동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며, 집단 안보 시스템에 목적을 두었다. 유엔 헌장은 강대국들에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격과 거부권을 부여했다. 그 대가로 강대국들은 그들의 힘을 공동선을 위해 사용하고 국제법을 증진하고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기구 창립 회의의 마지막 본회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1945년 당시 힘과 원칙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했듯이 지금 유엔 개혁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인 권력 현실을 무시하는 권고는 실패하거나 시의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될 것이지만, 단순히 현실 그대로의 권력 배분을 반영하며 국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권고는 국제적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용인을 얻지 못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제안들은 현실 세계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 자체를 위한 변화는 지난 10년간 끝없는 개혁 논쟁의 뻘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리트머스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변화를 위한 제안이 치명적인 위협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위협, 과제,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위협에 대한 현재의 대응에서 제도적 약점을 찾았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총회는 활력을 잃고 종종 단일 가장 강력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집중하지 못한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앞으로 보다 선제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회원국들이 이사회 의사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하며,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은 기구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성, 정당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국가와 분쟁에서 벗어나는 국가를 다루는 데 있어 제도적 격차가 심각하다. 이런 국가는 종종 관심, 정책 지침,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지역 및 하위 지역 기구와 협력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 국제 안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위협을 다루는 새로운 제도적 협정이 있어야 한다.
- 인권위원회는 유엔의 전반적인 평판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당성이 없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 훨씬 더 일관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더 잘 조직된 사무국이 필요하다.

우리가 제안하는 개혁은 그 자체로 유엔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안보 합의에 대해 회원국들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유엔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유엔의 제도는 회원국들과 그 지도자들이 제도에 쏟은 에너지, 자원, 관심만큼 강력할 것이다.

1부: 새로운 안보 합의를 향하여

개요

유엔은 1945년에 무엇보다도 “전쟁의 참화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즉 세계 대전의 공포가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6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직면할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침략 전쟁을 벌이는 국가를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안보 위협은 빈곤, 전염병, 환경 파괴, 국가 내 전쟁 및 폭력 핵, 방사능, 생화학 무기의 확산 및 사용 가능성, 테러, 초국가적 조직범죄로 확장된다. 위협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서 인간 및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유엔 창립자들은 국가 안보에 몰두했다.

그들이 새로운 집단 안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말했을 때, 전통적인 군사적 의미였다. 즉, 국가들이 연합하여 일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고 다같이 맹세하고 그러한 공격 시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인간 안보의 개념이 통용되기 훨씬 전에 안보의 불가분성, 경제 발전, 인간의 자유를 잘 이해했다. 현장의 서두에 나와 있듯이 유엔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더 나은 삶의 기준을 촉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21세기의 핵심 과제는 집단 안보가 의미하는 것, 즉 집단 안보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 약속, 전략, 제도 등 이러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 새로운 광범위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안보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직면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오래된 모든 위협을 최전선에서 다루는 행위자는 여전히 유엔 현장이 그 역할, 책임,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별 주권

국가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집단적 전략, 집단적 제도, 집단적 책임감은 필수적이다. 오늘날 집단 안보는 3가지 기본 축에 기반을 둔다.

오늘날의 위협은 국경을 넘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자국의 노력만으로 오늘날의 위협에 안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항상 자국민을 보호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을 다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집단 안보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파악하는 위협 중 일부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실제로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에이즈가 끔찍한 질병이라고 믿지만 안보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는 테러는 일부 국가에 위협이긴 하지만 모든 국가에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는 아프리카의 내전은 인도주의적 비극이긴 하지만 확실히 국제 안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는 빈곤은 발전의 문제이지 안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력, 부, 지리적 위치의 차이는 우리가 생존과 안녕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을 결정한다. 초점의 차이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모든 위협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묵살하게 된다. 위협에 대해 불공평하게 대응하면 분열을 가속화한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통용되는 집단 안보가 단지 부국 및 강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집단 안보를 구축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위협에 대한 상호 인식 없이는 집단적 안전이 있을 수 없다. 자립이 지배하게 되고 불신이 우세해지며 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오래된 동맹들, 부국과 빈국, 확대되는 문화적 간극에서 불신에 찬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합의이다. 합의의 본질은 간단하다. 우리 모두 서로의 안보를 위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합의의 검증은 행동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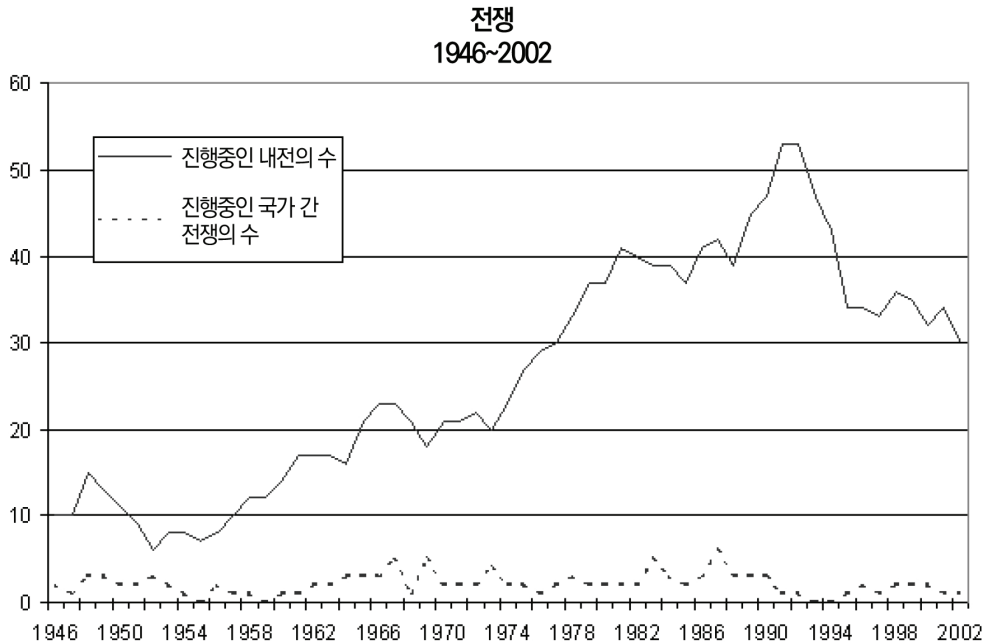
1. 다른 세계: 1945년과 2005년

1. 유엔은 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면서 1, 2차 세계 대전의 공포가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지에 힘입어 낙관적인 정신으로 창설되었다. 2번의 세계 대전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국가들에서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그 후 60년 동안 세계의 많은 지역이 비할 데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역동성과 긴장은 가라앉았고, 강대국은 전쟁을 회피했으며, 유럽은 안정된 평화를

뒤쫓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통합되었으며 현재 유엔에 2번째, 3번째, 6번째로 큰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2. 유엔의 초기 30년 동안 수십 개의 신생 국가가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났고, 최근까지 인구의 절반이 수도에 몰려 있다. 신생 국가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은 이 기간 유엔의 중요한 공헌이었다. 탈 식민지화는 유엔을 변화시켰다. 1945년 유엔 창설 당시에는 회원국이 51개국이었다. 현재는 191개국이다. 총회는 대체로 서로 비슷한 국가로 구성된 기구에서 회원국들이 극적으로 변화된 기구로 변화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개발도상국은 총회에서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총회 밖에선 대체로 허용되지 않았던 국제 정치에서의 발언권을 얻었다.
3. 20세기 후반은 이러한 신생 국가의 생존력과 시민의 안녕을 위한 투쟁이었다. 신생 국가들은 본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식민지의 임의적 경제와 식민지 경제를 물려받았다. 독립은 현대 국가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교육하고 발전하기 위한 경주의 시작이었다.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경제 성장 모델이 강력한 국가 통제에 기반해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기대하던 시대에 일어났다.
4. 지난 4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기대 수명은 20년 증가했으며 보츠와나, 브라질, 중국, 한국, 터키와 같은 국가에서는 1인당 소득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1세기 가까이 걸렸을 시간의 1/3도 안 되는 시간에 2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대부분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1975년과 1999년 사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1인당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5. 1980년대에 이 신생 국가들 중 다수는 20세기 후반에 지배적인 전쟁 형태인 내전이 발발하면서 국가 역량과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했다(그림 1 참조).
6.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이러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10억 명 이상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어렵고, 20억 명 이상이 적절한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3백만 명 이상이 매년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 600만 명의 아동을 포함하여 1,400만 명이 매년 기아로 사망한다. 2000년에는 8억 4200만 명의 영양실조가 있었다. 이 중 95%는 가난한 나라에서 살았다.
7. 현재 아프리카에서 거의 3천만 명이 에이즈 환자이다. 가장 심각한 국가들의 경우 도시의 중년 엘리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국가 역량이 약화되고 국가의 가장 생산적인 집단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감염된 여성과 소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과 농업 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빈곤과 에이즈로 인해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
8. 식민지 해방 세력은 유엔을 형성한 세력 중 하나에 불과했다. 유엔 창립자들은 미국과 구소련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 경쟁에 착수하여 세계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수만 개의 핵무기를 발전하고 배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그림 1] 1946~2002년의 전쟁들



출처: 울산라대학 평화·분쟁연구학과 및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9. 핵 기술의 파괴력을 통제하고 통제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이 유엔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1946년 총회에서 채택한 최초의 결의안은 “대량 살상 무기”의 군축을 촉구했다.
10. 냉전은 이후 45년 동안 세계 정치를 결정지었다. 미국과 구소련 간의 경쟁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았다. 거의 모든 무력 분쟁과 해방 투쟁은 구소련의 역사적 붕괴와 동유럽의 공산주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동서 경쟁의 프리즘을 통해 보였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없었다면 1945년 이후의 세계는 아마도 더 피비린내 나는 곳이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에는 전반기보다 국가 간 전쟁이 더 적었다. 같은 기간 국가의 수가 거의 4배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국가 간 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유엔이 그 결과에 기여했다. 유엔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 간 전쟁의 위협을 줄였다. 평화 유지의 발명으로 평화를 진전시켰다. 사무총장은 외교를 이끌었다. 국제사법 재판소는 분쟁을 해결했다. 침략 전쟁에 대한 강력한 규범을 유지했다.
12. 극적이지만 평화로운 냉전의 종식은 집단 안보가 변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냉전 종식 후 초기에는 유엔의 새로운 역할이 주목받는 것처럼 보였다. 1990년에 안전보장이사회는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말리아에서 인도

주의적 목적을 위한 개입을 승인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확대 해석했다. 유엔은 중앙 아메리카와 남부 아프리카에서 몇 차례 장기간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다.

13. 이 시기는 짧았다. 유엔이 냉전의 족쇄를 회원국들의 안일과 강대국의 무관심이라는 속박과 교환했다는 점이 곧 명백해졌다. 유엔은 인간 안보 개념을 발전했지만 이를 실현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및 카슈미르와 같은 오랜 지역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르완다와 보스니아의 인종 청소와 집단 학살에 대처하지 못해서 국제적 지원이 약화되었다. 낙관주의는 기구를 지원하려는 회원국들의 의지에 대한 새로운 냉소주의로 대체되었다.
14.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D.C.에 대한 테러 공격을 통해 새로운 집단 안보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 9월 12일 프랑스는 결의안 1368(2001)을 도입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1368은 테러 공격을 비난하고 자위적 차원에서 탈레반 정권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을 위한 길을 열었다. 같은 날 총회는 테러와 공격을 비난했다. 2001년 9월 28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결의안 1373(2001)을 채택했다. 3개월 후 유엔은 본 협정을 주재했다. 협정의 목적은 심각한 탈레반 정권을 대체할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유엔은 평화 프로세스의 관리자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임시 정부를 지지하면서 국가의 신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5. 이러한 국제적 목적의 정신은 불과 몇 개월 지속되었고,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분열로 인해 약화되었다.
16. 2001년 9월 11일의 공격은 국가와 집단 안보 기관들이 위협의 성격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통신, 정보 처리, 의료, 교통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기술 혁명으로 인해 국경이 허물어지고 이주가 변했으며 전 세계인들이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위협의 가능성도 크다. 점점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 없이도 더욱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새로운 위협인 초국가적 조직범죄는 국경 안팎에서 법치를 약화시킨다.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 공격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변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안보 환경을 예고하고 있다. 즉, 협력을 위한 독특한 가능성이 전례 없는 파괴 범위와 일치하는 안보 환경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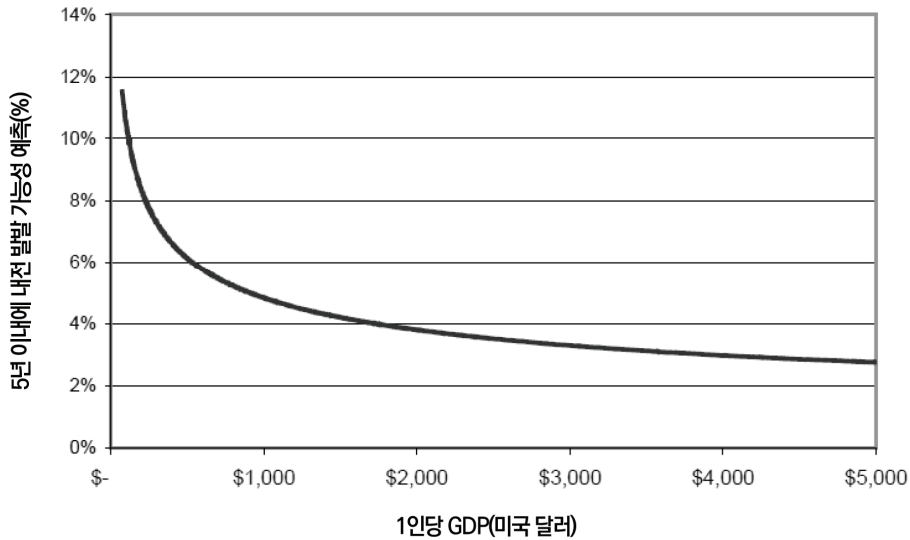
2. 포괄적인 집단 안보 사례

A. 경계 없는 위협

17.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위협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에 대한 위협은 모두에 대한 위협이 된다. 약자와 강자의 상호 취약성이 더 명확해진 적은 없었다.
18. 세계 경제 통합은 선진국 어디에서나 주요 테러 공격이 개발도상국의 수백만 명의 복지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은 2001년 9월 11일의 공격만으로 빈곤층의 수가 1천만 명 증가했다고 추정한다. 세계 경제의 총비용은 아마도 800억 달러를 초과했을 것이다. 핵 테러 사건은 이 숫자를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이다.
19. 마찬가지로 가장 부유한 국가의 안보는 가장 가난한 국가가 신종 질병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에 불모가 될 수 있다. 국제선 비행 시간은 많은 전염병의 잠복기보다 짧기 때문에, 매년 7억 명의 국제선 승객 중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국제적 질병 운반자가 될 수 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은 3개월 만에 30개국 8,000명 이상에게 퍼져서 거의 700명이 사망했다. 1919년의 유행성 독감으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차 세계 대전보다 훨씬 많은 1억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오늘날 유사한 바이러스가 단시간에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다.
20. 오늘날 국제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은 다른 위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국가별 핵 확산은 테러리스트가 핵무기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물질과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즉 국가가 국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취약한 국가를 통해 핵물질 및 기술이 통과될 때 비국가 행위자들의 거래는 지속된다.
21. 국제 테러 단체는 취약한 국가를 근거지로 삼는다. 내전과 지역 분쟁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혼란 빈곤, 외세 강점, 인권과 민주주의의 부재, 종교적 무관용 및 기타 무관용, 시민 폭력 등으로 인한 불만이 테러 단체 가입의 배경이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테러리스트들은 내전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마약과 같은 귀중품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 많은 돈을 이전시켰다.
22. 빈곤, 전염병, 환경 파괴, 전쟁은 치명적인 순환 속에서 서로를 강화한다. 빈곤(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은 내전 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그림 2 참조). 말라리아 및 에이즈와 같은 질병은 계속해서 많은 수의 사망을 초래하고 빈곤을 심화시킨다. 질병과 빈곤은 환경 파괴와 관련이 있다. 기후 변화는 말라리아와 뎅기열과 같은 전염병의 발생을 악화시킨다. 대규모 인구와 토지 및 기타 천연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는 시민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3. 초국가적 조직범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촉진한다. 부패, 불법 거래, 자금 세탁은 국가를 약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지체시키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내전을 허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조직범죄 집단이 테러리스트에게 핵, 방사능, 생화학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특히 우려된다. 마약 거래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특히 동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에이즈 감염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조직범죄 활동은 분쟁 상품과 소형 무기의 불법 거래를 통해 평화 구축 활동을 약화시키고 많은 내전을 부채질한다.

[그림 2] 빈곤과 내전의 관계



출처: 세계은행, 워싱턴대학 평화 및 분쟁 연구학과,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 기반해 Macartan Humphreys(콜럼비아 대학)가 수행한 연구.

B. 자기 방위의 한계

24.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자국의 노력만으로 오늘날의 위협에 안전할 수는 없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 다른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익이다. 그렇게 하면 자국의 위협 우선순위를 다루기 위해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25. 예를 들어 핵 테러의 위협을 생각해보자. 전문가들은 테러리스트들이 중형 수준의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임시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1리터 우유팩 6개에 들어갈 양인 50kg의 고농축 우라늄(HEU)을 밀반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국경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핵 테러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의 비축량을 정리하고, 항구의 선적 컨테이너를 더 잘 보호하며, 우라늄 농축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칙에 대한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보 공유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6. 마찬가지로 조직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들은 돈세탁, 마약 밀거래 및 인신 매매, 부패와 싸우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가장 약한 고리에 달려있다. 효과적이지 않은 집단 안보 제도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안보를 약화시킨다.
27. 테러리스트의 핵, 화학 또는 생물학적 무기 사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는 위험한 물질을 통제하고, 테러리스트를 억제 및 검거하며, 테러 행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광범위한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다. 내전, 질병, 빈곤은 국가 붕괴의 가능성을 높이고 조직범죄를 확산시키며, 국가와 집단적 법 집행 능력이 약화됨으로써 테러 및 확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대량 살상 테러를 예방하려면 집단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빈곤을 개선하며, 극단주의와 싸우고, 전쟁으로 인한 불만을 없애며, 전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조직범죄와 싸우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8. 이에 모든 국가는 광범위한 위협에 맞서 협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포괄적 집단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C. 주권과 책임

29. 유엔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들은 주권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책임도 받아들인다. 베스트팔렌 체제에서 처음 국가 주권 개념이 등장했을 때 어떤 인식이 우세했던 간에 오늘날 그 개념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민의 복지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국가가 항상 자국민을 보호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을 다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안보의 원칙은 이런 책임의 일부를 경우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거나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행동하는 국제사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0.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한다. 유엔 헌장은 모든 국가가 본질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성, 정의, 가치, 안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21세기 집단 안보 시스템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너무나 자주 국가들이 이 가치들을 존중하고 장려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집단 안보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그 수장들의 공동 책임을 강조한다.

D. 신뢰할 수 있는 집단 안보 시스템의 요소

31.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집단 안보 시스템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다자 체제는 최근 수십 년 간 세계가 직면한 주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모든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자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1) 유효성

32. 핵무기에 대한 수요를 줄이거나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거나 내전을 종식시킴으로써 집단 안보 기관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물론 이러한 기여는 종종 이들이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더 적게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폄하되기도 한다.
33. 집단 안보 기관은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다자간 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행위자, 지역 행위자, 때로는 시민 사회 행위자와 함께 활동하며 이러한 활동이 공동 목표를 위해 조율 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분쟁 후 재건, 빈곤 퇴치 전략, 비확산 조치에서처럼 중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4. 국가는 여전히 최전선에서 오늘날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빈곤 및 전염병 퇴치, 초국가적 범죄 근절, 내전 후 재건, 테러 억제, 위험 물질 확산 차단을 위한 국제 조치가 성공하려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가 파트너로 필요하다. 따라서 주권을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여를 하는 것은 그들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
35. 집단적 조치는 종종 실패하기도 하며 때로는 큰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집단적 수단은 종종 지침 미준수, 불규칙한 모니터링 및 검증, 미약한 집행으로 무력해지고 있다. 조기 경보는 예방을 위한 조기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그 효과를 발하며, 모니터링 및 검증은 집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될 때 가장 잘 작동한다.
36. 집단 안보 기관은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대량 학살에 대처하는 데 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유엔의 규범적 문제이다. 전쟁과 인권 유린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및 국제적 책임 개념은 국가 주권 불가침의 주장과 개입 권리 사이의 긴장을 진정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또한 작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자국민을 학살하는 것을 막는 문제는 상당한 군사 전개 능력을 필요로 한다.

2) 효율성

37. 집단 안보 수단 중 일부는 효율적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의 제도적 구체화 수단이자 핵무기 확산 방지에 있어 장기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규 예산이 2억 7,500만 달러 미만)는 비범한 협상력으로 주목받았다.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은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긴장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 38. 하지만 집단 안보 수단 중 다수는 비효율적이었다. 예를 들어, 분쟁 후 활동의 특징은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조율되지 않고 중첩되는 양자간 프로그램 및 유엔 프로그램이 너무나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다.
- 39. 우리 집단 안보 기관이 비효율적인 가장 큰 원인은 치명적인 폭력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쟁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훨씬 더 크고 치명적인 분쟁으로 발전한다.

3) 공평성

- 40. 집단 안보 시스템의 신뢰성은 잠재적 수혜국의 특성, 위치, 자원 또는 강대국과의 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의 안보를 얼마나 잘 증진하는지에 달려 있다.
- 41. 유엔과 회원국들은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차별을 일삼았다. 2001년 9월 11일의 공격에 대한 유엔의 신속한 대응은 다른 국가들이 훨씬 더 치명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의 조치와 대조를 이룬다. 1994년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르완다는 3차례의 9.11공격과 동일한 것을 매일 100일 동안이나 경험했다. 르완다의 인구는 미국 인구의 1/36에 지나지 않았다.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2주 후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부분의 평화 유지군을 르완다에서 철수시켰다. 유엔 관리들이 이 사태를 대량 학살이라고 부르는 데 거의 한 달이 걸렸고 심지어 일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더 오래 걸렸다. 대량 학살이 발생한지 6주 후 마침내 르완다에 대한 새로운 임무가 승인되었을 때, 군인을 파견한 국가는 거의 없었다. 대량 학살이 끝나자 임무가 전개되었다.
- 42. 마찬가지로 위협, 과제,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심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단 다르푸르의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우리 기관들의 빙하처럼 느린 속도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 43. 집단 안보 기관들이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방식으로 대응할 때, 이 기관들은 어떤 위협이 중요한지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낸다. 우리의 집단 안보 기관은 하나에 대한 위협이 진정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2부: 집단 안보 및 예방 과제

개요

대규모 사망 또는 생존 확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국제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국가를 약화시키는 사건 또는 과정은 국제 안보의 위협이다. 현재와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가 우려해야 할 6가지 위협군이 있다.

- 빈곤, 전염병, 환경 파괴를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위협들
- 국가 간 분쟁
- 내전, 대량 학살, 기타 대규모 잔혹 행위를 포함한 내부 분쟁
- 핵, 방사능, 화학, 생물 무기
- 테러
- 초국가적 조직범죄

지난 60년 동안 유엔은 국제 안보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줄이거나 완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크게 실패하고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성공과 기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21세기의 새로운 과제에 기구가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유엔과 회원국의 주요 과제는 열거된 범주에 속하는 모든 위협 중에서 먼 미래의 위협이 임박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임박한 위협이 실제로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위협들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에이즈에서 핵 테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협이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조기에 단호하고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국내 및 국제 수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방 과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우리는 예방을 중시하는 집단 안보 시스템의 필수적인 기반인 발전에서 시작한다. 발전은 여러 기능을 한다. 발전은 수백만 명을 죽이고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빈곤, 전염병, 환경 파괴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발전은 거의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국가 역량의 약화를 막거나 역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발전은 내전을 예방하고 테러와 조직범죄가 번성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부이다.

3. 빈곤, 전염병, 환경 파괴

A. 우리가 직면한 위협

44. 1990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은 매년 평균 3% 증가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극빈층의 수가 1억 명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어도 54개국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감소했다. 매년 거의 1,100만 명의 아동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 중에 사망한다. 빈곤의 증가는 전 지구적 불평등의 증가와 많은 빈국에서 소득 불평등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부유한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가난한 하위 20% 가구의 소득보다 30배 더 많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청소년은 빈곤에 처해 있다.
45. 민족적 또는 지역적 불평등에 빈곤이 더해지면 시민 폭력을 유발하는 불만이 심화된다. 전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급증하는 청년 인구, 빈곤, 도시화, 실업이 결합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많은 도시에서 조직 폭력이 증가했다. 패널이 아프리카 시민 사회 단체들과 가진 협의 중에 한 여성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청년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라고 통렬하게 물었다.
46. 빈곤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륙은 아프리카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평균 수명은 1990년 이후 50세에서 46세로 감소했다. 선진국에서는 100명의 아동 중 1명 미만이 5세 이전에 사망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그 수가 10명 중 1명이며 14개국에서는 5명 중 1명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1990년 이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 영양 결핍은 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증가했다.
47. 지난 30년 동안 세계는 신종 전염병의 출현, 오래된 질병의 재유행,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주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의 확산을 보았다. 최근 발병한 소아마비는 20세기의 위대한 성취 중 하나였던 소아마비의 퇴치에 근접했던 수준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적, 세계적 공중 보건 역량의 극적인 붕괴를 의미한다.
48. 에이즈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느리고 부끄럽게도 여전히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에이즈에 관한 첫 번째 주요 국제 사업인 에이즈 글로벌 프로그램은 에이즈의 첫 사례가 확인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감염된 지 6년 후인 1987년에 시작되었다. 2,500만 건의 감염이 발생한 뒤인 9년 후 에이즈 관련 유엔 기구들을 조율하기 위해 유엔에이즈프로그램(UNAIDS)이 만들어졌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에이즈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처음 논의했던 2000년에 아프리카의 연간 에이즈 사망자 수는 1990년대에 발생한 모든 내전에서의 전투 사망자

수를 증가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금이 조성되었던 2003년에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고아가 된 아동은 1,100만 명 이상이었다.

49. 아프리카가 에이즈 전염병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프리카가 아닌 국가들에서 에이즈가 기대 수명을 30년 단축했다면 국제적인 대응이 그렇게 느렸을까'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한다.
50. 치명적인 다른 전염병을 퇴치하는 과정에서도 아직 발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핵을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진력은 정치적 헌신, 자원 조달, 전략 수립, 약품 접근성, 의료 연구 등의 개선을 포함하여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매년 850만 명 이상의 새로운 결핵 사례가 발생하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금부터 2020년까지 거의 10억 명이 새로 감염되고 1억 5천만 명이 결핵에 걸리고 3,6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핵의 경우만이 아니라 의약품의 구입 가능성과 접근성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하다.
51. 사스 퇴치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경험은 효과적인 국제기구가 유능한 국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때 전염병의 확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WHO와 국가 기관들의 신속한 대응은 사스의 확산을 막았으며 여러 대륙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심각한 발병을 예방했다. 어떤 국가도 독자적으로는 이 정도로 질병을 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52. 현재의 추세는 많은 국가에서,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식량 불안정이 지속적이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선진국의 1인당 소비 증가로 인해 희소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경작지 유실, 물 부족, 남획, 삼림 벌채, 생태계 변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려운 과제를 제기한다. 세계 인구는 현재 63억에서 2050년에는 89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증가의 거의 대부분은 인구 증가를 흡수할 능력이 가장 적은 국가들에서 발생한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는 것은 농업 수확량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53. 환경 파괴는 자연 재해의 파괴적인 잠재성을 키웠고, 어떤 경우에는 재해의 발생을 가속화시켰다. 지난 50년 동안 목격된 주요 재난의 급격한 증가는 이러한 추세의 우려스러운 증거이다. 지난 10년 동안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재난의 영향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경제적 피해는 이전 40년을 합친 피해를 증가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더 심각한 홍수, 폭염, 가뭄, 폭풍이 발생하면, 이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
54. 안보, 발전 또는 인도주의 전략에 환경 문제가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환경 보호 노력에도 일관성이 없다. 지구적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려는 대부분의 시도는 기후 변화, 삼림 벌채, 사막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환경에 관한 지역적, 국제적 다자 조약은 회원국들의 부적절한 이행 및 집행으로 인해 약화된다.

55. 국제기구와 국가가 발전 문제를 일관되고 통합된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조직화하지 않고, 대신 빈곤, 전염병, 환경 파괴를 독립적인 위협으로 계속 취급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세분화된 부문별 접근법은 정부의 세분화된 부문별 접근법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재무부는 국제 금융 기구 하고만, 개발부는 발전 프로그램 하고만, 농업부는 식량 프로그램 하고만, 환경부는 환경 기구 하고만 협력하려는 경향이 있다. 양자 공여국들은 유엔의 더 나은 조율을 정확하게 요구하지만 그들 스스로 유사한 노력을 위한 열정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56. 기존의 글로벌 경제 및 사회 거버넌스 구조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처하기엔 형편없이 불충분하다.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 원조, 기술, 무역, 재정 안정, 발전 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과 문제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협상하기 어렵고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들의 높은 관심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에게 솔직한 대화, 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고위급 포럼이 없다.
57. 경제 및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유엔은 기관이 보유한 소집 권한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결집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국제회의를 통해 빈곤 완화, 식량 안보 제공, 경제 성장,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야심찬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유엔 밀레니엄 선언은 실현 가능한 일련의 합의된 목표와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 밀레니엄 발전 목표로 통합되었다. 이 발전 목표에는 2015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반으로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부터 양성 평등을 달성하고 에이즈의 확산을 저지하고 역전시키는 것까지 포함된다.
58. 2002년 몬테레이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원조 공여국 및 원조 수원국 모두 발전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주요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건전한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도달 할 공공 및 사회 서비스에 투자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활발한 성장과 원조 효과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 대한 대가로 공여국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발전 원조를 늘리며, 부채가 많은 빈곤국에 대한 부채 탕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하기로 합의했다.

B. 예방 과제 해결

1) 더 많은 자원과 조치

59. 2000년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빈곤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평가에 따르면 세계의 일부 지역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추세에 있지만, 다른 지역은 퇴보했다.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초등 교육을 늘리는 분야에서 세계는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젠더 측면을 다루기 위한 조치는 거의 없었다. 빈곤과 부국들이 사회 및 경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자원과 조치로 구체화되지 않았고 장기적인 약속도 부족하다. 모든 국가는 빈곤 퇴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달성,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이라는 목표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
60. 우리는 밀레니엄 발전 목표가 국가 및 국제 빈곤 퇴치 전략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심각한 부족을 시정해야 하며, 모든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과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가장 저개발 된 국가들의 경우 공적 개발원조(ODA)가 중요하며 국가의 밀레니엄 발전 목표에 기반한 빈곤 퇴치 전략을 지원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현재 유엔의 공적개발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GNP)의 0.7%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공여국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61. 국제 금융 시설과 같은 발전 재원 조달에 관한 혁신적인 접근법의 발전 여부에 대해 수년간의 논쟁 끝에 공여국들은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전환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공여국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권장한다.
62. 몬테레이와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도자들은 세계 무역 시스템의 지속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빈곤이 완화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전 세계 빈곤층의 7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서 소득을 얻는다. 이들은 선진국이 농업 수입에 무역 장벽을 부과하고 농업 수출을 보조할 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선언은 서명국들이 새로운 무역 라운드에 대한 협상의 중심에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이익을 두도록 명시적으로 약속했다. WTO 회원국은 늦어도 2006년에 도하 발전 라운드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3. 거버넌스 개혁과 무역 기회의 개선만으로는 열악한 인프라, 저생산성 농업, 풍토병, 심각한 대외 부채 수준으로 인해 발전 노력이 미약한 많은 최빈국(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빈곤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선진국은 또한 최빈국의 부채 지속가능성(밀레니엄 발전 목표 달성과 일치하는 부채 수준으로 재정의 되어야 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출을 제공하는 정부 및 국제 금융 기구는 부채가 많은 빈국들에게

부채를 더 많이 탕감해주고, 일정을 더 장기적으로 조정해주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시켜주어야 한다.

64. 주요한 국제적 사업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의 확산은 여전히 견잡을 수 없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피해가 가장 큰 국가들에서 대유행의 영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감염 건수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국제 자원이 1996년 약 2억 5천만 달러에서 2002년 약 28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에이즈를 막기 위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65. 일부 국가의 경험에 따르면 적절한 재정 지원과 제도화된 노력은 에이즈 퇴치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가 위협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국가들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환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무력화 되었다. 피해를 입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원을 동원하고, 자금을 투입하고, 질병 통제 노력에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을 참여시켜야 한다.

2) 새로운 사업

66. 에이즈의 인명 피해(감염건 수, 사망자 수, 고아가 된 아동 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염병의 장기적인 영향이 질병 피해가 가장 큰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측해야 한다. 에이즈는 아프리카 국가와 경제의 역량을 보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고갈 시키지만, 우리는 공무원, 숙련된 의료 전문가, 교사, 서비스 제공자, 간병인, 경찰, 군인, 평화 유지군의 손실로 인한 누적 효과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좋은 연구가 없으면, 우리는 에이즈가 거버넌스와 국가 안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발전할 수 없다.
67. 유엔에이즈프로그램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에이즈에 대한 2차 특별회의를 주최해서, 에이즈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미래 영향을 조사하고, 이 문제에 관한 연구를 생산하며, 위협을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을 향한 중요한 단계를 파악해야 한다.
68.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퇴치는 공중 보건 시스템이 작동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국가에 달려 있다. 의료 시설의 부재는 말라리아의 확산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원 부족으로 인해 특히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부담이 큰 국가들에서 보건 부문 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관되지 않거나 부분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하기 훨씬 더 어려운 새로운 결핵 균주가 발생했다. 에이즈에 대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도 사하라 사막 이남의 가장 빈곤한 지역에 있는 의료 시설의 경우 부적절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실행되지 못한다. 국제 공여국들은 국가 당국 및 지역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전역에 지역 및 국가 공중 보건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69.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 질병 모니터링 역량을 향상시키는 작업과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신종 전염병을 퇴치하고, 생물학적 테러 위협을 방어하며,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세계보건총회 회원국들은 잠재적인 질병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WHO 글로벌 발병 경보 및 대응 네트워크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70. 신종 감염병이나 감염원의 고의적 방출로 인한 극단적인 위협의 경우, 효과적인 격리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WHO와 안전보장이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아래 5장 참조).
71.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경제는 탄화수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기후 친화적인 발전 전략을 고안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천연 가스, 재생 가능 전력,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에너지원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저탄소 기술 발전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오늘날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원 발전을 장려했다. 이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국가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추가 발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화석 연료 사용 및 발전에 대한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72. 러시아 연방의 비준 후 교토 의정서의 발효는 의정서 자체가 온실 가스 배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발전이다. 교토의정서는 오늘날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원 발전을 장려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일부 선진국들은 기후 정책의 적용 영역 밖에 있다는 이유(예: 산업 생산의 급격한 감소)로 교토 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에 올라 있다.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는 미국은 의정서 비준을 거부한다. 동시에 오늘날 온실 가스 순 배출량의 거의 절반(하지만 1인당 배출량은 1/10에 불과)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구속력 있는 배출 한도를 수용하는 데 반대해 왔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늘어나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감축을 받아들이는 데 더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토의정서에 2012년 이후의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교토 의정서의 약속과 그 성과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다시 참여하고, 의정서가 다루는 기간을 넘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73. 유엔과 국제 금융 기구는 또한 2004년 아이티에서와 같이 심각한 자연 재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세계기상기구는 취약성 완화를 위한 투자가 자연 재해와 관련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은 취약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통합된 방식으로 그리고 정부 및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작업하고 가장 영향을 받는 정부와 협력하여 적응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4. 국가 간 분쟁 및 국내 분쟁

A. 국가 간 분쟁의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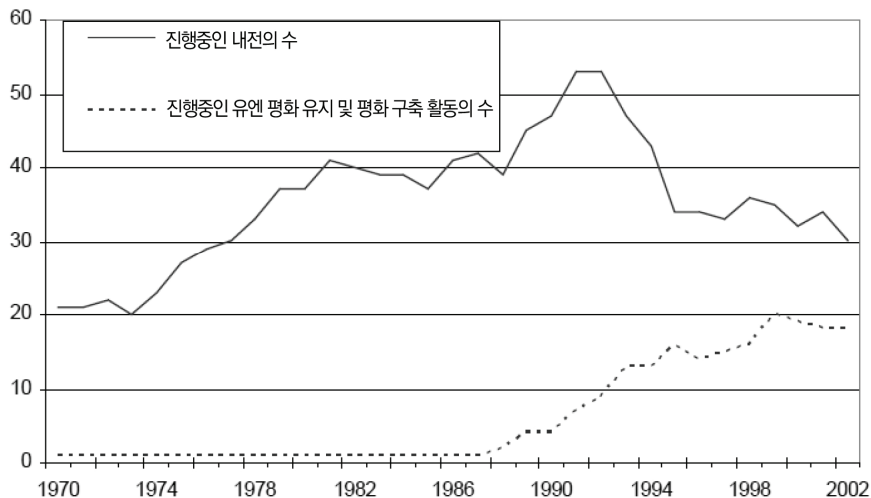
74. 지난 60년 동안 세계는 국가 간 전쟁을 거의 목격하지 않았지만 국가 간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동에서 해소되지 않은 지역 분쟁은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40년의 노력과 생화학 무기의 재앙을 없애기 위한 75년 이상의 노력을 망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의 국가 간 경쟁은 내부 전쟁을 촉진하고 악화시켜 종식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경쟁은 재래식 무기를 축적함으로써 빈곤을 줄이고 의료를 개선하며 교육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족한 자원을 전용한다.
75.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전쟁과 지속적인 불안정은 이슬람 세계와 서구에서 극단주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 문제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어서 단순한 범주화를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이슬람 세계에서 상호간 문화적, 종교적 적대감(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협)을 조장하는 극단주의 그룹의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76. 과거에 유엔은 사무총장의 “좋은 사무실,” 즉 위기를 완화시키고 적대적인 당사자들에게 자유롭게 대화하고 의도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용한 외교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의 위협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후임 사무총장은 기구 내에서 지원할 역량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수행했다.
77. 냉전이 끝나자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적 위협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이사회가 통과시킨 연평균 결의안 건수는 15건에서 60건으로, 한 달에 한 건에서 일주일에 한 건으로 늘어났다. 1989년 이전에 이사회는 제재를 2번 적용했다. 그 이후 침략을 되돌리고, 민주 정부를 복원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테러와 싸우고, 평화 협정을 지원하는 등 점점 더 다양한 범위의 명시된 목적을 위해 14번의 제재를 부과했다.
78. 이러한 제재 조치 중 일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효과적이었다. 어떤 경우에 제재는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다른 경우에 제재는 군사적 압력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반군 단체와 국가를 약화시키고 고립시켰다.
79. 제재가 효과적으로 표적화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집행하지 못했을 때 제재는 실패했다.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집행이 약화된 결과, 제재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 부족,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제재 피로,” 각 제재위원회의 불충분한 지원, 제재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의 부족 등도 그 원인이다.

80. 포괄적인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구 유고 슬라비아, 아이티 사건 이후 제재 부과를 중단하고 전적으로 비난의 대상인 정책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교전 당사국 및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외교, 무기, 항공, 여행, 상품 등의 제재를 사용했다.
81. 활동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관심을 받기에 마땅한 상황이 전부 관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이사회는 모든 결의안에 효과적인 집행 조치가 뒤따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1990년대의 두 가지 추세는 국제 분쟁을 규제하는 데 있어 유효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첫째, 이사회가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되면서 일방적인 무력 사용과 집단적으로 승인된 무력 사용 사이의 균형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집단적으로 승인된 무력 사용은 오늘날 규칙이 아닐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둘째,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 사용의 증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기대는 국제 분쟁의 규제에 있어 유엔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지표이다.
82. 많은 사람들은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초강대국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거의 구하지 않았다. 모든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오래된 원칙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우리의 분석은 정반대의 것을 제시한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표준이며, 귀중하지만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 표준이다.
83. 이라크 사건은 많은 의견 차이를 유발했다. 일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의 결의안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을 저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쓸모 없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을 합법화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타당성과 필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전쟁 결정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하고 원칙적인 기준을 제공했다. 토론 중에 외무 장관들이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로 몰려들고 대중의 관심이 확산되자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무력 사용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유엔 헌장의 관련성뿐 아니라 중심성을 재확인했음을 시사한다.

B. 내부 분쟁의 위협

84. 냉전 종식 후 내전에서 평화 조성, 평화 유지, 분쟁 후 평화 구축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서 유엔의 활동 모습이 되었다.
85. 내전에서 유엔 활동의 급속한 성장은 내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일치한다(그림 3 참조). 1992년 이후 내전은 꾸준히 감소했고, 2003년까지 약 40% 감소하여 30회 미만의 전쟁이 발생했다. 지난 15년 동안 이전 2세기보다 더 많은 내전이 협상을 통해 종식되었다. 대체로 유엔이 리더십, 협상 기회, 전략적 조율,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했고, 지역 및 국제적 안정을 강화했다.

[그림 3] 내전 종식과 평화 구축, 1970~2002년



출처: 윗살라대학 평화 및 분쟁 연구학과와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86. 하지만 이 전례 없는 성공은 또한 큰 실패와 결부되어 있었다. 내전의 약 25%만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었고 그 중 일부만이 성공적인 이행에 필요한 정치적, 물질적 자원을 받았다. 그 결과 많은 이행 노력이 실패했고, 때로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두 개의 평화 협정인 1991년 앙골라 비세스 협정과 1993년 르완다 아루샤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면, 1990년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수백만 명 감소했을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가 1990년대 초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진지하게 헌신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탈레반은 결코 권력을 잡지 못했을 것이며, 알카에다는 가장 중요한 피난처를 빼앗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87. 유엔이 시민 폭력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한 부분은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을 중단시키는 활동이었다. 르완다에서 사무국 관리들은 수천 명의 투치족과 온건한 후투족을 학살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의

계획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조기 경보를 하지 못했다. 대량 학살이 시작되자 파병국들은 평화 유지군을 철수시켰고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응하지 못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유엔의 평화 유지와 인도적 지원의 보호는 인종 청소와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조치를 대체했다. 코소보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비되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유엔을 우회했다. 1990년대 동티모르의 경우에만 사무총장의 독촉을 받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중앙 정부 및 지역 행위자들과 협력하여 대량 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공동 압력을 가했다.

88. 국제사회는 이러한 전쟁과 폭력의 발발로 인한 대규모 인명 손실을 예방하는 것에 더욱 경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방에 실패하는 경우, 시급히 학살을 중단시키고 전쟁으로 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C. 예방 과제 해결

1) 국제 규제 체계 및 규범의 개선

89. 전쟁 예방을 위한 유엔의 역할은 분쟁의 원인과 촉진 요인 중 일부를 통제하는 국제 체제와 규범을 발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여기에는 법률 제도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군비 통제 및 군축 제도, 대화 및 협력 조치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법률, 규범, 합의, 협정이 관련되어 있다. 아래에 몇 가지 사례가 제시된다.
90. 법적 메커니즘 분야에서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로마 규정보다 더 중요한 최근의 발전은 거의 없었다.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문제의 분쟁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으며 로마 규정에 따라 권력을 사용할 용의가 있음을 조기에 시사하면, 당사자들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법을 위반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기 위해 로마 규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91. 종종 평화에 장애물이 되었던 천연 자원을 둘러싼 분쟁 영역에서 더 많은 법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시에라리온,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의 전쟁에서 천연 자원의 전쟁 유발 기능에 놀란 시민 사회 단체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실명공개”로 돌아서서 불법 무역에 관련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국가들은 “불법 거래되는 다이아몬드”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한 시도를 했다. 시에라리온과 앙골라의 증거는 그러한 노력이 내전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유엔의 새로운 과제는 미래의 분쟁을 막기 위해 천연 자원 관리에 있어 취약한 국가(특히 전쟁에서 회복중인 국가에 국한되지 않음)를 지원하는 것이다.
92. 유엔은 분쟁에서 벗어나거나 분쟁 위협에 처한 국가의 천연 자원 관리를 통제하는 규범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당국, 국제 금융 기구, 시민 사회 단체, 민간 부문과 협력해야 한다.

93. 예를 들어 국제법위원회를 통해 물, 석유, 가스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규칙 개발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94. 유엔은 예방 체계 구축을 주도했던 지역 기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유엔은 지역의 조기 경보 시스템과 정보 및 분석을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규범적 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 지역 기구가 유엔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주기구(OAS)와 아프리카연합(AU)은 선출된 정부를 쿠데타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동의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소수민족 권리에 관한 운영 규범을 개발했다. 유엔은 소수민족 권리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위헌적 전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지역 기구의 경험에 기반해야 한다.
95. 군비 통제 및 군축 체제 분야에서는 핵, 생물, 화학 무기(아래 5장 참조)의 맥락에서만만 아니라 소형 무기 및 경량 무기의 확산과 관련하여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내전에서 소형 무기, 경량 무기, 지뢰가 주요 무기였다. 시민 사회 단체와 관련 회원국들의 공동 조치가 지뢰 금지로 이어졌지만, 소형 무기와 경량 무기의 광범위한 이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레토릭을 넘어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96. 소형 무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고, 소형 무기의 생산과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를 추구한다. 이 접근 방식의 핵심적인 국제적 수단은 소형 무기 및 경량 무기의 불법 제조, 이전, 유통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인 권고 사항인 “소형 무기 및 경량 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 퇴치, 근절하기 위한 유엔 행동 프로그램”이다. 이 행동 프로그램은 나이로비 사무국과 같은 지역 기구를 혁신적으로 활용하는데, 나이로비 사무국은 특히 5대호 지역과 아프리카의 풀에서 소형 무기 및 경량 무기의 예방, 통제, 축소를 위한 나이로비 의정서의 이행을 감시하고, 국가의 준수 여부를 보고, 감시, 검증한다. 이 행동 프로그램은 유엔 노력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소형 및 경량 무기의 표시 및 추적, 중개 및 양도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 관한 협상을 신속히 처리하고 체결해야 한다.
97. 유엔은 또한 회원국의 재래식 무기의 보유 및 획득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간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1991년에 확립된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부는 재래식 무기 및 기존 무기 보유 자산의 판매 및 구매, 방어 태세, 정책, 교리에 대한 회원국들의 연례 선언을 요청하여 군사 투명성을 강화한다. 하지만 등록부는 불완전하고 시기에 맞지 않으며 부정확한 보고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었다. 모든 회원국은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부의 모든 요소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보고의 부적절성에 대해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2) 정보 및 분석의 개선

98. 예방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에 기반한 조기 경보 및 분석이 필요하다. 유엔은 다양한 기관과 부서에 산재한 조기 경보 및 분석 능력이 있지만, 사무총장은 의사 결정을 위해 이런 부서들에서 올라온 입력 정보를 조기 경보 보고서 및 전략 옵션에 통합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보유한 부서를 설치할 수 없었다. 전략 옵션을 개발하는 일관된 역량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평화와 안보 사무차장을 신설해서 사무총장실을 강화하는 것이다(아래 19장 참조).
99. 일부 현장에 기반한 기관이 조기 경보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국제 비정부기구가 최근 몇 년 동안 시의 적절한 정보 제공, 분석, 옹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무총장이 지역의 분쟁 분석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하게 제한된다. 유엔의 정책 부서, 평화 유지 부서, 인도주의적 부서와 조기 경보 정보 및 분쟁에 대한 현지 지식을 제공하는 외부 출처 간 상호 작용이 강화되면 유엔의 분쟁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연구 기관(학계 및 기타 국제기구 산하)은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종류의 분쟁 촉진 요인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다. 유엔의 정책 부문은 현지 지식 출처 및 외부 연구 출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3) 예방 외교 및 중재

100. 내부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은 국가 간 전쟁을 예방하려는 활동보다 성공하지 못했고, 회원국이 국내 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을 꺼려함으로써 활동은 종종 제한되기도 한다. 하지만 특히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것만큼이나 분쟁 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숙련되고 경험이 많고 지역에 통통한 특사, 중재자, 특별 대표를 임명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기울여야 한다.
101. 그러한 임명을 할 때 사무총장은 다른 모든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능숙함을 우선시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내부 및 외부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는 신규 또는 잠재적인 특별 대표자 및 기타 유엔의 중재자들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함으로써 더욱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권고한다.
102. 중재자와 협상자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엔의 중재에 대한 수요가 지난 10년 동안 급증했지만, 이러한 기능에 투입되는 자원은 미미했다. 회원국들이 유엔 사무국 정부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공언한 강력한 유엔에 대한 열망과 상충된다. 정부부는 추가적인 자원을 지원받아야 하며,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인 중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103. 이러한 개편의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에게 맡겨야 하지만, 개편 시 다음과 같은 유엔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a) 유엔의 모든 중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유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소규모 전문가

- 팀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의 중재 전담 지원 역량
- (b) 이행 단계의 순서, 감시 협정의 설계, 과도기적 협정의 순서, 국가적 화해 메커니즘의 설계와 같이 평화 협상에서 반복되는 주제별 문제에 대한 역량
- (c)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국가 중재자, 지역기구, 비정부기구와의 상호 작용 강화
- (d) 시민 사회(특히 협상 중에 종종 무시되는 여성들)와 더 많은 협의 및 평화 프로세스에 시민 사회의 참여

4) 예방 전개

- 104.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평화 유지군의 조기 배치는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당사자를 안심시키고 침략자가 될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분명한 예방 전개 사례는 국가 당국의 요청이었으며 명백히 성공적이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국가 지도자와 분쟁 당사자에게 예방 전개 옵션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105.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분쟁에서 벗어난 국가에 소수의 평화 유지군을 배치하여 국군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예방 기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106. 중재자와 평화 유지 계획자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도 예방 전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중재 과정에 참여하는 평화 유지 계획자들의 가끔 행해지고 있는 관행은 표준화되어야 한다.

5. 핵, 방사능, 화학, 생물 무기

A. 우리가 직면한 위협

1) 핵무기

- 107.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핵무기를 사용하면 재앙적인 규모의 인명 피해와 경제적 혼란을 각오해야 한다.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과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잠재적인 사용을 막는 것은 집단 안보를 위한 시급한 우선순위여야 한다.
- 108. 핵 확산의 위협(국가 간 핵무기 확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즉각적인 우려는 현재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된 일부 국가가 전면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은밀히 불법적으로 개발하거나, 조약을 준수하고는 있지만 조약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일부 국가가 무기화를 진행할 준비가 된 시점에 조약을 탈퇴하면서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전문 지식을

손에 넣을 것이라는 점이다.

109. 두 번째 장기적인 우려는 조약 체제의 약화와 붕괴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현재 거의 60개국이 원자력 발전소나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거나 건설하고 있으며, 최소한 40개국은 조약 체제의 법적, 규범적 제약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산업 및 과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110. 2가지 우려는 이제 매우 현실적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과거처럼 효과적인 제약이 아니다. 핵무기 보유국이 불과 4개국뿐이었던 1963년에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15~25개의 핵무기 보유국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정부들은 그 수가 50개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4년 현재 8개 국가만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핵확산금지조약으로 구현된 강력한 비확산 체제는 예상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비확산 체제는 3가지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핵무기의 소유, 사용, 확산에 대한 규범적 금지를 강화했다. 비확산 체제는 국가들이 원자력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했지만 대신 감독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잠재적 경쟁국들의 능력을 우려하는 국가들을 안심시켜서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111. 하지만 핵확산금지체제는 현재 기존 약속의 미준수,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또는 탈퇴 위협,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위협에 처해 있다. 우리는 비확산 체제의 약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어 연쇄적인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
112. 핵 보유국 확산 문제와 상관없이 핵 및 방사능 물질의 대량 비축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도 있다. 오늘날 1,30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27개국의 연구용 원자로에 존재한다. 고농축 우라늄의 총 비축량은 훨씬 더 많으며 전 세계의 많은 고농축 우라늄 저장소가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20건의 핵 물질 전환 사례를 확인했으며 핵 물질 불법 밀매와 관련된 200건 이상의 사건이 기록되었다. 과학자들은 테러리스트들이 공개 시장에서 구입한 부품들을 이용해 두 수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충돌시키는 간단한 “총형” 핵무기를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간단한 핵무기가 대도시에서 폭발하면, 사망자수가 수만에서 100 만 명 이상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다. 국제 상거래, 고용, 여행에 미치는 충격은 적어도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공격은 국제 안보, 민주적 거버넌스, 시민권에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방사능 무기

113. 대량 파괴보다는 대규모 혼란을 초래하는 방사능 무기는 다른 위협을 가한다. 방사능 무기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방사성 물질을 이용할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의 경우 전 세계 의료 및 산업 시설에서 사용되는 수백만 개의 공급원이 있다. 방사능 폭탄

또는 “더러운” 폭탄의 즉각적인 파괴 효과는 기존의 폭발물만큼 크지만 이 폭탄의 방사선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의 경각심과 피해 지역에서의 대피와 오염 제거의 필요성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피해로 인해 더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방사능 물질이 아주 흔하고 방사능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허술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격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경보와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방사능 무기의 결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화학 및 생물 무기

114. 화학 및 생물학적 물질도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물질은 핵무기와 함께 한 번의 공격으로 대량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화학 약품은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비교적 쉽게 획득하고 무기화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6,000개의 산업용 화학 시설이 있고, 이러한 시설은 화학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잠재적인 목표물이 된다. 화학 무기 보유국들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화학 무기 폐기 일정에 뒤쳐져 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는 70,000메트릭톤(M/T)의 신고된 무기 중 불과 9,600메트릭톤(M/T)의 폐기를 확인했으며, 현재의 속도가 유지되면, 합의된 연장 기한인 2012년에도 화학 무기 전면 폐기라는 협약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115. 생명 공학 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과학적 진보는 많은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전망을 보여 주지만, 치명적인 새로운 질병의 발전 가능성도 증가시킨다. 재조합 DNA 기술의 극적인 발전과 직접적인 유전자 조작은 퇴치된 질병을 재구성하고, 기존 백신, 항생제, 기타 치료법에 저항하기 위해 개발할 수 있는 “설계자 질병”의 유령을 불러일으킨다. 생물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수많은 발효 시설, 의료 시설, 연구 시설이 있다. 한편 생물학적 독소 리신은 여러 테러리스트 작업장에서 발견되었다.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탄저균과 달리, 리신은 해독제가 없으며 핀 헤드 크기보다 적은 양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의도적으로 전염병을 발병시키기 위해 유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핵폭발보다 더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동일하게 치명적일 수 있다. 최악의 가정 하에서 무기화된 천연두 1g만을 사용한 공격으로 100,000명에서 1,000,000명 사이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116. 피해가 막대한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주할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예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B. 예방 과제 해결

117. 다층적 조치가 필요하다. 핵, 방사능, 생화학 무기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의 첫 번째 층위는 수요를 줄이는 국제적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 층위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무기, 물질, 무기 제조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작동하는 국제적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 층위는 신뢰할 수 있는 공유 정보 및 분석에 기반 한 안전보장이사회 집행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네 번째 층위는 국가적, 국제적 민간 및 공중 보건 방어를 포함해야 한다.

1)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전략 개선

118. 핵무기 보유국들의 빈약한 군축은 비확산 체제의 외교력을 약화시켜 확산을 억제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반대 약속에도 불구하고(결의안 984 (1995)), 핵무기 보유국들은 점점 더 불사용 보장(핵 선제 불사용원칙)을 약속하지 않으며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보복할 권리를 유지한다.

119.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국들은 군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엇갈린 성적을 올리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연방이 핵무기의 약 절반을 폐기하고 배치된 전략 탄두를 대폭 줄이고 대부분의 비전략 핵무기를 제거했지만, 이러한 진전은 최근 반전으로 가려졌다. 2000년에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 군축을 위한 13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약속했지만, 2005년 핵확산금지 조약에 대한 당사국들의 검토 회의를 위한 2004년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파기했다.

120. 핵무기 보유국은 군축을 재개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 제6조에 따른 군축을 위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고, 이행을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b) 핵무기 보유국들은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전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핵무기의 가치를 더욱 감소시키며, 확산을 멈추기 위해 강력한 국제 협력을 확보하고, 계류 중인 그리고 미래의 비핵지대협정에 대한 약속을 공식화해야 한다.

121. 미국과 러시아 연방, 기타 핵무기 보유국, 핵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전략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 일정을 포함하여 우발적인 핵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2. 또한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 공격이나 핵 공격 위협에 대응하여 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23. 핵 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이 제기한 핵확산금지체제에 대한 문제와 그 문제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군축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및 단계가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124. 핵 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비준하고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을 위한 협상을 지원함으로써 확산 금지 및 군축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 두 조약 모두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에 동일하게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아프리카, 남태평양 및 동남아시아에 설정한 비핵지대와 유사한 비핵지대를 중동과 남아시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핵 군축 협상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125. 생화학 무기의 경우 신고된 모든 화학 무기 비축량을 전면 폐기할 의무와 역사적인 기회가 모두 있다. 모든 화학 무기 보유국은 합의된 목표 기한인 2012년까지 기존의 모든 화학 무기 비축량의 폐기 일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126.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검증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의 검증 메커니즘에 대한 오랜 교착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당사국은 지체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프로토콜을 위한 협상에 복귀하여 생명 공학 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및 화학무기금지협약의 당사국은 회원 자격을 보편화하기 위해 양자간 외교적 압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2) 공급을 줄이기 위한 전략 개선

127. 우리는 많은 관점에서 원자력이 민간용 중요 동력원이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맥락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확산금지체제를 달성하려는 목표와 핵확산금지조약의 서명국들이 민간 원자력 산업을 개발할 권리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을 완화하고 해소해야 한다.
128. 핵확산금지조약 제4조는 당사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 원자력을 연구, 생산,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 권리는 보존되어야 한다. 조약은 또한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권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무도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이 2가지 과정은 조약 서명국이 조약에 부합하지 않고, 핵무기 발전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활동을 비밀리에 추구할 수 있는(어떤 경우에는 이미 추구한) 경로를 제공한다.
129. 2가지 해결책이 필요하다. 첫째, 1990년대에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존 검사 및 검증 규칙이 점차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표준 추가의정서에서 보다 엄격한 검사 규칙을 마련했지만, 아직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의 1/3만이 의정서를 비준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표준 추가의정서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위한 오늘날의 표준으로 인식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는 확산금지 및 안전조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130. 둘째,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민간용 핵분열 물질 공급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제원자력기구 법령 제3조 및 제9조의 기존 조항에 근거하여 협상이 지체 없이 진행 되어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는 기구가 승인한 공급 업체를 통해 저농축 우라늄의 핵연료 공급 및 시장 시세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당 시설에서 안전조치 또는 검사 절차의 위반이 없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131. 이 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는 해당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현재 공급 업체가 시장 가격으로 핵분열 물질을 공급한다는 보장과 일치하는 유예 약속과 함께 추가 농축 또는 재처리 시설의 건설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한부 유예를 시행해야 한다.
132. A.Q.Khan 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최근 경험은 핵 프로그램 부품의 은밀한 불법 거래에 대한 금지 조치의 필요성과 가치를 입증했다. 현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모든 국가를 장려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133. 핵, 생물, 화학 무기 및 물질의 불법 밀매에 대한 국제 법률 조항을 강화하고, 1988년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방지협약을 수정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진행 중인 협상들은 적시에 완료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협약에 관한 협상이 만족스럽게 진척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134. 핵 확산금지조약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지만, 국가들이 탈퇴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탈퇴국은 조약의 당사국일 때 저지른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정 국가가 핵 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통보하면 필요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조약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위반 시 국제원자력기구가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결의해야 한다.
135. 테러리스트가 핵, 방사능,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단기적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을 통합하고, 보안 조치를 취하며, 가능한 경우 폐기하고 효과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a) 전세계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감축, (b) 고농축 우라늄 연구용 원자로를 “확산 방지” 원자로 전환, (c) 기존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 등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적 위협감축계획을 환영하는 바이다. 지구적 위협감축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제안된 일정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
136. 결의안 1540(2004)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보안, 추적, 불법화, 수출 통제를 위한 국가 표준 입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2006년까지 유엔 회원국 이행을 위한 최소 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안 1540(2004)의 실행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 화학무기금지기구, 원자력공급국그룹과 상설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137.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의 당사국은 또한 위험한 생물작용제를 분류하고 이러한 약제의 수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생물보안 의정서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협약 당사국은 비회원국과 그러한 생명 공학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138.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은 방사능 선원을 찾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군축회의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비무기 및 무기 목적을 위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종료하는 검증 가능한 핵분열물질생산금지 조약을 협상하기 위해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한다.

3) 집행 역량 개선

139. 오늘날 안전보장이사회는 확산금지협정을 집행하기 위한 제재와 군사력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더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특별 회부는 회부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잠재적인 확산 사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140.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화학무기금지기구, 안전보장이사회 간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안전조치와 검증 과정의 현황과 핵확산금지조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실제 위반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심각한 우려 사항에 대해 2년마다 보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41.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및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역량을 활용하여 핵 및 화학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 역량을 배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다자간 협상이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의 검증 메커니즘을 산출할 때까지,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직원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해야 하는 생물 무기 조사관에 대한 사무총장의 명단을 활용해야 한다. 이 명단의 조사관들은 또한 아래에 논의되듯이 의심스러운 질병 발생 시 이사회에 조언하고 WHO 당국과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중 보건 방어 개선

142. 생명 공학의 과학적 진보와 생물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편재성은 생물학적 무기의 제거에 대한 전망을 제한하고 검증 노력을 복잡하게 한다. 하지만 핵무기와 달리, 대부분의 (전부는 아니지만) 생물작용제의 경우 백신과 효과적인 대응(신속한 진단, 격리, 치료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잘 준비된 사회는 최악의 생물학적 공격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

143. 하지만 현재 전염병 모니터링, 탐지, 대응을 위한 국제적 지원은 부족하고, 보안 계획 및 지출은 보건 정책 및 예산과 잘 조율되지 않으며, 불가피하고 새로운 생물학적 미래로 인해 적극적인 생물 방어가 공격 가능성에 대처하는 가장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144. 전염성 생물작용제의 고의적인 방출이나 전염성 질병의 압도적인 자연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인 국제 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의심스럽거나 압도적인 전염병 발생 시 WHO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염병 발생 시 안전보장이사회는 WHO 조사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전문가를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의 국제 보건 규정으로 인해 WHO 조사 및 대응을 위한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특별 명령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가 다수의 잠재적 보균자를 적절하게 격리할 수 없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차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WHO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의심스럽거나 압도적인 전염병 발생 시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6. 테러

A. 우리가 직면한 위협

145. 테러 행위는 유엔 헌장의 핵심 가치인 인권 존중, 법치, 민간인을 보호하는 전쟁 규칙, 민족과 국가 간의 관용,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공격한다. 테러 행위는 절망, 굴욕, 빈곤, 정치적 억압, 극단주의, 인권 유린의 환경에서 번성한다. 또한 지역 분쟁과 외세 강점의 환경에서 번성한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역량이 취약한 환경에서 번성한다.
146. 보다 긴박한 테러 위협을 조장하는 2가지 새로운 흐름이 있다. 알카에다는 국제적 활동 범위와 정교한 능력을 갖춘 무장된 비국가 네트워크의 첫 번째(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례이다. 지난 5년 동안 4개 대륙에서 10개 이상의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알카에다와 관련 조직이 유엔과 유엔 회원국에 보편적 위협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공개 성명에서 알카에다는 유엔을 목표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 간주하고 적으로 규정했다. 둘째, 유형과 동기가 어떻든 테러리스트가 대량 사상자를 내려는 위협은 전혀 없는 위협을 초래한다. 핵, 방사능, 화학, 생물 물질의 공급을 통제하고 강력한 국제적 공중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앞서 제시된 권고 사항들은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B. 예방 과제 해결

1) 포괄적 전략

147. 패널의 지역 협의를 통해 일부 사례에서 현재의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리스트가 목표로 삼는 바로 그 가치인 인권과 법치를 약화시켰다는 정부 및 시민 사회 단체의 우려를 들었다. 이러한 우려를 표명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테러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반문하지 않았지만, 생명권이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적으로 군사, 경찰, 정보기관의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테러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좋은 거버넌스와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을 소외시켜 테러에 대한 집단행동의 잠재성을 약화시킨다는 두려움을 표명했다. 테러리스트의 발원지 국가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당 국가의 역량뿐만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 의지이다. 이러한 의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국민의 반대보다는 지지를 끌어내면서 보다 광범위한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148. 이러한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국가의 책임, 법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글로벌 대테러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강압적인 조치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통합 전략이다. 유엔은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a) 사회적, 정치적 권리, 법치 및 민주적 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테러의 원인 또는 촉진 요인을 역전시키기 위한 설득, 강점을 종식시키고 주요 정치적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설득,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설득, 빈곤 및 실업 감소를 위한 설득,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한 설득.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앞서 논의한 모든 전략은 테러의 원인 또는 촉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서 2차적인 이점이 있다.
- (b) 교육 및 공개 토론 장려를 포함하여 극단주의와 무관용에 맞서기 위한 노력. 유엔개발계획의 최근 혁신 중 하나인 아랍 인간개발보고서는 젠더 권한 부여, 정치적 자유, 법치, 시민 자유의 필요성에 대한 중동 내 광범위한 논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 (c) 법 집행 분야를 포함하여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법률 체계 내에서 글로벌 대테러 협력을 위한 보다 나은 도구 개발, 가능한 경우 정보 공유, 필요한 경우 거부 및 금지, 금융 통제.
- (d) 테러리스트 모집 및 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역량 구축.
- (e) 위험 물질 통제 및 공중 보건 방어.

2) 대테러 수단 개선

149. 몇몇 유엔 대테러 협약은 중요한 규범적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국가가 협약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협약을 비준하는 모든 국가가 내부 집행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테러리스트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충분하지 못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3개월 동안 테러리스트 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1,200만 달러가 동결되었지만, 이후 2년 동안 불과 2,400만 달러만 동결되었다. 압류된 자금은 테러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자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많은 국가가 자금세탁방지법과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반면, 테러리스트의 회피 기술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많은 테러 자금이 합법적이며 규제하기 어렵다.

150.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은 12개의 국제 대테러 협약에 모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8가지 특별 권고안(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가 지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양한 모범 사례 문서에서 권고된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
151. 안전보장이사회는 대테러 전략의 빈틈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초부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의 테러 지원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테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2년부터 안전보장이사회는 1999년과 2000년에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탈레반 등 테러를 지지하는 개인과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기 대응은 빠르고 인상적이었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73(2001)은 모든 국가에 일관되고, 의무적인 대테러 의무를 부과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국가에 대한 기술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대테러위원회를 설치했다.
152.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는 신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단체 또는 개인이 이사회가 관리하는 테러리스트 목록에 추가되는 방식과 목록에 포함된 대상에 대한 검토 또는 항의의 부재는 심각한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기본적인 인권 규범 및 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 제재 위원회는 감시 목록에 잘못 배치되거나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및 기관의 사례를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153.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대테러위원회의 업무는 일부 국가의 테러 지원을 중단시키고 테러와의 전쟁에 다른 국가를 동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알카에다와 탈레반에 대한 이사회회의 제재는 회원국들의 지원과 이행이 지지부진하고 알려진 알카에다 요원들 중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당수 국가는 대테러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는 데 있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침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테러 대응 국가에 대한 지원

154. 유엔이 마련한 지원은 기술 지원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테러 활동에 대한 운영 지원을 원하는 국가는 양자간 지원을 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러한 지원을 촉진하는 유엔의 역량은 어떤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 제약을 완화하는데, 이는 국내 대테러 역량 개발을 위해 국가 간

군사, 경찰, 국경 통제를 지원하는 정보 처리 기관인 대테러사무국을 설립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피해 국가와 협의한 후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테러사무국의 권한을 확장해야 한다.

155. 불이행은 의지 부족의 문제일 수 있지만, 역량 부족일 경우가 더 많다. 유엔 회원국과 전문가들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법률, 행정, 경찰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은 대테러사무국 산하에 역량강화신탁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156.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이행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으며, 국가의 불이행에 대해 미리 정해진 제재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4) 테러 정의하기

157.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유엔의 능력은 회원국들이 테러의 정의를 포함하여 대테러 협약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한되었다. 이로써 유엔은 도덕적 권위를 행사할 수 없고 대의명분을 아무리 옹호할지라도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전술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낼 수 없다.
158. 1945년 이후 유엔 헌장, 제네바 협약,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 규정을 포함하여 더욱 강력한 규범과 법률이 무력을 사용하기로 한 국가의 결정과 전쟁에서(예를 들어, 전투병과 민간인을 구별하고, 비례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며, 기본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국가의 행위를 규제하고 제한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은 계속해서 광범위한 비난을 받아야 하며 전쟁 범죄는 기소되어야 한다.
159. 비국가 행위자들의 무력 사용을 통제하는 규범은 국가와 관련된 규범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이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법적으로 사실상 모든 형태의 테러는 12개의 국제 대테러 협약, 국제관습법, 제네바 협약 또는 로마 규정 중 하나에 의해 금지된다. 법학자들은 이를 알고 있지만, 이 산재한 협약 목록,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조약의 조항들, 누구나 이해하는 테러 문제를 억제하는 강력한 규범적 체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유엔은 국가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와 같이 비국가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규범적 힘을 가져야 한다. 명확하고 잘 알려진 정의에 대해 동의하지 못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규범적, 도덕적 입장이 약화되고 유엔 이미지가 손상되었다. 명확한 정의를 포함하여 테러에 대한 포괄적인 협약을 달성하는 것은 정치적 의무이다.
160. 정의에 동의하는 데는 보통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정의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군대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국가 위반에 대한 법적, 규범적 틀이 비국가 행위자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믿으며 이 반대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반대는 외세 강점 하에 있는 사람들은 저항권이 있으며 테러의 정의가 이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부는 저항권에 대해 논쟁을 벌이지만, 이것이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강점에 있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살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없다는 점이다.

161. 이러한 반대의 어느 쪽도 국가의 무력 사용을 둘러싼 유엔의 강력하고 명확한 규범적 틀이 비국가의 무력 사용을 둘러싼 동등한 권위의 규범적 틀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특히 무고한 민간인과 비전투병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은 모두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비난받아야 한다.
162. 우리는 최근 테러와의 전쟁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포함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66(2004)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1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범적 관점에서 정의의 고유한 정당성을 고려할 때 총회에서 정의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특별한 가치가 있으며, 포괄적인 테러 협약에 대한 협상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고 믿는다.
164. 테러의 정의는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a) 서문에서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무력 사용은 제네바 협약 및 기타 문서에 따라 규제되며, 규모가 클 경우 관련자에 의한 전쟁 범죄 또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
 - (b) 상기의 12개 대테러 협약에 따른 행위는 테러라는 점을 재진술, 그러한 행위는 국제법에 따라 범죄라는 점을 선언, 무력 분쟁 시 테러는 제네바 협약 및 의정서에 의해 금지된다는 점을 재진술.
 - (c) 1999년 테러 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66(2004)에 포함된 정의들을 참조.
 - (d) 테러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술, “테러에 관한 기존 협약, 즉 제네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66(2004)에 이미 명시된 행위에 추가하여, 민간인이나 비전투병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 그러한 행위의 목적이 그 성격이나 맥락에 따라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또는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의 모든 행위.”

7. 초국가적 조직범죄

A. 우리가 직면한 위협

165. 초국가적 조직범죄는 인간 안보와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약화시켜 국가와 사회에 위협이 된다. 조직범죄와의 전쟁은 국가와 인간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줄이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내부 분쟁을 예방 및 해소하고, 무기 확산을 억제 하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166. 조직화된 범죄 집단의 핵심 활동 중 하나인 마약 밀매는 보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범죄 조직은 단일 최대 소득원인 마약 거래로 매년 3천~5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창출된 막대한 수익이 일부 국가의 GDP와 견줄 수 있을 정도여서 국가 권위, 경제 개발, 법치에 위협이 되고 있다. 마약 밀매로 인해 정맥 내 헤로인 주입이 증가 했고, 이는 일부 지역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놀라운 확산에 기여했다. 테러리스트 단체의 자금 조달과 아편 판매 수익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아프가니스탄이다.
167. 국가와 국제기구는 조직범죄와 부패의 위협에 너무 느리게 대응했다. 위협이 심각하다는 표현과 행동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대응을 방해하는 3가지 기본 장애물은 국가 간 협력 부족, 국제기구 간 조율 부족, 많은 국가의 이행 부족이다.
168. 조직범죄에 대한 대처 효과는 다양하다. 반부패 노력은 부패의 유형, 수준, 위치, 비용에 대한 이해와 헌신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마약 공급을 억제하려는 노력에서 일부 국가의 성공은 종종 다른 국가의 실패로 상쇄된다. 선진국의 마약 수요 감소 계획은 유사하게 효과가 없었으며, 아편 및 헤로인 사용자의 총 수는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169. 분쟁 중 및 분쟁 후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은 분권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전후시기에 이전 교전 당사국들은 전쟁 중에 획득된 범죄 관계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제 평화 구축 노력을 약화 시키려고 한다. 뿌리 깊은 부패, 범죄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폭력 행사, 범죄 기업과 정치 엘리트 간의 유착은 법치 및 효과적인 국가 기관의 확립을 방해한다. 무기 밀매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부족했고 제재 조치는 충분히 집행되지 않았다.
170. 조직범죄는 형식적인 위계보다는 유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점점 더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조직에서 범죄자들은 다양하고 유연하며 표시 나지 않게 장기간 활동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연결은 1990년대 조직범죄 세계의 주요 특징이 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민첩성은 국가의 경우 번거로운 정보 공유,

범죄 수사 및 기소에서의 협력 부족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B. 예방 과제 해결

171. 조직범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국제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법치 영역에서 국가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

1) 국제 규제 체계 개선

172. 최근의 여러 국제 협약은 국가들을 보다 빠르고 긴밀히 협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은 당사국들의 부족한 이행과 준수로 어려움을 겪는다. 회원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입법적, 제도적 결함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조직범죄에 대한 집단적 대응은 국제 조약 체계의 강화와 공고화에 달려 있다. 유엔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2000년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협약, 3개의 의정서,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에 아직 서명 또는 비준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협약 및 의정서의 모니터링 조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협약 및 의정서에 서명, 비준하지 않았거나 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회원국은 그렇게 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은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를 지원해야 한다.

173. 조직화된 범죄 집단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며, 법적 협력을 방해한다. 회원국은 국가 사법 기관 간의 증거 교환, 검찰 기관 간의 상호 법적 지원, 범죄인 인도 요청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앙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174. 테러리스트와는 달리 범죄자들은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다. 조직범죄를 약화시키는 최선의 전략은 자금 세탁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초국가적 조직범죄는 연간 약 5천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며 일부는 이 금액의 3배를 추정한다. 2000년에 5천억~1조 5천억 달러가 세탁되었다. 이러한 금액의 규모와 조직범죄를 촉진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돈세탁을 규제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은행의 비밀 유지와 금융 피난처의 급속한 발전은 문제 해결에 여전히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총회는 자금 세탁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승인해야 한다.

175. 조직범죄의 가장 추잡한 형태는 인신매매이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막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원국은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 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하며, 의정서 당사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6. 유엔은 발생지, 경유지, 목적지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인신 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국제법 집행 기관 간의 기술 협력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 특히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며, 여성과 아동을 지원할 특정 전략을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인신 매매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국가 역량 강화 및 개선

177. 이행이 지연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제한된 국가 능력의 기능이기도 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기구 중 가장 대표적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효과적인 국가의 법 집행 및 사법 기관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유엔은 법치 지원을 위한 강력한 역량 강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조직과 다국적 금융 기관은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8. 제재의 역할

178.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는 데 있어 제재는 불완전하지만 필수적인 수단이다. 국가, 개인, 반군 단체가 국제 규범을 위반할 때, 그리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규범을 약화시키거나 다른 위반자들을 대담하게 만들거나 동의로 해석되는 경우, 제재는 전쟁과 말 사이에 필요한 타협안이 된다.

179. 표적 제재(금융, 여행, 항공 또는 무기 금수조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최소화하면서 지도자와 엘리트에게 압력을 가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다른 옵션에 대해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을 제공하며, 특정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국제 표준 및 법률 위반자를 격리함으로써 약간의 제재 조치(스포츠 금수 조치 포함)조차도 중요한 상징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제재의 위협은 강력한 억제 및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다.

180.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a)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양질의 심층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b)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는 국가의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표적 제재 대상인 개인 및 단체의 정확한 명단을 유지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 및 보고 절차를 개발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c) 사무총장은 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제재 이행의 조율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분석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자원을 가진 고위 관리를 임명해야 한다. 이 관리는 이행 노력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다. 기술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그러한 지원을

조율한다.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정에 대해 권고한다.

- (d) 공여국은 회원국의 제재 이행을 위해 법적, 행정적, 치안 및 국경 통제 능력 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 강화 조치에는 분쟁 지역에서 항공 교통 차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e)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성적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 불복 사례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해야 한다.
- (f)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하여 제재 행정을 감독할 적절한 감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181. 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제재의 인도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로 인한 인도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182. 개인 또는 단체의 목록이 제재에 포함되는 경우, 제재위원회는 목록에 잘못 포함되거나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검토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3부: 집단 안보와 무력 사용

개요

평화적 예방이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예방 조치가 전쟁과 혼돈을 막지 못한다면? 먼 위협이 임박하게 되면? 또는 임박한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또는 임박하지 않은 위협이 매우 현실화되고 군사력 사용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정부 상태가 아닌 경우의 참전 결정을 통제해야 하는 국제법의 규칙부터 시작해서 효과적인 집단 안보를 위해 군사력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다룬다. 국가가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상황, 국가가 국경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 위협이 주로 내부적이고 문제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관련된 상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유엔 헌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현상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51조는 오랫동안 이해된 범위의 확장도 제한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제7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협을 다룰 수 있도록 완전한 권한을 부여한다. 임무는 권한의 원천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가진 것보다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무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양심과 양식의 문제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및 이러한 결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가 군사력을 승인할지 또는 적용할지를 고려할 때 항상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지침(5가지 정당성 기준)을 확인한다. 이러한 지침(위협의 심각성, 정당한 목적, 최후의 수단, 비례적 수단, 결과의 균형)의 채택은 버튼식 예측 가능성으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분열적이었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평화 집행,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포함하여 폭력 분쟁 중에 그리고 후에 발생하는 기타 주요 문제를 다룬다. 되풀이되는 중심 주제는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동원 가능한 군사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데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의상 하는 행동은 너무나 쉽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집단 안보 시스템은 진정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9. 무력 사용: 규칙 및 지침

183. 유엔 헌장의 입안자들은 “평화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 침해 행위의 억제”를 위해 무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적용되는 군사력은 전통적인 협의로 정의되든 우리가 선호하는 더 광의로 정의되든 실행 가능한 집단 안보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군사력을 개별 사례에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에 관한 원칙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더 많은 이해 관계와 관련되는 현대 정책 문제는 거의 없다.
184.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유지는 무력 사용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국제적 이해와 수용에 중요하게 좌우된다. 이 중 하나만 충족되고 다른 하나가 배제되면 항상 국제 법적 질서가 악화되어 국가와 인간 안보가 더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

A. 합법성 문제

185. 유엔 헌장 제2.4조는 회원국들이 서로에 대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지 2가지 예외 사항만 허용한다. 제51조에 따른 자기 방어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 위반 또는 침략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제7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그리고 제8장에 따른 지역 기구)가 승인한 군사 조치.
186. 유엔의 초기 44년 동안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화되면서 제7장의 결의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못하고 제51조는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회원국은 종종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고 말 그대로 수백 번 군사력을 사용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법치에 따른 국제 체제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안보가 힘의 균형에 의해 또는 선의의 초강대국에 의해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국제사회의 수용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187. 하지만 헌장의 언어를 적용하려는 노력에서 실제로 3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국가가 압박하지 않은 위협에 대응하여 자기 방어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공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둘째, 한 국가가 다른 국가나 국경 밖의 사람들에게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외부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처 방식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셋째, 위협이 주로 내부, 즉 자국민에게 가해지는 경우.

1) 유엔 헌장 제51조와 자기 방어

188. 제51조의 언어는 제한적이다.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본 헌장의 어떠한 내용도 고유한 개인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무력화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오랫동안 확립된 국제법에 따르면 위협받는

국가는 공격이 임박한 경우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어떤 수단도 이를 막지 못하며, 행동은 비례적이다. 문제는 해당 위협이 임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재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위 적대적 의도로 핵무기 제조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189.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고, 예측적 자기 방어 차원에서 선제적(임박하거나 근접한 위협에 대해)일본만 아니라 예방적(임박하지 않거나 근접하지 않은 위협에 대해)으로 행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부 위협(예: 핵무기로 무장한 테러리스트)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위협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조기에 행동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예: 쌍방의 핵 공격 또는 원자로 파괴로 인한 방사능 낙진의 예방)고 주장한다.
190. 짧게 대답하자면 예방적 군사 조치를 위한 좋은 주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있다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택된다면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설득, 협상, 제지, 봉쇄를 포함한 다른 전략을 추구할 시간과 다시 군사 옵션을 고려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191. 이러한 대응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세계 질서와 세계 질서가 기반하고 있는 불간섭의 규범에 미치는 위협이 집단적으로 승인된 조치와 구별되는 일방적 예방 조치의 합법성을 수용하는 것에 비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국가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192. 우리는 제51조의 재작성 또는 재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2) 유엔 헌장 제7장과 외부 위협

193. 다른 국가, 국경 밖의 사람들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국제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의 경우, 제7장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충분히 광범위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회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강압적인 조치를 승인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게 해석되었다. 문제는 위협이 지금, 또는 임박한 미래에, 또는 더 먼 미래에 발생하는지 여부, 위협이 국가 자체의 행위와 관련되거나 국가가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비국가 행위자의 행위와 관련되는지 여부, 또는 위협이 작위나 부작위의 형태를 취하는지, 실제적 또는 잠재적 폭력 행위의 형태를 취하는지 또는 단순히 이사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형태를 취하는지 여부이다.
194. 우리는 제51조에 따른 자기 방어의 경우 예방적 군사력 사용의 합법성에 대해 우리가 표명한 우려는 제7장에 따라 승인된 집단적 조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21세기의 세계에서 국제사회는 테러리스트, 대량 살상 무기, 무책임한 국가 등을 결합한 악몽 같은

시나리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더욱이 이 시나리오는 잠재된 위협이 임박하기 전에 단순히 대응적이지 아니라 예방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집단 안보 목소리로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회는 과거보다 더 일찍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195. 합법성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러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함 또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위협의 실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역량과 특정 의도를 모두 고려)가 있는지 여부와 이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196. 일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집단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항상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엔이 효과적인 집단 안보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냉전 시대에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법적 준수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아졌다.
197. 국가들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우회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 결정의 질과 객관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결정은 종종 일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떨어지며, 매우 실제적인 국가 및 인간 안보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사회를 무기력하고 무용지물로 치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해결책은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포함하여 내부에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198.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국가들이 우려하는 모든 범위의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 받았다. 임무는 권한의 원천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가진 것보다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3) 유엔 헌장 제7장, 내부 위협, 보호 책임

199. 유엔 헌장은 대량학살의 상황에서 국가 내 인명 구조에 관해 명시적이지 않다. 유엔 헌장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지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제2.7조는 “본질적으로 어떤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는 인간이 만든 재앙에 “개입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제7장에 따른 “국제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주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 조치를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다.
200. 대량 학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대량학살방지 협약)에 따라, 국가들은 평화시나

전시에 저지른 대량 학살이 방지되고 처벌받아야 할 국제법상의 범죄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후 어디서든 집단 학살은 모든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었다. 내정 불간섭 원칙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대규모 위반 또는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정당하게 간주되어 이를테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인종 청소와 같은 대량 학살 행위 또는 기타 잔혹 행위를 옹호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01. 소말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르완다, 코소보, 현재 수단 다르푸르에서 계속되는 인도주의적 재난으로 인해 주권 정부의 면책이 아니라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부각되었다. 이 문제는 어느 국가의 “개입할 권리”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재앙(대량 살인 및 강간, 강제 추방과 테러를 통한 인종 청소, 고의적으로 유발된 기아, 질병 노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국가의 “보호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자국 시민을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이 주권 정부에 있지만, 그럴 능력 또는 의지가 정부에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책임(폭력 예방 및 방지, 필요한 경우 무너진 사회의 재건)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재 및 기타 수단을 통해 폭력을 중단시키는 것과 인도주의, 인권, 경찰 파견단의 파견과 같은 조치를 통해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무력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202. 지금까지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사건의 대처에서 그다지 일관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았으며, 너무 늦거나, 너무 주저하거나, 심지어 전혀 행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 사회와 국제사회는 제7장에 따라 그리고 국제적인 집단적 보호 책임이라는 새로운 규범에 따라, 정황상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재앙적인 내부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항상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되었다.
203. 우리는 집단 학살 및 기타 대량 학살, 인종 청소 또는 주권 정부가 무력하거나 의지가 없어서 예방하지 못하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 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집단적 보호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규범을 지지한다.

B. 정당성 문제

204. 다른 법적 질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집단 안보 시스템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결정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달려 있다. 결정은 증거가 될 수 있는 확고한 근거에 기반해서 타당한 이유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5. 안전보장이사회가 집단 안보 시스템의 주요 기구로서 갖춰야 할 존경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결정, 즉 삶과 죽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더 잘 내리고, 더 잘 입증하고,

더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력 사용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회는 합의된 일련의 지침을 채택하고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바로 무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양심과 선의의 문제인지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

206. 우리가 제안하는 지침은 버튼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을 채택하는 요점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최상의 결과가 항상 우세할 거라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요점은 무력을 포함한 강압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합의를 이를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 결정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개별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우회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207.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거나 지지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고려 사항이 무엇이든 항상 최소한 다음의 5가지 기본 정당성 기준을 다루어야 한다.

- (a) 위협의 심각성. 국가나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군사력의 사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명확하고 심각한 것인가? 내부 위협의 경우 집단 학살 및 기타 대량 학살, 인종 청소 혹은 실제로 또는 즉시 파악되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해당되는가?
- (b) 정당한 목적.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무엇이든 제안된 군사 행동의 주된 목적이 문제의 위협을 중지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분명한가?
- (c) 최후의 수단. 다른 조치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비군사적 옵션을 검토했는가?
- (d) 비례적 수단. 제안된 군사 조치의 규모, 기간, 강도가 문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 (e) 결과의 균형. 합리적인 선에서 군사 조치가 문제의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조치의 결과가 무조치의 결과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208. 상기의 무력 사용 승인 지침은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선언적 결의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209. 또한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든 아니든 개별 회원국이 해당 지침을 지지했다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10. 평화 집행 및 평화 유지 능력

210.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을 승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이 든다. 최근 몇 년 동안 평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군사력을 승인하는 결정은 주로 다국적군에게 해당되었다. 유엔 유니폼을 입고 유엔의 직할 하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군대가 승인되면 평화 협정 이행 또는 전투 후 휴전선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자주 배치되었다.
211. 평화 유지 임무를 “제6장의 활동”으로, 평화 집행 임무를 “제7장의 활동(각각 동의 기반 또는 강제 기반을 의미)”으로 지칭하는 경향으로 인해 필요한 능력에 대한 논의가 혼란스러워졌다. 이러한 약칭은 종종 자기 방어 이외의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임무와 사용하는 임무를 구별하는 데 사용된다.
212. 두 임무 모두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강력한 무력 사용이 처음부터 임무에 필수적인 활동(예: 국경 침략 또는 연쇄적 폭력에 대한 대응, 최근 관행은 다국적군 투입)과 무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활동(예: 휴전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전통적인 평화 유지 임무 또는 평화유지군이 여전히 표준인 곳에서 평화 협정 이행을 지원하는 임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213. 하지만 두 종류의 활동 모두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며(제51조 자기 방어의 경우는 제외), 평화유지의 경우 평화강제의 경우만큼이나 현재 제7장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비록 파병국이 항상 환영하지는 않아도)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는 평화 협정을 약화시키고 민간인을 위협에 빠뜨리는 방해 세력이 출현하는 경우, 심지어 가장 양호한 환경도 심각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시 임무의 무력 대응 능력에 전적인 확신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반면에 제6장과 제7장 명령의 차이는 과장될 수 있다. 제6장에 따른 평화 유지군 활동(따라서 집행 권한이 없는 활동)은 자기 방어 시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권리는 “임무 방어”로 확장되어 폭넓게 이해된다.
214. 역할과 구성이 어떻든 무력을 배치할 때 진정한 문제는 (a)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변화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명확하며 숙지된 임무와 (b) 그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15. 본격적인 평화강제 임무와 평화유지 임무 모두에 대한 인력 수요는 준비된 공급보다 여전히 높다. 2004년 말 전 세계 16개 임무에 60,000명 이상의 평화 유지군이 배치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여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계속된다면, 필요한 평화 유지군의 수가 곧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상응해서 가용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1990년대 최악의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216. 많은 국가의 군대가 냉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제복을 입은 군대의 10% 미만이 특정 시간에 적극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사실과 가용 군대를 이동시키고 공급하기에 충분한 운송 및 물류 능력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현재 전세계의 총 인력 공급은 제한적이다. 평화유지 및 극단적인 경우 평화강제가 지속적으로 집단 안보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 유지군의 가용성이 증가해야 한다. 선진국은 여기에 특별한 책임이 있으며, 기존의 가용 병력을 평화 활동에 적합한 파견대로 전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217. 오늘날의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평화유지 및 법 집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를 신속하게 배치하는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 또는 지역적 항공 또는 해상 수송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유엔이 이러한 능력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변제하도록 협상된 수수료 기반 구조에 따라 또는 무료로 유엔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8. 회원국은 효과적인 배치에 필수적인 빠듯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전략 배치 비축량, 상비 조치, 신탁 기금, 기타 메커니즘의 사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엔 평화 활동 패널(A/55/305-S/2000/809 참조)의 중요한 업무에 기반한 유엔사무국 산하 평화유지활동국의 활동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
219. 하지만 유엔 메커니즘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유엔 임무를 강화할 수 있는 고도의 비상대기 태세를 갖춘 자급 자족 대대를 창설하기로 한 유럽 연합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고급 군사 능력을 갖춘 대대를 여단 수준으로 발전시켜서 유엔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협력

220.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지역 및 하위 지역에 기반해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는 평화 유지군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군이 요청될 때 유엔의 대응 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증가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지역 기구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서로의 활동을 상호 지원하고 지역 활동이 보편적으로 수용된 인권 기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는 아래 4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1. 분쟁 후 평화 구축

A. 평화 유지군의 역할

221. 과거의 적들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분쟁 후 자신의 삶과 지역 사회를 재건하려는 보통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종종 필요하다. 평화 협정의 중재와 성공적인 이행은 많은 전쟁 피해국에 만연한 오랜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희망을 제공한다. 평화 협정 이행과 평화 구축에 투입되는 자원은 분쟁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이다. 내전을 경험한 국가는 재발 위험이 높다.
222.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 협정을 이행하는 것은 평화 유지군에게 독특한 과제를 제기한다. 국가 간 전쟁과는 달리 내전에서 평화를 조성하려면 어려운 안보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방해 세력, 즉 평화 협정을 자신의 이익, 권력 또는 이념에 불리한 것으로 보는 분파들은 폭력을 사용하여 정착지를 훼손하거나 전복시킨다. 예를 들어 르완다와 시에라리온에서 1990년대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듯이 자원과 전략이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평화 유지는 실패한다. 평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평화 유지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방해 세력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적대적인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계획은 임무 설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침략에 대응할 병력을 보유하지 않은 임무는 비상 계획을 요청할 것이다. 일부 상황에서 평화 협정에 대한 반대는 전술적이지 않고 근본적이다.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대규모 인권 유린에 가담하거나 조장하는 정부 또는 반군의 평화 협정은 가치가 없으며 이행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동의에 기반한 평화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공동 조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적대적인 분파들을 억제하고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권고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223. 대부분의 평화 유지 상황은 또한 치안 유지 활동, 기타 법률, 질서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찰 파견대의 배치가 늦어지면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유엔은 임무 평가를 수행하고 평화 활동을 위한 신규 경찰 인력을 조직할 수 있는 고위 경찰관 및 관리자(50-100명)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을 보유해야 하며 총회는 이 조직을 승인해야 한다.

B. 평화 구축 임무의 확대

224. 평화강제군 및 평화유지군의 배치는 분쟁 종식에 반드시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복구에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 구축의 장기적인 과정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중요하다. 평화 구축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으면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5. 내전이 발발하기 전과 전시에서 벗어나고 있는 과도기에 유엔이나 국제 금융 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평화를 구축하려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잘 조직되어 있지 않다. 평화 유지군이 국가를 떠나면 해당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경제사회이사회가 특정 사례를 다루기 위해 여러 임시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결과는 엇갈린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위원회의 지지자들조차 취약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을 산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필요한 것은 평화 구축에 전념하고, 위협에 처한 국가를 모니터링 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공여국, 기관, 프로그램, 금융 기관의 공동 조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재정 자원을 동원할 권한이 있는 정부 간 기관이다. 이러한 요구는 아래 4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26. 이와 유사하게, 현장 수준에서 유엔 시스템과 국제사회의 서로 다른 많은 요소들이 어떤 형태의 평화 구축에 참여하지만, 너무 느리고 적절한 조율 없이 작동한다. 효과적인 조율이 중요하다. 국가 당국은 이러한 조율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일관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정부, 양자 공여국, 국제 금융 기구와 유엔 기금, 프로그램, 기관을 대표하는 유엔 조정관(사무총장의 특별 대표 또는 상주조정관)을 포함하는 강력한 현지 공여국 조정 메커니즘이 효과적인 평화 구축을 보장하는 데 그 가치를 입증했다. 특별 대표는 유엔의 평가 및 활동의 순서가 정부 우선순위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율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뿐만 아니라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협력할 권한과 지침을 가져야 한다.
227. 많은 평화 활동이 자원 부족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투병 동원 해제는 평화 활동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동원 해제 없이는 내전이 종식될 수 없으며, 민주화, 정의, 개발과 같은 다른 중요한 목표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동원 해제는 자금 제공자들이 합의한 우선순위는 아니다. 평화 활동이 시작되면 전투병의 동원 해제 및 무장 해제를 수행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성공적인 평화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이다. 이러한 임무는 임무 책임자의 권한 하에 평화유지활동 의무 예산에 통합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의무 예산에서 무장 해제 및 동원 해제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시하고 총회는 승인해야 한다.
228.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통합 및 재활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면 청년 실업이 발생하고 범죄 조직과 폭력이 양산되며 궁극적으로 분쟁이 재발하게 된다. 평화 구축을 위한 상설 기금은 재통합 및 재통합 분야의 핵심 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초기 정부의 반복적인 지출을 지원화하기 위해 최소 2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29. 안보 구축과 함께 평화 구축의 핵심 과제는 시민 사회와의 협상을 통해 법치 내에서 통치를 위한

합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공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경찰, 사법 및 법치 개혁, 인권 및 화해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 공공 부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민간 안보 투자는 장기적인 평화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유엔, 국제 금융 기구, 공여국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장기 정책 및 재정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230.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현장 대표(평화유지활동 책임자 포함)는 특히 법치 영역에서 평화 구축 전략의 광범위한 측면에 대한 전담 지원을 필요로 한다. 평화구축지원사무소(아래 4부 참조)는 이러한 요구를 다룰 것이다.

12. 민간인 보호

231. 많은 내전에서 전투병은 민간인과 구조 대원을 처벌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폭력, 기아, 질병, 공중 보건의 붕괴로 인한 사망은 총알과 폭탄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수백만 명이 내부적으로 또는 국경을 넘어 이주한다. 인권 유린과 성폭력이 만연한다.
232. 국제법에 따르면, 전쟁에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교전 당사자들(국가 또는 비국가)에게 있다. 국제인도법은 여성, 아동, 난민을 포함한 무력 분쟁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보호 및 기준을 제공하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233. 모든 전투병은 제네바 협약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회원국은 대량학살방지 협약, 제네바 협약,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 모든 난민 협약과 같은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약에 서명, 비준, 조치해야 한다.
234. 인도적 지원은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인도적 지원의 핵심 목적은 민간인 희생자를 보호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며, 분쟁 중에 생존을 유지시켜 전쟁이 종식되면 무너진 삶을 재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조는 이러한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공여국은 인도적 보호 및 원조 활동에 완전하고 공평하게 재정 지원해야 한다.
235.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수행한 작업과 비정부기구의 강력한 옹호 활동을 바탕으로 사무총장은 무력 분쟁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10가지 행동 강령을 준비했다. 무력 분쟁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자들(국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은 사무총장의 10가지 행동 강령을 고려해야 한다.
236. 이 행동 강령에서 일상적으로 그리고 종종 명백하게 거부되는 민간인에 대한 접근성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도적 활동을 하는 유엔 현장 직원과 유엔 정치 및 평화유지

대표는 접근성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잘 훈련되고 잘 지원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양자간 계획의 더 나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민간인에 대한 접근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임무와 기타 외교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237. 무장 단체가 난민 캠프를 군사화할 때 발생하는 것과 같은 특히 심각한 위반의 경우 유엔 현장 제7장에 따라 활동하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군사화가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개발하거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 분쟁에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결의안 1265(1999)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238.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분쟁의 무기로 성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평화유지활동의 인권 요소에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보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과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2000)와 관련 독립 전문가 평가는 여성 보호를 위한 중요한 추가 권고 사항을 제공한다.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기관, 회원국은 권고 사항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유엔 직원의 안전 보장

239. 민간인 보호와 분쟁 종식에 기여하는 유엔의 능력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약화되고 있는 유엔 직원의 안전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주둔군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유엔은 다음 4가지가 필요하다. 위임된 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회원국이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유엔 공정성 규정에 대한 직원의 전적인 존중, 회원국의 정보 및 위협 평가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 보안 서비스. 사무총장은 그에게 직접 보고할 국장이 이끄는 이러한 서비스의 개선을 권고했다. 회원국은 안보국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전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2005년 새로운 직원 안전 보장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 사무총장을 지원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4부: 21세기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유엔

개요

유엔은 유토피아적인 운동이 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유엔은 집단 안보 시스템을 의미했다. 유엔 헌장은 강대국들에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격과 거부권을 부여했다. 그 대가로 강대국들은 그들의 힘을 공동선을 위해 사용하고 국제법을 증진하고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기구 창립 회의의 마지막 본회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힘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면허를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1945년 당시 힘과 원칙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했듯이 지금 유엔 개혁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인 권력 현실을 무시하는 권고는 실패하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치부될 것이지만, 단순히 현실 그대로의 권력 배분을 반영하며 국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권고는 국제적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용인을 얻지 못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제안들은 현실 세계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 자체를 위한 변화는 지난 10년간 끝없는 개혁 논쟁의 뻘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리트머스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변화를 위한 제안이 치명적인 위협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고위급 패널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위협에 대한 현재의 대응에서 제도적 약점을 찾았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총회는 활력을 잃고 종종 당일 가장 강력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집중하지 못한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앞으로 보다 선제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회원국들이 이사회 의사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하며,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은 기구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성, 정당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국가와 분쟁에서 벗어나는 국가를 다루는 데 있어 제도적 격차가 심각하다. 이런 국가는 종종 관심, 정책 지침,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지역 및 하위 지역 기구와 협력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 국제 안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위협을 다루는 새로운 제도적 협정이 있어야 한다.

- 인권위원회는 유엔의 전반적인 평판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당성이 없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 훨씬 더 일관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더 잘 조직된 사무국이 필요하다.

우리가 제안하는 개혁은 그 자체로 유엔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안보 합의에 대해 회원국들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유엔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유엔의 제도는 회원국들과 그 지도자들이 제도에 쏟은 에너지, 자원, 관심만큼 강력할 것이다.

13. 총회

240. 총회는 무엇보다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를 대표하는 보편적 기구이다. 총회의 고유한 정당성을 통해 우리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해 세계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우리는 매년 모든 정부의 견해가 제시되는 일반 토론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수 없다. 총회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독특한 토론장을 제공한다. 회원국들은 2005년 밀레니엄 리뷰 정상회담에서 제공한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더욱 효과적인 집단 안보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41. 총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열쇠는 초점과 구조이다. 규범을 만드는 총회의 능력은 종종 실제 사건에 따른 세부 사항이나 화제에 관한 논쟁으로 낭비된다. 총회가 문제를 종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어지고 있다. 다루기 어렵고 정적인 의제는 반복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 선언 및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선언과 같은 일부 결의안은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많은 결의안은 반복적이거나 모호하거나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세부적인 절차적 해결책은 총회를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적용한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지속적인 결의를 보여줄 때만 해결될 수 있다.
242. 회원국들은 총회가 유엔의 주요 심의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당면 과제를 반영하는 의제를 보다 개념화 및 간소화해야 한다. 보다 세분화된 위원회들은 전체 총회에 제출된 결의안을 개선하고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43. 우리는 시민 사회와 비정부기구가 글로벌 문제에 대해 귀중한 지식과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유엔-시민 사회 관계에 관한 저명인사 패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A/58/817 참조)에서 총회가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더 나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권고를 지지한다.

14. 안전보장이사회

244. 유엔 창립자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이 위협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단지 대표 기구가 아니라 단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구로 만들어졌다. 상임이사국 5개국은 거부권을 가졌지만 세계 안보를 증진하는 데 추가적인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유엔 헌장 제23조는 이사회 전체의 회원 자격이 지리적 균형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기여와도 명백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규정했다.
245. 이사회가 설립된 이후로 회원국들 간 권력 배분이 변화되었듯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과 도전도 변화되었다.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는 변화가 더디다. 결정 사항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고, 다른 국가들의 광범위한 군사적, 재정적,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결정과 권한을 돌이켜보면 현실주의의 필수적인 요소, 즉 충분한 자원과 정치적 결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간청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광범위한 회원국들로부터 대의권이 부족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대한 지지가 줄어든다.
246.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 행동하고자 하는 이사회 의지가 개선되었듯이 유효성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행동에서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었으며, 집단 학살이나 다른 잔혹 행위에서 일관되게 또는 효과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이사회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었다.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일부 국가가 유엔에 재정적,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해당 국가의 위상에 비하면 그다지 대단하지 않고, 종종 이사회 비상임이사국들은 현장이 구상한 기구의 업무에 필요한 기여를 할 수 없었다. 공식적인 거부권 사용 이외에도 상임이사국 5개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에서 평화와 안보의 중요한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은 기구의 업무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다.
247. 하지만 최근의 경험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가 행동을 조직하고 새로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유엔 기구임을 보여주었다.
248. 따라서 개혁의 과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협에 맞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많이 기여하는 국가들이 안전보장이사회 의사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특별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국가들의 더 많은 기여와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들과의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위협의 성격, 확대된 집단 안보의 의무, 예방의 필요성, 이사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해야 하는 시기와 이유에 대한 확고한 합의가 필요하다.

249.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이 다음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a) 개혁은 유엔 헌장 제23조를 존중하면서 재정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유엔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국가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유엔의 의무 예산에 대한 기여, 의무적 평화 활동 참여, 안보 및 발전 분야에서 유엔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기여, 유엔의 목표 및 임무를 지원하는 외교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공적개발 원조를 위해 GNP의 0.7%라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에 도달하거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기여 기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b) 개혁은 더 많은 회원국들,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국가들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 (c) 개혁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유효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 (d) 개혁은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구의 특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250. 패널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사회 확대 결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믿는다. 아래에 모델 A와 B로 기술되는 2가지 명확하게 정의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12년 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던 논쟁을 명확히 하고 경우에 따라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51. 모델 A와 B는 모두 4대 주요 지역권(“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아메리카”)의 의석 분포를 포함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이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선거 목적 및 기타 유엔의 목적을 위해 현재 지역 그룹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패널의 일부 위원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 동료들은 현재의 지역 그룹을 기준으로 한 의석 배분을 선호한다고 표명했다.

252. 모델 A는 거부권이 없는 신규 상임이사국 6개 의석과 2년 임기의 신규 비상임이사국 3개 의석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이 주요 지역권으로 분류된다.

지역권 국가수	국가수	상임이사국 의석 (변동 없음)	제안된 신규 상임이사국 의석	제안된 2년 임기 의석 (연임 불가)	합계
Africa	53	0	2	4	6
Asia and Pacific	56	1	2	3	6
Europe	47	3	1	2	6
Americas	35	1	1	4	6
합계 모델 A	191	5	6	13	24

253. 모델 B는 신규 상임이사국 의석을 제공하지 않지만 연임 가능한 4년 임기의 8개 의석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연임 불가) 1개 의석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주요 지역권으로 분류된다.

254. 유엔 헌장 제23조를 고려할 때, 두 모델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은 총회가 지역 협의의 기존 관행을 고려해서 정규 예산에서 해당 지역권의 상위 3개 재정 기여국에 속하는 국가 또는 해당 지역권의 상위 3개 자발적 기여국에 속하는 국가 또는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기여한 해당 지역권의 상위 3개 파병국에 속하는 국가에게 상임이사국의 의석 또는 장기 임기의 의석에 대한 우선권을 줌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선출하는 것이다.

255. 패널은 향후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영구적이거나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오래된 위협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이사회회의의 집단적 조치의 유효성 관점에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기여도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2020년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56. 두 모델 모두 거부권 확대나 안전보장이사회회의의 기존 권한에 대한 현장의 수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부권이 유엔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이익이 보호됨을 인지시켜 안심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기존 회원국의 거부권을 변경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부권 제도는 점점 더 민주화되고 있는 시대의 제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거부권을 증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진정으로 위태로운 문제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상임이사국들이 개별 자격으로 집단 학살 및 대규모 인권 유린 사건에서 거부권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어떤 개혁 제안에도 거부권 확대는 없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257.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의향 투표”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의향 투표에서 “거부” 투표는 거부권 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투표의 최종 집계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모든 결의안에 대한 두 번째 공식 투표는 이사회회의의 현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는 거부권 기능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믿는다.
258. 최근 몇 년 동안 안전보장이사회회의의 심의 및 의사 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또한 현장 제44조에 따라 파병국들이 이사회회의가 위임한 활동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충분히 협의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안전보장이사회회의에 상기시킨다. 우리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이사회회의의 절차 규칙에 통합하고 공식화할 것을 권고한다.
259. 안전보장이사회회의의 많은 대표단은 전문적인 군사적 조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단은 광범위한 군사적 의미를 지닌 결정을 내리도록 자주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회의의 요구에 따라 사무총장의 군사 고문과 참모들이 군사옵션에 관한 기술적,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60.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회의 활동에 시민 사회의 더 많은 참여를 환영하는 바이다.

15. 평화구축위원회

261. 우리의 분석은 중요한 제도적 공백을 확인했다. 유엔 시스템에는 국가 붕괴와 전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전쟁에서 평화로 이행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설계된 제도가 없다. 이러한 제도가 유엔 현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체로 내부 분쟁에서 유엔이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십 개 국가가 분쟁에 시달리거나 분쟁에서 회복중인 시대에 국가가 주권 기능을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할 분명한 국제적 의무가 있다.
262. 이 분야에서 유엔의 고유한 역할은 유엔의 국제적 정당성, 유엔 인력의 공정성,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문화적 이해와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는 유엔의 능력, 과도 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유엔의 최근 경험에서 비롯된다.
263. 가장 넓은 의미에서 유엔의 평화 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기구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유엔은 조기 경보부터 예방 조치, 분쟁 후 평화 구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29조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평화구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64. 평화구축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국가 붕괴 위기에 처한 국가를 파악하고,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그 과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을 조직하며, 분쟁과 분쟁 후 평화구축 간의 이행 계획을 지원하고, 특히 필요한 기간이 어떻든 간에 분쟁 후 평화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265. 평화구축위원회의 정확한 구성, 절차, 보고 라인을 구축해야 하고, 다음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 (a) 평화구축위원회는 적당히 작아야 한다.
 - (b) 평화구축위원회는 일반 정책 문제와 국가별 전략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구성으로 회의해야 한다.
 - (c)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위원이 최소 1년 이상 의장을 맡아야 한다.
 - (d)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 외에 경제사회이사회의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
 - (e) 검토 중인 국가의 국가 대표를 초대해야 한다.
 - (f) 국제통화기금 총재,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지역 발전 은행의 장을 대리해서 적절한 고위 관리가 평화구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g) 주요 공여국 및 필요한 경우 주요 파병국의 대표는 심의에 초청되어야 한다.
 - (h) 지역 및 하위 지역 기구의 대표는 해당 기구가 문제 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심의에 초대되어야 한다.

평화구축지원사무소

266. 사무국이 평화구축위원회에 적절하게 지원하고 사무총장이 시스템 전반의 평화 구축 정책 및 전략을 통합하고 모범 사례를 개발하며 현장 활동에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평화 구축지원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67. 평화구축지원사무소는 유엔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며, 평화 구축 전략 및 활동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약 2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무총장 및 평화구축위원회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평화구축지원사무소는 예를 들어 과도기적 정책 조치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거나 신규 국가 기관을 설립 할 때 요청 시 평화 활동 책임자, 유엔 상주조정관 또는 국가 정부에 지원 및 조언할 수 있다. 평화구축지원사무소는 평화구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연 2회 조기 경보 분석을 제출해야 한다.
268. 평화구축지원사무소는 또한 특히 분쟁 후 사례에 경험이 있는 국내 및 국제 전문가 명단을 유지해야 한다.
269. 평화구축지원사무소는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다른 요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엔개발그룹 의장이 이끄는 기관 간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6. 지역 기구

270. 유엔 현장 제8장의 조항들을 지금보다 더 완전하고 생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위협 예방 및 선제적 대응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능력은 강화될 것이다.
271. 유엔 창설 이후 상당한 수의 지역 및 하위 지역 그룹이 창설되었다. 이들 그룹 중 일부는 회원국들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일부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다루기 시작했다. 우리는 유엔이 특히 현재 효과적인 안보 기구가 없는 매우 취약한 지역에서 그러한 그룹의 창설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72. 최근 경험은 지역 기구가 다자 체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 기구의 활동이 유엔의 활동과 모순될 필요가 없으며, 지역 기구의 활동으로 인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유엔의 주요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현장의 틀과 유엔의 목적 내에서 지역 활동을 조직하고 유엔과 협력 상대인 지역기구가 지금까지 보다 더 통합된 방식으로 협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
- (a) 일부 긴급한 상황에서 지역 평화 활동이 개시된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역 평화 활동의 모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b) 유엔과 지역 기구 간 협의 및 협력은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기구 수장들의 회의, 보다 빈번한 정보 교환, 조기 경보, 민군 합동 훈련, 평화 활동에서 인적 교류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협정으로 공식화될 수 있다.
 - (c) 아프리카 지역 및 하위 지역의 경우, 공여국은 아프리카 연합 전략 체계 내에서 10년 과정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 (d) 분쟁 예방 또는 평화 유지 역량을 가진 지역 기구는 그러한 역량을 유엔상비체제에 통합시켜야 한다.
 - (e) 회원국들은 유엔이 필요에 따라 유엔 소유의 자원에서 지역 활동에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 (f) 유엔 평화유지 예산에 관한 규칙은 유엔이 의무 분담금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지역 활동에 사례별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273. 최근 몇 년 동안 NATO와 같은 동맹 기구들(대개 현장 제8장의 의미에서 지역 기구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일부 유사한 특성을 가짐)은 위임 영역을 넘어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했다.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활동을 승인하고 책임지는 한 환영하는 바이다. NATO의 경우, 자원이 부족한 지역 기구 및 국가에 훈련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에 건설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17. 경제사회이사회

274. 유엔 현장의 입안자들은 평화와 안보가 경제 발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가 직면한 제도적 문제는 이중적이다. 첫째, 특히 금융과 무역 분야에서 국제 경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오래 전에 유엔의 몫이 아니었고, 아무리 제도적 개혁을 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다. 둘째, 현장은 유엔의 주요 기관과는 독립적인 전문 기관의 설립을 허용하여 경제사회이사회의 역할을 조율을 담당하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유엔 기금, 프로그램, 기관의 세분화로 인해 이러한 조율은 최적의 시기에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제사회이사회가 무역과 금융에 관한 국제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거나 전문 기관이나 국제 금융 기구의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다.
275. 그러나 유엔은 경제 및 사회 발전 분야에서 잠재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엔은 평화, 안보, 발전 문제를 국제적 수준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둘째, 유엔은 지난 30년 동안 소집되었던 총회, 주요 회의, 정상회담에서 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특히 사회 분야)를 도출하는 데 바탕이 되었던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 유엔은 기관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풀뿌리 지지를 바탕으로 여론을 동원할 수 있다. 3가지 전략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아래의 설명

처럼 유엔의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집단 안보에 대한 관련성과 기여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76. 첫째, 경제사회이사회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위협들의 원인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 논쟁이 많은 시기에 규범적이고 분석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a) 우리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안보 위협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연구를 의뢰하고 평화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위협과 테러 및 조직 범죄와 같은 위협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b) 우리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의 최근 정보 교류(예를 들어, 의장 간 정기 회의를 통해)의 개선을 환영하며, 양 기관이 이러한 교류를 정례화 하도록 장려한다.

277. 둘째, 경제사회이사회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주요 발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측정하는 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

278. 셋째, 경제사회이사회는 사실상 '개발 협력 포럼'으로 전환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발전 공동체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회의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a) 행정 문제와 프로그램 조율에 집중된 현재의 초점을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구축된 보다 집중된 의제로 대체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경제사회위원회 의제 안에 채택해야 한다.

(b) 업무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휘하며, 주요 기관과 프로그램 간 상호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 그룹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행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c) 경제사회이사회와 브레튼우즈 기관 간의 연례 회의는 밀레니엄 발전 목표와 몬테레이 합의를 지원하는 집단적 조치를 장려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d) 경제사회이사회는 사무국과 유엔개발그룹의 조언을 참조해서 유엔 기금, 프로그램, 기관의 이사회에 발전 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e)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현지 활동의 일관성과 브레튼우즈 기관 및 양자 공여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사무총장과 유엔개발그룹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

279. 우리는 유엔 기관, 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의 방식과 양을 재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구상이 최근 모색되었고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하다.

정책 일관성 달성

280. 상기 전략은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 개선을 위해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자 체제 거버넌스의 역사적 발전으로 인해 무역, 금융, 투자에 관한 국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이사회의 능력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무역, 금융, 환경, 전염병 대처, 경제 및 사회 발전

사이의 중요한 상호 연결성을 다루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하는 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기구가 효과적이려면 국가 지도자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81. 국가 또는 정부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G8 그룹의 연례 회의가 필수적인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일부 특성을 충족시키지만,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보다 확장된 포럼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G20 재무 장관 그룹을 리더 그룹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그룹은 현재 세계 인구의 80%와 경제 활동의 90%를 차지하며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국가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회의에서 우리는 유엔 프로그램 및 계획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그룹에 유엔 사무총장과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18. 인권위원회

282. 유엔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밀레니엄 선언에 의해 재확인된 임무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존중을 증진하고, 인권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고, 국가의 인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283.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의 능력은 신뢰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약화되었다.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약속을 입증한 적이 없는 국가는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들이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다른 국가를 비판하기 위해 위원회 회원 자격을 추구한 사실에 대해 우려한다.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이중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위원회는 신뢰할 수 없다.
284.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개혁은 인권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그 임무와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유엔 업무 전반에 걸쳐 인권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고 특히 분쟁에서 벗어나는 국가와 테러와 전쟁중인 국가에서 강력한 국내 인권 기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총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최근 노력을 지지한다. 회원국들은 사무총장과 고등판무관의 이러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85. 여러 면에서 인권위원회와 관련하여 가장 어렵고 민감한 문제는 회원 자격 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국가가 인권위원회에 선임되느냐의 문제가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사회의 뜨거운 긴장감의 원천이 되었다. 회원 자격 기준에 대한 제안은 이러한 역학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 문제를 더욱 정치화

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보편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모든 회원국들이 헌장에 따라 인권 증진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하는 대상보다는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86. 전반기 위원회는 인권 분야의 주요 활동가이자 인권 업무에 필요한 전문 자격과 경험을 갖춘 대표단의 단장들로 구성되었다. 그 이후로 이 관행은 사라졌다. 우리는 이 관행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인권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대표단의 단장으로 저명하고 경험이 많은 인권 인사를 지명할 것을 제안한다.
287. 또한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자문위원회 또는 패널의 지원을 받는 것을 제안한다. 이 자문위원회 또는 패널은 약 15명의 개인, 독립 전문가(예: 지역당 3명)로 구성되며, 임기 3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사무총장과 고등판무관의 공동 제안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국가별 문제에 대한 자문 외에도, 자문위원회 또는 패널은 일부 주제별 임무의 정당화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며, 연구, 기준 설정, 정의를 다루는 현재의 일부 임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288. 우리는 고등판무관에게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본 보고서는 인권위원회와의 포괄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조약기구의 작업, 특수 메커니즘, 고등판무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출처에서 비롯된 정보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국가의 인권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89.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평화 활동 임무를 포함하여 이사회의 심의에 고등판무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국가별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고등판무관을 점점 더 자주 초청했다는 사실을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규칙이 되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와 평화구축위원회는 고등판무관에게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모든 인권 관련 조항의 이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하여 이러한 조항을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90. 또한 고등판무관실의 재정 지원 상황과 관련하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고등판무관실에 2%의 정규 예산 할당과 유엔 헌장에 따라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기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 사이에 분명한 모순을 보고 있다. 또한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재정 지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들은 고등판무관실과 그 활동에 대한 부족한 재정 지원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291. 장기적으로 회원국들은 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경제사회이사회의 부속 기구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등한 현장 기구인 “인권 이사회”가 되도록 격상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안보 및 경제 문제와 나란히 인권에 부여된 가중치를 헌장의 서문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9. 사무국

292. 보다 전문적이고 잘 조직된 사무국의 수장인 사무총장은 효과적인 21세기 집단 안보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A. 사무총장에 대한 지원 강화

293. 1996년 사무 차장 자리를 신설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 분야와 운영 개혁 문제에 관한 유엔의 업무에 일관성이 커졌다. 1990년대에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사무총장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평화와 안보 관할 제2사무차장 자리를 신설하면 이 분야에서 사무총장의 활동을 잘 지원하게 될 것이다. 사무총장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와 안보를 관할하는 사무차장 직책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294. 제1사무차장이 유엔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업무에 집중한다면, 제2사무차장과 그/그녀의 사무실은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공동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유엔 시스템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감독하는 사무총장을 지원할 것이다. 이 사무실은 실무적이어서는 안 되며 기존의 관료적 기능을 반복하기 보다는 합리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사무실은 다양한 부서 및 기관의 조언을 통합하고 사무총장의 결정을 돕기 위한 조기 경보 보고서 및 전략 옵션을 준비한다. 사무실은 전략 분석, 계획, 조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약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무실은 또한 사무총장에게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적, 생물학적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과학적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B. 유능하고 전문적인 사무국

295. 회원국들의 결정을 이행하고 회원국들에게 시의 적절한 분석과 조언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은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사무국 전체에 있다. 유엔이 효과적이려면 당면한 업무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적이고 잘 훈련된 사무국이 필요하다. 지난 15년 동안 분쟁 예방 및 평화 유지, 평화 협정의 협상 및 이행, 평화 구축과 관련된 업무가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의 전체 직원은 1990년 이후 감소했으며, 사무국 직원의 6%만이 증재, 평화유지 활동의 조직 및 관리, 안전보장이사회 지원, 군축, 선거 지원, 제재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수는 현장 경험이나 훈련이 없으며 기존 규칙에 따라 경험이나 훈련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 지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

296. 사무총장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자원과 자신이 신입하는 직원 및 기타 자원을 관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확인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을 권고한다.
- (a) 회원국들은 유엔 헌장 제100조 및 제101조를 재천명한다.
 - (b) 회원국은 항상 총회에 대한 사무총장의 책임에 따라 사무총장의 직원 관리 유연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목적으로 총회와 사무국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 (c) 1997년과 2002년에 인적 자원에 관한 사무총장의 개혁 제안은 더 이상 지체 없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
 - (d) 사무국이 중재 및 평화구축 지원과 평화 및 안보 사무 차장실을 포함하여 당면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기 퇴직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일회성 검토와 교체가 있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교체를 위한 재정 지원을 비용 효율적인 장기 투자로 제공해야 한다.
 - (e) 사무총장은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무국 역량 강화를 확립하기 위해 60개의 직위(전체 사무국의 1% 미만)를 즉시 보강해야 한다.

20. 유엔 헌장

297.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위한 우리의 권고는 유엔 헌장 제23조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헌장을 다음과 같이 약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298. 제53조와 제107조(적국에 대한 언급)는 시대에 뒤떨어져서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의 법률 규정들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헌장은 1945년의 두려움이 아닌 오늘날의 희망과 열망을 반영해야 한다.
299. 제13장(신탁통치이사회)은 삭제해야 한다. 유엔신탁통치이사회는 세계가 식민주의 시대에서 벗어나 수많은 성공적인 탈식민지화 사례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유엔은 식민주의의 정신과 형태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배척해야 한다.
300. 제47조(군사참모위원회)는 제26조, 제45조, 제46조의 기구에 대한 모든 언급과 마찬가지로 삭제해야 한다. 상임이사국 5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1945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치 않다. 우리는 위의 258항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나은 군사적 조언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301. 하지만 우리는 헌장이 집단 안보 기구에 건전한 법적, 정책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래되고 새로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은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가 경제 및 사회 개발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선견지명이 있었다.

302. 모든 회원국은 현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천명하고 단호하게 적용하며 정치적 의지와 필요한 자원을 일치시켜야 한다. 국가 내부 및 국가 간 헌신적인 리더십만이 21세기의 효과적인 집단 안보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 것이다.

부속서 I: 권고 사항 요약

참고: 요약된 각 권고 사항 뒤에 표시되는 괄호 안의 숫자는 권고 사항의 전체 텍스트가 포함된 보고서 본문의 조항을 가리킨다.

2부: 집단 안보 및 예방 과제 빈곤, 전염병, 환경 파괴

1. 모든 국가는 빈곤 퇴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달성,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이라는 목표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 (59)
2. 현재 유엔의 공적개발원조(ODA) 목표인 국민총생산(GNP)의 0.7%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공여국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60)
3.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늦어도 2006년에 다자간 무역 협상의 도하 발전 라운드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2)
4. 대출을 제공하는 정부 및 국제 금융 기구는 부채가 많은 빈국들에게 부채를 더 많이 탕감해주고, 일정을 더 장기적으로 조정해주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켜주어야 한다. (63)
5.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국제 자원이 1996년 약 2억 5천만 달러에서 2002년 약 28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에이즈를 막기 위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64)
6. 에이즈 피해를 입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원을 동원하고, 자금을 투입하며, 질병 통제 노력에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을 참여시켜야 한다. (65)
7. 유엔에이즈프로그램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에이즈에 대한 2차 특별회의를 주최해서, 에이즈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앞으로의 영향을 조사하고, 이 문제에 관한 연구를 생산하며, 위협을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을 향한 중요한 단계를 파악해야 한다. (67)

8. 국제 기부자들은 국가 당국 및 지역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전역에 지역 및 국가 공중 보건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68)
9. 세계보건총회 회원국들은 잠재적인 질병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 글로벌 발병 경보 및 대응 네트워크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69)
10. 국가들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추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화석 연료 사용 및 개발에 지원되는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71)
11. 우리는 회원국들이 교토 의정서의 약속과 그 성과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다시 참여하며, 의정서가 다루는 기간을 넘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72)

국가 간 분쟁 및 국내 분쟁

12.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을 회부하기 위해 로마 규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90)
13. 유엔은 분쟁에서 벗어나거나 분쟁 위협에 처한 국가의 천연 자원 관리를 통제하는 규범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당국, 국제 금융 기구, 시민 사회 단체, 민간 부문과 협력해야 한다. (92)
14. 유엔은 소수민족 권리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위헌적 전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지역 기구의 경험에 기반해야 한다. (94)
15. 회원국들은 소형 및 경량 무기의 표시 및 추적, 증개 및 양도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 관한 협상을 신속히 처리하고 체결해야 한다. (96)
16. 모든 회원국은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부의 모든 요소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보고의 부적절성에 대해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97)
17. 사무총장 및 기타 유엔 중재자의 신입 또는 잠정 특별 대표를 위한 교육 및 브리핑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101)
18. 정부부는 추가적인 자원을 지원받아야 하며,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인 중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102)
19. 이러한 개편의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에게 맡겨야 하지만, 개편 시 다음과 같은 유엔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a) 유엔의 모든 중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유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소규모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의 중재 전담 지원 역량

- (b) 이행 단계의 순서, 감시 협정의 설계, 과도기적 협정의 순서, 국가적 화해 메커니즘의 설계와 같이 평화 협상에서 반복되는 주제별 문제에 대한 역량
 - (c)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국가 중재자, 지역기구, 비정부기구와의 상호 작용 강화
 - (d) 시민 사회(특히 협상 중에 종종 무시되는 여성들)와 더 많은 협의 및 평화 프로세스에 시민 사회의 참여 (103)
20. 국가 지도자와 분쟁 당사자는 평화 유지군의 예방 전개 옵션을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04)

핵, 방사능, 화학, 생물 무기

21. 핵무기 보유국은 군축을 재개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 제6조에 따른 군축을 위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고, 이행을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b) 핵무기 보유국들은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전의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120)
22. 미국과 러시아 연방, 기타 핵무기 보유국, 핵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전략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 일정을 포함하여 우발적인 핵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1)
23. 또한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 공격이나 핵 공격 위협에 대응하여 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22)
24. 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는 신뢰구축 방안과 군축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23)
25. 핵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비준하고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을 위한 협상을 지원함으로써 확산 금지 및 군축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 두 조약 모두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에 동일하게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아프리카, 남태평양 및 동남 아시아를 위해 설정한 비핵지대와 유사한 비핵지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핵 군축 협상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124)
26. 모든 화학 무기 보유국은 합의된 목표 기한인 2012년까지 기존의 모든 화학 무기 비축량의 폐기 일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125)
27.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당사국은 지체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프로토콜을 위한 협상에 복귀하여 생명 공학 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126)
28.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표준 추가의정서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위한 오늘날의 표준으로 인식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는 확산금지 및 안전조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29)

29. 국제원자력기구가 민간용 핵분열 물질 공급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제원자력기구 법령 제3조 및 제9조의 기존 조항에 근거하여 협상이 지체 없이 진행되어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한다. (130)
30. 이 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현재 공급 업체가 시장 가격으로 핵분열 물질을 공급한다는 보장과 일치하는 유예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해당 시설의 추가 건설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한부 유예를 시행해야 한다. (131)
31. 모든 국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32)
32. 국가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통보하면 필요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조약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위반 시 국제원자력기구가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결의해야 한다. (134)
33. 고농축 우라늄 원자료를 전환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줄이기 위해 지구적 위협감축계획이 제안한 일정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 (135)
34.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의 당사국은 위험한 생물작용제를 분류하고 이러한 약제의 수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생물보안 의정서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137)
35. 군축회의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비무기 및 무기 목적을 위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종료하는 검증 가능한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을 협상하기 위해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한다. (138)
36.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사무총장에게 안전조치와 검증 과정의 현황과 핵확산금지조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실제 위반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심각한 우려 사항에 대해 2년마다 보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40)
37. 안전보장이사회는 WHO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의심스럽거나 압도적인 전염병 발생 시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144)

테러

38. 유엔은 사무총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테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a) 사회적, 정치적 권리, 법치 및 민주적 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테러의 원인 또는 촉진 요인을 역전시키기 위한 설득, 강점을 종식시키고 주요 정치적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설득, 조직 범죄 근절을 위한 설득, 빈곤과 실업 감소를 위한 설득,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한 설득.
 - (b) 교육 및 공개 토론 장려를 포함하여 극단주의와 무관용에 맞서기 위한 노력.

- (c) 법 집행 분야를 포함하여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법률 체계 내에서 글로벌 대테러 협력을 위한 보다 나은 도구 개발, 가능한 경우 정보 공유, 필요한 경우 거부 및 금지, 금융 통제.
 - (d) 테러리스트 모집 및 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역량 구축.
 - (e) 위험 물질 통제 및 공중 보건 방어. (148)
39.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은 12개의 대테러 국제 협약에 모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8가지 특별 권고안(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가 지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양한 모범 사례 문서에서 권고된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 (150)
40. 알카에다와 탈레반 제재위원회는 감시 목록에 잘못 배치되거나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및 기관의 사례를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152)
41. 안전보장이사회는 피해 국가와 협의한 후 국내 대테러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 간 군사, 경찰, 국경 통제를 지원하는 정보 처리 기관인 대테러사무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154)
42. 회원국의 대테러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은 대테러사무국 산하에 역량강화신탁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155)
43.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회의 대테러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리 정해진 제재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156)
44. 총회는 포괄적인 테러 협약에 관한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요소가 포함된 테러에 대한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
- (a) 서문에서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무력 사용은 제네바 협약 및 기타 문서에 따라 규제되며, 규모가 클 경우 관련자에 의한 전쟁 범죄 또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
 - (b) 상기의 12개 대테러 협약에 따른 행위는 테러라는 점을 재진술, 그러한 행위는 국제법에 따라 범죄라는 점을 선언, 무력 분쟁 시 테러는 제네바 협약 및 의정서에 의해 금지된다는 점을 재진술.
 - (c) 1999년 테러 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66(2004)에 포함된 정의들을 참조.
 - (d) 테러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술, “테러에 관한 기존 협약, 즉 제네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66(2004)에 이미 명시된 행위에 추가하여, 민간인이나 비전투병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 그러한 행위의 목적이 그 성격이나 맥락에 따라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또는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의 모든 행위.” (163-164)

초국가적 조직 범죄

45. 2000년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3개의 의정서,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회원국은 그렇게 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은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를 지원해야 한다. (172)
46. 회원국은 국가 사법 기관 간의 증거 교환, 검찰 기관 간의 상호 법적 지원, 범죄인 인도 요청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앙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173)
47. 은행 비밀 보호와 금융 피난처의 발전 문제를 다루는 자금 세탁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은 총회에서 협상하고 승인해야 한다. (174)
48. 회원국은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 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하며, 의정서 당사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5)
49. 유엔은 법치 지원을 위한 강력한 역량 강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177)

제재의 역할

50.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 (a)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양질의 심층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 (b)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는 국가의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표적 제재의 대상인 개인 및 단체의 정확한 목록을 유지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 및 보고 절차를 개발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 (c) 사무총장은 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제재 이행의 조율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분석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자원을 가진 고위 관리를 임명해야 한다. 이 관리는 이행 노력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다. 기술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그러한 지원을 조율한다.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정에 대해 권고한다.
 - (d) 공여국은 회원국이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치안 및 국경 통제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역량 강화 조치에는 분쟁 지역에서 항공 교통 차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e)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성적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 불복 사례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해야 한다.
 - (f)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하여 제재 행정을 감독할 적절한 감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180)

51. 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제재의 인도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로 인한 인도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181)
52. 개인 또는 단체의 목록이 제재에 포함되는 경우, 제재위원회는 목록에 잘못 포함되거나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검토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182)

3부: 집단 안보와 무력 사용, 무력 사용 규칙 및 지침

53. 유엔헌장 제51조는 오랫동안 확립된 적용 범위를 확대(즉각적이지 않은 위협에 대한 예방조치를 허용하기 위해)하거나, 제한(실제 공격에 한해서만 적용을 허용하기 위해)하기 위해 재작성하거나 재해석해서는 안 된다. (192)
54.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국가들이 우려하는 모든 범위의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받았다. 임무는 권한의 원천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가진 것보다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198)
55. 패널은 집단 학살 및 기타 대량 학살, 인종 청소 또는 주권 정부가 무력하거나 의지가 없어서 예방하지 못하는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사항의 발생 시 안전보장이사회가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 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집단적 보호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규범을 지지한다. (203)
56.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거나 지지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고려 사항이 무엇이든 항상 최소한 다음의 5가지 기본적인 정당성 기준을 다루어야 한다.
- (a) 위협의 심각성. 국가나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군사력의 사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명확하고 심각한 것인가? 내부 위협의 경우 집단 학살 및 기타 대량 학살, 인종 청소 혹은 실제로 또는 즉시 파악되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해당되는가?
 - (b) 정당한 목적.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무엇이든 제안된 군사 행동의 주된 목적이 문제의 위협을 중지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분명한가?
 - (c) 최후의 수단. 다른 조치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비군사적 옵션을 검토했는가?
 - (d) 비례적 수단. 제안된 군사 조치의 규모, 기간, 강도가 문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 (e) 결과의 균형. 합리적인 선에서 군사 조치가 문제의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조치의 결과가 무조치의 결과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207)

57. 상기의 무력 사용 승인 지침은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선언적 결의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208)

평화강제 및 평화유지 능력

58. 선진국은 기존의 가용 병력을 평화 활동에 적합한 파견대로 전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216)
59. 회원국은 효과적인 배치에 필수적인 빠듯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전략적 배치 비축량, 상비 조치, 신탁 기금, 기타 메커니즘의 사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엔 평화 활동 패널(A/55/305-S/2000/809 참조)의 중요한 업무에 기반한 유엔사무국 평화유지활동국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 (218)
60. 선진 군사 능력을 갖춘 국가들은 유엔 임무를 강화할 수 있는 고도의 상비 태세를 갖추고 자급 자족이 가능한 여단 수준의 부대를 창설하고 유엔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9)
61. 사무총장은 적대적인 분파들을 억제하고 격퇴하기에 충분한 평화유지군을 권고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222)
62. 유엔은 임무 평가를 수행하고 평화 활동을 위한 신규 경찰 인력을 조직할 수 있는 고위 경찰관 및 관리자(50-100명)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을 보유해야 하며 총회는 이 조직을 승인해야 한다. (223)

분쟁 후 평화 구축

63.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는 유엔의 평가 및 활동의 순서가 정부 우선순위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율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뿐만 아니라 강력한 공여국 조율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협력할 권한과 지침을 가져야 한다. (226)
64.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의무 예산에서 무장 해제 및 동원 해제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시하고 총회는 승인해야 한다. (227)
65. 평화 구축을 위한 상설 기금은 재할 및 재통합 분야의 핵심 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초기 정부의 반복적인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28)

민간인 보호

66. 모든 전투병은 제네바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회원국은 대량학살방지 협약, 제네바 협약,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 모든 난민 협약과 같은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약에 서명, 비준, 조치해야 한다. (233)
67.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 분쟁에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결의안 1265(1999)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237)
68. 안전보장이사회, 유엔기구, 회원국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2000)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238)
69. 회원국은 안보국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전진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2005년 새로운 직원 안전 보장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 사무총장을 지원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239)

4부: 21세기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유엔 총회

70. 총회 회원국들은 2005년 밀레니엄 리뷰 정상회담에서 제공한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더욱 효과적인 집단 안보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40)
71. 회원국들은 총회가 유엔의 주요 심의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당면 과제를 반영하는 의제를 보다 개념화 및 간소화해야 한다. 보다 세분화된 위원회들은 전체 총회에 제출된 결의안을 개선하고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42)
72. 유엔-시민 사회 관계에 관한 저명인사 패널이 발표한 보고서(A/58/817 참조)의 권고에 따라, 총회는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더 나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243)

안전보장이사회

73.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은 다음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개혁은 유엔 헌장 제23조를 존중하면서 재정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유엔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국가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유엔의 의무 예산에 대한 기여, 의무적 평화 활동 참여, 안보 및 발전 분야에서 유엔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기여, 유엔의 목표 및 임무를 지원하는 외교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공적개발 원조를 위해 GNP의 0.7%라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에 도달하거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기여 기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b) 개혁은 더 많은 회원국들,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국가들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 (c) 개혁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유효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 (d) 개혁은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구의 특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249)
74.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사회 확대 결정이 이제 필요하다. 아래에 모델 A와 B로 기술되는 2가지 명확하게 정의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12년 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던 논쟁을 명확히 하고 경우에 따라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50)
 75. 모델 A와 B는 모두 4대 주요 지역권(“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아메리카”)의 의석 분포를 포함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이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선거 목적 및 기타 유엔의 목적을 위해 현재 지역 그룹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패널의 일부 위원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 동료들은 현재의 지역 그룹을 기준으로 한 의석 배분을 선호한다고 표명했다. (251)
 76. 모델 A는 거부권이 없는 신규 상임이사국 6개 의석과 2년 임기의 신규 비상임이사국 3개 의석을 제공하며 주요 지역권으로 분류된다. 모델 B는 신규 상임이사국 의석을 제공하지 않지만 연임 가능한 4년 임기의 8개 의석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연임 불가) 1개 의석을 제시하며, 주요 지역권으로 분류된다. (252-253)
 77. 헌장 제23조를 고려할 때, 두 모델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은 총회가 지역 협의의 기존 관행을 고려해서 정규 예산에서 해당 지역권의 상위 3개 재정 기여국에 속하는 국가 또는 해당 지역권의 상위 3개 자발적 기여국에 속하는 국가 또는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기여한 해당 지역권의 상위 3개 파병국에 속하는 국가에게 상임이사국 의석 또는 장기 임기의 의석에 대한 우선권을 줌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선출하는 것이다. (254)
 78.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오래된 위협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이사회의 집단적 조치의 유효성 관점에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기여도(보고서 본문의 249항에 정의)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2020년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55)
 79. 패널은 어떤 개혁 제안에도 거부권 확대는 없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256)
 80.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의향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57)
 81. 안전보장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은 절차 규칙에 포함되고 공식화되어야 한다. (258)

평화구축위원회

82.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29조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평화구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63)
83. 평화구축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국가 붕괴 위기에 처한 국가를 파악하고,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그 과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을 조직하며, 분쟁과 분쟁 후 평화구축 간의 이행 계획을 지원하고, 특히 필요한 기간이 어떻든 간에 분쟁 후 평화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264)
84. 평화구축위원회의 정확한 구성, 절차, 보고 라인을 구축해야 하고, 다음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 (a) 평화구축위원회는 적당히 작아야 한다.
 - (b) 평화구축위원회는 일반 정책 문제와 국가별 전략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구성으로 회의해야 한다.
 - (c)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위원이 최소 1년 이상 의장을 맡아야 한다.
 - (d)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 외에 경제사회이사회의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
 - (e) 검토중인 국가의 국가 대표를 초대해야 한다.
 - (f) 국제통화기금 총재,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지역 발전 은행의 장을 대리해서 적절한 고위 관리가 평화구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g) 주요 공여국 및 필요한 경우 주요 파병국의 대표는 심의에 초청되어야 한다.
 - (h) 지역 및 하위 지역 기구의 대표는 해당 기구가 문제 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심의에 초대되어야 한다. (265)
85. 사무국이 평화구축위원회에 적절하게 지원하고 사무총장이 시스템 전반의 평화 구축 정책 및 전략을 통합하고 모범 사례를 개발하며 현장 활동에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평화 구축지원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66)

지역 기구

86. 지역 기구와 관련하여,
- (a) 지역 평화 활동은 반드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b) 유엔과 지역 기구 간 협의 및 협력은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기구 수장들의 회의, 보다 빈번한 정보 교환, 조기 경보, 민군 합동 훈련, 평화 활동에서 인적 교류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협정으로 공식화될 수 있다.
 - (c) 아프리카 지역 및 하위 지역의 경우, 공여국은 아프리카 연합 전략 체계 내에서 10년 과정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 (d) 분쟁 예방 또는 평화 유지 역량을 가진 지역 기구는 그러한 역량을 유엔상비체제에 통합시켜야 한다.
- (e) 회원국들은 유엔이 필요에 따라 유엔 소유의 자원에서 지역 활동에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 (f) 유엔 평화유지 예산에 관한 규칙은 유엔이 의무 부담금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지역 활동에 사례별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272)

경제사회이사회

- 87. 경제사회이사회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위협들의 원인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 논쟁이 많은 시기에 규범적이고 분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이사회는 안보 위협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76)
- 88. 경제사회이사회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주요 발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측정하는 영역을 제공해야 한다. (277)
- 89. 경제사회이사회는 사실상 '개발 협력 포럼'으로 전환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발전 공동체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회의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 (a) 행정 문제와 프로그램 조율에 집중된 현재의 초점을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구축된 보다 집중된 의제로 대체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경제사회위원회 의제 안에 채택해야 한다.
 - (b) 경제사회이사회의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지휘하며, 주요 기관과 프로그램 간 상호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 그룹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행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c) 경제사회이사회와 브레튼우즈 기관 간의 연례 회의는 밀레니엄 발전 목표와 몬테레이 합의를 지원하는 집단적 조치를 장려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 (d) 경제사회이사회는 사무국과 유엔개발그룹의 조언을 참조해서 유엔 기금, 프로그램, 기관의 이사회에 발전 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e)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현지 활동의 일관성과 브레튼우즈 기관 및 양자 공여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사무총장과 유엔개발그룹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 (278)

인권위원회

- 90. 인권위원회의 회원 자격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285)
- 91. 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은 대표단의 단장으로 저명하고 경험이 많은 인권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 (286)

92. 인권위원회는 자문위원회 또는 패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287)
9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88)
94. 안전보장이사회와 평화구축위원회는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된 모든 인권 관련 조항의 이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하여 이러한 조항을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89)

사무국

95. 사무총장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와 안보를 관할하는 사무차장 직책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293)
96. 사무총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자신이 신임하는 직원 및 기타 자원을 관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확인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패널은 다음을 권고한다.
- (a) 회원국들은 유엔 헌장 제100조 및 제101조를 재천명한다.
 - (b) 회원국은 항상 총회에 대한 사무총장의 책임에 따라 사무총장의 직원 관리 유연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목적으로 총회와 사무국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 (c) 1997년과 2002년에 인적 자원에 관한 사무총장의 개혁 제안은 더 이상 지체 없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
 - (d) 사무국이 중재 및 평화구축 지원과 평화 및 안보 사무 차장실을 포함하여 당면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기 퇴직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1회성 검토와 교체가 있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교체를 위한 재정 지원을 비용 효율적인 장기 투자로 제공해야 한다.
 - (e) 사무총장은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60개의 직위(전체 사무국의 1% 미만)를 즉시 보강해야 한다. (296)

유엔 헌장

97.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안이 요구하는 유엔 헌장 제23조의 수정 외에, 패널은 다음과 같이 헌장을 약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98. 제53조와 제107조(적국에 대한 언급)는 시대에 뒤떨어져서 수정해야 한다. (298)
99. 제 13장(신탁통치이사회)은 삭제해야 한다. (299)
100. 제47조(군사참모위원회)는 제26조, 제45조, 제46조의 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과 마찬가지로 삭제해야 한다. (300)

101. 모든 회원국은 현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천명하고 단호하게 적용하며 정치적 의지와 필요한 자원을 일치시켜야 한다. 국가 내부 및 국가 간 혁신적인 리더십만이 21세기의 효과적인 집단 안보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 것이다. (302)

부속서 II. 패널 위원 및 위임 사항 위원

- Anand Panyarachun(태국, 위원장): 전 태국 총리
 Robert Badinter(프랑스): 프랑스 상원 의원 겸 전 프랑스 법무부 장관
 João Clemente Baena Soares(브라질): 전 브라질 대외 관계부 총서기 겸 전 미주기구 사무총장
 Gro Harlem Brundtland(노르웨이): 전 노르웨이 총리 겸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Mary Chinery-Hesse(가나): 가나 국가개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겸 전 국제 노동기구 부국장
 Gareth Evans(호주): 국제위기그룹 회장 겸 전 호주 외교부 장관
 David Hannay(영국 및 북아일랜드): 전 유엔 주재 영국 상임대표 겸 전 키프로스 주재 영국 특사
 Enrique Iglesias(우루과이): 미주개발은행 총재 겸 전 우루과이 외교부 장관
 Amre Moussa(이집트): 아랍연맹 사무총장 겸 전 이집트 외교부 장관
 Satish Nambiar(인도): 전 인도군 중장 겸 유엔보호군 사령관
 Sadako Ogata(일본): 일본국제협력기구 총재 겸 전 유엔난민고등판무관
 Yevgeny Primakov(러시아 연방): 전 러시아 연방 총리
 Qian Qichen(중국): 전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Nafis Sadik(파키스탄): 유엔 사무총장의 아시아 지역 에이즈 담당 특사 겸 전 유엔인구기금 상임이사
 Salim Ahmed Salim(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전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총리 겸 전 아프리카통일기구 사무총장
 Brent Scowcroft(미국): 전 미국 공군 중장 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위임 사항

1. 지난 한 해는 집단 안보의 근간을 흔들었고 우리의 공통된 문제와 도전에 맞선 집단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켰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미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도전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의견 차이가 표면화되었다.
2. 위협,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목표는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미래의 위협에 대한 엄격한 분석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집단적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방안, 집단적

조치의 기여도 평가, 유엔의 주요 기관을 포함하여 기존 접근 방식, 수단, 메커니즘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권고하는 것이다.

3. 패널은 특정 문제에 관한 정책이나 특정 장소에서 유엔의 역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 받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제공하고 이러한 과제를 집단적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을 권고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4. 특히 패널은

- (a) 오늘날의 지구적 위협을 조사하고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미래의 과제를 분석할 것이다. 개별적으로 특정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협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국제 수준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위협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 (b) 이러한 과제를 다루는 데 집단적 조치가 할 수 있는 기여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이다.
- (c) 유엔의 주요 기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효과적인 집단적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을 권고할 것이다.

5. 패널의 작업은 넓은 의미의 평화 및 안보 분야에 국한된다. 즉, 패널의 작업은 향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경제 및 사회 문제를 포함한 기타 문제와 제도에 대한 분석과 권고를 확장해야 한다.

부속서 III. 패널 사무국

Stephen Stedman(연구 책임자)

Lorraine Rickard-Martin(패널 비서)

Bruce Jones(부 연구 책임자)

Muhammad Zeeshan Amin

Tarun Chhabra

Sebastian Graf von Einsiedel

Angela Irving

Graham Maitland

Angelica Malic

Thant Myint-U

Maria Zaroui

부속서 IV. 패널 회의, 지역 협의, 이슈 워크숍

A. 패널 회의

날짜	장소
2003년 12월 5~7일	프린스턴, 미국
2004년 2월 13~15일	몽펠랭, 스위스
2004년 4월 30일~5월 2일	아디스 아바바
2004년 7월 16~18일	바덴, 오스트리아
2004년 9월 24~26일	태리타운, 미국
2004년 11월 3~5일	뉴욕, 미국

B. 지역 협의 및 이슈 워크숍

날짜(2004)	회의 / 주제	장소	주최
1월 13~14일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성공 가능성 극대화"	해리먼, 미국	스탠리 재단
1월 29일	유엔 개혁 구상 및 고위급 패널에 관한 비정부기구 브리핑	뉴욕	유엔 사무국 공보부
2월 16일	유럽 평의회 의회와 고위급 패널 회의	파리	유럽 평의회 의회
2월 23~25일	"현대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 유엔의 역할은 무엇인가?"	웨스트 서식스, 영국	월턴 파크
2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뉴 헤이븐, 미국	에일 세계화 연구 센터
3월 1일	"핵 확산"	스탠포드,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3월 1일 및 2일	"무력 사용"	해리먼	스탠리 재단 및 유엔 재단
3월 2일 및 3일	"인도적 위기에 개입"	해리먼	스탠리 재단 및 유엔 재단
3월 4일	"테러와 비국가 행위자"	뉴욕	스탠리 재단, 유엔 재단, 랄프 분체 국제연구소
3월 5일	"대량 살상 무기 체제의 미래"	뉴욕	뉴질랜드 정부 및 국제 평화 아카데미
3월 7일 및 8일	지역 협의	리우데 자네이루, 브라질	비바 리오 및 뉴욕대학 국제협력센터
3월 12~14일 및 26~27일	고위급 패널의 작업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 대표 및 패널 위원의 수련회	맨해튼, 미국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의 정부 및 국제평화아카데미
3월 18~20일	지역 협의	오슬로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 및 뉴욕대학 국제협력센터
3월 28~30일	유엔 헌장 제51조와 국제 안보의 향후 위협에 대한 워크숍	제네바	스위스 정부
3월 29일 및 30일	"소형 무기와 경량 무기"	해리먼	스탠리 재단 및 유엔 재단
4월 2~4일	위협, 도전, 변화에 관한 아시아 고위급 심포지엄	항저우, 중국	중국 정부
4월 5일	"핵무기 통제 및 확산"	캠브리지,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 핵위협방지구상, 유엔 재단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날짜(2004)	회의 / 주제	장소	주최
4월 8일	인도주의 및 인권 비정부기구를 위한 지원 활동	뉴욕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및 유엔 재단
4월 16일 및 17일	거버넌스와 주권	스탠포드	스탠포드 국제학 연구소
4월 19일	“생물 보안”	워싱턴 DC.	미국 국립과학원, 핵위협방지구상, 유엔 재단
4월 21~24일	“아시아 안보에 관한 대화: 9/11 이후의 개념, 위협, 확산”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및 뉴욕대학 국제협력센터
4월 25~27일	제60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고위급 패널 업무 회의	상하이,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4월 27~29일	지역 협의	아디스 아바바	아프리카 역내 그룹 및 뉴욕대학 국제협력센터
4월 30일	아프리카 연합위원회와의 고위급 회의	아디스 아바바	고위급 패널 사무국 및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
5월 2일	아프리카 시민사회단체와의 회의	아디스 아바바	고위급 패널 사무국
5월 6일	시민 사회, 경제 및 사회 발전 비정부기구를 위한 지원 활동	뉴욕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및 유엔 재단
5월 10일 및 11일	“개발, 빈곤, 안보”	워렌턴, 미국	스탠리 재단 및 유엔 재단
5월 13일 및 14일	안전보장이사회 변경 회의	워싱턴 DC.	존스홉킨스대학 대서양 횡단 관계 연구소
5월 17~19일	“거버넌스, 민주주의, 자유 시장”	멕시코 시티	
5월 21~23일	“유엔, 지역 기구, 아프리카의 미래 안보 위협”	케이프 타운, 남아프리카	분쟁해결센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유엔 재단
5월 24일 및 25일	“새로운 위협, 새로운 대응”	바르샤바	폴란드 정부
5월 27~29일	“유엔과 새로운 위협: 안보에 대한 재고”	로마	국제문제연구소 (I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이탈리아 아스펜 연구소 (Aspen Institute Italia), 아프리카 및 동부 이탈리아 연구소 (Istituto Italiano per l’Africa e l’Oriente), 유엔 재단 및 유엔지역간범죄처벌조사기관
6월 2일	“환경 및 보안”	워싱턴 DC.	우드로윌슨 국제학술센터 및 유엔 재단
6월 8일 및 9일	“위기 관리를 위한 유엔 역량 강화”	코펜하겐	덴마크 정부
6월 11일~16일	제39차 미래 10년을 위한 유엔 회의	프루츠네크,	미국 스탠리 재단
6월 17일 및 18일	“빈곤과 안보: 통합적 접근 방식”	런던	런던정치경제대학, 영국 국제개발부, 유엔 재단
6월 28일 및 29일	“하위 10억을 위한 안보”	옥스포드, 영국	옥스포드 대학 및 스탠포드 국제학 연구소
7월 1~3일	“유엔과 새로운 위협: 안보에 대한 재고”	뉴 델리	평화 및 분쟁 연구소와 유엔 재단
7월 6일 및 7일	“위협, 도전, 변화: 내부 폭력”	교토, 일본	일본 정부
9월 11일 및 12일	“위협, 도전, 개혁: 지중해 및 걸프 지역의 안보 구축”	카이로	이집트 외교위원회, 알-아람 정치전략연구소, 유엔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국제문제연구소 (I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05

경제·사회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주요 유엔 컨퍼런스 및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조율되고 통합적인 이행 및 후속 조치

(Integrated and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and Follow-Up
to the Outcomes of the Major United Nations Conferences
and Summits in the Economic, Social and Related Fields)

A/59/2005
(2005)





2005년 3월 21일

총회 59차 총회 배포: 일반
의제 항목 45 및 55 원본: 영어

경제·사회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주요 유엔 컨퍼런스 및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조율되고 통합적인 이행 및 후속 조치

(Integrated and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and Follow-Up to the Outcomes of the Major United Nations Conferences and Summits in the Economic, Social and Related Fields)

새천년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Follow-Up to the Outcome of the Millennium Summit)

보다 큰 자유: 모두를 위한 발전, 안보 및 인권을 향하여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1. 서문: 2005년의 역사적 기회

1. 새천년에 접어든 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전의 그 어떤 세대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밝은 유산을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알려진 주요 질병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만연한 폭력적인 분쟁과 테러 활동을 축소할 수 있다. 모든 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인권 관련 국제 협약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고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과감하게 그리고 다 함께 협력하여 일을 추진한다면 지역을 불문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인권의 개선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 범세계적인 상호 의존의 시대에서는 공통의 이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뒷받침된다면 보편적 인간성의 충동에 따라 공통의 이해라는 접착제를 통해 모든 국가를 이러한 대의명분 속에 결속시킬 수 있다. 전 세계적인 풍요의 시대에서 세계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존속하고 있는 거대한 격차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자원을 모두를 위해 활용할 경우에만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례 없던 위협과 겹만 새로운 기존 위협에 직면하여 국제적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어려운 시기를 거쳐 온 지금 공동 행동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총의에 대한 갈망이 도처에 존재한다. 그리고 유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 이 21세기 의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량과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

3. 2005년은 단호하게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해이다. 9월에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여 2000년에 전 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유엔 새천년 선언(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¹ 이후에 이루어진 진전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천년 선언의 이행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오늘 제출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상회의에서 채택하여 조치를 취할 의제안을 첨부하였다.
4. 본 보고서는 8년에 이르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심 및 신념과 사무총장으로서 그 원칙과 목적을 증진할 의무가 있는 유엔 헌장에 대한 이해에 따라 작성하였다. 또한 범세계적인 해결 과제에 대한 두 가지 광범위 검토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하나는 본인이 집단적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제안서를 요청했던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협, 도전 과제 및 변화에 대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의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새천년 프로젝트에서 2015년까지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은 250명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검토이다.
5. 본 보고서에서는 진척이 중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려는 욕구를 자제했다. 조치가 중요하면서도 향후 몇 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 보고서 내용을 제한하였다. 가시적인 개혁, 즉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한다면 실천 가능한 개혁이 이에 해당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이것이 9월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의제이다. 다른 포럼 및 행사에서 다루어야 할 다수의 다른 의제들 또한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제기된 제안 이외에 지역 및 전 세계 수준의 안정을 위협하는 만성적인 분쟁의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올해에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A. 변화하는 세상의 해결 과제

6.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몇 년 간 인류가 평화, 안보, 군축, 인권, 민주주의 및 모범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들은 2015년까지 개발을 통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제휴를 요구했다. 또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필요를 충족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공통의

1 총회 결의 55/2.

미래를 형성함에 있어 유엔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7.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새천년 선언의 이행에 대해 조목조목 보고할 경우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즉, 핵심 과제 및 우선순위에 대한 총의의 활성화와 그와 같은 총의의 공동 행동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8. 새천년 선언 채택 이후 그와 같은 접근 방식을 요하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참혹한 공격 이후 소규모 비국가 행동 단체(테러리스트)들은 가장 강력한 국가조차 무력하게 느껴지게 했다. 이와 동시에 많은 국가가 완전한 힘의 불균형이 불안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강대국 간의 의견 불일치는 목표 및 방법에 대한 합의 부족을 드러냈다. 한편 40개 이상의 국가가 폭력적인 분쟁에 의해 상처를 받아 왔다. 오늘날 국내 실향민의 수가 2,5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1/3은 유엔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에 더해 국제 난민의 수도 1,100만~1,20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일부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들이다.
9.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의해 분할되고 공동화된 국가도 많았다. 현대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HIV/AIDS에 의해 사망한 남성, 여성 및 아동의 수가 2,000만 명이 넘으며, 감염자 수는 4,0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전망이 아직 요원한 국가가 많다. 1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여전히 하루 1달러의 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한 삶을 살고 있으며, 매일같이 20,000명의 사람이 가난 때문에 죽고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 부는 증가해 왔지만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균형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몇몇 목표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져 온 반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공히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 온 정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주 및 기후 변화와 같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져 왔지만 그와 같은 장기적인 해결 과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까지 우리의 공동 행동은 한참 미진한 상황이다.
10. 최근 몇 년 간의 사건들 또한 유엔 자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켜 왔는데, 그 이유가 상반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양측 모두 유엔의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다. 한쪽은 유엔이 결의안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른 한쪽은 성급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엔을 비판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우리 세계에서 유엔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유엔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반면 효과적인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은 증가하고 있다.
11. 지난 5년 간 좋은 소식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2001년 9월 11일 이후 보여준 인상적인 전 세계적 단결에서 다수의 내전 문제 해결과 개발을 위한 자원의 상당한 증가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평화 및 민주주의 구축과 관련하여 달성된 지속적인 진전에 이르기까지

공동 행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 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성공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동안 드러난 부족한 점에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신 서로 힘을 합해 광범위한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B. 보다 큰 자유: 모두를 위한 발전, 안보 및 인권

12. 우리는 전 세계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고 희망을 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본인은 새천년 보고서 “우리 인류(We the peoples, A/54/2000)”에서 유엔 현장의 서문을 인용하여 유엔이 주권 국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회원국들을 위해 존재하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년 전에 처음 선출되었을 때 언급한 바와 같이, 발전과 자유와 평화라는 삼각 구도의 완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13. 현장 입안자들 또한 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했다. 이들은 후대 사람들을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현장을 입안함에 있어 기반이 좁을 경우 유엔이라는 조직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조직을 만들고 정의와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요건을 구축하고 “자유를 증진하는 동시에 사회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14. 유엔 현장의 영속적인 관련성을 강조하고 그 목적이 개별 남성 및 여성의 삶에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해 본 보고서의 제목을 “보다 큰 자유(In Larger Freedom)”으로 정했다. 보다 큰 자유의 개념에는 발전, 안보 및 인권이 병행한다는 아이디어 또한 포함된다.
15. AIDS에 걸린 청년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읽고 쓸 수 있으며 기아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젊은 여성이 생활에 충분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라도 매일 폭력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자신의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할 수 없다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보다 큰 자유라 함은 사는 곳을 불문하고 모든 남성 및 여성이 자신의 동의하에,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개인이 차별이나 보복 없이 자유로이 표현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결집할 수 있는 사회에서 통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극심한 빈곤과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폭력과 전쟁으로 인해 삶과 생활이 산산조각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안보와 발전의 혜택을 볼 권리를 지닌다.
16. 발전, 안보 및 인권은 모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증진하는 작용도 한다. 이러한 관계는 급속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 세계화 및 극적인 지형학적 변화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더욱 강화되어 왔다. 빈곤과 인권 침해가 내전, 테러 행위 또는 조직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들은 모두 불안과 폭력의 위험을 크게 증가

시킨다. 전쟁 및 잔학 행위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임은 분명하다. 또한 지구 한쪽에서 감행되는 재난적인 테러 행위(예: 부유국에 소재하는 주요 금융 센터에 대한 공격)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수백만 명을 빈곤에 빠지게 함으로써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백만 명의 경제 발전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치 체제가 건전하고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더 효과적으로 분쟁 위험을 방지하고 발전 저해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17. 따라서 안보 없이는 발전을 향유하지 못하고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보를 향유하지 못하며 인권 존중이 없다면 이 둘을 향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 원인을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새천년에는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와 같은 선택이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이용하고 평화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보를 누릴 자유를 가지는 날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유엔이 노력해야 한다.

C. 공동 행동의 당위성

18. 위협과 해결 과제가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혼자서 이들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국가 이기주의의 발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자유의 목표는 범세계적 수준의 광범위하고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간 협력이 뒷받침될 때만 진전시킬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협력은 모든 국가의 정책에 자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시민들의 필요 또한 고려될 때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협력은 모두의 이익 증진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도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19. 본 보고서에 수록된 제안의 목적은 회원국들을 부강하게 하고 회원국이 공통의 원칙 및 우선 순위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함으로써 자국민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엔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주권 국가는 국제 체제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존립 요소이다. 자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폭력 및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의 번영과 사회의 발전을 허용하는 자유 체제를 제공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임무이다. 회원국들이 취약하면 전 세계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인 안보, 발전 및 정의를 향유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새천년의 중대한 과제 중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당면한 다수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20. 하지만 회원국 독자적으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국가가 혼자 담당했던 분야에서 두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참여 없이는 본 보고서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21. 또한 유엔이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민첩하고 효과적인 정부 간 증재 기구 역할 수행하여 공동

행동을 이끌어내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안보, 발전 및 인권 현안의 처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세계 유일의 통괄적 기구로서 유엔은 특별한 책임을 지닌다.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 국가 간의 간격이 좁아지고 이들 현안의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이 가지는 비교 우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약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엔은 기본적인 관리 관행을 개조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엔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서부터 유엔의 주요 정부 간 기구를 개혁하여 오늘날의 세계를 반영하고 본 보고서에 명시된 우선순위를 진전시키는 일까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과 대담함과 속도로 조직 개편을 수행해야 한다.

22. 보다 큰 자유라는 비전의 추진에 대한 회원국,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국제기구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책임성(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국가 간의 책임성, 회원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책임성,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 책임성이 존재하는 경우 진전을 이룰 것이고, 책임성이 없을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2005년 9월에 개최될 정상회의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약속을 한 경우 지키도록 해야 한다.

D. 결정의 시간

23.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이 순간 우리는 의욕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필요에 따라 시급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광범위해야 한다. 당면한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세계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전례 없는 총의를 활용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단호한 행동을 취할 때만이 당면한 안보 문제에 대처하고 2015년까지 빈곤과의 범세계적인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24.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강한 국가라도 독자적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약소국인든 강대국인든 어떤 국가도 고립된 상황에서는 번영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행동하며 행동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상호 약속을 지킨다면 그 이름에 걸맞은 가치 있는 새천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25. 지난 25년 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빈곤의 극적인 감소를 목도해 왔다. 특히 중국 및 인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진전 덕분에 전 세계에 걸쳐 말 그대로 수억 명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이 극심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식품, 의료, 교육 및 주택에 대한 향상된 접근성을 향유하기 시작했다.
26.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십 개에 이르는 국가는 더 가난해졌고, 파괴적인 경제 위기로 수백만 가구가 빈곤에 처해졌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 불균형이 심화되어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공유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늘날 10억 명(전 세계 인구 중 1/6)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루에 미화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고 있으며, 만성적인 기아, 질병 및 환경적 위험 속에서 연명할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빈곤이 치명적인 수준이라는 얘기이다. 모기장이 없거나 1 달러 상당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린이가 말라리아 보균 모기에 한 번만 물려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수확에 파괴적인 가뭄과 병충해는 생존을 위협하는 기아를 유발한다. 매년 1,100만 명의 어린이가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망하고 300만 명의 사람이 AIDS로 목숨을 잃는 세상은 보다 큰 자유가 있는 세상이 아니다.

27. 수 세기 동안 이러한 빈곤은 슬프지만 인간의 조건상 피할 수 없는 측면으로 간주되어 왔다. 오늘날 이러한 관점은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진전의 규모와 범위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빈곤과 산모 및 영아 사망률을 극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교육, 성 평등 및 기타 발전 측면에서도 극적인 진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왔다. 오늘날 가용한 자원과 기술이 전례 없이 풍부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전체 회원국에 의해 천명된 모두를 위한 발전을 실현하고 전 인류를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와 지식과 자원을 갖춘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다.

A. 발전에 대한 비전 공유

28. 발전에 수반되는 다측면적인 과제는 성 평등에서 보건, 교육 및 환경까지 방대한 상호 연결된 현안에 걸쳐 있다. 1990년대에 개최된 역사적인 유엔 컨퍼런스 및 정상 회의는 공유된 발전 우선순위의 광범위한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연결 고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규범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 또한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와 관련한 일련의 기한이 정해진 목표(예: 2015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체 아동에 대해 초등 교육을 의무화)를 수립하고 후에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 구체화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었다(글상자 1 참조).

[글상자 1] 새천년 발전 목표

목표 1. 극심한 빈곤 및 기아 근절

세부 목표 1: 2015년까지 일일 소득이 미화 1달러 미만인 사람의 비중을 1990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

세부 목표 2: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의 비중을 1990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

목표 2.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

세부 목표 3: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이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

목표 3. 성 평등 촉진 및 여성의 지위 향상

세부 목표 4: 가급적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의 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2015년까지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불균형 근절

목표 4. 아동 사망률 축소

세부 목표 5: 2015년까지 아동 사망률을 1990년 대비 2/3 축소(5% 아래로 축소)

목표 5. 산모 건강 개선

세부 목표 6: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1990년 대비 3/4 축소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 목표 7: 2015년까지 HIV/AIDS 확산세를 멈추고 그 이후에는 역전

세부 목표 8: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중대 질병 발생률 증가를 멈추고 그 이후에는 역전

목표 7. 환경적 지속가능성 실현

세부 목표 9: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환경 자원의 손실률을 축소

세부 목표 10: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 및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성을 갖추지 못한 인구의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

세부 목표 11: 2020년까지 1억 명 이상의 빈민가 거주자의 삶을 대폭 개선

목표 8.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 구축

세부 목표 12: 규칙에 기반하고 예측 가능하며 비차별적인 개방형 국내/국제 무역 및 금융 체제 개발(건전한 관리, 발전 및 빈곤 완화에 대한 공약 포함)

세부 목표 13: 저개발국의 고유한 필요 해소(예: 저개발국의 수출에 대한 관세 및 쿼터 철폐, 부채가 과중한 빈곤국에 대한 채무 구제 및 공식적인 쌍무 부채 당감 프로그램 강화, 빈곤 완화를 약속한 국가에 대한 보다 호혜적인 ODA 적용)

세부 목표 14: 내륙국 및 소규모 발전 도상 도서 국가의 고유한 필요 해소(소규모 발전 도상 도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21차 유엔 총회 특별 회기의 결과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세부 목표 15: 채무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국가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

세부 목표 16: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젊은이들을 위한 적절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

세부 목표 17: 제약 업체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필수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세부 목표 18: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특히 IT 기술) 보급

29. 전 세계 극빈층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촉구해 온 새천년 발전 목표는 원조국, 개발도상국, 시민 사회 및 주요 발전 기구에 의해 보다 광범위한 진전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크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새천년 발전 목표는 2005년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시급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승인된 일단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새천년 프로젝트(Millennium Project)를 통해 이루어진 노력 덕분에(그에 관한 보고서 “개발에 대한 투자: 새천년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실무 계획”²이 2005년 1월에 본인에게 전달되었다)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마련될 수 있었다. 또한 필수적인 요소인 정치적 의지가 무르익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도 포착되고 있다. 이 의제에 관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이 수립하는 광범위한 조치가 향후 몇 년 간 국제 발전 원조의 두 배 이상 증액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실질적인 관건이 될 텐데, 새천년

2 개발에 대한 투자: 새천년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실무 계획(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No. 05.III.B.4).

참조 웹사이트:<http://www.unmillenniumproject.org>.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0. 한편 새천년 발전 목표를 더욱 광범위한 발전 의제의 일부로 볼 필요가 있다. 새천년 발전 목표가 유엔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후속 조치의 대상이 되어 오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전체적인 발전 의제는 분명 아니다. 1990년대의 컨퍼런스에서 다루어진 광범위한 현안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망라하지도 않을 뿐더러 중진국의 고유한 필요나 점차 증가하는 불균형 문제와 광범위한 인적 발전 및 모범적 거버넌스의 측면을 다루지도 않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컨퍼런스 결과의 효과적인 이행을 요하는 요소들이다.
31. 그럼에도 새천년 발전 목표 달성의 시급성은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다.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진 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반적으로 필수 품목 및 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최빈국가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글상자 2 참조). 새천년 프로젝트 보고서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듯이, 우리의 의제는 전 세계 수준(대부분의 국가, 혹은 모든 국가)에서 여전히 달성 가능하지만, 현상 유지에서 탈피하고 향후 12개월 동안 시작하여 2015년까지 조치를 극적으로 가속화하고 확대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달성 기한까지 10년이란 기간 내내 지속적인 조치가 요구될 테다. 성공적인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많은 국가가 상당한 역량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 간호사 및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도로, 학교 및 병원을 건설하고 중소기업 및 대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요한 소득을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글상자 2] 새천년 발전 목표의 진전 사항

새천년 발전 목표의 달성 진척도는 전 세계적으로 천차만별이다. 1990년 이후 독자적으로 2억 명 이상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개선 폭이 가장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 인구 중 7억 명 이상(전 세계 최빈층 인구의 약 2/3)이 여전히 하루에 미화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 중 일부는 환경 보호 및 산모 사망률과 같은 비소득 목표에서 미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데, 대부분의 목표에 있어 심각하게 뒤쳐져 있다. 개별 국가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식량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아동 및 산모 사망률도 우려할 정도로 높으며 빈민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균형 심화 문제가 흔한 전환 경제 체제 하의 중남미와 중동 및 북미의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진척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2015년 기한을 맞추는 데 필요한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다.

목표별 달성 진척도 또한 차이를 보여 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쳐져 있지만, 기아 감소, 음용수 접근성 개선,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증가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 사망률 또한 대체로 감소했으나, 진척도가 더딘 지역이 많으며 중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의 극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은 개선이 미진한 상황인데, 빈민가 거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더 그렇다. 산모 사망률의 경우 HIV/AIDS, 결핵 및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고 만연한 개발도상국 전체에 걸쳐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성 평등도 미진한 상황인데, 2005년 교육 균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가 많다. 환경 저하는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32. 2005년에는 여덟 번째 목표이자 3년 전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국제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재확인되고 구체화된 부유국과 빈곤국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협약의 조항을 상기할 시점이다.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국가 발전 전략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민간 주도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가용 자원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국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각 개발도상국의 책임이다. 한편 선진국은 투명하고 믿을 수 있으며 적절히 예산이 산정된 발전 전략을 채택한 개발도상국이 필요한 지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발전 원조 증액, 더욱 더 발전 지향적인 무역 체제,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채무 구제 등의 형태를 통해 뒷받침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실패는 수많은 죽음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여전히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B. 국가 전략

33. 극심한 빈곤의 원인은 불리한 지리적 조건에서 열악하고 부패한 지배층(소외된 지역 사회의 방치 포함), 파괴적인 분쟁과 그 후유증까지 다양하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직하고 헌신적인 정부가 있는 경우에도 많은 최빈국을 빈곤과 결핍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빈곤의 덫이다. 기본적인 인프라, 인적 자본 및 행정력이 부족하고 질병, 환경 저하 및 제한적인 천연 자원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 국가는 지속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번영을 향한 새로운 경로로 들어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투자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34.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각 국은 향후 10년 동안 투자 확대를 통해 적어도 정량적인 새천년 발전 목표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담하고 목표 지향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극심한 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 각 개발도상국은 2006년까지 2015 새천년 발전 목표(세부 목표 포함)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과감한 국가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에 착수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공공 투자 확대, 역량 구축, 국내 자원 동원, 공적 발전 원조(필요할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권고가 혁신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권고 조치를 의욕적이고 모니터링 가능한 세부 목표로부터 도출된 필요와 직접 연계하여 이행할 경우 빈곤 퇴치에 있어 과감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35. 이러한 방안은 새로운 협정이나 협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것은 설계 및 이행에 대한 각 국의 다양한 접근 방식뿐이다. 빈곤 완화 전략(세계은행 및 기타 국제 발전 파트너와 합의되었으며 자국에서 개발하고 소유한 3개년 지출 프레임워크)을 이미 갖추고

있는 국가는 새천년 발전 목표의 달성에 부합하는 10개년 정책 및 투자 프레임워크에 맞게 자국의 전략을 조율해야 한다. 중간 소득 국가와 목표가 이미 가시권 내에 있는 국가의 경우 정부가 보다 의욕적인 세부 목표를 포함하는 “새천년 발전 목표 플러스”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행동 체계

36. 아무리 전략을 잘 수립했다라도 법치주의에 기반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으며 시민권과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망라하고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행정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거버넌스 체계가 없다면 새천년 발전 목표 달성 전략이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최빈국 중 다수는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적격 인력을 교육하고 고용하기 위해 상당한 역량 구축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모범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없다면 부패 및 부실 관리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 선명한 제도와 의지가 있더라도 광범위한 진전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37. 마찬가지로 동적이고 성장 지향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일자리, 소득 및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건전한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경제 정책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 및 발전 지향적인 인프라(예: 에너지, 수송 및 통신)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권 및 재산권을 규정하고 보호하는 효과적인 상업법과 부패를 억제하고 근절하는 합리적인 행정력과 금융 자본(소액 금융 포함)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망라하는 호혜적인 법적 및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위원회(“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³와 “민간부문개발위원회/Commission on the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⁴)는 작년에 소득을 증대하고 빈곤층(특히 여성 및 젊은이)의 지위를 향상 시켜 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에 있어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호혜적인 법적 및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38. 이러한 이행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빈곤을 역사 속으로(Make Poverty History)” 사라지게 하는 데는 시민 사회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 사회는 빈곤층에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발전 관심 사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광범위한 풀뿌리 운동을 조직하고 추진하여 지도자들이 자신의 공약에 책임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목표 실천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제적으로는 시민 단체가 특정 현안에 대한 국제 제휴를 조성하고 촉진하거나 곤경에 처한 토착민과 기타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커뮤니티 교류를 통해 국가 간에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에 기술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다.

3 A Fair Globalizati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국제노동기구, 제네바, 2004).

4 Unleashing Entrepreneurship: Making Business Work for the Poor(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04.III.B.4).

국가별 투자 및 정책 우선순위

39. 국가별 전략에서는 새천년 발전 목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곱 가지 공공 투자 및 정책 “클러스터”를 고려하고 민간 부문 주도 성장을 위한 토대를 설정해야 한다. 새천년 프로젝트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광범위한 발전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가 필수적이다.

성 평등: 만연한 성 편견 극복

40. 여성 지위 향상이 가장 효과적인 발전 촉진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성 평등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조치로는 여자 어린이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수료율 증대, 여성을 위한 안전한 주거 공간 보장, 성 및 생식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근로 시장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촉진, 여성의 정부 의사 결정 기관 진출 확대를 위한 기회 제공,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보호 등이 있다.

환경: 자원 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

41. 각 국은 기한이 정해진 환경 세부 목표(특히 삼림 재생, 통합 수자원 관리, 생태계 보존, 오염 완화 분야)를 채택해야 한다.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폭넓은 정책적 개혁을 통해 환경 관리에 대한 투자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진척도는 환경적 보호 장치를 요하는 농업, 인프라, 임업, 어업, 에너지 및 수송과 같은 부문별 전략에도 좌우된다. 빈곤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전한 음용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발전 전략에 포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농촌 개발: 식량 산출 및 소득 증대

42. 소규모 농장과 불모지에 거주하는 농부의 경우 토양 비옥화, 작물 다양화, 물 관리 개선, 현대식 이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수송, 용수, 위생 및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요구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2005년부터 시작되는 21세기 아프리카 녹색 혁명에 이들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도시 개발: 고용 창출, 빈민가 개량, 신규 형성 빈민가에 대한 대안 수립

43. 점점 더 증가하는 많은 도시 빈민층 인구에 대해 에너지, 교통, 오염 억제 및 폐기물 처분과 같은 핵심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거주지 보안 개선과 적절한 주거 단지 건설 및 도시 계획 지원에 대한 지역 사회 주도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 빈민 단체와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보건 체계: 필수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44.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예: 아동 및 산모 건강을 촉진하고, 생식 건강을 지원하고 AIDS, 결핵 및 말라리아와 같은 치명적 질병을 억제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건 체계가 요구된다(글상자 3 참조). 또한 충분한 투자, 동기를 가지고 있고 급여가 적절한 다수의 인력, 인프라 확대 및 보급품 증대, 강력한 관리 체계, 이용 수수료 감면 등이 필요하다.

교육: 보편적 초등 교육 보장,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 확대

45. 모든 수준에서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지역 사회가 학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교육 과정, 교육의 질 및 교수법을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인적 자원 및 기반 구조를 구축하고, 취약 아동의 취학을 촉진하는 제도(학비 면제 포함)를 시행해야 한다.

과학, 기술 및 혁신: 국가 역량 구축

46. 국가의 고유한 과학 기술(정보 통신 기술 포함) 역량을 증대하려면 정부가 과학 자문 기구를 설립하고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과학/공학 분야 교수진을 확대하고 과학 및 기술 과정에서 발전 및 비즈니스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글상자 3] HIV/AIDS의 비극

HIV/AIDS는 이제 매년 3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인류의 발전과 안보에 전례 없는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백만 가정을 파괴시키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고아를 양산하고 있다. AIDS는 단순한 공중 보건 위기를 넘어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저하시키고 보건, 교육, 농업 및 사회복지 체계를 무너뜨린다. 경제 성장을 크게 둔화시키는 한편 거버넌스 및 안보 체제를 약화 시킴으로써 위협 증대를 야기한다.

대유행병(팬데믹)은 예외적인 대응을 요한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중 보건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회의 모든 부문이 대규모로 결집시킬 때만 AIDS 추이를 역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예방, 교육, 치료 및 피해 완화 프로그램이 요구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도 진정한 다분야 AIDS 대응을 지원하고 주도하겠다는 국가 및 정부 수반의 의지가 없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000년 이후 세계는 AIDS 퇴치에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AIDS 퇴치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고 이러한 퇴치 노력을 주도하고 조율하는 통합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2001년에 본인이 요구한 “세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은 이제 범세계적으로 노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치명적 대유행병의 퇴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조치에 힘입어 2004년 12월 현재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70만 명의 사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5개월 동안 약 60%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국제 공동체가 급속한 치료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 온 결과이며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10년 동안 HIV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제공한다는 희망을 실현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많은 정부가 이 질병과 병증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성 평등과 관련한 솔직한 토론과 조치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IDS 대처를 위한 자원이 완전한 포괄적 대응에 필요한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각국 정부와 다자간 및 양자간 원조국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년 전에 개발도상국에서 HIV/AIDS를 퇴치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미화 70억~100억 달러를 조달할 것을 국제 공동체에 요구한 바 있다. 이 금액은 아직 완전히 조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동안 AIDS는 계속 확산되어 왔다. 그 결과 필요한 자원과 제공되는 금액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예방과 치료 둘 다 보다 의욕적이고 균형 잡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유엔에이즈합동계획(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및 파트너에 의해 식별된 HIV/AIDS에 대한 종합적인 확대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시급히 제공하고 세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기금(GFATM)을 위한 전체 재원을 제공해 줄 것을 국제 공동체에 요청하는 바이다.

C. 목표 8의 실현: 개발을 위한 무역 및 금융

47. 다수의 중간 소득 국가와 일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중 대부분은 정부 세수 재할당, 가구 부문 기여분 및 민간 투자 및 차입을 통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와 거의 모든 최빈국은 그와 같은 노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최대 재원이 새천년 발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다. 새천년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형적인 저소득 국가에서 목표를 위한 투자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일인당 미화 75 달러에 달하며, 2015년에는 미화 140 달러(고정 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일인당 연간 소득 대비 1/3~1/2에 상당하는 액수로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의 재원을 크게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들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민간 투자 확대 및 원조 “출구 전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전 지원에 있어 대규모 원조(이른바 “빅 푸시”)가 필요하다.

원조

48. 최근 몇 년 간 가장 고무적인 변화 중 하나는 1990년대 이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공적 발전 원조(ODA) 액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GNI(국민총소득) 대비 백분율로 표현되는 전 세계 ODA는 현재 0.25% 수준으로 2002년의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에서 천명되었던 장기적 목표인 0.7%는 물론 1980년대 후반에 도달했던 0.33%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⁵ 향후 증액에 대한 여러 원조국의 최근 공약에 의하면 연간 ODA 흐름액은 2010년까지 약 1,000억 미국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몬테레이 합의 시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중 상당 액수는 실제 장기 순금융액보다는 부채 탕감 및 달러화 절하분이 반영된 것으로, 새천년 프로젝트의 계산에 따르면 더 광범위한 발전 우선순위는 차치하고

5 국제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보고서 참조, 멕시코 몬테레이, 18-22 2002년 3월(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02.II.A.7), 1장, 결의안 1, 부록.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ODA 수준에 비해 여전히 500억 달러가 부족하여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49. 다행히 추가적인 진전의 징후도 있다. EU 신규 회원국과 브라질, 중국 및 인도와 같이 부강해진 일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일단의 원조국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들 국가 모두 기술 협력을 통해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문 기술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 개 원조국은 이미 0.7% 목표를 달성했으며 여섯 개 원조국은 최근에 달성 일정을 설정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선진국은 2015년까지 공적 발전 원조에 GNI 대비 0.7%를 할당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늦어도 2006년부터 원조액을 대폭 증액하고 2009년까지 0.5%에 도달).
50. 분명 많은 개발도상국이 역량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겠지만, 준비가 된 개발도상국의 경우 즉각적인 확대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전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 원조 증액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대폭 증액된 양질의 원조를 신속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
51. ODA 규모를 증액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원조국의 원조 예산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 간 전체적인 ODA 지출을 급격히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중기적으로 급격한 증액을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ODA를 보완하는 몇 가지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자원 조달 방안이 제안되어 왔으며, 브라질, 칠레, 프랑스, 독일 및 스페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니셔티브에서 이들 방안 중 몇 가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의 즉각적인 확대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제안된 국제금융기금(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IFF)은 기존의 지출 채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ODA의 미래 저금 흐름을 “초기 단계에 배분(Front-Loading)”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 공동체는 2005년에 국제금융기구(IFF)를 발족시켜 ODA의 즉각적인 사전 배분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2015년까지 0.7%의 ODA 세부 목표를 달성한다는 강화된 공약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IFF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혁신적인 발전 자원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이다.
52. 이들 조치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효과가 크며 상당한 단기적 이득을 창출하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니셔티브인 일련의 “단기 성공 과제(Quick Win)”를 즉시 지원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기장 및 효과적인 말라리아 의약품의 대규모 무상 배급에서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는 현지 농산물 활용 학교 급식(Home-Grown School Meal) 프로그램의 확대 및 초등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면제까지 다양한 조치가 포함된다. 그와 같은 급속한 조치는 국가의 새천년 발전 목표 전략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새천년 발전 목표에 대한 의지를 확대하게 될 단기적 모멘텀과 조기 성공 사례를 이끌어낼 것이다.

53. 이와 동시에, ODA의 질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조는 원조국의 이해가 아닌 국가별 전략에서 식별된 현지의 필요 및 새천년 발전 목표의 달성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분명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것이지만, 선진국도 자국의 납세자들에게 원조가 효과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된다. 2005년 3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원조 효과 관련 고위급 회의(Paris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원조국은 2005년 9월까지 자국의 원조 제공 메커니즘을 파트너 국가의 새천년 발전 목표 기반 국가 전략에 맞추기 위한 일정과 모니터링 가능한 세부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새천년 발전 목표 기반 투자 계획에 대한 공약, 2015 일정 계획, 예측 가능한 다개년 자금 조달 방안, 대폭 간소화된 절차, 적절한 체계를 갖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된다.

부채

54. 대외 채무 문제가 ODA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과다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에 따라 27개국을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완료된 채무 구제의 금액이 지금까지 미화 54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이니셔티브가 새천년 발전 목표에 필수적인 자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필요액에는 여전히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채무 지속가능성을 채무국이 2015년까지 부채율 증가 없이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채 수준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과다채무빈곤국의 경우 이를 위해서는 원조 기반 전용 금융과 100%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반면, HIPC는 아니지만 부채가 과다한 중간 소득 국가의 경우 또한 이전보다 상당히 더 많은 부채 탕감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인 부채 탕감은 다른 개발도상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축소하거나 국제 금융 기구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무역

55. 무역이 대규모 ODA 기반 발전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개방적이고 공평한 무역 체제는, 특히 적절한 원조와 결합될 때, 경제 성장 및 빈곤 완화의 강력한 견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발전 문제가 핵심 주제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부유국이 다양한 관세, 쿼터 및 보조금 수단을 통해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국제 무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2005년 12월에 개최되는 WTO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시정할 방법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텐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시급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선진국들이 시장 장벽을 허물고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 보조금(특히 농업 부문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착수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선순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하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발전 지원 약속의 이행을 확인하고 2006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로서 회원국은 저개발 국가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시장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56.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에서는 다수의 개발도상국(특히 소수의 원자재 제품에 의존하는 최빈국)의 경우 수출 품목 다양화 역량 부족, 가격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 및 지속적인 무역액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측 문제 또한 안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무역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새천년 발전 목표 전략에서 농업, 생산성, 무역 관련 인프라 및 수출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특히 저개발 국가, 내륙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및 소규모 발전 도상 도서 국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각화를 장려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수의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D. 환경적 지속가능성 실현

57. 인류는 본질적으로 자연계와 천연 자원에 의존하여 생존과 발전을 도모한다. 환경 저하와 천연 자원 고갈이 완화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소용없게 될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보면, 환경 관리 개선에 대한 투자를 국가 전략에 포함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요구되는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유 수로, 삼림, 원양 어업 및 생물 다양성과 같은 다수의 환경적 우선순위에 대한 지역적 및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범세계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예가 이미 존재한다.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⁶ 덕분에 유해 방사선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모든 국가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체계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준수할 경우 지구 환경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이다. 특히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국제 공동체의 세 가지 당면 과제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사막화

58.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10억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사막화되어 발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농업 및 목축 생활이 지속 불가능해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수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환경적 피난민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체가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사막화 방지에

6 유엔, Treaty Series, vol. 1522, No. 26369.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을 지원하고 이행해야 한다.⁷

생물 다양성

59. 또 다른 심각한 우려 사항은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 걸쳐 전례 없는 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훼손이다. 그 자체로도 우려스럽지만, 이러한 추이는 보건, 생계, 식량 생산 및 청정수에 대해 심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추이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가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⁸ 및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손실률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요하네스버그 서약⁹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후 변화

60. 21세기의 가장 큰 환경 및 발전 관련 과제 중 하나는 기후 변화 관리 및 대처가 될 것이다. 현재는 대다수 과학자가 인간의 활동이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18세기 중반 산업 시대의 도래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대폭 올라 지구 온도가 크게 상승했고 해수면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역사상 가장 온난한 10년이었던 1990년대에는 빙하와 북극해 얼음이 줄어들었다. 향후 1세기 동안 온실가스의 농도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의 동반 상승이 기후 변동성 증가와 허리케인 및 가뭄과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의 발생 및 규모 증가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와 같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예: 작은 도서 국가, 다수의 인구가 저지대에 거주하는 연안 국가, 불모지 및 반불모지 열대/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자체 보호 능력이 가장 떨어진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낮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6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¹⁰에 대한 1997년 교토의정서¹¹의 발효(2005년 2월)가 지구 온난화 대체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2012년까지 만이다. 국제 공동체는 그 이후의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목표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기후 변화 완화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촉진에 있어 과학 진보와 기술 혁신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적시에 필요한 도구와 수단을 개발하기

7 유엔, Treaty Series, vol. 1954, No. 33480.

8 참조: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Environmental Law and Institution Programme Activity Centre), 1992년 6월.

9 참조: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보고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8월 26-4, 2002년 9월(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03.II.A.1), I장, 결의안 2, 부록, 단락 44.

10 A/AC.237/18 (Part II)/Add.1 and Corr.1, annex I.

11 FCCC/CP/1997/7/Add.1, decision 1/CP.3, annex.

위해서는 지금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재생 에너지원, 탄소 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연구 개발의 재원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탄소 거래 시장과 같은 정책적 수단도 확대해야 한다. 요하네스버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기후 변화와 다른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 패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문제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당사국이 져야 한다. 모든 주요 배출국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2012년 이후의 보다 포괄적인 국제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예를 들어 기술 혁신을 통해 보편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성 원칙을 고려한 전 세계적으로 조율되고 정립된 기후 변화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E. 범지구적 조치의 기타 우선순위

62. 보다 광범위한 발전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분야에서의 조치 또한 필요하다(아래 참조).

전염병 감시 및 모니터링

63. 진화하는 대유행병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적 대응이 충격적일 정도로 느린 모습을 보여 왔고 자원도 크게 불충분한 실정이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가용함에도 불구하고 열대 지역 전체에 걸쳐 말라리아가 계속하여 창궐하고 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을 황폐화하는 여러 전염병(대표적으로 HIV/AIDS 및 결핵)이 특히 새로운 약물 내성 측면에서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알려진 질병과 새로운 질병 모두 조율된 국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2003년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사태는 장거리 비행시간조차도 많은 전염병의 잠복기보다 짧기 때문에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7억 명의 승객 중 아무나 자기도 모르는 질병 보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64. 또한 SARS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효율적인 국제기구들이 국가 보건 기관 및 전문 기술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경우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어떤 국가도 독자적으로는 이러한 수준의 억제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제 공조를 위한 기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이 2005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이루어질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의 개정에 합의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향후 대유행병이 발생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WHO 산하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GOARN)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하여 다양한 국제 제휴 체제의 대응을 조율함으로써 국가별 보건 감시 및 대응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 재해

65. 인도양 쓰나미의 파괴적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자연 재해에 대한 인간의 취약성과 더불어

빈곤층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피해를 상기시켰다. 생명, 민생 및 인프라에 미치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자연 재해가 점차 더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2005년 초에 개최된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에서는 향후 10년 간 재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 분야를 식별한 2005~2015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이 채택되었다. 이 또한 이행해야 한다.

66. 인도양 지역 국가의 경우 유엔 및 기타 기구의 도움을 받아 역내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폭풍, 가뭄, 산사태, 폭염, 화산 폭발과 같이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다른 위험 요소도 존재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재해 대비 및 완화 시책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적 및 지역적 역량을 바탕으로 모든 자연 재해에 대한 범세계적인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조기 경보 체계 구축의 지원을 위해 UNISDR(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 사무국이 유엔 산하 관련 기구와 협력하여 기존 역량과 격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조사 결과 및 권고를 바란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구제를 위한 개선된 신속한 대응 체제 또한 필요하다(아래 5항에서 검토).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67.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이 자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 농업, 천연 자원, 환경 관리, 에너지 및 기후 분야와 관련된 빈곤국의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범세계적인 노력을 대폭 증대해야 한다. 특히 열대성 질병 연구에 대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키고 열대 농업 연구를 위해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68. 정보 통신 기술이 새천년 발전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예: 최근에 발족한 디지털연대기금/Digital Solidarity Fund과 같은 자발적 금융 체제를 통해).

지역 인프라 및 기관

69. 경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광역 인프라 및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이 특별 지원이 필요한 내륙국이거나 작은 도서 국가인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가 적거나 수송, 식량, 용수 또는 에너지를 이웃 국가에 의존하는 국가 또한 원조가 필요하다. 국제 원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내 공조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은 그와 같은 공조를

국가 전략에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아프리카 상호평가체제(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및 신아프리카개발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와 같은 역내 정치적 대화 및 합의를 위한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기구

70. 전 세계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지고 새천년 발전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려면 국제 금융 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제 금융 기구가 지원하는 국가별 프로그램이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의욕적하도록 보장할 것을 독려하는 바이다. 이에 더해, 국제 금융 기구와 그 주주들은 1945년 이후의 세계 정치 경제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제 경제의 의사 결정 및 규범 설정 프로세스에 대한 개발도상국 및 전환 경제 체제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몬테레이 합의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브레튼우즈 체제 금융 기관들은 이미 개발도상국의 입장 및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두 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이 떨어져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쉽다는 개발도상국 사이에 만연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의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주

71. 오늘날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국이 아닌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향후에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는 이주자 자신은 물론 젊은 인력을 받아들이는 국가와 그들의 모국에(최근 몇 년 간 현저히 증가하는 송금의 형태로)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다수의 복잡한 문제도 수반한다. 한 지역 또는 부문에서는 실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동시에 다른 지역/부문에서는 노동력 부족 및 “인재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이주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첨예한 사회적 및 정치적 긴장 관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이의 영향은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2005년에 제출될 세계국제이주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의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의 소중한 지침이 제시되리라 생각한다. 2006년 유엔 총회에서 개최될 이 주제에 관한 고위급 회담이 이와 관련된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F. 이행 과제

72. 2005년의 시급한 과제는 이미 이루어진 공약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이미 시행 중인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몬테레이 합의의 근간인 상호 책임 및 상호 책임성 원칙은 유효하며 증서화 되어야 한다. 9월의 정상회의에서는 모든 국가가 찬성하고 판단이 가능한 일단의 조치를 도출해야 한다. 새천년 발전 목표가 더 이상 뜬구름 같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수시로

그 진척도를 측정해야 한다. 국가 전략 및 국제 원조를 매일 통보해야 한다. 2005년에 다가오는 미래에 급속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세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놓침에 따른 대가는 명확하다. 구명할 수 있었던 수백만의 생명을 잃고, 확보할 수 있었던 수많은 자유를 놓치고, 우리는 더 위험하고 불안한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73. 게다가, 폭력적인 충돌에 의해 피해를지거나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의 공포에 사로잡힌 세상이나 무정하고 대표성이 없는 정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시민의 견해 및 필요가 외면당하는 세계에서는 개발이 저해되고 최악의 경우 퇴보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 명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 3항 및 4항에서 다룬 현안에 대한 진전이 필수적인데, 발전 자체가 장기적인 안보, 인권 및 법치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글상자 4] 아프리카의 고유한 필요

본 보고서에 설명된 문제는 본질적으로 범세계적이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범세계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진정으로 범세계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세계 지도자들이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천명했듯이 아프리카의 고유한 필요를 인식해야 한다.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서부터 평화를 구축하고 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집단적 역량 배양까지 아프리카의 고유한 필요가 본 보고서의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지난 5년 간 아프리카에서 몇몇 긍정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적으로 정부를 선출한 아프리카 국가가 많으며 군사 쿠데타의 수도 대폭 감소했다. 앙골라 및 시에라리온과 같은 일부 장기적인 분쟁이 해결되기도 했다. 우간다에서 모잠비크까지 많은 개별 국가가 급속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회복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아프리카의 많은 곳(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이 만연한 폭력적인 분쟁, 극심한 빈곤 및 질병의 참혹한 영향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 약 280만 명의 피난민과 전 세계 국내 실형민 중 절반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분쟁 및 동란의 피해자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새천년 발전 목표 달성에 있어 나머지 개발도상국에 뒤처져 있다. 전 세계 연간 AIDS 사망 중 약 3/4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성이 받는 피해가 가장 크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만연하고 있는 HIV/AIDS는 인간적인 비극인 동시에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 중 약 90%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사람들이며 그중 대부분은 5세 미만의 아동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다수가 계속하여 높은 교통 비용 및 작은 시장 규모, 낮은 농업 생산성, 아주 높은 질병 부담, 더딘 해외로부터의 기술 이전 및 보급 등의 복합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 모두가 지속적인 빈곤을 유발하기 쉽다.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은 새로운 열정과 결단력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있다. 2015년까지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 및 신아프리카개발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과 같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 폭력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해결하고, 모범적인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경제 성장 및 생존을 위한 올바른 여건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다.

영국에 의해 설립된 아프리카위원회(Commission on Africa)가 2005년 3월에 보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개척적인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아프리카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에 대한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특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 공동체는 이러한 필요에 대응해야 한다. 제휴 및 연대의 정신으로 아프리카 국가와 광역 및 지역 조직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존 및 필요한 채무 구제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대폭 증액된 공적 발전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평화유지군 활동에 기여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74. 개발에 있어서는 이행이 미진한 반면 안보 측면에서는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합의조차 부족하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행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75. 이러한 위협에 대한 합의된 공통의 평가와 위협 해결 의무에 대한 합의된 공통의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모든 회원국과 전 세계 모든 사람에 안보를 제공하는 유엔의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유엔의 능력도 저하될 것이다.

A. 집단 안보의 비전

76. 집단 안보 제공에 있어서 유엔이 담당하는 적절한 역할이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위협의 속성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 실패에 우려하여 2003년 11월에 “위협, 도전 과제 및 변화에 대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을 설립했다. 이 패널은 2004년 12월에 보고서 “보다 더 안전한 세계: 공통의 책임(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A/59/565)을 제출했다.
77. 본인은 보고서에 상술된 광범위한 비전과 모든 국가의 신규 및 기존 위협에 대처하고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집단 안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아울러 이러한 개념이 보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 간의 격차를 좁히고 오늘날의 딜레마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78. 21세기에 있어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에는 단순히 국가 간 전쟁 및 분쟁뿐 아니라 시민 폭동, 조직범죄,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도 포함된다. 빈곤, 치명적 전염병 및 환경 저하 또한 마찬가지로 재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에 포함된다. 이러한 위협은 모두 대규모로 사망 또는 수명 단축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체제의 기본 단위인 국가를 약화시킬 수 있다.
79. 부의 정도, 지리적 조건 및 힘에 따라 우리가 인식하는 가장 긴급한 위협이 달라진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집단 안보는 전 세계 각 지역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는 위협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달려 있다.
80. 글로벌화 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부유국은 빈곤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한 공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핵 공격은 전 세계에 파괴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보건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빈곤국에서 악성 대유행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81. 이러한 위협의 상호 연결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안보 컨센서스를 모색해야 하며, 그중 첫 번째 조항은 모두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위협이 무엇이든 모두를 위협한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를 이해한다면 전 범위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테러 행위 및 빈곤에 대응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핵무기 확산에 대응하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HIV/AIDS에 대응해야 한다. 소형 경량 무기 위협에 대해서도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기울이는 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에 더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아주 초기 단계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위협에 예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82. 회원국이 가입한 안보 조약을 준수하여 모두가 계속하여 안보 혜택을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들이 다자간 체제에 확신을 가지고 이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려면 보다 일관적인 모니터링, 보다 효과적인 이행, 그리고 필요할 경우 보다 확고한 집행이 필수적이다.
83. 이는 이론적인 사안이 아니라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이다. 올해에 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경우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 정책적 및 제도적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유엔을 본래의 역할인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기구로 변모시켜야 한다.
84. 재난적인 테러 행위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이 요구되며, 먼저 테러 행위의 정의에 대해 회원국들이 합의하고 이를 종합적인 협정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모든 회원국이 조직범죄 및 부패에 대한 포괄적인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하고 이행하고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핵무기, 생화학 무기가 테러 단체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긴급 조치에 대해 서약해야 할 것이다.
85.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간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무기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은 테러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기 감축을 촉진하고 회원국 간의 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다자간 협정은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협정이 이제 훼손될 위협에 처해 있다. 무기 감축의 지속적인 진전을 보장하고 특히 연쇄적인 핵무기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 협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86. 아울러 계속하여 전쟁의 발발을 줄이고 위협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항에 기술된 개발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전쟁을 방지하고 종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군과 민간 지원을 구체화하는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전쟁 예방, 중재,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백만 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 두 평화 협정(앙골라에서 체결된 비세스 협정과 르완다에서 체결된 아루샤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B. 재난적 테러 행위의 예방

국제 테러

87. 테러 행위는 유엔에 상징하는 모든 것(인권 존중, 법치주의, 시민 보호, 국민과 국가 간의 관용, 평화로운 분쟁 해결)에 위협이 된다. 테러 행위는 최근 5년 간 가장 급박하게 증가한 위협이다. 테러 단체의 국제 네트워크는 세계 곳곳까지 뻗어 나가 보편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테러 단체는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를 취득하고 대량 살상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와 같은 공격이 한 번이라도 성공하거나 그로 인해 연쇄적인 사건이 촉발될 경우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88. 테러 행위에 대한 전략은 종합적이어야 하며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즉, 테러 행위 의존 또는 지원을 단념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테러리스트의 자금 및 물자 이용을 차단하고, 회원국의 테러 행위 후원을 금지하고, 회원국의 테러 행위 퇴치 역량을 개발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전 세계의 모든 회원국과 시민 단체가 그와 같은 전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89.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90. 테러 행위 지원 유혹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테러 행위 지원은 수용 가능하거나 효과적인 목적 달성 방법이 아님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유엔의 도덕적 권위와 테러 행위 단죄에 있어서의 역량이 테러 행위 정의를 포함한 포괄적 협정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 불발로 인해 저해 되어 왔다.
91. 이제 소위 국가 테러 행위(State Terrorism)에 대한 논쟁은 접어들 때가 되었다. 국가에 의한 무력 사용은 이미 국제법 하에서 철저히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점령에 대한 저항권도 진정성 측면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 권리는 배제되어야 한다. 본인은 테러 행위의 정의에 대한 고위급 패널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와 같은 정의를 통해 기존 협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더해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정부 혹은 국제기구가 위협을 느껴 임의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민간인 혹은 비전투원을 죽이거나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의 모든 행위가 테러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이 제안이 명백한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60차 총회 종료 전에 세계 지도자들에게 일치 단결하여 테러 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92. 테러리스트들이 핵 물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위험 물질을 취합 하여 안전하게 간수하고, 가능한 경우 폐기하며 효과적인 수출 통제 수단을 이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요 8개국 정상회담(G8)과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온전히 시행되고 서로를 보강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들이 지체하지 않고 핵 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정을 완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93. 생물 테러 위협은 핵 테러 위협과 차이가 있다. 끔찍한 상상 잠재력을 지닌 “디자이너 버그 (Designer Bug)”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소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곳에 이른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최선 방어책은 공중 보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I항에 제시된 권고는 이중의 이점이 있다.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창궐에 대처하고 인위적인 전염병 유행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 보건 체계 강화(한 세대가 소요될 과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존 국제 대응의 적절성을 보장해야 한다. 치명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GOARN)가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이에 배정된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GOARN이 철저히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줄 것을 회원국들에 촉구하는 바이다.
94. 테러리스트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시민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지 않아야 한다. 테러에 대한 투쟁에 있어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인권에 대해 타협하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도록 돕는 셈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포기할 경우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긴장을 야기하게 되고,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들의 포섭 대상이 될 것이다. 대테러 조치가 국제 인권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보고하는 특별 보고관 직을 설립할 것을 회원국에게 촉구한다.

조직범죄

95. 테러 위협은 조직범죄 위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연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모든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조직범죄는 국가를 취약하게 만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내전을 촉발하고, 유엔의 평화 구축 활동을 수시로 방해하고, 테러 단체에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한다. 조직범죄 단체는 불법 밀입국 및 무기 밀수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96. 최근 몇 년 간 유엔은 다수의 주요한 협정 및 협약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조직범죄 및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규범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조약 당사국 중 다수가 이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았는데, 순전히 역량 부족 때문인 경우가 간혹 있었다. 모든 회원국이 이들 협정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한편, 국내 형사사법 및 법치주의 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협정 이행의 감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C.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97. 핵 기술의 위험을 억제하고 그 약속의 이행을 관리하려는 다자간 노력은 유엔만큼이나 역사가 깊다. 이번 달로 35년이 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¹²은 존재 필요성을 증명해 왔다. 핵 위험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국제 평화 및 안보를 보호와 관련한 다자간 협약의 가치를 입증했다. 하지만 오늘날 NPT는 한 당사국의 첫 번째 탈퇴로 인해 상처를 입었으며 검증 및 집행에 대한 부담 증가에서 기인하는 신뢰 및 준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NPT의 일부인 유엔 군축회의(CD)는 부분적으로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 절차와 그에 따른 파행에서 기인하는 타당성 위기에 봉착해 있다.
98. 무기 감축과 핵무기 확산 방지의 진전은 필수적이며 서로 얽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핵무기 보유국에 의한 최근의 무기 감축 노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2002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SORT)과 같은 양자간 협약은 수천에 달하는 핵무기 폐기와 더불어 비축량의 추가적인 대폭 감소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의 고유한 지위는 고유한 책임 또한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 보유국은 비전략 핵무기의 추가적인 감축을 포함하여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단순한 폐기를 넘어 비가역적 비핵화를 포함하는 군비 통제 협약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소극적 안전 보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 핵분열 물질 생산 금지 조약(FMCT)에 대한 신속한 협상도 필수적이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의 발효 시까지는 핵폭발 실험의 중단을 유지해야 한다. 2005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에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이 이러한 조치를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99. 민수용 핵연료에 요구되는 기술이 핵무기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핵 기술 확산은 핵 체제 내에서의 장기적인 긴장을 악화시켜 왔다. 이러한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는 핵 확산 위험에 대처해야 하지만, 핵 기술의 중요한 환경, 에너지, 경제 및 연구 분야 또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모델 추가 의정서(Model Additional Protocol)의 광범위한 채택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핵 기술의 편익에 대한 핵무기 비보유국의 접근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하지만, 회원국이 국내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 기술의 개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수립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사용에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 가지 방안은 IAEA가 민간 핵 물질 사용자에게 대한 핵분열 물질 공급의 보증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00.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이 핵무기 확산 방지 체제의 토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를 보완하려는 최근의 노력 또한 수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국가 주체가 핵무기, 생화학 무기, 기술 및 물질과

12 유엔, Treaty Series, vol. 729, No. 10485.

수송 수단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입안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2004년)과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의 불법 밀수 방지에 더 많은 회원국이 협력하도록 마련된 자발적인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 포함된다.

101.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견착식 미사일이 확산되는 등 많은 국가에서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확도가 높아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회원국은 미사일과 기타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운반 수단, 로켓 및 견착식 미사일을 망라하는 효과적인 국가적 차원의 수출 통제 수단과 비국가 주체에 대한 이들 품목의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리스트가 견착식 미사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결의안의 채택을 검토해야 한다.
102. 진전이 이루어진 분야는 통합해야 한다. 1997년 “화학 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¹³에서는 모든 당사국에서 화학 무기의 완전한 금지 및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1세기 전에 시작된 과제를 완료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될 수 있다. 화학 무기 협약 당사국은 신고한 화학 무기 비축분의 예정된 폐기 이행에 대해 재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이 조약에 즉시 가입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103. 1975년의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¹⁴는 주목할 만한 정도의 지원 및 지지를 받아 왔으며 최근에 개최된 연례 회의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 왔다. 협약 당사국은 2006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에서 이들 회의의 결과를 통합하고 이 생물 독소 무기 협약(BWC)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이 이 협약에 즉시 가입하고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104. 생물 안보 체제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 총회 결의안 42/37에 의거하여 부여된 생물 작용제 의혹에 대한 사무총장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최신 기술 및 전문성을 포함 시켜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620(1998)에 의거하여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105. 사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 위협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더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IAEA 사무총장 및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을

13 참조: 47차 유엔 총회 공식 기록, 보충 문서 번호 27(A/47/27), 부록 I.

14 총회 결의안 2826(XXVI), 부록.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보호 장치 및 검증 프로세스의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것을 독려하는 바이다. 본인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유엔 헌장 99조에 의거한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을 사용하여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D. 전쟁 위험 및 발발 완화

106. 유엔에 있어 치명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의 분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촉진하며, 소형 경량 무기 유통을 억제하고, 주선, 안전보장이사회 임무 및 예방적 배치와 같은 선제적 작전을 지시함에 있어 특히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07. 회원국은 유엔이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체제와 충분한 자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중재

108. 입증은 어렵기는 하지만 유엔은 사무총장의 “주선(Good Office)”을 통해 평화적인 분쟁 해결에 일조함으로써 다수의 전쟁을 거의 확실하게 예방해 왔다. 지난 15년 간 중재를 통해 끝난 내전의 수가 지난 200년 동안 이루어진 중재를 통한 종전 수보다 더 많은데, 이는 부분적으로 유엔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협상 기회를 제공하고, 전략적으로 조율하고, 평화 협정을 이행할 자원을 제공한 덕분이다. 하지만 유엔이 충분한 역량과 인력을 보유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선 직능 강화를 위해 회원국이 추가적인 자원을 사무총장에게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재 조치

109. 제재는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으로 취해지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제재 조치는 전쟁과 협상 사이에 위치하는 필요한 중간 지대이다. 일부 경우에는 제재 조치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군사적 압박과 병행하여 반군이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국가를 약화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다.
110. 표적(특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직접적이고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 개인)에 대한 금융, 외교, 군사, 항공, 여행 및 원자재 관련 제재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유엔이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제재 조치는 회원국의 제재 조치 이행 역량 강화, 자원이 적절히 뒷받침된 감시 체제 수립 및 인적 피해 완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집행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제재 조치를 적용하고 교훈을 습득하는 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의 제재 조치는 무고한 제삼자(예: 대상 국가의 민간인)가 겪게 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의 무결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히 구성해야 한다.

평화 유지

111. 지난 수십 년 간 유엔은 분쟁 지역 안정화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15년 동안은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여 당사국이 분쟁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해 왔다.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 관리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온 유엔평화활동패널(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의 보고서(a/55/305-s/2000/809, 부록)가 발행된 이후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가 유엔의 개입에 대한 요구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유엔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선진국이 평화유지군에 기여하기를 점점 더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유엔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112. 유엔이 필요한 평화 유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회원국이 더 많은 것을 기여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특히 유엔의 제도적 틀 안에서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는 전략 예비대를 창설함으로써 유엔의 파병 선택권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유엔의 역량은 다수의 지역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적인 노력과 상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 조직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전투 예비대 창설 결정과 아프리카연합의 아프리카 예비대 창설 결정은 유엔의 노력을 보완하는 매우 소중한 조치이다. 유엔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련 지역 조직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평화 유지 역량의 상호 연동 체제를 설립하는 등의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113.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유엔의 평화유지단 및 평화 구축단은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고 특히 지원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할 엄중한 책임을 지닌다. 유엔 관리단 및 평화유지단에 의한 최근의 부정행위 의혹을 고려하여 유엔은 국제법, 기본 인권 및 기본적인 적법 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재천명해야 한다. 유엔의 자체적인 평화 유지 작전 감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파병 대상 회원국 내에서 범죄 또는 위반 행위를 범한 자국의 파견단 구성원을 기소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회원국에 상기시키는 바이다. 특히 소수자 및 기타 취약 계층 사람에 대한 유엔 평화유지단의 성적 착취 의혹 사건으로 당혹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위반 행위를 범한 모든 유엔 작전 참여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했다. 회원국 또한 자국의 파견단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평화 구축

114. 평화 합의 중재 및 이행에 있어 유엔이 거둔 성공 이력은 안타깝게도 일부 통렬한 실패에 의해 훼손되었다. 사실 1990년대의 가장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중 다수가 평화 합의 협상 이후에 발생했다(예: 1993년 앙골라 및 1994년 르완다). 전쟁에서 벗어난 전체 국가 중 약 절반이 5년 이내에 다시 폭력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두 가지 요점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평화 체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기시킨다. 하지만 유엔의 제도적 장치에 공백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는 유엔 체제의 어떤 부분도 국가가 전쟁에서 지속적인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간 평화 구축 위원회를 창설하고 유엔 사무국 내에 평화 구축 지원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제안하고자 한다.
115. 평화 구축 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에 필요한 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쟁 직후에 지속적 복구를 위한 유엔의 계획을 개선하고, 의무 분담금, 자발적 원조 및 상설 자금 조달 수단에 대한 개괄적인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복구 활동에 대해 예측 가능한 금융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유엔 기금/프로그램/기관의 다양한 분쟁 후 활동에 대한 조율을 개선하고, 유엔/주요 양자간 원조국/평화유지군 파병국/지역의 관련 주체 및 조직/국제 금융 기구/당사국의 중앙 정부 혹은 과도 정부가 일관성 향상을 위해 각자의 분쟁 후 복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며, 중기 복구 목표를 향한 진척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분쟁 후 복구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확대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기구가 조기 경고 또는 감시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회원국들이 임의의 단계에서 평화구축위원회의 조언을 활용하고 분쟁 완화를 위한 국내 제도 구축(법치주의 제도 강화 포함)을 목적으로 평화 구축 상설 기금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116. 분쟁의 단계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순차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 평화구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효율성 및 정당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할 것이라 사료된다. 동시 보고 체계는 중복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117. 평화구축위원회는 핵심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비슷한 수의 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 주요 파병국, 평화 구축 상설 기금의 주요 분담국으로 구성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평화 구축위원회는 국가별 작전에 있어 국가 정부 또는 과도 정부의 관할 당국, 관련된 지역 주체 및 조직, 파병국(해당하는 경우) 및 해당 국가의 주요 원조국을 참여시켜야 한다.
118. 국제 금융 기구의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맡은 임무와 거버넌스 체제를 고려한 최선의 참여 방법을 정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119. 협의가 완료되면, 2005년 9월 이전에 보다 완성된 제안서를 검토를 위해 회원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소형 경량 무기 및 지뢰

120. 소형 경량 무기의 축적과 확산이 계속하여 평화, 안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01년에 소형 경량 무기 불법 거래 방지, 퇴치 및 근절을 위한 제반 행동 계획¹⁵을 채택한 이후 문제 인식이 제고되어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어 왔다. 이제 무기 금수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퇴역 전투원의 무장 해제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정을 통해 소형 경량 무기의 표시 및 추적을 규제하고 불법적인 무기 중개를 방지하고 퇴치하고 근절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이다. 내년에 조치 계획 검토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표시 및 추적을 규제하는 협정에 합의하고 불법 무기 중개 금지 협정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121. 전 세계에서 절반에 달하는 국가에서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불구로 만들고 전체 지역 사회의 빈곤 탈피 노력을 방해하는 지뢰(기타 폭발성 전쟁 잔존물 포함)의 피해를 근절하는 작업 또한 계속해야 한다. 대인 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¹⁶과 이를 보완하는 “과도한 부상 또는 무차별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간주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혹은 제한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¹⁷에 대한 수정 의정서 II¹⁸는 14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지뢰 이전에 사실상 중단되었고 지뢰가 매설된 대규모 지역에서 지뢰가 제거되었으며 3,100만 개 이상의 지뢰 비축분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모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온전히 이행한 것은 아니며 미가입 회원국의 경우 방대한 양의 지뢰 비축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회원국이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아직 이들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의 경우 최대한 조속히 가입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5 참조: 유엔의 소형 경량 무기 불법 거래 방지, 퇴치 및 근절에 관한 회의(Conference on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All Its Aspects) 보고서, 뉴욕, 9-20 2001년 7월(A/CONF. 192/15), IV장.

16 CD/1478.

17 참조: 유엔 군축 연감(Disarmament Yearbook), 5권: 1980(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81.IX.4), 부록 VII.

18 CCW/CONF.I/16(Part I), annex B.

E. 무력 사용

122. 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합의의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한 합의이다. 최근 몇 년 간 이 사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이 심한 차이를 보여 왔다. 이들은 회원국이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잠재적이거나 임박하지 않은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집단 학살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보호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 혹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달리 했다.
123. 유엔이, 설립 취지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 행동을 취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가 아닌 견해 차이를 해소하는 포럼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름에서 상징하듯 유엔 현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해의 훌륭한 근거가 되리라 믿는다.
124. 임박한 위협은 무장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주권국의 본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51조에 의해 온전히 대처 된다. 오래 전부터 법률 전문가들은 51조가 이미 발발한 공격뿐만 아니라 임박한 공격 또한 망라한다고 인정해 왔다.
125. 유엔 현장은 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경우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선제적 사용 포함) 전면적인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집단 학살, 인종 청소 및 기타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또한 국제 평화 및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126. 당면 과제는 권력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력 사용의 승인 또는 재가를 검토할 때 해당 위협의 심각도, 제안된 군사적 조치의 적절한 목적, 군사력 이외의 수단을 사용할 경우 위협을 성공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군사력 사용 방안이 당면한 위협에 비례적인지 여부, 합리적인 수준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통의 견해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군사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밝힘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는 의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 세계 정부 및 여론이 이사회 결정을 보다 더 존중하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기술하고 무력 사용을 승인하거나 위임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와 같은 원칙에 따를 것임을 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한다.

4.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자유

127.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회원국들은 총력을 다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인정된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핍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했다. 모든 사람은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지닌다.
128. 법치주의, 인권 및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촉진하는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또한 정의와 기회와 안정이 존재하는 세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인간 존엄성 존중의 확실한 토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안보 의제나 발전 정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129. 법 이론 측면에서 보면 현 세대만큼 풍부한 유산을 물려받은 세대도 없다. 우리는 어느 정도 국제 인권법의 적용을 받는 축복받은 세대이다. 그중에는 분쟁 및 박해 피해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인상적인 규범도 존재한다. 또한 우리는 무역법에서 해양법까지, 테러법에서 환경법까지 소형 무기 관련법에서 대량 살상 무기법까지 모든 것에 대한 일단의 국제 규칙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 고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권 및 법치주의 조항을 평화 협정에 포함시키고 이행되도록 할 필요성을 더욱 더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힘든 경험을 겪음으로써 어떠한 법 원리도(심지어 주권조차도) 대량 학살, 인도주의적 범죄 및 대규모 학대에 면죄부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130. 하지만 이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언은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다. 조치가 없다면 약속은 무의미하다. 정부의 폭격 소리나 지평선에서 등장하는 잔인무도한 무장 단체의 모습에 공포에 떨며 몸을 움츠리는 마을 사람들은 10년 전의 르완다 비극을 떠올리며 했던 국제 공동체의 엄숙한 “재발 방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제네바 협정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을 구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억류자에 의해 학대 받고 있는 포로 입장에서 고문을 금지하는 조약은 달갑지 않은 위안이다. 국제 인권 기구가 그와 같은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가 고위직 친구의 뒤에 숨도록 묵인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럴 것이다. 전쟁으로 지친 사람들이 평화 협정 체결 후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지만 법치주의 정부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는 대신 전쟁광이나 폭력배 같은 지도자가 권력을 잡아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와 같은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이 새천년 선언에서 천명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엄숙한 약속은 투표를 통해 그들의 통치자를 선출한 적이 없고 변화의 신호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 공허한 허언에 불과하다.
131. 보다 큰 자유를 향한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그 회원국이 지난 60년 간 훌륭하게 발전시켜 온 규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가 없이 선택적 적용, 임의 집행 및 위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와 같은 조치는 새천년 선언

에서 이루어진 공약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132.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유엔 인권 기구의 지위와 체제를 보강하며, 전 세계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제도화 및 성숙화를 위한 노력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 2005년에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규모 잔학 행위의 잠재적 또는 실제 피해를 “보호할 책임”을 수용하고 이행하는 데도 증진해야 한다.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정부가 자국민 및 서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입법의 시대에서 이행의 시대로 전진해야 한다. 우리가 선언한 원칙과 공동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A. 법치주의

133. 자국에서의 법치주의를 천명한 모든 국가는 외국의 법치주의 또한 존중해야 하며 외국의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국가는 국내에서도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실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는 법치주의를 인류의 안전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체제로서 준수할 것이라는 모든 회원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정부와 개인은 계속하여 법치주의를 위반함으로써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고 약자와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장 단체 및 테러리스트와 같이 법치주의와 거리가 먼 자들이 유엔의 평화 중재 기구 및 감시 체제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법치주의를 비웃고 따르지 경우도 있다. 단순한 개념적 법치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 법률을 시행하고 기존 법률을 집행하고 유엔 기구를 보강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134. 국제 인도법 만큼이나 말과 현실(선언과 행동) 간의 격차가 극명하고 심한 분야는 없다. 국제 공동체가 집단 학살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에 직면할 때 유엔이 끝까지 수수방관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재난적 피해를 입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지난 수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을 요청해 왔다. 르완다 집단 학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던 시점에 대량 학살을 방지할 다섯 가지 항목의 실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실행 계획에서는 무력 분쟁을 방지하는 조치의 필요성, 효과적인 민간인 보호 대책, 무처벌 근절을 위한 사법적 조치, 집단 학살 예방 특별 보좌관을 통한 조기 경보, 집단 학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의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을 강조했다. 하지만 잔학 행위를 예방하고 대규모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제 공동체가 즉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135. “개입 및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와 보다 최근으로는 “위협, 도전 과제 및 변화에 대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및 전 세계의 16개 회원국이 “집단적 보호책임”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추진했다(참조: A/59/565, 단락 203). 본인은 이 사안과 관련된 민감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보호책임을 수용하고, 필요할 경우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책임은 무엇보다 그 존재의 이유와 임무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 각각의 개별 국가에 있다. 하지만 국가 당국이 자국민을 보호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 공동체가 책임을 맡아 외교적, 인도주의적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민간인의 인권 및 안녕에의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그와 같은 방법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에 의해 유엔 헌장에 의거하여 조치(집행 조치 포함)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3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야 한다.

136. 다자간 협정 참여 확대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많은 회원국이 다자간 협정 체제 밖에 머물러 있어, 중요 협정의 발효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 5년 전에 본인은 회원국이 사무총장이 수탁자인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수 있도록 특별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이는 중대한 성공이었고 그 후로 매년 조약 행사가 개최되었다. 올해 행사에서는 인권, 피난민, 테러, 조직범죄 및 해양법에 중점을 두고 전 세계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31개 다자간 조약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으로 지도자들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137. 사회가 폭력적인 과거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유엔의 모든 노력이 성공하려면 국가의 효과적인 입법 및 사법 제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유엔, 기타 국제기구 및 회원국 정부가 그와 같은 제도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분쟁 중 및 분쟁 후 사회에서의 법치주의와 과도적 정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S/2004/616)에서 언급했듯이, 현장 및 본부 모두 적절한 평가 및 계획 역량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지원이 단편적이고 느리고 궁극적인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엔이 이 분야에서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유엔 체제 내의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치주의지원 전담 조직을 제안된 평화구축지원실(Peace Building Support Office, 아래 5항 참조) 내에 신설하여 분쟁 중 및 분쟁 후 사회에서의 법치주의 재구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138. 정의는 법치주의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립으로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구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에 임시 재판소 두 곳을 설치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시에라리온의 경우는 혼합 재판소를 설립하였으며, 캄보디아에도 조만간 재판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이니셔티브로는 다르루프, 티모르레스테 및 코트디부아르 관련 전문위원회/조사위원회 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책임자 무처벌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극악하고 만연한 인권 탄압 형태의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져 국제 인권법을 통해 이루어 온 진전 노력을 퇴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잔학 행위 피해자 구제 수단을 늘리고 추가적인 참상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국제형사법원 및 기타 국제 혼합 전범 재판소와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요청 시 피고인을 이들 재판소에 인도할 것을 독려하는 바이다.

139. 국제형사법원은 회원국 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국제 체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몇 년 간 국제형사법원의 소송 사건이 대폭 증가했으며 다수의 분쟁이 해결되었지만, 자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형사법원의 업무 강화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형사법원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회원국의 경우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혹은 적어도 특수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이 국제형사법원의 권고 권한을 염두에 두고 활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소송 회원국과의 공조 하에 국제형사법원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인권

140. 인권은 가난한 자에 있어서나 부유한 자에 있어서나 공히 중요하며, 인권 보호 또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국가의 안보 및 번영에 있어 똑같이 중요하다. 안보 또는 개발과 같은 목표와 인권 간에 타협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권을 대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극심한 빈곤이나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재앙에 의해 유린당하는 시민의 인권을 모른 채 한다면 극빈 및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항력만 약화될 것이다. 인권 보호에 기반하는 전략은 유엔의 도덕성과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141. 유엔은 설립 이후, 5년 전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재확인 바 있는 임무이기도 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 보호 체제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이 임무 전반에 걸쳐 인권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142. 중요한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다. 새천년 선언 이후 유엔의 인권 기구는 보호 업무, 국가별 인권 기관에 대한 기술 및 일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많은 국가에서 국제 인권 기준이 보다 잘 이행되도록 하는 데 일조해 왔다. 작년에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인권 촉진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국가별 팀을 유엔에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된 글로벌 프로그램인 “조치 2호(Action 2)”를 발동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내의 국가별 팀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과 인력을 더욱 보강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143. 하지만 기본적인 보호 원칙이 능동적으로 위반되는 경우 기술 지원 및 장기적인 제도 수립의 의미가 거의 혹은 전혀 없을 것이다. 위기 시에 더 많은 인권 담당(조직)을 현장에 배치하면 유엔에 적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요하는 상황에 대한 시급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44.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담당 고등 판무관을 소환하여 특정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는

빈도를 늘린 결과 평화 및 안보에 대해 결의할 때 인권 고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인권 담당 고등 판무관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관련 조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안전보장이사회 및 제안된 평화 구축 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은 유엔 조직의 업무 전반에 걸쳐 의사 결정 및 논의에 인권을 통합해야 한다. 최근 몇 년 간 인권 “주류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지만, 여전히 핵심 정책 및 자원 배분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지는 않았다.

145. 이러한 소견은 모두 인권 담당 고등 판무관실(OHCHR)의 강화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위기 대응, 국가 인권 역량 구축, 새천년 발전 목표 지원 및 분쟁 예방 분야에서 인권 고등 판무관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지만, 국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고등판무관실의 준비(자원 등)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고등판무관실의 중요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해 천명한 회원국의 의지에 걸맞게 자원을 보강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인권 고등 판무관에게 요청하였다.
146. 유엔 활동에 전반에 걸쳐 인권 고등 판무관과 고등판무관실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엔 인권 기구의 정부 간 협의 기능이 강력할 때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엔 인권 체제의 중심축이 될 기구(인권위원회)의 변혁을 제안하고자 한다(아래 V항).
147. 그러나 인권 조약 기구들 또한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인권의 위반 사례에 대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약 기구는 회원국이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적시에 보고하지 않고 보고 요건도 중복된 경우가 많아 그 기능이 제한적이고 저조한 권고 이행률로 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구가 통일된 체제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모든 조약 기구에 적용되는 조율된 지침이 작성되어 이행되어야 한다.

C. 민주주의

148. 1948년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¹⁹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를 공표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채택 이후 세계 곳곳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영감을 주었으며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수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통치 방식과 통치자 선택권은 모든 사람의 생득권이어서 하며, 그와 같은 생득권의 구현이 보다 큰 자유를 위해 전념하는 유엔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149. 새천년 선언에서 모든 회원국은 민주주의의 원칙 이행 및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로 서약했다. 같은 해 총회는 민주주의의 촉진 및 강화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²⁰ 현재 100개가 넘는 국가가

19 총회 결의안 217 A(III).

20 총회 결의 55/96.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의 바르샤바 선언에 서명했으며(A/55/328, 부록 I 참조), 2002년에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를 수록하고 광범위한 촉진책을 명시한 서울 실행 계획을 승인했다(A/57/618, 부록 I 참조). 세계 곳곳의 지역별 기구 또한 민주주의 촉진을 업무의 핵심 요소로 정했으며, 민주적 통치를 촉진하는 국제 및 지역 시민 단체의 강력한 공동체 등장도 고무적인 일이다. 이 모두가 민주주의는 임의의 국가 또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원칙을 강화해 준다.

150. 하지만 이러한 서약은 성과로 이어져야 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경계가 요구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항상 존재해 왔다. 수차례 목도해 왔듯이,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민감하고 어려우며 심각한 역행을 겪을 수 있다. 유엔은 법률적,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과 조언을 통해 회원국의 신생 민주주의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유엔은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작년만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이라크 및 브루나이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국가가 그와 같은 지원을 받았다. 개발도상국 전체에 걸쳐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전쟁으로 태동한 국가의 법치주의를 재구축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 또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지속하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1. 유엔은 전 세계에 걸쳐 민주주의 제도 및 관행을 촉진하고 강화함에 있어 그 어떤 단일 기구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유엔 활동의 효과가 유엔이라는 관료 집단의 여러 부분에 걸쳐 분산되는 방식에 의해 반감되고 있다. 이제 방점을 찍을 때이다. 하지만 다수의 중요 분야에서 유엔의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유엔 전체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유엔은 그 역할을 규범 설정에 한정하지 말고 전 세계에 걸쳐 회원국의 민주주의 확대 및 심화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수립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반 지원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기금을 유엔 내에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개발계획과 정무국(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산하 선거지원과(Electoral Assistance Division)의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 활동 간에 보다 명시적 연관성을 규정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유엔 활동들이 보다 면밀히 조율되도록 할 계획이다.
152. 2항 및 4항에서 새 천년에 보다 큰 자유라는 대의를 증진함에 따른 상호 연결된 과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유엔이 적절한 기여를 하기 위해 보다 더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되는 여러 분야를 포함하여 유엔의 집단적 대응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을 적시하였다. 아래 5항에서는 전 세계의 전반적인 현안에 걸쳐 그와 같은 집단적 대응을 구성하고 이행함에 있어 유엔이 맡은 바 적절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부적인 개혁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 유엔 강화

153. 본 보고서에서 유엔 현장에 명시된 유엔의 원칙 및 목적이 1945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하며 지금 이 순간이 그와 같은 원칙 및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목적이 견실하고 원칙이 일관적이라도 실무 관행 및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유엔이 2~4 항에 기술된 해결 과제에 대응함에 있어 회원국 및 전 세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완전히 적응해야 한다. 회원국뿐만 아니라 국가적 수준과 국제적 수준에서 공히 전 세계의 사안과 관련하여 역할을 증대하고 있는 시민 사회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유엔의 힘은 광범위한 파트너십과 보다 큰 자유라는 대의명분을 증진하는 데 행동이 요구되는 현안 전반에 걸쳐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연대로 그와 같은 파트너를 이끌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154. 유엔이 조직으로서 다른 시대에 설립된 사실은 명백하다. 현재의 유엔의 관행이 오늘날의 필요에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유엔이 우선순위를 추구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엔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155. 실은 1997년에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주요 우선순위는 유엔의 내부 체제와 문화를 개혁하여 유엔을 회원국 및 전 세계 사람에게 더 유용한 기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달성해 왔다. 오늘날 유엔은 구조가 더욱 간소화되었고, 업무 방식이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간의 조율이 더욱 달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과 업무 제휴 관계를 개발해 오고 있다. 경제 및 사회 분야의 경우 이제 새천년 발전 목표가 전체 유엔 체제와 더 광범위한 국제 발전 공동체에 대해 공통 정책 프레임워크의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 유엔의 평화 유지 임무는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설계되며, 분쟁 재발 방지 및 지속적 평화의 토대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세계 안보, 번영 및 자유 구축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하는 다양한 비국가 주체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156. 하지만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현 상태로는 유엔 조직 내 여러 부분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거버넌스 구조, 중복된 임무, 현재의 우선순위보다는 이전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임무 등이 모두 유엔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유엔 활동을 회원국이 승인한 목표(본 보고서에 설명된 목표)에 맞게 온전히 조율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사무국을 전문화하고 직원 및 관리자에게 성과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유엔 대표부와 국가 및 유엔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특히 경제 사회 분야) 간에 일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57. 하지만 개혁이 효과적이라면 집행부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유엔의 정부 간 기구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A. 총회

158. 새천년 선언에서 재확인했듯이, 총회는 유엔의 최고 심의, 의사 결정 및 대표 조직으로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 특히 총회는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할 권한을 보유하며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다. 다른 심의 기구 위원을 선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총회의 위신 추락과 유엔 활동에 대한 기여도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총회의 추락은 반드시 역전시켜야 하며, 총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바뀔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159. 최근 몇 년 간 총회에서 총의(컨센서스)에 의해 승인된 결의안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와 같은 총의에 의한 결의가 범세계적 해결 과제에 대응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진정한 목적 합일을 반영한 것인 경우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총의(종종 요구 만장일치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총의는 먼저 각 지역 그룹 내에서 구한 다음 전체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회원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오히려 총회로 하여금 일반성 원리로 후퇴하여 조치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든다. 본질과 결정보다는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논쟁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한다.
160. 수 년 동안 그래 왔듯이 회원국들은 총회가 절차 및 구조를 간소화하여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수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왔다. 현재 여러 회원국에 의해 총회 “재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는 총회가 특히 의제, 위원회 구조, 전체 회의 토론 및 보고서 제출을 요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총회 의장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업무를 합리화하고 심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1. 현재는 총회가 종종 중복되기도 하는 다양한 현안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의제를 다룬다. 국제 이주와 같은 당일의 주요 중요 현안이나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어 온 테러 관련 포괄적 협정을 다룸으로써 중요 의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62. 현재 시민 사회가 십 년에 걸친 급속한 교류 증대 후에 대부분의 유엔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시민 사회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기실 유엔의 목표는 시민 사회와 정부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다. 2003년에 본인이 사무총장으로서 임명한 유엔-시민사회 관계에 관한 저명인사 패널(Panel of Eminent Persons on United Nations-Civil Society Relations)은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개선에 대한 다수의 유용한 권고를

제안했으며, 그 보고서(참조: A/58/817 및 Corr.1)를 내 의견과 함께 총회에 제출했다. 총회는 이러한 권고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시민 사회와의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163. 아울러 위원회 구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감독 활동 및 위원회의 산출물을 검토해야 한다. 총회는 산하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여 재정 지원 없는 위임으로 조직의 과부하를 유발하거나 사무국 내에서의 지나치게 세세한 예산 관리 및 직위 할당과 같은 현행 문제가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총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과 유연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164. 회원국들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총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관점에서 토론에 대한 자국 대표단의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다면 이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회원국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총회의 성과가 계속하여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B. 이사회

165. 유엔 창설 시에 각자 해당 분야에서 중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세 위원회(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간의 책임 분할이 점점 더 균형을 잃어 갔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주장해 왔으며, 특히 냉전 종식 이후에는 상임 이사국 간에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구성이 시대착오적이거나 대표성이 불충분하는 이유로 그 권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경우는 국제 경제 및 사회 거버넌스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직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는 기능이 축소되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66. 세 위원회가 각각 (a) 국제 평화 및 안보, (b) 경제 및 사회 현안, (c) 인권 문제를 맡게 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균형을 촉진하는 일은 출발부터 유엔의 목적 중 하나였으며, 이제 보다 효과적인 운영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위원회는 정상 회의 및 회원국 회의에서 도출된 의제를 추진하는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하며, 안보, 발전 및 정의 문제가 적절히 다루어질 수 있는 포괄적 형태여야 한다. 앞의 두 위원회의 경우 이미 존재하지만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의 경우, 유엔의 기존 인권 조직의 대대적인 개조 및 개량이 필요하다.

안전보장이사회

167. 모든 회원국은 유엔 현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유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그 결정이 전 세계에 걸쳐 존중을 받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68. 새천년 선언에서 전 회원국은 모든 측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종합적인 개혁을 달성하는 데 노력을 집중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참조: 총회 결의안 55/2. 단락 30).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공동체 전체를 보다 광범위하게 대표하고 오늘날의 지정학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전 세계의 관점에서 더 큰 정통성을 갖추려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회원국의 오랜 입장이 투영된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업무 방식 또한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할 역량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들 두 필수 요소를 조화시키는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개혁 제안은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
169. 2년 전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없이는 어떤 유엔 개혁도 완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날의 세계의 권력 현실을 광범위하게 대표해야 한다. 그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에 관한 “위협, 도전 과제 및 변화에 대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의 보고서에 명시된 입장을 지지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유엔 헌장 23조에 의거하여, 재정적, 군사적 및 외교적인 측면에서, 특히 유엔 평가 예산에 대한 비중, 위임된 평화 작전 참여, 안보 및 발전 분야에서의 자발적 유엔 활동에 대한 참여, 유엔의 목표 및 위임 사항을 뒷받침하는 외교 활동 측면에서 유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회원국의 의사 결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이 ODA에 대한 GNP 대비 0.7%라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여 수준을 달성하거나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경우 중요한 기여 기준으로 간주해야 한다.
 - (b) 보다 광범위한 회원국(특히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국가들을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c) 안전보장이사회의 효과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d) 안전보장이사회의 민주성 및 책임성을 증진해야 한다.
170. 위 보고서에 제안된 두 방안(A 모델 및 B 모델)이나 어느 한 모델에서 도출된 규모 및 균형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제안을 검토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회원국은 2005년 9월의 정상 회의 전에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결정에 합의해야 한다.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총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총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조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글상자 5]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A 모델 및 B 모델

A 모델의 경우 거부권이 없는 여섯 개의 상임 의석과 2년 임기의 비상임 의석을 신설하고, 지역별 안배는 다음과 같다.

지역	의석 수	상임 의석(계속)	제안된 신설 상임 의석	제안된 2년 임기 의석(연장 불가)	총계
아프리카	53	0	2	4	6
아시아 태평양	56	1	2	3	6
유럽	47	3	1	2	6
Americas	35	1	1	4	6
총계/ A 모델	191	5	6	13	24

B 모델의 경우 상임 의석은 신설하지 않고 새로운 범주의 연장 가능한 4년 임기 의석과 2개의 비상임 의석(연장 불가)을 신설하며, 지역별 안배는 다음과 같다.

지역	의석 수	상임 의석(계속)	제안된 4년 임기 의석(연장 가능)	제안된 2년 임기 의석(연장 불가)	총계
아프리카	53	0	2	4	6
아시아 태평양	56	1	2	3	6
유럽	47	3	2	1	6
Americas	35	1	2	3	6
총계 / B 모델	191	5	8	11	24

경제사회이사회

171. 유엔 현장에서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조정, 정책 검토 및 정책 협의와 관련된 다양한 중요 직능을 부여하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에 이들 직능 중 대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1990년대에는 유엔의 종합적인 발전 의제가 정상 회의 및 회원국 간 회의에서 도출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 유엔은 이 분야의 정책을 일관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사회이사회 직능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올바르게 다루지 못했다.
172. 1945년에 유엔 현장을 입안할 때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전년도에 브레튼우즈에서 강력한 국제 금융 기구를 창설하는 데 합의하고 다양한 전문 기관과 더불어 세계 무역 기구가 이들 금융 기관을 보완하리라 기대한 배경에는 분명 국제 경제 의사 결정을 분산한다는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책 협의 조정자 및 주최자이자 총의 촉진자로서 수행하는 경제사회이사회 직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현장에 의해 전문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비정부 조직과의 협력을 수행하는 임무가 부여된 유엔의 유일한 기구이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서 운영되며 점차적으로 발전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다수의 직능 및 지역 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다.
173. 경제사회이사회는 최근 몇 년간 이들 위원회를 통해 무역 및 금융 기관과의 연례 특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기술대책단(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ask Force)을 설립하였다. 국가별 그룹을 설립함으로써 안보 현안과 발전 현안을 연계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

174. 이러한 시책들은 다양한 주체 간의 일관성 및 조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지만, 해결해야 할 가시적인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175. 첫째, 국제회의 및 정상 회의에서 도출된 유엔 발전 의제의 이행을 통합하고 조율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이사회는 합의된 발전 목표(특히 새천년 발전 목표)의 진척도에 대한 연례 장관급 평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회원국이 작성하고 유엔 산하 기관 및 지역별 위원회가 지원하는 진척도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76. 둘째, 국제 발전 협력 사업의 추이를 검토하고, 여러 주체의 발전 사업 간의 일관성을 증진하고, 유엔 체제의 규범적 및 운영적 업무 간의 연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회이사회는 고위급 발전 협력 포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와 같은 포럼은 이사회 고위급 회의를 변형하여 격년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177. 셋째, 경제적 및 사회적 과제, 위협 및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필요할 때 적시에 회의를 소집하여 기아, 유행병 및 중대 자연 재해와 같은 발전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조율된 대응을 촉진해야 한다.
178. 넷째, 분쟁의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국가별 임시 자문단을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려 시도해 왔다. 하지만 장기적인 복구, 재건 및 조정의 규모 및 해결 과제를 고려할 때 임시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제안된 평화 구축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분쟁 후 관리 업무를 제도화해야 한다. 구조적 예방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179. 끝으로, 경제사회이사회는 규범적 및 전략 설정 역할이 다양한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조직이 담당하는 관리 및 정책 결정 역할과 분명히 다르지만 경제사회이사회가 세계 발전 의제를 추진함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유엔 체제 전반에 걸쳐 이 분야의 여러 정부 간 기구의 활동에 대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80. 이들 권고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이사회가 현재의 연례 “회의(Segment)” 및 “본 회기(Substantive Session)” 일정에 구속되지 않는 새롭고 보다 유연한 체제를 통해 직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더해, 이사회는 금융 및 무역 분야를 다루는 기관에 상대방을 참여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대표성을 지니는 정부 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는 사무국을 확대하거나 구성이 지역적으로 안배된 집행위원회를 설립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된 인권 이사회

181.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세계인권선언, 두 국제 규약²¹ 및 기타 주요 인권 조약으로 구성된 보편적 인권 체계를 국제 공동체에 선사했다. 인권위원회는 연례 회기 동안 인권 현안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유엔 인건 정책의 개발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주제별 및 국가별 인권 준수 현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인권위원회는 수많은 시민 사회 단체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시민 사회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182. 그러나 신뢰성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해 인권위원회의 임무 수행 역량이 점차 저하되어 왔다. 특히 회원국들은 인권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다른 구가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인권위원회 가입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신뢰성 저하가 가속화되어 유엔 체제 전반적으로 평판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183. 유엔이 전 세계 모든 곳의 여성 및 남성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유엔이 인권이라는 대의명분을 안보와 발전 목표만큼 진지하게 간주하려면, 회원국들이 인권 위원회를 규모가 축소된 상설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하는 방안에 동의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인권이사회를 유엔의 주요 기구로 돌지 총회 산하 기구로 돌지 결정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 회원국은 총회에서 2/3 출석과 2/3 득표를 통해 선출될 것이다. 인권 이사회 설립으로 인권의 권위가 유엔 현장에 명시된 수준에 상응하게 강화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국의 임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는 최고 수준의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C. 사무국

184. 유엔의 업무에 있어서는 역량 있고 효과적인 사무국이 필수적이다. 유엔 조직의 필요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무국 또한 변해야 한다. 유엔 조직의 업무 프로그램 집중도를 높이고 기획 및 예산 제도를 간소화하며 사무국의 서비스를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에 일단의 사무국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2002년에 관리 및 기술 분야 개선을 후속 조치로 취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185. 총회가 이러한 변화를 광범위하게 지원해 온 점을 기쁘게 여기며 그와 같은 변화가 전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을 수행하는 유엔의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예산 수립, 조달, 인사 관리 및 평화 유지 임무 지원 방식의 변화 덕분에 이제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21 총회 결의안 2200 A(XXI).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유엔이 진정으로 효과적인 조직이 되려면 사무국의 전면적인 변혁이 필요할 것이다.

186.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조직(특히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이 사무국에 임무를 할당할 때는 해당 과업에 적절한 자원도 함께 제공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에 대해 관리는 더욱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간 기구의 감독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운영상 필요를 충족해야 상황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량권, 수단, 권한 및 전문적 지원이 사무국과 그 관리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회원국 또한 마찬가지로 사무국이 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진정한 책임성을 견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감독 수단을 가져야 한다.
187. 또한 회원국은 유엔 조직의 위임 사항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위임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관련 활동이 여전히 진정으로 필요한지 혹은 새롭게 부상하는 해결 과제에 대응하여 활동별로 배정된 자원을 재할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총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188. 오늘날의 유엔 직원은 (a) 21세기의 새로운 중요 과제에 맞추고, (b) 복잡한 국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하고, (c)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189. 첫째, 사무국의 구조를 본 보고서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맞게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화 구축 지원실을 신설하고 중재(사무총장의 “주선” 직능)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수반될 것이다. 이에 더해, 정책 사안에 대한 전략적이고 전향적인 과학 관련 조언을 제공하고 유엔 체제 내에서 그리고 보다 넓게는 과학계 및 학계에서 과학 및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사무총장 과학 보좌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190.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직원이 필요하다. 유엔 현장 101조 3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최고 수준의 효율, 역량 및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적 안배를 최대한 고려하여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날에는 남성과 여성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유엔 조직 내에서 합리적인 자기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계속하여 기존 인력에 의존해서는 새로운 필요에 모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직원 보충 및 재배치를 통해 현재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회성 직원 채용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사무총장에게 제공하도록 총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191. 둘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국에 부여해야 한다. 고위급 패널은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총장이 두 번째 사무부총장을 임명할 것을 제한했다. 실제로, 본인은 정책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내각관리단(Senior Management Group)보다 더 강력한 집행 권한을 지닌 내각 형태의 의사 결정 체제를 창설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의사 결정의 준비 및 후속 조치를 위해 소규모 내각사무국이 새로운 의사 결정 체제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다 집중적이고 질서 있고 책임성 있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전 세계에 걸친 복잡한 국제 업무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 불충분할 것이다. 사무총장은 유엔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더 높은 수준의 관리 권한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필요할 경우 과도한 제한 없이 인력 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 체제를 전면적으로 현대화 해야 한다. 따라서 사무총장과 협력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는 바이다.

192. 셋째, 사무국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총회는 요청 시 회원국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투명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범주의 정보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위직 직원이 자신의 조치와 해당 조직이 달성하는 성과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 관리 성과 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다른 내부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조치들의 목적은 관리 체계 및 인사 정책을 다른 국제 공공 및 상업 조직의 모범 사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책임성 및 감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독립성 및 권한과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내부감사실 (Office of Internal Oversight Services)의 종합 검토를 의뢰할 것으로 총회에 제안한 바 있다. 총회가 이 제안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

D. 유엔 체제의 일관성

193. 유엔은 사무국 이외에도 전 세계 현안 전체를 아우르는 풍부한 전문성 및 자원을 갖춘 전문 기구와 자금 조달 체제 및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체제에 적용되는 것은 유엔 체제의 다른 부분에도 유효하다. 모두가 관할 기구 및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4.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엔 체제는 점차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회원국 수와 활동의 규모 및 범위 측면에서 긍정적인 확장을 거듭해 왔다. 한 가지 안타까운 부작용 중 하나는 유엔 체제 내의 여러 기구 간에 위임 사항 및 조치가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다.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것도 상당한 걸림돌이었다.
195.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무총장 임기 동안 실시할 두 가지 주요 개혁 조치를 발족시켰다. 첫째, “유엔 쇄신: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Renewing the United Nations: A Programme for Reform)”이란 제목의 1997년 보고서에서 사무국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인도주의 및 발전 분야에서 더 나은 조율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예: 집행위원회 신설)를 소개했다. 그 후 2002년에는 “유엔 강화: 추가적인 변화를 위한 의제(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An Agenda for Further Change)”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상주 조정관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유엔의 업무를 개선한다는 보다 직접적인 목적의 추가 조치를 공표했다. 사무총장 특별 대표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통합 평화 작전 체계를 제도화했다.

196. 이와 같은 노력은 다양한 기관이 국가 수준에서 서로 그리고 세계은행과 같은 다른 기구와 밀접하게 협력하도록 만드는 등의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체제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 문제의 일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제약과 관련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급진적인 변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관의 그룹화, 엄격하게 관리되는 조직으로 기금 및 프로그램 통합, 발전 수준에 따른 대처, 환경적 및 인도주의적 조치 등이 그와 같은 변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그룹화 과정에서 임무 및 전문성이 보완적이거나 중복된 기금, 프로그램 및 기관이 사라지거나 합병될 수 있다.
198. 한편 지금 당장 취할 수 있으며 취해야 하는 더 많은 즉각적인 조치가 존재한다. 특히 유엔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유엔이 하나의 통합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임의의 국가에 상주하는 고위 유엔 관료(특별 대표, 상주 조정관 또는 인도적 지원 조정관)가 통합 유엔 임무 혹은 “국가별 상주 대표부”의 관리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가져야 한다는 간단한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유엔 체제의 수행 활동과 현지 대표부 간의 조정을 개선하고자 한다.

국가 수준에서의 유엔 활동

199. 유엔이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유엔 기관, 기금 및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가 위 2항에 명시된 국가별 새천년 발전 목표에 기반한 빈곤 완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술적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상주 조정관 제도의 관리는 유엔의 주 발전 기관인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맡아야 하지만, 유엔의 국가별 상주 팀의 경우는 유엔개발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이 지시하고 적절한 자원과 권한이 부여된 상주 조정관이 주도해야 한다. 유엔 개발원조체계(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는 명확한 일단의 전략적 목표를 식별하고 국가 파트너가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광범위한 국가별 발전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유엔의 각 조직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정부 및 유엔이 이러한 “성과 매트릭스(Results Matrix)”를 활용하여 유엔 체제의 국가 수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유엔 대표가 책임성을 견지하도록 할 수 있다.

상주 조정관 제도 강화

200. 이러한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상주 조정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러 기관의 운영 이사회 또한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운영 이사회가 조직 전체에 걸쳐 위임 임무를 배정하고 자원을 할당함에 있어 일관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들 운영 이사회의 자국 대표를 지휘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회원국이 유엔 체제 내에서의 일관성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핵심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증액하고 용도 지정 자금의 비중을 줄일 것을 촉구한다. 위에 언급했듯이, 재활성화된 경제사회이사회가 이와 같은 일관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리라 기대한다.
201. 최근 몇 년간 유엔 체제가 전 세계의 독립 과학자, 정책 결정자 및 정치 지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끌어 내 편익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발전 사항을 유엔 내 조직 및 프로그램의 실무에 지속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발전 분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5년에는 유엔의 발전 사업과 관련 분야의 세계적 석학 간을 연결하기 위해 개발자문위원회(Council of Development Advisers)를 발족시키고자 한다. 위에 언급된 사무총장 과학 보좌관과 긴밀히 협력하게 될 이 위원회는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 정책 입안 관료 및 정치 지도자를 대표하는 약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발자문위원회는 새천년 발전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사무총장과 UNDG에 자문하고, 정기 보고서 및 의견서를 간행하고, 과학계, 시민 사회 및 관련 전문성을 지닌 기타 조직과의 연락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의 자문은 경제사회이사회도 이용할 수 있다.

인도적 대응 체계

202. 인도양의 쓰나미에서 다르푸르 및 동 DRC(콩고민주공화국)의 위기까지 최근 몇 개월 간 국제 인도적 대응 체계의 활동 범위 및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생생한 증언이 이어져 왔다. 유엔이 주도하고 조정하는 국제 인도적 대응 체계는 인도적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과 비정부 단체로 구성되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상당히 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전 세계 어디든 며칠 이내에 전문성을 갖춘 인도적 활동가가 파견되고 다량의 식품 및 기타 구호 품목이 전쟁 및 자연 재해 피해자들에게 제공된다. 국제 인도적 대응 체계 덕분에 기관 간의 중복이 줄어들었고 현장에서는 비정부 단체와 정부 간 기구 사이의 조율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3. 인도양 쓰나미 재해 시에는 역경을 넘어 몇 주 만에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대규모 구호물자를 제공할 수 있었다. 반면에 다르푸르의 피난민에 대한 원조는 약속했던 수준이 한참 미치지 못했으며, 1997년 이후 380만 명이 사망하고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은 콩고민주공화국 내전과 같은 중대 위기의 경우 재정 지원이 비참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비상 상황에서 인도적 대응의 예측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신속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204. 첫째, 용수 및 위생 설비 제공에서 대피소 및 피난민 수용소 관리까지 격차가 흔히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인도적 대응 체계의 대응 역량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위기가 이미 진행 중이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활동이 분쟁의 동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복잡한 비상사태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 일반적으로 기회와 제약 조건을 가장 잘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도적 지원 조정관의 지휘를 받아 유엔의 국가별 팀이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현장 조정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분명 존재한다. 특히 유엔 국가별 팀의 준비와 장비를 보강하고, 인도적 지원 조정관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충분한 자원을 현장 체제 지원에 즉시 가용하도록 신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실현해야 한다.
205. 둘째, 취약한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쓰나미 위기에 대한 관대한 국제 지원 물결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관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인도적 지원 공동체와 원조국 공동체의 협력과 신규 원조국 정부 및 민간 부분의 보다 체계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위기에 일관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초기 단계에 약속 내용을 유형의 자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인도적 지원 활동에 가용한 자금 지원의 예측 가능성 및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206. 셋째, 현장에서 일하는 유엔의 인도적 지원 요원 및 운영팀의 예측 가능한 접근 권한 및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군 또는 무장 단체가 유엔 요원의 활동을 막아 지원이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곳에서는 테러리스트가 기본적인 국제 법률에 반하는 유엔의 비무장 지원 요원에 대한 공격과 지원 업무 방해를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207.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강화된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제안하기 위해 긴급 구호 조정관(Emergency Relief Coordinator)과 협력하고 있다. 현재 인도적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2005년 6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중대 재해 및 기타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인력 및 장비 상비 체제에 관한 일련의 제안을 포함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제안이 완성되면 지체 없이 통합될 수 있도록 회원국 및 기관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208. 갑작스러운 재해나 방치된 비상사태의 대규모 미충족 요구 사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수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중앙긴급회전기금(Central Emergency Revolving Fund)을 강화해야 하는지 새로운 자금 조달 체제를 설립해야 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10억 달러 규모의 자발적 기금을 설립한다는 원조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9.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내 실향민 관련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경을 넘는 국제 난민과 달리 폭력 및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국가에서 집을 잃고 떠나는 이들은 규정된 최소 기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10. 하지만 이와 같은 극심한 취약 그룹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2,500만 명에 달하는데, 국제 난민 수 예측치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와 같은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국제 규범으로 사무총장 특별 대표에 의해 작성된 국내 실향민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E/CN.4/1998/53/Add.2)을 채택하고 국내 입법을 통해 이들 지침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유엔의 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보살핌을 받는 국제 난민과 달리 국내 실향민과 그들의 필요는 여러 인도적 지원 조직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놓이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 관련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그와 같은 실향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다르푸르의 상황을 봤을 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사무총장 직속 긴급 구조 조정관의 지휘 하에 국가 수준에서 인도적 지원 조정관 체제를 통해 국내 실향민의 필요에 대한 기관 간 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회원국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
211. 끝으로, 회원국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이 빈번하게 직면하는 인도적 지원 차단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불필요한 고통과 고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공간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 주체가 취약 계층에 안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신설된 사무국 산하 안전보안국9(Department of Safety and Security)을 통해 인도적 지원 요원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당하지 않고 고위험 지역에서 구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의 위협 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구 환경의 관리

212. 환경에 관한 국제 협약 및 기관의 수가 많고 속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환경은 일관성과 관련한 문제를 수반한다. 현재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및 사막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환경 현안을 망라하는 400개가 넘는 지역 및 국제 다자간 환경 조약이 시행 중이다. 이러한 조약 및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단편적 조직의 부문별 특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더욱 어렵다. 이들 조약에 대한 후속 처리와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할 필요가 분명 존재한다. 2002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이미 조정 및 감시 기능이 개선된 보다 일관적인 국제 환경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이 필요한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이 환경 기준 설정, 과학적 토론 및 조약 준수 감사를 위한 보다 통합적인 구조를 검토할 적기이다.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같은 기존 기관과 조약 기구 및 전문 기관을 바탕으로 구축해야 한다. 한편, 유엔 기관 간의 시너지(규범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 효과 개선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활동을 강화하여 개발과 환경 두 측면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통합 접근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 지역 조직

213.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지역 및 소지역 조직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소속 회원국들은 물론 광범위한 국제 체제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유엔과 지역 조직들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해결 과제에 대처함에 있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조국은 아프리카연합의 역량 구축 10개년 계획을 위한 필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엔 현장의 틀 안에서 유엔과 지역 조직 간의 조율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과 개별 조직 간에 건별로 적절한 경우 정보, 전문성 및 자원을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한다. 분쟁 방지 또는 평화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조직의 경우 이러한 양해각서가 유엔 상비 체제의 틀 안에서 그와 같은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214. 아울러 지역 조직이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현안이 논의되는 경우 이들 조직을 유엔 체제의 조정 기구 회의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215.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엔이 의무 분담금을 사용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지역 작전이나 전체적으로 유엔이 주도하는 다중 평화 작전에 대한 지역 조직의 참여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엔에 부여하도록 유엔 평화 유지 예산의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

F. 유엔 현장의 개정

216. 5 항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유엔 현장의 원칙은 여전히 온전히 유효하며 대부분의 경우 유엔 현장이 계속하여 모든 유엔 활동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한다. 유엔 현장은 본래 6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총회에서 입안된 문서이다. 현장 수정 없이도 실무 준칙의 개정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어 왔다. 실제로 유엔 현장은 유엔 역사상 두 번밖에 개정되지 않았다(안전보장이사회 및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 확대를 위한 개정).
217. 하지만 유엔이 이제 1945년 당시와는 많이 다른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유엔 현장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엔 현장의 53조 및 107조에 명시된 시대착오적인 “적(Enemy)”이란 용어를 시급히 삭제해야 한다.
218.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는 신탁 통치 지역에서의 행정 기준을 높이고 광범위한 탈식민지화 프로세스를 촉진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그 임무는 끝난 지

오래다. 3장 “신탁통치이사회(The Trusteeship Council)”는 현장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219. 비슷한 이유로 군사참모위원회(The Military Staff Committee)에 관한 47조와 26, 45 및 46조에 언급된 이 위원회에 대한 모든 참조 또한 삭제되어야 한다.

6. 결론: 유엔의 기회 및 해결 과제

220.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전 세계적으로 여성, 남성 및 아동의 운명이 서로 얽혀 있다. 우리는 도덕적 명령과 객관적 이해 둘 다에 따라 결속한다. 보다 큰 자유가 있는 세상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반을 찾고 집단적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가 위압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일반론에 빠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차이가 극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커지는 상황에 처하기 쉬울 것이다.

221. 하지만 오늘날의 불확실성 시대가 분쟁 확대, 불균형 심화 및 법치주의 침식으로 이어지도록 방치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평화, 번영 및 인권을 위한 공통의 제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을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이다. 선의의 의도로 많은 내용을 담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2005년에 필요하고 달성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결정으로 제한하였다. 부록에 국가 및 행정 수반이 검토할 다수의 세부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222. 지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비전이 유엔 창설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명백히 불완전한 세계에서 [그들의] 책임을 완수하는 용기”²²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 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국가 및 국제 기구 지도자들의 확고하고 명민한 리더십을 감안할 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가능한 일이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현실적인 일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시적인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회이자 도전 과제이다.

22 참조: 1945년 1월 6일 미국 의회에서 행한 미국 대통령 연설의 메시지.

부록: 국가 및 정부 수반의 결정을 위한 근거

1. 정상회의는 세계 지도자들이 광범위한 현안을 고려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크게 개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세계 지도자들이 다 함께 결집할 만한 중요한 일이다.
2. 21세기에는 모든 회원국과 산하 기관 전체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및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큰 자유라는 대의명분을 증진해야 한다. 상호 연결성이 점점 더 커지는 세상에서는 개발, 안보 및 인권 분야의 발전이 상호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안보가 없다면 발전도 없고, 발전이 없다면 안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발전과 안보는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에도 좌우된다.
3.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어떤 국가도 홀로 설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발전 및 안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집단적 전략, 집단적 제도 및 집단적 행동이 필수적이다.
4. 따라서 국가 및 정부 수반은 우리 앞에 놓인 위협과 기회의 속성에 공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5. 빈곤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의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을 국가 및 정부 수반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 (a) 2002년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국제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합의된 상호 책임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발전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새천년 발전 목표에 중점을 둔 그와 같은 역사적 협정에 부응하여 다음을 이행한다.
 - (i) 개발도상국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부패를 근절하고, 민간 주도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발전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 및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 (ii) 선진국은 발전 원조 증가, 보다 발전 지향적인 무역 체계, 부채 탕감 확대 및 증대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 (b) 아프리카의 고유한 필요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필요를 시급하게 해결한다는 진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 (c) 극빈 개도국의 경우 2006년까지 2015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대담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 (d)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선진국의 경우 2015년까지 공적 발전 원조에 GNI 대비 0.7%를 할당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늦어도 2006년부터 원조액을 대폭 증액하고 2009년까지 0.5%에 도달).
- (e) 부채 비율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국가가 2015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채 수준으로 채무 지속가능성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대다수 HIPC 국가의 경우 이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보조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과 100% 부채 감면이 요구되는 반면, 부채가 많은 비 HIPC 및 중간 소득 국가의 경우는 제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 탕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 부채 감면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는 자원의 축소와 국제 금융 기구의 장기적인 재정적 생존성 저해를 야기하지 않고 달성되어야 한다.
- (f) 2006년까지 발전 지원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 WTO 도하 다자간 무역 협상을 완료하고, 그 첫 단계로 최저 개발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시장 접근권을 즉시 제공한다.
- (g) 늦어도 2015년까지 0.7% ODA 목표를 달성한다는 약속에 따라 공적 발전 원조의 즉각적인 사전 배분을 뒷받침하는 국제 금융 기금(IFF)을 2005년에 발족시키고 장기적으로 IFF를 보완하는 다른 혁신적인 발전 재원을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 (h) 모기장 및 효과적인 말라리아 예방 의약품의 무상 보급, 현지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 확대, 초등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수수료 철폐와 같은 조치를 통해 새천년 발전 목표를 향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련의 “단기 성공 과제(quick win)”를 발족시키기로 결정한다.
- (i) 국제 공동체로 하여금 UNAIDS 및 파트너에 의해 식별된 AIDS에 대한 종합적인 확대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시급히 제공하고 세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기금((GFATM)을 위한 전체 재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 (j) 여자 어린이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수료율 증대, 여성을 위한 안전한 주거 공간 보장, 성 및 생식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근로 시장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촉진, 여성의 정부 의사 결정 기관 진출 확대를 위한 기회 제공,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 개입을 통해 만연한 성 편견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보장할 필요성을 재천명한다.
- (k) 보건, 농업, 천연 자원 및 환경 관리, 에너지 및 기후 분야에서 빈곤층의 고유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 (l) 기술 혁신을 비롯한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공동 책임을 지지만 차별화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주요 배출국이 폭넓게 참여하는 2012년 이후의 기후 변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국제 대응

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의한다.

- (m) 기존의 국가 및 지역 역량을 바탕으로 모든 자연 재해 위험에 대한 범세계적인 조기 경고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의한다.
- (n) 2005년부터 건설하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발전 원조 증액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원조를 충분히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2.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6. 21세기에 효과적인 집단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제반 위협에 대하여 특히 다음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a) 위협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개발, 보안 및 인권이 상호 의존적이며, 어떤 국가도 혼자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집단 안보 체제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안보 컨센서스의 이행을 천명하고 약속하며, 이에 따라 국제 전쟁에서부터 대량 살상 무기, 테러, 국가 붕괴 및 내전, 치명적인 전염성 질병, 극빈곤 및 환경 파괴에 이르기까지 제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b)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다자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생물독소 무기협약(BWC) 및 화학무기협약의 모든 조항을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특히 다음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 (i) 핵분열 물질 생산 금지 조약(FMCT)에 관한 협상의 조기 타결을 결의한다.
 - (ii) 핵 실험 폭발 유예에 대한 약속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의 발효 목표를 재확인한다.
 - (iii)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표준으로 모델 추가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결의한다.
 - (iv)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평화적 사용 권리 및 비확산 의무라는 원칙에 부합하며 국내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 시설의 취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합의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 (v) 생물독소무기협약(BWC)의 추가적인 강화를 약속한다.
 - (vi) 모든 화학 무기 보유 국가에게 예정된 화학 무기 비축분 폐기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c) 소형 무기 및 경량 무기의 표시, 추적 및 불법 증개를 규제하고, 유엔 무기 금수 조치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집행을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법률을 제정한다.
 - (d) 대의명분 혹은 분노의 원인이 있거나 합법적인 경우라도 민간인 및 비전투원을 표적으로 삼거나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음을 천명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정부 혹은 국제기구가 위협을 느껴 임의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민간인 혹은 비전투원을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모든 행위가 테러라는 것을 선언한다.

- (e) 사람들이 테러에 의존하거나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단념시키고, 테러리스트가 자금 및 물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국가가 테러 행위를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의 테러 퇴치 역량을 개발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무총장이 제시한 유엔의 포괄적 대테러 전략을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 (f) 테러 행위에 대한 12개 국제 협약에 모두 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해당 대표들에게 다음을 지시한다.
 - (i) 핵 테러에 관한 협약을 시급히 마무리한다.
 - (ii) 60차 유엔 총회가 끝나기 전에 테러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협약을 마무리한다.
- (g) 조직범죄 및 부패에 관한 모든 관련 국제 협약에 최대한 조속히 가입하고, 해당 규약의 조항을 국내 법률에 통합하고 형사 사법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h)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기술하고 무력 사용을 승인하거나 위임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와 같은 원칙에 따를 것임을 천명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한다. 그와 같은 원칙에는 제51조의 조항을 포함하여 무력 사용에 관한 유엔 현장의 조항 재확인,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 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 집단 학살, 인종 청소, 기타 비인도적 범죄 등의 상황과 같이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선제적으로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재확인, 군사력 사용의 승인 또는 재가를 숙고할 때 해당 위협의 심각도, 제안된 군사적 조치의 목적 적절성, 군사력 이외의 수단을 사용할 경우 위협을 성공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군사력 사용 방안이 당면한 위협에 비례적인지 여부, 합리적인 수준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포함된다.
- (i) 본 보고서에 제시된 바에 따라 평화군축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합의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자발적인 상설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합의한다.
- (j)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한 전략 예비대를 창설하고, 평화 유지 활동 연계 시스템의 일환으로 상비군을 설립하려는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및 기타 국가의 노력을 지원하고, 유엔 상비 시민 경찰대를 설립한다.
- (k) 제재 조치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충분한 자원이 뒷받침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제재로 인한 인도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보리 제재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집행되도록 보장한다.

3.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자유

7.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유엔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 인권 및 민주주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정부 수반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조치를 통해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한다.
 - (b) 집단 학살, 인종 청소 및 인도적 범죄에 대한 집단적 조치의 근거로 “보호책임”을 수용하고, 이러한 책임이 무엇보다 그 임무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 개별 국가에 있으며 국가 당국이 자국 시민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 외교적 인도적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민간인을 보호할 책임이 국제 공동체로 이전되며 그와 같은 방법이 불충분하게 여겨지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유엔 헌장에 의거하여 집행 조치를 포함한 임의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책임에 대해 행동할 것에 합의한다.
 - (c) 31개 다자간 조약에 초점을 두고 2005년 조약 행사를 지원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정부가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 (d) 자국, 소속 지역 및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신흥 민주국가를 지원하는 유엔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자국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강화하려는 국가에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는 민주주의 기금을 유엔 내에 설립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결의한다.
 - (e) 국가 간 분쟁을 판결하는 데 있어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제형사법원의 업무를 강화하는 수단을 검토하는 데 합의한다.

4. 공동 행동의 당위성: 유엔 강화

8. 유엔이 공통의 위협 및 필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진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정부 수반에게 다음을 촉구하는 바이다.
- (a)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안보, 경제 및 사회 현안과 인권 분야에 걸쳐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엔이 조직, 자원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는 유엔 창립자들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유엔 산하 주요 조직 및 기관의 개혁, 구조 조정 및 활성화를 통해 이들이 21세기의 변화된 위협, 필요 및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약속한다.

총회

(b) 다음을 통해 총회를 재활성화한다.

- (i) 자국 대표에게 60차 회기에서 업무 합리화 및 심의 프로세스 가속화, 의제/위원회 구조/전체 회의 토론 및 보고서 제출 요청 절차 간소화, 의장의 역할 및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하여 유엔 총회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 개혁안을 채택하도록 지시한다.
- (ii) 국제 이주 및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포괄적인 대테러 협약과 같은 당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으로써 총회의 중요 의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의한다.
- (iii) 총회가 시민 사회와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안전보장이사회

(c) 다음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하여 국제 공동체 전체와 오늘날의 지정학적 현실을 보다 폭넓게 대변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사국 수를 확대한다.

- (i)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위한 원칙을 지지하고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델 A와 B의 두 가지 방안과 두 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도출된 다른 실행 가능한 제안을 규모 및 균형 측면에서 검토한다.
- (ii) 2005년 9월의 정상회의에 앞서 이 중요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회원국이 총의에 의해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총의에 도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치를 연기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사회이사회

(d) 다음을 통해 경제사회이사회를 개혁한다.

- (i) 합의된 발전 목표, 특히 새천년 발전 목표에 대한 연례 장관 수준 진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경제사회이사회에 위임한다.
- (ii) 경제사회이사회를 고위급 발전 협력 포럼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국제 발전 협력의 동향을 검토하며, 다양한 주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발전 활동 간의 일관성을 증진하고, 유엔의 규범적 업무와 운영 업무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 (iii) 필요한 경우 적시에 회의를 소집하여 기근, 전염병, 중대 자연 재해와 같은 개발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 (iv) 이사회가 제안된 평화구축위원회와 협력하여 분쟁 후 관리 업무를 조정해야 함을 결정한다.

제안된 인권 이사회

(e)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유사한 상설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하고 인권이사회를 유엔의 주요 기구 혹은 총회 산하 기구로 두며 이사국은 총회에서 2/3 출석과

2/3 득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에 합의한다.

사무국

(f) 다음을 통해 사무국을 개혁한다.

- (i) 총회가 5년이 넘는 모든 위임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활동이 여전히 진정으로 필요한지 혹은 총회에 할당된 자원을 새로운 해결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재할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사무총장의 요청을 승인한다.
- (ii) 현재의 필요에 맞게 인력을 쇄신하고 재편성하기 위해 일회성 직원 채용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사무총장에게 제공하는 데 합의한다.
- (iii) 회원국이 사무총장과 협력하여 유엔 조직이 운영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함을 결정한다.
- (iv) 사무총장이 사무국의 책임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단의 관리 개혁안을 승인한다.
- (v) 독립성 및 권한과 전문성 및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내부감사실(Office of Internal Oversight Services)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한다.

유엔 체제 전반적인 일관성

- (g) 다양한 발전 및 인도적 지원 기관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대표를 조율하여 이들 기관이 유엔 체제 전체에 걸쳐 일관적인 위임 사항 배정과 자원 할당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엔 체제의 전반적인 일관성을 강화한다.
- (h) 인도적 장소를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자들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긴급 자금의 즉시 이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인도적 대응을 촉진하는 제안을 실천하기로 결의하며, 국내 실향민의 필요에 대한 기관 간 및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려는 사무총장의 노력을 지지한다.
- (i) UNEP와 같은 기존 기관과 조약 기구 및 전문 기관을 기반으로 하며 운영 수준의 환경 활동을 발전 기관에 할당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환경 표준 설정, 과학 토론 및 모니터링, 조약 준수를 위한 보다 통합된 구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지역 조직

- (j) 첫 번째 단계로서 아프리카연합의 10개년 역량 구축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분쟁 방지 또는 평화 유지 역량을 갖춘 지역 조직이 유엔 상비 체제의 틀 안에서 그와 같은 역량을 발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유엔과 지역 조직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유엔 헌장

(k) 유엔 헌장 53조 및 107조에 수록된 “적국(enemy)”에 대한 언급을 없애고 군사참모위원회에 관한 47조와 26조, 45조 및 46조에 포함된 군사참모위원회에 대한 참조를 삭제하고 신탁통치이사회 (Trusteeship Council)에 관한 13장을 삭제하기로 결정한다.



06

세계의 변혁: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2015)





A/RES/70/1
2015년 10월 21일

유엔 총회 70차 회의
의제 항목 15 및 116

배포: 일반

세계의 변혁: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본위원회(A/70/L.1)에 회부하지 않음]

유엔 총회는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의 채택을 위해 열린 유엔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다음의 결과 문서를 채택한다.

서문

본 의제는 인류, 지구, 번영을 위한 실천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큰 자유가 있는 세상에서 보편적 평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는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극심한 빈곤을 포함한 모든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대의 범세계적 숙제이자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모든 국가와 이해당사자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가혹한 빈곤과 결핍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 지구를 치유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세상을 지속 가능하고 복원성이 있는 경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한다. 이와 같은 공동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서약한다.

오늘 발표하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169개 세부 목표는 이러한 새로운 보편적 의제의 규모와 포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목표 및 세부 목표는 새천년발전목표(MDG)를 바탕으로 하며, 그중 달성되지 않은 목표의 완료를 추구한다. 모두의 인권을 실현하고 성 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지위 향상을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 이들은 통합적이고 불가분한 목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측면인 경제, 사회 및 환경 간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향후 15년 간 인류 및 지구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은 분야에서 우리의 행동을 고무할 것이다.

인류: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빈곤과 기아를 모두 종식하고 모든 인류가 존엄성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다짐한다.

지구: 현재 및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지속가능한 천연 자원 관리,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조치 등을 통해 지구를 황폐화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다짐한다.

번영: 모든 인류가 번영과 풍족한 삶을 향유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다짐한다.

평화: 두려움과 폭력이 없는 평화롭고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할 것임을 다짐한다. 평화가 없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다면 평화도 존재할 수 없다.

파트너십: 특히 최빈층 및 최취약층의 필요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가, 이해당사자 및 사람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 발전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재활성화를 통해 본 의제를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다짐한다.

새 의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상호 연계성과 통합적 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전체에 걸쳐 이와 같은 의욕적인 목표를 실현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선언

개요

1. 유엔 창립 70주년을 맞아 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 소재하는 유엔 본부에서 회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 및 정부 수반과 고위급 대표 일동은 오늘 새로운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결정하였다.
2. 우리가 봉사하는 국민 및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적이고 광범위하며 사람 중심적인 일단의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목표와 세부 목표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30년까지 본 의제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서약한다.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극심한 빈곤을 포함한 모든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대의 범세계적 숙제이자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 사회 및 환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새천년 발전 목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완결을 추구할 것이다.
3. 지금부터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 빈곤과 기아를 종식하고, 국가 내에서와 국가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평화롭고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남녀평등 및 여성/여아의 지위 향상을 촉진하고, 지구 및 천연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각기 다른 국가 발전 및 역량을 고려하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영속적인 경제 성장, 공동 번영 및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을 결의한다.

4. 이와 같은 위대한 공동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서약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근본적인 가치임을 인식하고 이들 목표 및 세부 목표가 모든 국가 및 사람과 사회의 모든 분야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소외된 계층을 먼저 고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본 의제의 범위와 중요성은 전례 없는 수준이다. 다양한 국가별 현실, 역량 및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국가별 정책 및 우선 순위를 존중하며 모든 국가가 수용하고 모두에 적용되는 의제이다. 또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전 세계가 참여하는 보편적 목표와 세부 목표이다. 이들 목표는 통합적이고 불가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측면 간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6. 이들 목표 및 세부 목표는 2년 이상 전 세계 시민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집중적인 공개 협의의 결과로서, 최빈층 및 최취약층의 목소리에 각별한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협의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총회의 개방형 실무단(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과 총회가 이룬 소중한 성과가 포함되었다(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사무총장 종합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 우리의 비전

7. 우리는 이러한 목표 및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야심적이고 혁신적인 비전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빈곤, 기아, 질병 및 결핍이 없는 세상을 고대한다. 또한 위협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기대한다. 보편적 문해력을 갖춘 세상, 수준을 불문하고 양질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및 사회 복지에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이 보장되는 세상, 안전한 음용수 및 위생과 관련한 인권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보건의 개선되고, 식량이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분이 있으며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세상, 거주지가 안전하고 복원성이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가격이 적당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는 세상을 기대한다.
8.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 법치주의, 정의, 평등이 보편적으로 존중되고 차별이 없으며, 인종, 민족성 및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간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있으며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세상, 어린이에 투자하고 모든 아이들이 폭력과 착취를 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여성과 여아가 완전한 성 평등을 향유하고, 그들의 지위 향상을 가로막는 모든 법적, 사회적 및 경제적 장벽이 제거된 세상,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필요가 충족되는 정의롭고 공평하고 관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사회적 포용성이 있는 세상을 기대한다.

9. 모든 국가가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나라에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향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상을 기대한다. 소비 및 생산과 공기에서 토지, 강에서 호수 및 대수층과 바다 및 대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연 자원의 사용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기대한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호 및 빈곤/기아 근절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그와 같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더불어 민주주의, 모범적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가 필수인 세상, 기술 발전 및 응용이 기후를 감안하고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고 복원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야생 생물 및 기타 생명체가 보호되는 세상을 기대한다.

공통 원칙 및 약속

10. 새 의제는 유엔 헌장의 목적 및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국제법에 온전히 부합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¹, 여러 국제 인권 조약,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² 및 2005년 세계정상회의의 결과³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발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과 같은 다른 문서도 참조하였다.⁴
1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새 의제의 수립에 도움이 되어 왔던 유엔의 제반 회의와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재확인한다. 여기에는 리우환경개발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⁵,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사회개발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국제인구개발 회의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⁶,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⁷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포함된다 아울러 제4차 유엔 최빈국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Least Developed Countries), 제3차 국제군소

1 결의안 217 A (III).

2 결의안 55/2.

3 결의안 60/1.

4 결의안 41/128, 부록.

5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보고서, 리우데자네이루, 1992년 6월 3~14일, 제1권, 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93.I.8 및 정오표), 결의안 1, 부록 I.

6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보고서, 카이로, 1994년 9월 5일~13일 (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95.XIII.18), I장, 결의안 1, 부록.

7 제4차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 베이징, 1995년 9월 4일~15일(유엔 간행물, 판매 번호 E.96.IV.13), I장, 결의안 1, 부록 II.

도서개도국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제2차 유엔 내륙개도국총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및 제3차 유엔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Third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를 포함하여 이들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재확인한다.

12. 리우환경개발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제반 원칙, 특히 원칙 7에 명시된 공통의 하지만 차별화된 책임에 관한 원칙을 재확인한다.
13. 이러한 주요 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식별된 과제와 약속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형태와 종류를 불문한 빈곤의 근절,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해소, 지구 보전,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실현, 사회적 포용 증진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 오늘날의 세계

14.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빈곤 속에서 살고 존엄성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내 및 국가 간에 불평등이 고조되고 있다. 기회, 부 및 권력 측면에서 심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성 불평등 또한 여전히 주요한 해결 과제이다. 실업(특히 청년 실업)도 주요 우려 사항이다. 세계 보건에 대한 위협, 더욱 빈번하고 극심해진 자연 재해, 분쟁 증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행위와 이와 관련된 인도적 위기 및 실향민 발생은 최근 수십 년 간 이루어 온 발전을 대폭 후퇴시킬 위험을 야기한다. 천연 자원 고갈과 사막화, 가뭄, 토지 열화, 담수 부족, 생물 다양성 훼손 등과 같은 환경 악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증가시키고 심화한다. 기후 변화는 현 시대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이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 달성 역량을 약화시킨다. 지구 온도, 해수면 상승, 대양 산성화 및 기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연안 지역과 저지대 연안에 위치한 최빈국 및 군소 도서 개도국 국가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여러 사회와 지구의 생물학적 생명 유지 체계가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15. 하지만 오늘날은 엄청난 기회의 시대이기도 하다. 많은 발전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지난 세대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났다. 남자 및 여자 어린이 모두 교육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보급 확대와 전 세계적인 상호 연결성 증대 덕분에 의학 및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과학 및 기술 혁신이 촉진됨에 따라 인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16. 새천년발전목표(MDG)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지도 거의 15년이 되었다. 새천년발전목표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었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진전이 모든 국가/지역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아프리카, 최빈국 국가, 내륙 개발도상국 및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진도가 더딘 편이며, 새천년발전목표 중 산모, 신생아 및 아동의 건강과 생식 건강과 관련한 목표의 경우 갈 길이 먼 실정이다.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최빈국과 특수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에 집중적이고 확대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새천년발전목표 중 미진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반 목표를 온전히 실현할 것을 재 약속한다. 새 의제는 새천년발전목표를 바탕으로 하며, 특히 최취약층과 관련하여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의 완료를 추구한다.
17. 하지만 오늘 발표하는 체계는 새천년발전목표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다. 빈곤 근절, 보건, 교육, 식량 안보 및 영양과 같은 발전 우선순위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보다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이행 수단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결정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새 목표 및 세부 목표 간에 깊은 상관성과 다양한 교차 요소가 존재한다.

새로운 의제

18. 오늘 통합적이고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와 관련된 169개 세부 목표를 발표한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정책 의제에 걸쳐 공동 행동 및 노력을 약속한 적은 없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부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글로벌 개발과 “원-원”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 천연 자원 및 경제 활동에 대해 완전한 영구적 주권을 보유하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현재 및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편익을 위해 본 의제를 이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본 의제가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19.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관련 기타 국제 협약 및 법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에 의거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장애 또는 기타 신분과 관련한 어떤 유형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한다.
20. 성 평등과 여성/여아의 지위 향상을 실현하면 새천년 목표 및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류의 절반이 계속하여 온전한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기회에서 배제된다면 인류의 잠재력 발휘와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 여성 및 여아도 남성 및 남아와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과 정치 참여가 가능해야 하고 수준을 불문하고 고용, 리더십 및 의사 결정 측면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성격차 완화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대하고 성 평등 및 여성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남성 및 남아의 참여 등을 통해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할 것이다. 본 의제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성 인식을 체계적으로 보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새 목표 및 세부 목표는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향후 15년 동안 이루어질 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국가별 현실, 역량 및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를 존중 하면서 각자의 국가 및 지역과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본 의제를 다 함께 이행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국제 규정 및 협약을 준수하면서도,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상 유연성을 존중할 것이다. 또한 지역 및 소지역 측면과 지역 경제, 통합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상호 연관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한다. 지역 및 소지역 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2.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국가마다 고유한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취약한 국가와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 개발도상국 및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분쟁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 및 분쟁 후 국가와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으로 필요로 한다. 중간 소득 국가에도 심각한 해결 과제가 존재한다.
23. 취약계층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본 의제는 아동, 청년, 80% 이상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HIV/AIDS 감염자, 노인, 토착민,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이주민 등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법에 준하는 효과적인 조치 및 행동을 취해 장애물 및 제약 요소를 제거하고, 복잡한 인도적 비상 상황에 처해 있거나 테러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할 것을 결의한다.
24. 2030년까지 극빈을 포함한 모든 형태와 종류의 빈곤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회 보장 제도 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아를

해소하고 식량 안보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고 모든 형태의 영양 실조를 종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의 중요한 역할과 포용성을 재확인하고 “영양에 관한 로마 선언 및 행동 계획(Rome Declaration on Nutrition and the Framework for Action)을 환영한다.⁸ 농촌 지역 개발과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에 자원을 투입하여 영세 농장주와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국)에 거주하는 여성 농부, 목축인 및 어업 종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25. 모든 수준(유아원/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기술 및 직업 교육 등)에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성별, 연령, 인종 또는 민족에 관계없이 장애인, 이주자, 원주민, 아동, 청소년, 특히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기회를 활용하고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생 학습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와 역량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와 응집력 있는 공동체 및 가족을 통해 국가가 인구 배당 효과를 증대하도록 도울 것이다.
26. 모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기대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편적 건강 보험 적용을 실현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30년까지 예방 가능한 모든 사망을 방지함으로써 신생아, 소아 및 산모의 사망률 감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 온 진전 사항을 가속화할 것이다. 가족계획을 포함한 성 및 생식 의료 서비스, 정보 및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균 증가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주는 방치된 질병의 문제에 대한 대처를 포함하여 말라리아, HIV/AIDS, 결핵, 간염, 에볼라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및 대유행병 퇴치와 관련하여 이루어 온 성과의 달성 속도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행동 장애, 발달 장애, 신경계 장애를 비롯한 만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7. 모든 국가를 위한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번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필수적이다. 이는 부가 공유되고 소득 불평등이 해결될 때만 가능하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사람 중심적인 경제를 건설하고, 청년 고용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특히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모든 유형의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아동 노동을 종식할 것이다. 모든 국가는 일을 생산적이고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사회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춘 건강하고 잘 교육 받은 노동력을 확보하여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조 개혁

8 세계보건기구(WHO), 문서 EB 136/8, 부록 I 및 II. A/RES/70/1 세계의 변혁: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8/35.

등을 통해 모든 부문에 걸쳐 최빈국의 생산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생산 역량, 생산성 및 생산적 고용, 포용적 금융, 지속가능한 농업, 목축업 및 어업 개발, 지속가능한 산업 개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지속가능한 수송 시스템, 양질의 복원성 있는 사회 기반 구조를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28. 우리 사회가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약속한다. 정부, 국제 기구, 기업, 기타 비국가 주체 및 개인은 개발도상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위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기존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식의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식에 관한 10개년 계획(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을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모든 국가가 선진국의 주도 하에 개발도상국의 발전 수준 및 역량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한다.
29. 포용적인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주민의 긍정적인 기여를 인식한다. 또한 국제 이주가 출신국, 경유국 및 목적국의 발전에 중대한 관련성이 있으며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요하는 다차원적인 현실임을 인식한다. 난민 및 실향민의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이주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수반하는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 사회(특히 개발도상국 내)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도 그와 같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주자들이 자신의 국적국으로 귀환할 권리를 강조하며, 귀환하는 자국민을 국가가 적절히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30.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개도국 내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의 온전한 달성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경제, 금융 또는 무역 조치의 선포 및 적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1. 기후 변화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을 협상함에 있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⁹이 일차적인 정부 간 국제 기준임을 인정한다. 기후 변화 및 환경 악화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에 단호하게 해결할 것을 다짐한다. 기후 변화의 범지구적인 속성을 고려할 때 전 세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광범위한 국제 협력이 요구된다. 2020년까지 전 세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제출한 감축 공약의 누적 효과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미만으로 유지할 가능성에 맞춘 누적 배출량 추이 간의 현저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32.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의욕적이고 보편적인 기후 합의를 위해 모든

9 유엔, 조약 시리즈, vol. 1771, No. 30822.

국가가 노력한다는 약속을 강조한다. 전체 당사국에 적용되는 의정서, 기타 법적 문서, 혹은 협약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지니는 합의 결과가 특히 감축, 적응, 재원, 기술 개발/이전, 역량 구축, 조치 및 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33.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이 지구의 천연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대양 및 바다, 담수 자원과 삼림, 산 및 건지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며 생물 다양성, 생태계 및 야생 생물을 보호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관광을 증진하고, 수자원 부족 및 수질 오염을 해결하고, 사막화, 먼지 폭풍, 토지 열화 및 가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복원성 및 재난 위험 완화를 촉진하기로 다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개최될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를 기대한다.
34.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관리가 사람들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지방 당국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도시와 정착촌을 쇄신하고 계획하여 지역 사회의 단합과 치안을 증진하고 혁신과 고용을 촉진할 것이다. 화학 물질의 환경 친화적인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보다 효율적인 용수/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도시 활동 및 화학 물질의 영향을 완화할 것이다. 그리고 지구 기후 체계에 미치는 도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 동향 및 전망을 국가별 농촌 및 도시 발전 전략/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키토에서 개최될 유엔 주택지속가능도시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를 기대한다.
35. 평화와 안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없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다면 평화와 안보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새 의제에서는 정의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인권(개발권 포함) 존중, 법치주의, 모든 수준에서의 모범적인 거버넌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폭력, 불안 및 부정(예: 불평등, 부패, 열악한 거버넌스, 불법 금융 및 무기 거래 등)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본 의제에서 다루고 있다. 평화 구축 및 국가 건설에서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을 보장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고 분쟁 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식민지 혹은 외국 점령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과 환경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완전한 자결권 실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법에 의거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치 및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36. 문화적 상호 이해, 관용, 상호 존중, 세계 시민 의식 및 공동 책임의 윤리를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세계의 자연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문화와 문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촉진 요소임을 인식한다.

- 37. 스포츠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촉진자이다. 스포츠가 관용 및 존중을 증진함으로써 발전 및 평화에 기여하고 여성 및 젊은이의 지위 향상, 개인 및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보건, 교육 및 사회적 포용이라는 목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 38. 유엔 헌장에 따라 국가의 영토 보전성 및 정치적 독립성을 존중해야함을 재확인한다.

이행 수단

- 39. 새 의제의 규모와 의욕을 감안할 때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실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십은 세계 연대, 특히 최빈층 및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할 때 잘 작동할 것이다. 또한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유엔 체제 및 기타 행위 주체를 결집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제반 목표 및 세부 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세계 수준의 집중적인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 40. 목표 17 및 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수단 관련 세부 목표는 본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열쇠이며, 다른 목표 및 세부 목표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본 의제는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의 결과 문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를 바탕으로 재활성화 된 지속가능발전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체계 하에서 실현할 수 있다.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의 일부인 아디스아바바 실천 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¹⁰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환영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디스아바바 실천 의제의 완전한 이행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한다.
- 41. 자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각 국가에 있음을 인식한다. 새 의제에서는 목표 및 세부 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수단을 다룬다. 그와 같은 수단에는 자원 조달하고, 역량을 구축하고, 상호 합의에 의거한 양허 및 특혜 조항을 포함한 호혜적인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됨을 인식한다. 필수 서비스 및 공공재를 제공하고 다른 재원의 조달을 촉진함에 있어 국내 및 국제 공적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 의제를 이행함에 있어 영세 기업에서 주식회사 및 다국적 기업까지 다양한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단체 및 자산 단체가 담당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10 2015년 7월 27일 총회에서 채택된 제3차 국제개발재원총회의 아디스아바바 실천 의제(결의안 69/313 부록).

42. 이스탄불 선언 및 행동 계획(Istanbul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¹¹, 군소도서 개도국 행동 촉진 세부 원칙(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SAMOA] Pathway)¹² 및 2014~2024 비엔나 내륙개도국 행동 계획(Vienna Programme of Action for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Decade 2014~2024)¹³을 포함한 관련 전략 및 행동 계획의 이행을 지지하고, 아프리카연합 의제 2063 및 신아프리카개발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의 프로그램¹⁴ 모두 새 의제의 필수 부분임을 재확인한다.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후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지속적인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과 관련한 주요 도전 과제를 인식한다.
43. 국제 공적 금융이 각 국가(특히 국내 재원이 한정된 최빈국과 가장 취약한 국가)가 국내에서 공적 재원을 조달하는 노력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적 발전 원조(ODA)를 포함한 국제 공적 금융은 다른 공공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다. ODA 공여국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 발전 원조 비율(ODA/GNI)을 0.7%로, 최빈국 대상으로는 0.15~0.20%로 정하겠다는 여러 선진국의 약속을 포함한 각자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44. 국제 금융 기구가 위임 사항에 따라 각국(특히 개도국)의 정책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제 경제와 관련한 의사 결정과 규범 수립 및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 개도국, 군소 도서 개도국 및 중간 소득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과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할 것임을 재약속한다.
45. 아울러 의회가 입법 및 예산 채택을 통해 공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 정부와 공공 기관 또한 지역 및 지방 당국, 지역 기관, 국제기구, 학계, 자선 단체, 자원 봉사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46.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및 지속 가능 발전의 달성을 지원함에 있어 유엔 체제가 충분한 자원과 타당성, 적절성, 일관성 및 효율성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 주인 의식과 국가 수준의 리더십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본 의제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서 진행 중인 유엔 발전 체제의 장기적 위상 정립에 관한 협의를 지지한다.

11 제4차 유엔최빈국총회 보고서, 이스탄불, 터키, 2011년 5월 9-13일(A/CONF.219/7), I 및 II 장.

12 결의안 69/15, 부록.

13 결의안 69/137, 부록 II.

14 A/57/304, 부록.

후속 조치 및 검토

47. 각국 정부는 향후 15년 간 목표 및 세부 목표의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전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후속 조치 및 검토를 실시할 일차적인 책임을 지닌다.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본 의제와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수준에서 체계적인 후속 조치 및 검토를 준비할 것이다.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이 세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 및 검토를 감독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48. 이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진척도를 측정하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려면 접근 가능하고 시의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의사 결정에는 그와 같은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가능한 경우 기존 보고 체계에서 가용한 데이터 및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 개도국, 군소 도서 개도국 및 중간 소득 국가)의 통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기로 합의한다. 국내 총생산을 보완하는 보다 광범위한 진척도 측도를 개발할 것을 약속한다.

세상의 변화를 위한 행동 촉구

49. 70년 전 앞선 세대의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유엔을 창설했다. 이들은 전쟁이 남긴 잿더미와 분열 속에서 유엔을 만들고 유엔의 기본 가치인 평화, 대화 및 국제 협력을 정립했다. 이러한 가치를 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유엔 헌장이다.
50. 오늘 또한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서 있다. 존엄성 있고 보람 있는 양질의 삶을 영위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기회를 거부당해 온 수많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빈곤을 종식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이자,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 그와 같은 목표에 성공한다면 2030년까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1. 오늘 발표하는 향후 15년에 대한 글로벌 행동 의제는 21세기의 사람들과 지구를 위한 일종의 헌장이다. 아동과 젊은 여성 및 남성은 변화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새 목표 속에서 그들의 무한한 행동주의적 역량을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 쏟아 부을 기반을 찾을 것이다.
52. “우리 인류(We the Peoples)”는 유엔 헌장의 유명한 첫 문구이다. 2030년을 향해 오늘을 시작하는 주체도 “우리 인류”이다. 우리의 여정에는 정부는 물론 의회, 유엔 체제 및 기타 국제기구, 지역 당국, 토착민, 시민 사회, 기업 및 민간 부문, 과학계 및 학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미 본 의제에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체가 될 것이다. 이는 인류의 인류에 의한 인류를 위한 의제이며, 이러한 점이 의제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 믿는다.

53. 인류와 지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또한 미래 세대에 희망이라는 성화를 전해줄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여정을 성공시키고 그에 따른 편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 목표

54. 아래는 포괄적 정부 간 협상 프로세스의 결과와 서문에 맥락의 설명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총회 개방형 실무단(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제안¹⁵을 바탕으로 합의한 목표와 세부 목표이다.
55.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 목표는 국가의 다양한 현실, 역량 및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수립한 통합적이고 불가분하며 범세계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목표이다. 세부 목표는 의욕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며 세계 수준의 의욕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각국의 자체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정부는 이러한 의욕적이고 포괄적인 세부 목표를 국가 계획 프로세스, 정책 및 전략에 통합할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사회 및 환경 분야에서 진행 중인 기타 관련 프로세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56. 목표와 세부 목표를 결정함에 있어 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고유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고 가장 취약한 국가(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 개도국, 군소 도서 개도국)와 중간 소득 국가가 처한 고유한 상황을 고려했음을 강조한다. 분쟁 상황에 놓인 국가 또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57. 일부 세부 목표의 기준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별 및 글로벌 기준점이 아직 없는 경우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한다. 특히 그 아래로는 명확한 대상 수치가 없는 세부 목표들에 대한 진척도를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의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것을 약속한다.
58. 국가가 다른 포럼에서도 본 의제의 이행에 잠재적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15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총회 개방형 실무단의 보고서(A/68/970 및 Corr.1에 포함, A/68/970/Add.1~3도 참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독려하며, 그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존중한다. 본 의제와 이행이 다른 프로세스와 관련 결정을 침해함이 없이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다.

59.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 가능 발전을 달성함에 있어 가용한 접근 방식, 비전, 모델 및 수단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구 및 생태계가 우리의 공동 안식처이며 “대지 (Mother Earth)”라는 개념이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보편적인 표현임을 재확인한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 목표 1. 형태 불문 모든 곳에서 빈곤 종식
 -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확보 및 영양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 목표 3. 연령 불문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하고 안녕 증진
 -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평생 학습 기회 촉진
 - 목표 5. 남녀평등 실현,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지위 향상
 - 목표 6. 모두를 위한 용수 및 위생의 가용성 및 지속적 관리 보장
 -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보장
 -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
 - 목표 9. 복원성이 있는 사회 기반 구조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혁신 장려
 -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성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 목표 12. 지속가능한 방식의 소비 및 생산 보장
 - 목표 13. 기후 변화 및 그 영향을 완화하는 긴급 조치 시행
 -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및 해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방식의 이용
 -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지속가능한 방식의 이용,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열화 방지 및 회복, 생물 다양성 훼손 중단
 - 목표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장려,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추적성이 있고 포용적인 제도 수립
 - 목표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 * 기후 변화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을 협상함에 있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일차적인 정부간 국제 기준임을 인정한다.

목표 1. 형태 불문 모든 곳에서 빈곤 종식

- 1.1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 현재 가치로 일일 1.25 미국달러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모든 극빈층의 빈곤을 해소한다.
-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빈곤하게 생활하는 모든 연령대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을 절반 이상 축소한다.
- 1.3 국가별로 최저 임금제를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 보장 제도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사회 보장을 실현한다.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 및 여성(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의 이용, 토지 및 기타 형태의 재산, 상속, 천연 자원, 신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의 소유 및 지배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와 관련된 극심한 사고와 기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충격 및 재해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완화한다.
 - 1.a 개도국(특히 최빈국)이 모든 측면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원을 실질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1.b 빈곤층 지향적이고 성 평등을 고려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건실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빈곤 근절 활동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한다.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확보 및 영양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영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2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하고, 청소년기 여성, 임신부, 모유 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필요를 충족하는 등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 문제를 해소한다.
- 2.3 2030년까지 토지와 기타 생산 자원 및 투입, 지식, 금융 서비스, 시장, 부가 가치 창출 및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공평한 접근 등을 통해 영세 농산물 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업인의 농업 생산성 및 소득을 두 배로 증대한다.
-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체계를 확보하고 생산성 및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 변화, 악천후, 가뭄, 홍수 및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 및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복원력을 갖춘 농업 실무 준칙을 이행한다.
- 2.5 2020년까지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건전하게 관리되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 은행 등을 통해 종자, 농작물, 사육 동물/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 합의에 따라 유전자 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 활용에 따른 편익의 접근성과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한다.
 - 2.a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농촌 인프라, 농업 연구 및 영농 교육, 기술 개발, 식물/가축 유전자 은행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 2.b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위임 사항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 수출 보조금 및 이에 준하는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 조치의 동시 철폐 등을 통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 내에 존재하는 무역 제한 및 왜곡을 시정하고 방지한다.

- 2.c 극심한 식량 가격 변동을 제한하기 위해 식량 상품 및 파생 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식량 비축량 등의 시장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을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목표 3. 연령 불문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하고 안녕 증진

-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 사망률을 정상 출산 10만 건당 70건으로 축소한다.
- 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하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률을 정상 출산 1,000건당 12건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정상 출산 1,000건당 25건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 열대 질환(NTD)과 같은 유행병을 종식하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근절한다.
-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 건수를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 건강 및 안녕을 증진한다.
- 3.5 마약류 의약품 및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한다.
- 3.6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한다.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생식 건강의 국가 전략 및 계획 통합 등을 통해 성 및 생식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한다.
- 3.8 금융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양질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을 통해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 보장(UHC)을 실현한다.
-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과 대기, 수질, 토지 공해/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대폭 축소한다.
 - 3.a 모든 국가에서 적절한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이행을 강화한다.
 - 3.b 주로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주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공중 보건과 특히 모든 사람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에 관한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의 제반 조항을 활용할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 및 공중 보건에 대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의거하여 적정 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 3.c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국 및 군소 도서 개도국)의 보건 재원과 보건 인력의 채용, 개발, 교육, 고용 유지 활동을 대폭 확대한다.

- 3.d 모든 국가(특히 개발도상국)의 국가적 및 세계적 보건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 위협 완화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평생 학습 기회 촉진

-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 및 남아를 대상으로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적정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를 대상으로 초등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 및 남성을 대상으로 비용이 적정한 양질의 기술, 직업 및 고등(대학 포함) 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구직 및 창업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 등의 관련 기술을 지닌 젊은이와 성인의 수를 대폭 증대한다.
- 4.5 2030년까지 교육 분야에서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제반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 4.6 2030년까지 젊은이 모두와 성인 남녀 상당수가 문해력과 수리력을 갖추도록 한다.
-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 평등, 평화 및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 시민 의식, 문화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기여에 관한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4.a 아동, 장애 및 성 인지 관련 교육 시설을 건립하고 개량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4.b 2020년까지 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교육 및 정보 통신 기술, 기술 공학 및 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급 교육에 등록하는 데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 개발국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국 및 군소 도서 개발국)에서 교사 교육을 위해 국제 협력 등을 통한 적격 교사 공급을 대폭 증대한다.

목표 5. 남녀평등 실현,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지위 향상

- 5.1 모든 곳에서 형태를 불문하고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차별을 종식한다.
- 5.2 인신매매와 성 관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한다.

-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 할례와 같은 유해한 관습을 모두 근절한다.
- 5.4 국가별로 적절히 공공 서비스, 사회 기반 구조 및 사회 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가구 및 가정 내에서 책임 분담을 증진함으로써 육아 및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
- 5.5 정치, 경제 및 공적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 및 베이징행동강령과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 문서에 의거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한다.
 -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금융 서비스, 유산 및 천연 자원의 소유 및 지배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는 개혁을 실시한다.
 - 5.b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구형 기술,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을 증진한다.
 - 5.c 모든 수준에서 성 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견실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목표 6. 모두를 위한 용수 및 위생의 가용성 및 지속적 관리 보장

- 6.1 2030년까지 모두에 대해 합리적 가격의 안전한 음용수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성을 실현한다.
-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 및 여아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필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실현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 6.3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오염 경감, 유해 물질의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 비율의 대폭적인 증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용수 사용 효율을 크게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취수 및 용수 공급을 보장하여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사람 수를 대폭 축소한다.
- 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국제 협력 등을 통해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구현한다.
- 6.6 2020년까지 산, 삼림, 습지, 하천, 지하수층, 호수 등을 포함한 물과 관련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용수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는 용수 및 위생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개발도상국 대상 역량 강화 지원과 국제 협력을 확대한다.
 - 6.b 수자원 및 위생 관리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보장

- 7.1 2030년까지 가격이 합리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한다.
-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구성에서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 7.3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배가한다.
- 7.a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첨단 청정 화석 연료 기술 등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인프라와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 7.b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 개도국 및 내륙 개도국)에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사회 기반 구조 확대 및 기술 개선을 통해 모두를 위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한다.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

- 8.1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국민 소득 기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한다(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7% 이상으로 유지).
- 8.2 고부가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집중 등을 통해 산업 다변화, 기술 발전 및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실현한다.
-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 및 혁신을 뒷받침하는 발전 지향적 정책을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포함하여 영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장려한다.
-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의 주도 하에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전 세계 자원 효율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 성장으로 인해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8.5 2030년까지 청년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한다.
- 8.6 2020년까지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젊은이의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 8.7 강제 노동을 종식하고,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을 포함한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근절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종식한다.

- 8.8 이주 노동자(특히 여성 이주자)와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촉진한다.
-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고유문화 및 특산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8.10 국내 금융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촉진하고 확대한다.
 - 8.a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 프레임워크(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 원조를 증대한다.
 -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세계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한다. 복원성이 있는 사회 기반 구조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혁신 장려
- 9.1 모두가 합리적 비용으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 및 국제 인프라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성이 있는 양질의 사회 기반 구조를 개발하여 경제 발전과 인류의 안녕을 뒷받침한다.
-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 및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을 대폭 증대한다(특히 최빈국의 경우 두 배로 증대).
- 9.3 신용 우대와 가치사슬 및 시장에 대한 통합을 포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소재하는 영세 산업체 및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한다.
- 9.4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 기반 구조를 개량하고 산업을 개편하는 동시에 자원 이용 효율성을 향상하고 청정한 친환경적 기술 및 산업 공정의 채택을 확대하고 모든 국가가 각국의 역량에 맞춰 조치하도록 한다.
- 9.5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1백만 명당 연구개발(R&D) 인력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을 대폭 증대하는 등 모든 국가(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산업 부문의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기술 역량을 향상한다.
 -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 개도국 및 군소 도서 개도국에 대한 금융적, 기술적 및 기능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복원성이 있는 사회 기반 구조의 개발을 촉진한다.
 - 9.b 산업 다변화와 원자재의 부가 가치 창출 등을 위한 정책적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을 뒷받침한다.
 - 9.c 2020년까지 최빈국의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증대하고 합리적 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 10.1 2030년까지 인구 중 하위 40%의 소득 성장률을 국가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유지한다.
-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증진한다.
-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률, 정책, 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한다.
- 10.4 제만 정책(특히 재정, 임금 및 사회 보장 정책)을 채택하고 평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 10.5 국제 금융 시장 및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개선하고 그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한다.
- 10.6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성 있고 준법적인 금융 기관이 되도록 전 세계 국제 경제 기구 및 금융 기관의 의사 결정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한다.
- 10.7 계획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이주 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을 촉진한다.
 - 10.a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의거하여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국)에 대한 차등적 특혜 원칙을 이행한다.
 - 10.b 국가별 계획 및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가 가장 큰 국가, 특히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 도서 개도국 및 내륙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자금 거래를 장려한다.
 -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비용을 3% 미만으로 인하하고, 비용이 5%를 초과하는 송금 경로를 철폐한다.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성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주택 및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량한다.
-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자의 필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제공하고 도로 안전을 개선한다.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촉진하고,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11.4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
-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물 관련 재해를 포함한 제반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대폭 줄이고, 재해로 인한 세계 GDP 대비 직접 경제적 손실을 상당폭 축소한다.
- 11.6 2030년까지 대기질, 생활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도시의 일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완화한다.
-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및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이용이 용이한 공공녹지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한다.
 - 11.a 국가 및 지역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도시 근교 및 농촌 지역 간에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연계 효과가 실현되도록 지원한다.
 -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 효율성,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재해 복원성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정주지의 수를 대폭 증대하고, 2015~2030 센다이재난 위험경감체계(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종합적인 재난 위험 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 11.c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성이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2. 지속가능한 방식의 소비 및 생산 보장
 - 12.1 모든 국가가 선진국의 주도 하에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 및 역량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이행한다.
 - 12.2 2030년까지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실현한다.
 -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의 일인당 음식물 쓰레기양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한 식량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축소한다.
 - 12.4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화학물질 및 기타 폐기물을 모든 수명 주기에 걸쳐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대기, 물 및 토양으로의 배출을 대폭 줄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대폭 감소시킨다.
 - 12.6 기업(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실무 준칙을 채택하고 보고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하도록 독려한다.
 -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실무 준칙을 촉진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한다.

12.a 개발도상국이 더욱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식을 지향하기 위한 과학적 및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 및 특산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미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12.c 개발도상국의 고유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치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세계 및 보조금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세제를 개편하고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하여 낭비성 소비를 조정하는 비효율적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합리화한다.

목표 13. 기후 변화 및 그 영향을 완화하는 긴급 조치 시행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력 강화한다.

13.2 기후 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한다.

13.3 기후 변화의 완화, 적응, 영향 경감 및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3.a 최대한 신속한 출자를 통해 유의미한 완화 조치를 실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 및 온전한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미화 1천억 달러를 공동으로 조달한다는 목표에 대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선진국 당사국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13.b 여성, 청년, 지역 사회의 소외계층에 중점을 두고 최빈국 및 군소 도서 국가의 효과적인 기후 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을 향상하는 수단을 촉진한다.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방식의 이용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 및 부영양화를 포함하여 특히 육상 활동에서 기인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대폭 완화한다.

14.2 2020년까지 복원력 강화를 포함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를 통해 심각한 환경 영향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조치를 시행한다.

14.3 모든 수준에 걸쳐 과학 부문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처한다.

* 기후 변화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을 협상함에 있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일차적인 정부 간 국제 기준임을 인정한다.

14.4 2020년까지 수산 자원을 최단 기간 내에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지속가능한 최대 수확량 수준까지 회복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어획량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종식하고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관리 계획을 이행한다.

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용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연안과 해양의 10% 이상을 보전한다.

14.6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차등적 특혜 대우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 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2020년까지 과잉 어획량 및 남획을 초래하는 제반 유형의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그와 같은 유형의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¹⁶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및 관광 자원을 포함한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통해 군서 도서 개도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편익을 증대한다.

14.a 개발도상국(특히 군소 도서 개도국 및 최빈국)의 발전에 대한 해양 생물 다양성의 기여도를 증대하고 해양 건강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 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기준 및 지침을 고려하여 과학 지식을 증진하고 연구 역량을 개발하고 해양 기술을 이전한다.

14.b 영세 어업 종사자의 해양 자원 및 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양 및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관장하는 법률 체계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지속가능한 방식의 이용,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열화 방지 및 회복, 생물 다양성 훼손 중단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정상 의무에 준하여 육상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관련 서비스(특히 산림, 습지, 산지 및 건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한다.

16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도하개발의제, 홍콩 장관회의 위임 사항 고려.

-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에 걸쳐 모든 형태의 삼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의 이행을 촉진하고, 삼림 파괴를 중단하고, 훼손된 삼림을 복원하고, 신규 조림과 재조림을 대폭 증대한다.
-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및 홍수에 의해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열화된 토지 및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15.4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에 필수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산지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대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산지 생태계를 보전한다.
- 15.5 자연 서식지의 열화를 완화하는 시급하고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 다양성 훼손을 멈추고, 2020년까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한다.
- 15.6 국제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편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증진한다.
- 15.7 보호 동식물의 밀렵 및 밀매를 종식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 동식물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처한다.
- 15.8 2020년까지 침입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이들이 육상 및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대폭 경감하며 우점종을 억제하거나 제거한다.
-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의 계획, 발전 프로세스, 빈곤 완화 전략과 계정에 통합하고 반영한다.
 - 15.a 모든 출처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대폭 증대하여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한다.
 - 15.b 모든 출처와 수준으로부터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를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이 보전과 재조림을 포함한 삼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15.c 지속가능한 생계 기회 추구를 위한 지역 사회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보호종의 밀렵 및 밀매 방지 노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목표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장려,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추적성이 있고 포용적인 제도 수립

- 16.1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축소한다.
-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 16.3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법치주의를 증진하고 모두에 대해 사법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대폭 축소하고, 도난 자산의 환수와 반환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 수수를 대폭 축소한다.
-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투명한 제도를 수립한다.
- 16.7 모든 수준에서 대응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 16.9 2030년까지 출생 신고를 포함하여 모두에 대해 법적 신분을 부여한다.
- 16.10 국내 법률 및 국제 협정에 의거하여 정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 16.a 모든 수준에서(특히 개발도상국) 폭력을 예방하고 테러/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국가별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 16.b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을 촉진하고 시행한다.

목표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할성화 금융

- 17.1 세금 및 기타 수익의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국내 자원 동원을 강화한다.
-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발전 원조(ODA)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공적 발전 원조를 국민총소득 대비 0.15~0.20%까지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포함하여 공적 발전 원조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한다. ODA 공여국은 최빈국에 대한 공적 발전 원조액을 국민총소득 대비 0.2% 이상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17.3 다양한 출처로부터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 재원을 조달한다.
- 17.4 적절한 경우 대출 조달, 부채 탕감, 부채 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채 문제 해결을 통해 고채무 빈곤국(HIPC)의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
- 17.5 최빈국의 투자 촉진 제도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기술

-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접근성과 관련한 남북, 남남 및 삼각 협력 형태의 지역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유엔 수준에서의 기존 장치/수단 간 조정 개선과 기술 증진 장치/수단을 통해 상호 합의에 의거한 지식 공유를 확대한다.

17.7 상호 합의에 따른 양허 및 특혜 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친환경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한다.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 제도를 전면적으로 운용하고, 특히 정보 통신 기술과 같은 구현 기술의 활용을 강화한다.

역량 구축

17.9 개발도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효과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역량 구축의 이행을 위한 국제 지원을 강화하여 남북/남남/삼각 협력 등을 통해 제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개발도상국의 국가 계획을 지원한다.

무역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 등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공평한 다자 무역 체제를 촉진한다.

17.11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하고,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배가한다.

17.12 최빈국의 수출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 원산지 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 접근성 촉진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따라 모든 최빈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 접근을 적시에 실현한다.

제도적 현안: 정책적 및 제도적 일관성

17.13 정책 조율 및 정책 일관성을 통해 세계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17.14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17.15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주도권을 존중한다.

17.16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모든 국가(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자간 제휴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 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민관 및 시민 사회 간의 제휴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및 군소 도서 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의 적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상태, 장애 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가별 상황) 양질의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보완하는 지속 가능 발전 진척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는 기존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통계 역량 구축을 지원한다.

이행 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60. 본 의제의 전면적인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 및 강화와 상대적으로 의욕적인 이행 수단이 없다면 의욕적인 목표 및 세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아울러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를 통해 정부, 시민 사회, 민간 부문, 유엔 체제 및 기타 행위 주체를 결집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제반 목표 및 세부 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세계 수준의 집중적인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61. 본 의제의 목표와 세부 목표에서는 우리의 의욕적인 공동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다룬다. 위에 언급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각 항목과 목표 17에 명시된 이행 수단 세부 목표는 본 의제를 실현하는 열쇠이며 다른 목표 및 세부 목표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우리의 이행 노력과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지표 체계에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62.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본 의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일부인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 명시된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를 바탕으로 재활성화 된 지속가능발전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체계 하에서 실현할 수 있다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는 2030 의제의 이행 수단 세부 목표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며 맥락화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는 국내 공공 자원, 국내 및 국제 민간사업 및 금융, 국제 발전 협력, 국제 무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국제 무역), 부채 및 채무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도적 현안, 과학, 기술, 혁신 및 역량 구축, 데이터,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63. 통합된 국가 금융 체계에 의해 뒷받침되는 일관적인 국가 주도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국가별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해서는 각국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국가별 정책 및 발전 전략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빈곤 근절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국제 규정 및 협정을 준수하는 한편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주도권을 존중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관적이고 상호 도움이 되는 국제 무역, 통화 및 금융 제도를 포함한 긍정적인 국제 경제 환경과 강화된 세계 경제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별 발전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용한 적절한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하고 촉진하며 역량을 구축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모든 수준에 걸쳐 모든 주체에 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 일관성과 긍정적인 환경을 추구하고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재활성화 할 것을 약속한다.

64. 이스탄불 선언 및 행동 계획(Istanbul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군소도서개도국 행동 촉진 세부 원칙(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SAMOA] Pathway) 및 2014~2024 비엔나 내륙개도국 행동 계획(Vienna Programme of Action for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Decade 2014~2024)을 포함한 관련 전략 및 행동 계획의 이행을 지지하고, 아프리카연합 의제 2063 및 신아프리카개발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의 프로그램 모두 새 의제의 필수 부분임을 재확인한다.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후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지속적인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과 관련한 주요 도전 과제를 인식한다.
65. 중간 소득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함에 있어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현재까지 이루어 온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험 교류, 협력 강화, 그리고 유엔 발전 체제, 국제 금융 기구, 지역 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해결 과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66.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구함에 있어서 국가 주권 의식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체 공공 정책을 시행하고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수준에서 긍정적인 환경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제 성장을 통해 국내 자원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67. 생산성, 포용적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에 있어 민간 기업의 활동, 투자 및 혁신이 주요한 원동력이다. 영세 기업부터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까지 포함하는 민간 부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따른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¹⁷,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준,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¹⁸ 및 주요 다자간 환경 협약과 같은 관련 국제 기준과 협약 및 기타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협약 및 기준의 당사국이 노동권을 보호하고 환경 및 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기업 부문을 조성할 것이다.
68. 국제 무역은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위한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주도 하에 규칙에 기반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고 공평한 다자간 무역 체계와 유의미한 무역 자유화를 계속하여 촉진

17 A/HRC/17/31, 부록.

18 유엔, 조약 시리즈, vol. 1577, No. 27531.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재차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¹⁹ 지역 경제 통합 및 상호 연계 촉진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 개도국, 군소 도서 개도국 및 중간 소득 국가 포함)의 무역 관련 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둔다.

69. 적절한 경우 용자, 채무 규제, 부채 구조 조정 및 건전한 부채 관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기적인 부채 지속가능성 실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많은 국가가 여전히 채무 위기에 취약한 상태이며, 다수의 최빈국, 여러 군소 개도국 및 몇몇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채무국 및 채권국이 서로 협력하여 지속 불가능한 부채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차입 국가의 책임이지만, 채권국 또한 상대방 국가의 부채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부채 구제를 받고 지속가능한 채무 수준을 달성한 국가의 부채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것이다.
70. 이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 의해 수립된 기술 촉진 메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TFM)을 발족시킨다. TFM은 회원국, 시민 사회, 민간 부문, 과학계, 유엔 기구 및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다자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유엔 기구 간 임무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다자간 협업 포럼,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성될 것이다.
 -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유엔 기구간 임무팀은 과학, 기술 및 혁신 관련 사안에 대한 유엔 내부 조율 및 공조를 촉진하고 시너지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특히 역량 구축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임무팀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며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과학계의 대표 10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다자간 포럼의 회의를 준비하고 포럼 및 온라인 플랫폼의 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된다. 10명의 대표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임무팀은 모든 유엔 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경제사회이사회의 직능 위원회에 참여가 개방되며, 초기에는 현재 기술 촉진에 관한 비공식 실무단을 통합한 여러 조직, 즉 사무국의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및 세계은행(World Bank)으로 구성된다.

19 A/C.2/56/7, 부록.

- 온라인 플랫폼은 유엔 내외의 기존 과학, 기술 및 혁신 이니셔티브, 메커니즘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매핑하는 데 사용되고 정보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과학, 기술 및 혁신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 및 정책에 대한 정보, 지식 및 경험과 모범 사례 및 교훈의 활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생성된 과학 출판물의 공개 이용 및 보급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을 보완하고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 내외의 다른 이니셔티브의 모범 사례 및 교훈을 고려하는 독립적인 기술 평가를 바탕으로 개발될 것이다.
- 1년에 한 번 2일 간에 걸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다자간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주제 분야 전반에 대해 과학, 기술 및 혁신 측면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여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 포럼은 과학 분야 협력, 혁신 및 역량 구축 등의 기술적 필요 및 격차를 조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이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와 다자간 파트너십 간의 상호 교류, 연결 및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 포럼의 회의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 회의에 앞서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거나, 적절한 경우 검토할 주제를 고려하고 다른 포럼 및 컨퍼런스 주관자와 협력하여 다른 포럼이나 컨퍼런스와 병행하여 개최된다. 포럼의 회의는 2개 회원국이 공동 의장을 맡으며, 두 공동 의장이 토론 요약본을 작성하여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의 이행에 관한 후속 조치 및 검토 차원에서 고위급 정치 포럼의 회의록에 반영한다.
- 고위급 정치 포럼의 회의에서 다자간 포럼의 요약본이 전달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후속 다자간 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임무단의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71. 본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 목표(이행 수단 포함)는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후속 조치 및 검토

72. 향후 15년 동안 본 의제의 이행에 대해 체계적인 후속 조치 및 검토를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강력하고 자발적이고 효과적이며 참여적이고 투명하고 통합적인 후속 조치 및 검토 프레임워크는 이행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국가들이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의제의 이행을 극대화하고 진척도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3.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운영되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시민들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본 의제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뒷받침하고 모범 사례 교류 및 상호 학습을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공통의 난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현안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다. 본 의제는 보편적이므로 전체 국가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74.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후속 조치 및 검토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 (a) 자발적이고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국가별 현실, 역량 및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정책적 재량과 우선순위를 존중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는 국가 주인 의식이 열쇠이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검토가 주로 국가의 공식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수준 프로세스의 결과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검토의 토대가 된다.
 - (b) 목표 및 세부 목표의 보편성, 통합성 및 상호 연관성과 지속 가능 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진 보편적인 목표 및 세부 목표의 이행 진척도를 추적한다.
 - (c) 장기적 방향을 유지하고 성과, 도전 과제, 격차 및 중요 성공 요인을 파악하며, 국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선택을 지원한다. 후속 조치 및 검토 프로세스는 필요한 이행 수단을 동원하고 제휴 관계를 맺고, 해결책 및 모범 사례 식별을 뒷받침하며, 국제 발전 체계의 조율 및 효과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d) 모든 사람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모든 이해당사자의 보고에 도움이 된다.
 - (e) 사람 중심적이고, 성 평등을 고려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특히 최빈층, 최취약층 및 소외계층에 중점을 둔다.
 - (f) 기존 플랫폼 및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며(존재하는 경우) 중복을 피하고 국가별 상황, 역량, 필요 및 우 순위에 대응한다. 신규 현안 및 새 방법론의 개발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며, 국가 행정부에 대한 보고 부담을 최소화한다.
 - (g)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품질이 양호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시의 적절하고 신뢰성이 있고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상태, 장애 여부, 지리적 거주지 및 국가별 상황에 따른 기타 특성으로 세분화된 국가 주도 평가 자료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h)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군소 도서 개도국, 내륙 개도국 및 중간 소득 국가의 국가 데이터 시스템 및 평가 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i) 유엔 체제 및 기타 다자간 기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활용한다.
75. 목표 및 세부 목표는 일단의 글로벌 지표를 사용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검토한다. 이들 지표는 회원국에 의해 개발된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지표로 보완되며, 국가 및 세계 기준 데이터가 아직 없는 세부 목표에 대한 기준 개발을 위해 수행된 작업의 결과도 함께 활용된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지표에 관한 기구간 전문가단에 의해 개발될 예정인 세계 지표 체계는 기존 위임 사항에 따라 2016년까지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의 합의를 거친 후 경제사회이사회 및 총회에 의해 채택된다. 이 지표 체계는 간단하지만 강력할 것이며, 이행 수단을 포함한 제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 목표를 망라하고, 그 안에 포함된 정치적 균형, 통합 및 의욕 목표를 보존할 것이다.

76. 국가 통계 기관 및 데이터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의 적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세분화된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에 있어 개발도상국(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군소 도서 개도국, 내륙 개도국)을 지원할 것이다. 적절한 민관 협력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확대를 촉진하여 지구 관찰 및 지리 공간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여를 활용하는 한편, 지원 및 추적 과정에서 국가 주인의식을 고취할 것이다.
77. 국내,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달성된 진척도와 관련한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검토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를 약속한다. 기존의 후속 조치/검토 기관 및 메커니즘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다.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진척도를 평가하고 도전 과제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 보고서는 지역 수준에서의 협의 및 세계 수준에서의 검토와 더불어 다양한 수준에서의 후속 조치를 위한 권고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8. 모든 회원국이 본 의제의 전면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가능한 조속히 현실적이면서도 의욕적인 국가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독려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국가 발전 및 지속 가능 발전 전략과 같은 기존 계획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79. 또한 회원국이 국가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국가/국내 광역 수준에서 이루어진 진척도에 대한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을 독려한다. 그와 같은 검토는 국가별 상황, 정책 및 우선순위에 맞게 원주민,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의회 및 다른 기관도 이러한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수 있다.

지역 수준

80. 국가 및 국내 광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 및 검토는 경우에 따라 자발적 검토, 모범 사례 공유 및 공통 세부 목표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서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및 소지역 위원회 및 기구 간의 협력을 환영한다. 포괄적 지역 프로세스는 국가 수준 검토를 바탕으로 하며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와 같이 세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 및 검토의 밑거름이 된다.

81.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진 기존 후속 조치 및 검토의 활용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적 재량을 허용하면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가장 적절한 지역 포럼을 식별하도록 독려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엔의 지역별 위원회가 계속하여 지원할 것이다.

— 세계 수준

82. 고위급 정치 포럼은 기존의 위임 사항에 따라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기타 관련 기구 및 포럼과 더불어 세계 수준에서 후속 조치 및 검토 프로세스를 감독함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아울러 성공 사례, 도전 과제 및 교훈을 포함한 경험의 공유를 촉진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 지침 및 권고를 제공할 것이다. 지속 가능 발전 정책과 관련한 체제 전반적인 일관성과 조율을 증진할 것이다. 본 의제가 관련성 및 의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이 달성한 성과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현안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유엔의 모든 관련 컨퍼런스 및 프로세스(예: 최빈국, 군소 도서 개도국 및 내륙 개도국에 관한 컨퍼런스 및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 및 검토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것이다.
83.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의 후속 조치 및 검토는 지역별 통계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지역 수준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엔 체제와의 공조 하에 유엔 사무총장이 작성하는 연례 진행 보고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진다. 고위급 정치 포럼은 과학-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자가 빈곤 근절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 활용 가능한 강력한 근거 기반 도구가 될 수 있는 세계지속가능발전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도 참조할 것이다.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이 이 세계 보고서의 범위, 방법론 및 주기와 진행 보고서와의 관계에 관한 협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2016년 고위급 정치 포럼의 장관급 선언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84. 경제사회이사회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는 2013년 7월 9일자 총회 결의안 67/290에 따라 정기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검토는 자발적이며, 보고가 수반되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물론 유엔의 관련 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예: 시민 사회, 민간 부문)를 망라한다. 검토는 국가 주도 하에 장관 및 기타 관련 고위 관료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또한 주요 단체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을 통해 제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85.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주제별 진척도 검토(교차 현안 검토 포함) 또한 실시된다. 이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별 위원회와 기타 정부 간 기구 및 포럼에서 수행하는 검토에 의해 보완되며, 목표의 통합적 속성과 목표 간의 상호 연관성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가능하다면 고위급 정치 포럼의 주기에 맞춰 실시되어야 한다.

86.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전 성과를 위한 자금 지원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제반 이행 수단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검토(본 의제의 후속 조치 및 검토 체계에 통합)를 환영한다. 정부 간에 합의된 발전 자금 지원에 대한 경제사회이사회 연례 포럼의 결론 및 권고가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본 의제의 전반적인 후속 조치 및 검토에 반영될 것이다.
87. 총회의 주관 하에 4년마다 회합을 가지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는 본 의제 및 의제 이행에 대한 고수준의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진행 사항 및 새로운 도전 과제를 식별하며, 이행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 총회가 주관하는 차기 고위급 정치 포럼은 2019년에 개최될 예정이며, 4년 주기의 종합 정책 검토 프로세스와의 일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합 주기는 재설정된다.
88. 아울러 유엔 발전 체제가 새 의제의 이행에 대한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체제 전반에 걸친 전략적 계획, 이행 및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장 기구는 이행에 대한 그와 같은 지원을 검토하고 진행 사항 및 장애 요소를 보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 발전 체제의 장기적인 입지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하며 적절한 경우 이들 현안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89. 고위급 정치 포럼은 결의안 67/290에 따라 주요 그룹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의 후속 조치 및 검토 프로세스 참여를 지원할 것이다. 이들 주체가 본 의제의 이행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90. 유엔 사무총장이 회원국과 협의하여 2016년 고위급 정치 포럼의 회의를 준비하면서 총회의 17차 회기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세계 수준의 후속 조치 및 검토를 향한 중요 이정표를 명기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이사회 주관 하에 개최되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주도 검토를 위한 조직 체계에 관한 제안과 자발적인 공동 보고 지침에 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적 책임을 명시하고 연간 주제, 주제별 검토 순서, 그리고 고위급 정치 포럼의 정기 검토 방안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91. 본 의제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우리의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변혁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4차 본회의
2015년 9월 25일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 목표” 항에 언급된 문서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유엔, 조약 시리즈, vol. 2302, No. 41032)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결의안 69/283, 부록II)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유엔, 조약 시리즈, vol. 1833, No. 31363)

“The Future We Want” (결의안 66/288, 부록)



07

환경 악화의 영향

(Impact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유엔 안보리 보고서
(2020)





2020년 8월 31일

본 보고서는 온라인(securitycouncilreport.org)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SCR의 일일 동향 및 통찰 정보를 받아보려면 whatsinblue.org에서 "What's in Blue" 시리즈를 구독하거나 트위터에서 @SCRtweets를 팔로우하십시오.

독립성. 공정성. 유익성. SCR. 월간 전망 (Security Council Report. Monthly Forecast)

개요

9월에는 니제르가 의장국을 맡는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부분의 업무를 계속하여 원격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회의(채택 포함)의 경우 유엔 사무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니제르는 자국의 우선순위 분야에 중점을 둔 네 번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IF, 프랑코포니)가 담당하는 역할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OIF 사무총장 루이스 무시히키와보(Louise Mushikiwabo), 유엔 사무국 및 시민 사회가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헬(Sahel) 지역에 중점을 둔 아동, 무력 충돌 및 학교 공격에 대한 토론도 계획되어 있다. 아동 및 무력 충돌 특별 대표인 버지니아 감바(Virginia Gamba)와 UNICEF 총재인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도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다. 아동 시민 사회 대표도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병 이후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정상급 논의도 예정되어 있는데, 9월 셋째 주 총회에서 고위급 가상 회의 주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무사 파키 마하멧(Moussa Faki Mahamat) AU 집행위원장 및 시민 사회 대표 한 명이 연사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니제르는 특히 사헬 지역에 초점을 맞춘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환경 악화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장관급 공개 토론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사무국 고위 관료와 시민 사회 대표로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임원도 브리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달의 다른 토론으로는 유엔 평화 유지 개혁 연례 브리핑을 위한 토론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분기 토론이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유엔 지원 임무 갱신에 대한 채택도 예정되어 있다.

유엔 ISIL/Da'esh 범죄 책임 조사팀(UN Investigative Team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Crimes Committed by Da'esh/ISIL), 유엔콜롬비아검증단(UN Verification Mission in Colombia) 및 유엔리비아지원단(UN Support Mission in Libya, UNSMIL)의 위임 임무 갱신 안 채택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택에 앞서 UNSMIL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VTC(화상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리아, 예멘 및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정세에 관한 정기 회의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시리아에 대해서는 정치적 및 인도적 상황과 화학 무기 사용에 관한 공개 및 비공개 화상 회의가 열릴 것이다. 예멘의 발전 사업과 중동 정세에 대한 회의는 공개 및 비공개 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아프리카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단 및 남수단에 대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다르푸르의 AU/UN 혼성 평화유지군(AU/UN Hybrid Operation), 수단의 UN 통합 전환 지원 임무단(UN Integrated Transition Assistance Mission), 남수단의 UN 임무단(UN Mission)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공개 및 비공개 화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에스토니아 주재 대사이자 1591 수단제재위원회(Sudan Sanctions Committee) 위원장인 스벤 유르겐슨(Sven Jürgenson)의 분기 업무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9월에는 AU 평화안보이사회(Peace and Security Council)와의 14차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벨로루시, 부룬디, 기니비사우, 이란 및 말리의 진전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다.

사후 고찰: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보조 기구 의장직 할당

최근 몇 년 간 보조 기구 의장국 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안전보장위원회 보조 기구 의장국을 비상임 이사국이 맡고 있지만,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상임 이사국들이 협의를 거의 하지 않고 보조 기구 의장국을 배정했다. 결정은 매년 말에 완료되며, 1월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비상임 이사국들은 준비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프로세스와 자국의 이익과 정치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는 임명에 낙담했다.

2016년 이후 개발된 보다 투명해지고 협업적인 배정 프로세스 덕분에 비상임 이사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그 기원은 그해 10월에서 6월까지 열린 총회의 이사회 선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사회 선거를 4개월 앞당겨 1월 1일에 이사국이 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추가로 부여했으며,

“문서 및 기타 절차 문제에 관한 비공식 실무단(IWG)”을 재발족시켜 보조 기구 의장직 선거 및 준비 현안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당시 의장국: 일본).

2016년 7월에 IWG는 비상임 이사국과 관련한 과도적 조치에 대한 노트(note)를 발행했다(S/2016/619). 특히 노트에서는 이사회 이사국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10월 1일 이전까지 다음 해의 보조 기구 의장국 임명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임명에 대한 협의는 가능한 한 선거 직후에 시작되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두 이사국이 한 국가는 IWG 의장국이 되고 다른 한 국가는 상임 위원국이 된다는 양해 하에 “균형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실시해야 한다. 처음에는 5개 상임 이사국이 거부했지만, 결국 새 임명 절차에 동의했다. 이들 새 약정은 2017년 “노트 507”에 통합되었다. 아울러 이 노트에는 보조 기구의 투명성 강화, 의장국 준비 개선, 보조 기구와 안전보장이사회 간의 교류 및 조율 확대를 위한 일단의 조치도 설명되어 있다.

올해는 비상임 이사국들이 다섯 개 신입 이사국이 선출된 거의 직후에 자신들의 의장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조 기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2016년 이후로 줄곧 IWG 의장국(현재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이 신입 이사국들 간에 절차를 조율하고 P5 조정국(P5 coordinator)과 협의하여 의장국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P5 조정국 지위는 3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다.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프랑스가 맡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안전보장이사회는 업무를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 기구를 설립해 왔다. 여러 제재 위원회와 테러 방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분쟁 지역에서의 아동 보호와 관련된 실무단 및 위원회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보조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위임 권한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비상임 이사국은 전통적으로 여성평화안보 비공식 전문가단(IEG)의 공동 의장직을 맡는데, 당시부터 공식 보조 기구는 아니지만 신입 이사국에 인기가 많은 기구였다. 두 IEG 공동 의장직 모두 10개의 다른 보조 기구 의장직과 함께 2021년에 새로 선출될 예정이다¹(지난 10년간의 보조 기구 의장국이 수록된 도표를 안전보장이사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임 이사국의 경우 어떤 보조 기구를 목표로 삼을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장직의 업무 부하를 파악해야 한다(일부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요구됨). 아동 및 무력 충돌 실무단(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은 12번의 공식 회의와 28번의 비공식 회의를 개최했으며(2019년

1 위원회: 1988 탈리반 제재(Taliban Sanctions), 1718 북한 제재(DPRK Sanctions), 1970 리비아 제재(Libya Sanctions), 2374 말리 제재(Mali Sanctions), 751 소말리아 제재(Somalia Sanctions), 1267/2989/2253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제재(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ISIL)/Da'esh/Al-Qaida Sanctions), 1540 핵무기확산금지(NPT), 기타: 아동 무력분쟁 실무단(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아프리카 내 분쟁 해결 및 대이란 결의안 2231 이행을 위한 임시 실무단(Ad Hoc Working Group on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and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2231[Iran]).

기준으로 보조 기구 중 가장 많은 수준, 1373 테러대응위원회(Counter-Terrorism Committee) 및 1540 대량살상무기 위원회(Committee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도 활발한 활동을 수행했다. 반면에 1566 테러 방지 실무단(Working Group on Terrorism)은 회의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안보보장이사회 보조 기구의 업무 부하에 관한 상세 정보는 UN의 2019 Highlights of Security Council Pract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임 이사국 간에 의장직 업무 부하를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 일이다.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임 이사국의 경우 업무가 바쁜 실무단/전문가단이나 위원회를 맡기 꺼려할 수 있는 반면, 제재 위원회는 정치적 합의가 커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사국들이 실무단만 맡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상임 이사국 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타 이사국의 이해가 걸려 보조 기구는 이사국들이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2년 전에는 1970 리비아제재위원회를 원하는 신임 이사국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독일이 상주 대표가 아닌 상주 부대표가 의장직을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의장직을 맡기로 합의하여 제재 위원회의 역사적 관행을 깨뜨렸다(제재 위원회의 의장은 국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봉직한다). 독일은 상주 부대표가 이 제재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음으로써 상주 대표의 보조 기구 의장직 수행에 따른 업무 부하를 지적했을 수도 있다.

선정 과정이 바뀔 때까지는 어떤 비상임 이사국이 의장직에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P5의 의견이 자주 반영됐다. 이와 같은 결정이 지정학적 및 자원적 요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의장국이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지는 않았다. 최근의 보조 기구 역사에서는 두 경우만 한 지역 그룹의 대표가 의장직을 맡고 있다. 그중 하나는 아프리카에서의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실무단(Working Group on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in Africa)이고(2002년 설립 이후 아프리카 국가에서 의장직을 맡아 왔음), 다른 하나는 1718 대북한제재위원회(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anctions Committee)이다(항상 서유럽 및 기타 그룹/WEOG에서 의장직을 맡아 왔음).

다른 패턴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보조 기구의 경우 몇 년 간 한 지역에서 의장직을 맡다가 다른 지역에서 맡는 경우도 있다. 1591 수단제재위원회의 첫 세 의장국은 WEOG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였다. 그 다음 세 의장국은 중남미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 국가가 맡았고(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최근 몇 년 간은 동유럽 국가가 독차지해 왔다(2017년에 우크라이나가 맡기 시작하여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뒤를 이었음). 국제 재판소 실무단(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Tribunals)의 경우 지난 12년 동안 WEOG 국가(2008년~2013년)와 GRULAC 국가(~2019년)가 이어서 맡았고, 2020년에는 베트남이 의장국이 되었다. 2004년에 설립된 코트디부아르 제재위원회는 2010년까지 WEOG 국가가 의장직을 맡았고, 그 후에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 후 2016년에 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 GRULAC 국가들이 의장직을 수행했다.

1267/1989/2253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및 알카에다 제재 위원회는 2017년에 카자흐스탄이 의장직을 맡을 때까지 WEOG 국가들이 의장직을 수행했고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이어받았다.

항상 이 위원회의 의장국이 한때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및 알카에다 제재 위원회의 일부였던 1988 탈리반 제재위원회 의장직도 맡는다. 어느 한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이사국은 두 의장직을 모두 맡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평화유지활동 실무단(Working Group on Peace Keeping Operations)은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상임 이사국이 의장직을 맡아 왔는데, 예외적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의장직을 맡는 경우도 종종 있다.

1373 테러대응위원회(Counter-Terrorism Committee)는 상임 이사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유럽 및 중남미 국가까지 의장직을 맡아 가장 다양한 의장국 구성을 보여 왔다.

특정 보조 기구의 의장국을 결정함에 있어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신입 이사국들이 자국 외교 정책 우선순위, 안보리에서 담당하기를 희망하는 역할 및 지역적 고려 사항에 따라 선호 보조 기구에 대해 협상한다는 점이다. 같은 지역의 다른 이사국으로부터 보조 기구 의장직을 인수하고자 하는 이사국의 경우 그와 같은 “내부” 인수인계가 원활할 수 있다. 정보 제한적인 이사국 입장에서 그와 같은 방식이 가장 수월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상임 이사국이 보조 기구 의장국을 맡지 않으며, 현재의 할당 프로세스에서는 부담 공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19년 12월에 채택된 대통령 노트에서는 의장국 선정에 대한 비공식 협의 프로세스가 균형적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확인했지만, 이사국들의 역량과 자원을 감안하여 전체 이사회 이사국 간에 의장국 선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분장할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2018년 11월에는 10개 기존 비상임 이사국과 5개 신규 비상임 이사국이 전체 이사국 간에 업무를 보다 더 공평하게 분장할 경우(예: 공동 서기국 제도 도입)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반적인 효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했다(S/2018/1024). 지금까지는 프랑스, 영국 및 미국이 대부분의 국가별 현안에 대해 “서기직(Pen)”을 맡아 결정 사항을 입안하고 이들 현안에 대한 협상 및 토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이에 대한 배경 정보는 서기국[Penholder]에 대한 안보리 보고서를 참조).

과거에는 상임 이사국이 일부 보조 기구의 의장직을 맡아 왔다. 1373 테러대응위원회의 경우 영국이 첫 번째 의장국이었으며 러시아가 세 번째였다. 2005년에는 프랑스가 아동무력분쟁 실무단의 의장국이 되어 3년 간 의장직을 맡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공식 보조 기구의 의장직은 비상임 이사국이 독점적으로 맡아 왔다. 2년 전에 독일이 안보리에 막 들어왔을 때 상임 이사국과 서기직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여 다르푸르 문제 및 리비아 제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영국과 공동 서기국이 되었다. 2020년에 새로 이사국이 된 국가 중 공동 서기국이 된 국가는 없었으며, 올해 신입 이사국 중 공동 서기국에 관심이 있는 국가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몇 년 간 공식인 보조 기구 의장직에 대한 협상 프로세스가 정교해졌다. 2016년에 이루어진 변화의 여파로 신입 이사국들이 공식인 각 직위에 대한 단일 후보 지명에 항상 동의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 결과 P5의 변경에 따라 몇몇 이사국은 그들이 원하는 직책을 얻지 못했다. 지난 2년 동안, 신입 이사국과 IWG 의장국인 쿠웨이트는 큰 격차 또는 중복 없이 P5에 목록을 제시하기 위해 상주 대표 수준에서 긴밀히 조율했다. 이렇게 하려면 신입 이사국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P5가 대폭 변화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사상 처음으로 모든 신입 이사국이 자신이 선택한 보조 기구의 의장국으로 임명된 2019년에 일어났다. 지난 3년간 보조 기구 의장국에 대한 결정이 과거보다 더 일찍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10월 1일이라는 기한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올해는 8월 중순까지 P5에 명단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비상임 이사국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능동적인 직무 수행에 따른 민감한 책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흔한 의장직을 준비할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

8월 전망 이후 상황 업데이트

잠무 및 카슈미르

8월 5일에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기타 안건으로 잠무 및 카슈미르의 상황을 논의했다. 이 논의는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중국이 시작했다. 당초 8월 초에 파키스탄 외무장관인 마크둠 샤 마흐무드 쿠레시(Makhdoom Shah Mahmood Qureshi)가 잠무 및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사태의 최근 전개 상황을 설명하고 분쟁 및 인권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했다(S/2020/771). 2019년 8월에 안전보장이사회는 인도가 잠무 및 카슈미르에 준자치권을 부여한 헌법 370조를 폐지한 후의 전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20년 1월에 “기타 안건”으로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또 다른 회의를 열었다.

테러 행위

8월 6일에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테러 행위에 의한 국제 평화 및 안보 위협”이라는 의제 안건에 대한 “테러와 조직범죄 간의 연계 문제 대처(Addressing the Issue of Linkages between Terrorism and Organised Crime)”라는 제목의 VTC를 통한 공개 토론을 개최했다(S/2020/791). 회의는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인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 P. Marsudi)가 주재했다.

블라드미르 보론코프(Vladimir Voronkov) 유엔 사무차장 겸 유엔테러대응국(Office of Counter-Terrorism) 사무국장과 가다 와리(Ghada Waly) 유엔마약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사무국장 겸 유엔 사무차장이 브리핑을 실시했다. 8월 17일에는 1373 테러대응위원회(Counter-Terrorism Committee, CTC)의 공개 화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테러대응위원회 행정총국(CTED)이 개정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73(2001)의 이행 관련 기술 지침 및 기타 관련 결의안”을 CTC와 여러 유엔 회원국에 제출했다. 8월 24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 또는 Da'esh)에 의해 야기된 위협에 관한 사무총장의 11차 격년 전략 보고서에 대한 공개 화상 회의를 “테러 행위에 의한 국제 평화 및 안보 위협”이라는 의제로 개최했다(S/2020/836). 보론코프와 미셸 코닝스(Michele Coninsx) 사무총장보 겸 CTED 사무국장이 브리핑을 했다. 8월 31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외 테러리스트의 기소, 갱생 및 재융합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나머지 14개 이사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기니비사우

8월 10일에 안전보장이사회는 기니비사우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비공개 협의를 개최했다(S/PV 8754). 유엔 특별 대표 겸 기니비사우 통합 평화 구축 사무소(UN Integrated Peacbuilding Office in Guinea-Bissau) 국장인 로진 소리-쿨리발리(Rosine Sori-Coulibaly)가 기니비사우에 대한 최근 사무총장 보고서를 발표했다(S/2020/755). 주앙 제네지우 지 아우메이다 필류(João Genésio de Almeida Filho) 브라질 상주 부대표가 기니비사우 평화구축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브리핑을 했고 가다 와리(Ghada Waly) 유엔마약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사무국장도 발언했다.

레바논

8월 11일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 화상 회의에서 결의안 1701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레바논 특별 조정관 얀 쿠비슈(Ján Kubiš)와 평화 활동 담당 사무차장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가 안보리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했다. 8월 28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2021년 8월 31일까지 UNIFIL의 위임 사항을 갱신한 결의안 2539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란

8월 14일에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231에 의거하여 10월에 만료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기존 무기 관련 제재를 안전보장이사회가 달리 결정하는 시점까지 연장하는 미국의 결의안 초안(S/2020/797)에 대한 서면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S/2020/805). 해당 초안은 채택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획득하지 못했다.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은 찬성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이사국은

기권했다. 8월 20일에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부 장관이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디안 트리안샤 자니(Dian Triansyah Djani, 인도네시아 대사) 안보리 의장에게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에 이란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알리는 동일한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은 결의안 2231 채택 전에 시행되었던 제재 조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동 결의안 상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발동된다고 주장했다. 13개 안보리 이사국(미국 및 도미니카 공화국 제외)은 미국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미국이 JCPOA 퇴출을 이유로 결의안 2231 상의 스냅백 조항을 발동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8월 25일 회의(S/2020/837)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결의안 2231의 스냅백 조항 발동 결정에 대한 안보리 의장(인도네시아)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니 대사(인도네시아)는 안보리 이사국 간에 컨센서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반응했다.

벨라루스

8월 18일에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벨라루스의 상황을 “기타 안전”으로 논의했다. 에스토니아와 미국은 8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벨라루스 시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회의에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에스토니아의 우르마스 레인살루(Urmas Reinsalu) 외무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벨라루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예방적 외교와 국가 상황 감시에 대한 개입 확대를 요구했다.

말리

8월 19일에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전날 군인들이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Ibrahim Boubacar Keïta)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을 체포한 말리의 상황 전개에 대한 비공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평화 활동 담당 사무차장이 브리핑을 했다. 회의에 앞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회원국들은 “반란”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금된 관료를 모두 즉시 안전하게 석방할 것을 반란 주체에 촉구하였다(SC/14279). 언론 성명에서는 시급히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 복귀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의 이니셔티브 및 중재 노력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8월 31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S/RES/2541의 말리 제재 조치를 1년 간 갱신했다. 2374 말리제재위원회는 8월 5일에 만나 말리 전문가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S/2020/785).

소말리아

안보리 이사국들이 8월 20일에 소말리아에 대한 브리핑 및 협의 시간을 가졌다(S/PV.8755). 제임스 스완(James Swan) 특별 대표 겸 UNSOM 단장과 프란시스코 마데이라(Francisco Madeira) AU 특별 대표가 브리핑을 실시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선거 지연을 둘러싼 소말리아의 최근 정치적 혼란에 대응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협조와 타협을 요구했지만, 1인 1표 선거 모델을 지지할지 절충안을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았다. 또한 이사국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증가한 알 샤바브(Al-Shabaab)의 치명적인 공격을 비난했다. 8월 28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UNSOM의 위임 임무를 2021년 8월 31일까지 12개월 간 갱신하는 결의안 2540을 채택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8월 25일에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 조정관인 니콜라이 므라데노프(Nickolay Mladenov)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S/2020/837). 므라데노프 특별 대표는 사무총장이 UAE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요르단강 서안 점령 지역의 일부를 합병한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중지한다는 양국 간의 합의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북한

8월 27일에 1718 북한제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독일 대사는 비공개 화상 회의에서 동 위원회의 90일 업무 보고서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브리핑은 주로 위원회의 업무, 제재 조치 이행, 전문가단의 중간보고서와 관련된 진전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아프가니스탄

이사회의 예상 조치

9월 중에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인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 임무단(UNAUMA)의 위임 임무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에 앞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분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보라 라이온스(Deborah Lyons) 아프가니스탄 특별 대표 겸 UNAMA 단장이 8월 18일에 공표된 UNAMA에 관한 최근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 화상 회의에서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큰 미디어 회사인 MOBY GROUP의 사드 모세니(Saad Mohseni) 대표이사도 아프가니스탄의 언론 자유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최근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을 함께 평화 회담에 참여시키기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프간 정부가 400명에 달하는 탈레반 수감자를 최종적으로 석방할 것이라는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8월 9일자 발표에 따라 아프간 내 협상 개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관측통들은 탈레반이 탈레반 수감자들의 전면적인 석방 후 일주일 내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프간 정부의 이번 결정을 직접적인 협상의 시작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조치로 해석했다. 또한 이 조치는 아프간 내 협상 재개에 앞서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 포로를 최대 5,000명까지 석방하고 탈레반은 아프간 포로 1,000명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 2월 29일자 미국-탈레반 합의서에 규정된 조항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8월 17일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 수감자 400명 중 80명을 석방한 후 탈레반이 20명의 아프간 정규군을 포함한 나머지 아프간 포로를 모두 석방할 때까지 남은 320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더해 호주와 프랑스의 경우 심각한 공격에 관여했다고 여겨지는 일부 과격분자들의 석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외무부는 8월 15일자 성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프랑스 국민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탈레반 전사들을 석방하지 말 것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촉구했다. 국가화해고위급위원회(Directorate of High Council of National Reconciliation)의 압둘라 위원장을 포함한 아프간 정부 인사들이 9월 첫째 주에 직접 회담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아프간 내 협상의 시작 날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협상이 계속 중단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평화 활동가들과 아프간 정부 관료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다. 8월 14일에는 아프가니스탄 협상팀의 일원인 파지아 쿠피(Fauzia Koofi)가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미국의 잘메이 할릴자드(Zalmay Khalilzad) 아프간 특별 대표는 이 공격을 비난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쿠피의 노력을 치하했다. 8월 19일에는 교육부 고위 관료인 압둘 바치 아민(Abdul Baqi Amin)이 차량 폭탄 폭발로 사망했다. 아민은 2019년 카타르에서 열린 탈레반과의 협상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아프간 정부 관료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이 공격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없었으며 탈레반은 이를 살인이라고 비난했다.

탈레반 죄수의 최종 석방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8월 9일자 발표는 전국에 걸쳐 수천 명에 달하는 부족 장로와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인 아프간 국민평의회(Loya Jirga)와의 3일 간의 회의 끝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탈레반 죄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일부 수감자의 경우 살인 및 납치와 같은 중대 범죄로 기소된 것이어서 석방 결정은 그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국민평의회(Loya Jirga)의 대표들이 수감자들이 저지른 범죄들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협의 과정에

대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직접 협상을 향한 최근의 진전은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 연휴 기간 동안(7월 31일~8월 2일) 이루어진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에 휴전도 한몫 했다. 이는 작년에 양측에 의해 이루어진 두 번째 공식 휴전이다. 첫 번째는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 기간(5월 23일~5월 25일) 동안 이루어졌다. 적대 행위의 일시적인 감소 후에 8월 2일 밤을 기해 잘랄라바드의 교도소에 대한 테러 공격이 감행됨으로써 폭력 사태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공격으로 최소한 29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Da'esh)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교도소 공격으로 1,3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탈출을 시도했다. 대다수가 다시 붙잡혔지만 이슬람 레반트 이슬람 국가 및 탈레반의 일부 단원은 탈출에 성공했다.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8월 5일자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규탄 하면서 테러 행위 범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 국내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탈레반과의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8월 8일에는 미국의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부 장관이 미국-탈레반 합의상의 의무에 따라 11월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수를 5천명 아래로 감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2월에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미국은 13,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2513(2020년 3월 10일)은 미국-탈레반 간 협약과 미국과 아프간 정부의 공동 선언에 관한 것이다. S/RES/2489(2019년 9월 17일)에서는 UNAMA의 위임 기간을 2020년 9월 17일까지 갱신했다. 사무총장 보고서 S/2020/809(2020년 6월 18일)는 UNAMA에 대한 최근 사무총장 보고서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S/2020/783(2020년 8월 7일)에는 7월 27일 개최된 "여성 및 아프간 평화 프로세스: 여성의 참여 보장 및 여성의 권리 증진(Women and the Afghan Peace Process: Ensuring Women's Participation and Promoting their Rights)"에 관한 아리아 방식 회의에서 이루어진 성명의 내용이 편성 되어 있다. S/2020/597(2020년 6월 29일)에는 6월 25일에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최근 분기 회의의 기록이 수록 되어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언론 성명서 SC/14271(2020년 8월 5일)에서는 2020년 8월 3일에 발생한 잘랄라바드 소재 교도소에 대한 테러 공격을 비난했다.

7월 27일에 공표된 UNAMA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중간 보고서에서는 분쟁 당사국들이 포괄적인 정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는 동안 민간인들이 계속 안아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만 민간인 1,282명이 사망하고 2,176명이 부상을 당했다. UNAMA는 이 수치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13% 감소했지만 탈레반과 아프간 국가 보안군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무단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 감소는 국제 연합군의 작전과 ISIL-KP의 공격 감소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UNAMA의 보고서에 의하면, 분쟁으로 인해 여성 및 아동이 입은 피해가 불균형적으로 많다(2020년 상반기에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중 40% 이상이 여성과 아동). 코로나-19 대유행병의 영향(예: 학교 폐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 부양을 위해 미성년자가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 증가)으로 인해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어린이들이 고용되어 이용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평화 회담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험, 요구 및 권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인권 관련 진전 사항

인권 운동가 상황 특별 보고관인 메리 로일러(Mary Lawlor)는 8월 14일에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다른 세 특별 보고관(의견 및 표현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보고관 Irene Khan,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Clément Nyaletsossi Voule,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 보고관 Agnès Callamard)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올해 초 이후 발생한 9명의 인권 운동가 사망 사건은 작년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새로운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범죄자 무처벌이 그와 같은 범죄가 지속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권 운동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함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사를 통해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인권 침해에 대한 온전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보고관은 “위협 및 협박과 같은 조기 경고 신호의 탐지 및 대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의 보호,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 발생 시의 철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촉구했다.

여성, 평화 및 보안

지난 7월 27일에 “여성과 아프간 평화 프로세스: 여성의 참여 보장 및 여성의 권리 증진”에 관한 회의가 VTC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아프가니스탄, 독일, 인도네시아 및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룰라 가니(Rula Ghani) 영부인이 기조연설을 했고, 영국의 상원의원이자 아프가니스탄 여성친우회(Group of Friends of Women in Afghanistan)의 명예 회원인 피오나 호지슨(Fiona Hodgson)이 마무리 연설을 했다. 패널 위원은 하시나 사피(Hasina Safi) 아프가니스탄 여성부 장관, 아프가니스탄 정부 협상팀의 하비바 사라비(Habiba Sarabi) 박사, 아프가니스탄 정부 고충처리실(Ombudsperson’s Office)의 게잘 하리스(Ghezal Haris) 국장, 리웅(특별 대표, 유엔 주재 카타르의 상임 대표인 셰이카 알리아 아흐메드 사이프 알타니(Sheikha Alya Ahmed bin Saif Al-Thani)였다.

참석자 모두 다가오는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협상에 대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강력히 지지했다. 또한 어떠한 결과적인 평화 협정이라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국내 여성과 소녀들의 권위 향상을 위해 이루어 온 성과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위원들은 협상 과정 전과 도중에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포함한 아프간 사회 전체의 여성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몇몇 발언자들은 탈레반에 여성들을 협상팀에 포함시키라고 촉구

했으며, 사라비 박사는 협상팀에 여성 대표가 없을 경우 그들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제 공동체가 탈레반에 전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COVID-19에 관한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2532(2020년 7월 1일)에서는 안보리 의제에 명시된 모든 상황에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무력 분쟁 당사자가 90일 간의 인도적 정전에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S/2020/663(2020년 7월 8일)에는 대유행병 및 국제 보건 위기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7월 2일의 공개 토론에서 이루어진 브리핑 및 성명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총회 문서 A/RES/74/270(2020년 4월 2일)에서는 “총회의 국제 협력 및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과 범세계적인 2019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대유행병 대응과 관련한 유엔 체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위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요 현안 및 방안

9월에 열리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의 주요 현안은 UNAMA의 위임 임무 갱신이 될 것이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아프간 국내 협상 개시를 위한 진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평화 프로세스 진척도에 대응하여 UNAMA의 위임 사항에 대한 잠재적인 수정을 논의해야 할 수도 있다. 임무단이 평화 회담과 관련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안보리 회의의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일부 안보리 이사국은 미국-탈레반 합의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NATO 군이 철수할 경우 UNAMA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할 수 있다.

벨기에와 같은 이사국들이 7월 27일에 개최된 여성의 아프가니스탄 평화 프로세스 참여에 대한 아리아 방식 회의(Arria-Formula Meeting)에서 여성의 권리 증진이 UNAMA 업무의 핵심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할 때 몇몇 이사국들은 여성의 권리 증진과 관련한 임무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할 수 있다.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안보리는 최근의 진전 사항에 대해 비공식적인 쌍방향 대화 형식으로 이사국들에게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잘메이 할릴자드(Zalmy Khalilzad)에게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이사국들이 합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아프가니스탄 태생의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2007~2009)인 할릴자드(Khalilzad)로부터 안전보장이사회가 협상 노력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역적 지원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보리 이사국들이 특별 대표 겸 유엔 중앙아시아 예방외교 지역센터(UN Regional Centre for Preventive Diplomacy for Central Asia) 책임자인 나탈리아 게르만(Natalia Gherman)을 초청하여 차기 분기 회의에서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통상적으로 비공개 협의를 통해 UNRCCA의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보고받기 때문에 공개회의에서 브리핑을 하면 아프간 협상 지원과 관련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안보리 이사국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프로세스와 UNAMA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협력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한 언급을 유지할지 여부(이전 결의안에서는 포함되었음)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의견 불일치 때문에 2019년에 실시된 UNAMA의 위임 임무 갱신 협상 동안 논란이 일어났다.

2019년 3월에는 교착 상태로 인해 두 개의 상충하는 초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위임 임무에 대한 6개월간의 기술적 연장안이 채택되었다. 가장 최근에 12개월 간 UNAMA 위임 사항을 갱신한 결의안 2489(2019년 9월)에서는 “지역적 협력 및 연결(Regional Cooperation and Connectivity)”이라는 일견 타협적인 표현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라는 명시적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독일과 인도네시아가 아프가니스탄 현안과 관련하여 공동 서기국을 맡고 있으며, 디안 트리안샤 자니(Dian Triansyah Djani) 인도네시아 대사가 1988 아프가니스탄 제재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미국은 제재 파일에 대한 서기국이다.

—— 코로나-19

이사회의 예상 조치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총회의 가상 고위급 회의 주간 동안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정상 수준 토론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무사 파키 마하멧(Moussa Faki Mahamat) AU 집행위원장이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 코로나-19를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선포했다. 12일 후 사무총장은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정전을 촉구했다. 7월 1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황을 불문하고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분쟁 당사자가 90일 이상의 인도주의적 정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미국-중국 간 긴장 때문에 3개월 동안의 힘든

협상 과정을 거친 결의안 2532에 대한 사무총장의 호소를 지지하고자 했다.

WHO의 발표에 대한 미국의 반발로 결의안 2532 협상이 난항에 부딪혔는데, 위기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더불어 WHO를 비난해 왔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유엔 기구인 WHO에 대한 언급을 원했다(보건 위기에 대한 이전 안보리 결의안에도 언급되어 있음). 결국 안전보장이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COVID-19) 퇴치를 위한 범세계적인 연대와 관련한 총회의 4월 2일자 결의안을 검토했으며, 결의안을 통해 WHO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WHO의 관련 지침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절충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대유행병이 시작된 이후, 안전보장이사회는 세 번에 걸쳐 위기에 대한 특별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가 분쟁 동인을 악화시킴으로써 평화 및 안보에 야기하는 위협을 검토했다. 유엔 안보리의 4월 9일자 비공개 화상 회의에서 사무총장은 이러한 위협을 범세계적 유행병의 사회 경제적 파장, 임박한 선거,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및 기존에 축적되어 온 불만에서 기인하는 긴장 고조 요인으로 식별했다. 사무총장은 7월 2일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의 장관급 공개 토론에서도 이를 상기시켰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보다 최근인 8월 12일에 화상 회의를 통해 “대유행병과 평화 유지 과제(Pandemics and the Challenges of Sustaining Peace)”에 대한 고위급 공개 토론에서 이러한 위기를 논의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 외에 현재 국제 원로 그룹인 The Elders에 몸담고 있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발언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문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쟁으로 소중한 몇 개월이 낭비되었다”라는 말로 결의안 2532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난했다. 뉴욕대학교 국제협력센터(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사라 클리프(Sarah Cliffe)는 유행병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평등 증가와 같은 심각한 경제적 위협을 설명하고, 경기가 5% 포인트 위축될 경우 충돌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사라 클리프는 세계 경제가 2020년에 5~6%의 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대유행병이 평화 프로세스 및 경제에 미치는 이차적 영향과 이로 인한 식량 불안, 송금액 감소, 백신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성 등이 분쟁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쟁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체제가 분쟁에 더욱 중점을 둔 분석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의 국가별 및 주제별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유행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4월에 실시된 분쟁에서 기인하는 기아에 관한 브리핑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사무총장은 대유행병으로 인한 식량 불안 증가를 경고하면서 2020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하는 사람의 수가 거의 두 배나 증가하여 1억 3,500만~2억 66,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대부분은 대유행병이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줄곧 AU와 AU 평화안보이사회(PSC)의 우려 사항이었다. AU의 파키 집행위원장은 3월

27일에 유엔 사무총장의 정전 촉구와 유사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PSC는 4월 14일자 공보문에서 “코로나-19 대유행병에 대응하여 전개되고 있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교전국이 전 세계적인 정전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한 파키 AU 집행위원장과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를 게재했다. PSC는 4월 이후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평화 및 안보 측면의 합의, 코로나-19의 확산 억제 진전 사항, 실항민/피난민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영향, 다자간 협력에 영향, 아프리카 내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 아프리카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 포함)에 관한 회의를 아홉 차례 이상 개최했다.

여성, 평화 및 안보

공동 정책 요약서 “코로나-19와 분쟁: 정전 및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여성의 유의미한 참여 증진 (COVID-19 and Conflict: Advancing Wome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Ceasefires and Peace Processes)”이 8월에 정무국(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및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의해 발표되었다. 요약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분쟁 상황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여성의 유의미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 이러한 조건이 대유행병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다. 이 정책 요약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무급 및 유급 간병 업무에서의 불균형적인 역할, 가정 폭력 증가, 역압적인 의료 시스템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 및 생식 건강관리와 생계 수단에 대한 접근성 상실로 이어진다. 이이 더해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뒷받침하는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여성의 권리가 세대를 넘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및 여자 어린이의 교육과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책 요약서에서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여성의 유의미한 참여를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 사회적 문화적 규범의 포괄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및 보호, 사회적 서비스(예: 육아 지원), 지식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재정적 지원, 수송 서비스(예: 교통) 등과 같은 환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것들이 대유행병의 영향으로 인해 위협에 처한 요소이다. DPPA 및 유엔여성기구가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정전 및 평화 합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에 더해 여성 시민 사회 단체들은 여성의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적 및 공공 보건 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보호 및 경제적 지원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전 및 평화 합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주요 현안 및 방안

고위급 회의의 목적 중 하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향후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검토와 전 세계의 전반적인 대응은 기존 체계가 대유행병은 물론 기후 변화, 환경 재해 및 경제 위기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또한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방적 제재를 보다 유연화하고(일부 국가의 경우 제재 조치 때문에 코로나-19 대유행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부채를 탕감하고 대유행병 이후 경제 회복하는 현안을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의 성명과 중재 관련 요약 보고서 외에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잠재적 불안을 야기하는 대유행병의 영향을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안보리가 코로나-19의 결과로 야기되는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대유행병의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평화 및 안보와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여 다른 관련 주제들이 식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동향

보건 위기는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지만, 3월에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대유행병과 평화 및 보안 간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를 처음 제기한 후 이사국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사국들은 논의에서 이번 대유행이 경제 여건 및 사회적 긴장과 같은 빈번한 분쟁 요인을 악화시키는 양태에 대한 우려를 강조해 왔다. 러시아와 남아공은 수시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사회 논의에서 다른 UN 기구 및 조직이 관장하는 주제(예: 경제적 측면)에 관여하지 않고 의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아공은 지난 달 열린 공개 토론에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위기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중시하여 거론한 바 있다. 이사국들은 국가의 대유행병 대응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제재 조치의 면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무총장이 이전에 제시한 조치이기도 하다.

결의안 2532에 대한 협상 난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에서 비롯되었고,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난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다. 이사국 중 WHO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도상국들은 협상 과정에서 이 기구를 거론하지 않음에 따른 부정적인 신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비상임 이사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코로나-19를 다루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결의안 2532의 경우 튀니지가 프랑스와 함께 공동 서기국 역할을 맡았다. 9개 비상임 이사국(남아공 제외)의 요청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첫 번째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독일과 인도네시아가 7월과 8월에 토론을 준비했으며, 니제르 및 영국은 7월에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대표와의 대유행병 관련 비공식 쌍방향 회의를 개최했다.

리비아

이사회 의 예상 조치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15일에 만료될 예정인 유엔 리비아 지원 임무단(UNSMIL)의 위임 임무를 9월 중에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 대표 대행 겸 UNSMIL 단장인 스테파니 윌리엄스(Stephanie Williams)와 1970 리비아 제재위원회 위원장 겸 독일의 상주 부대표인 귄터 사우터(Günter Sautter)의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 대유행병에 대한 대응 조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을 경우 회의는 VTC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결의안 2491에 의해 부여된 권한(밀입국, 밀수 또는 인신매매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10월 3일에 만료되고, 결의안 2526에 의해 부여된 권한(무기 금수 위반으로 여겨지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2021년 6월 5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리비아가 원산지인 석유의 불법 수출과 관련된 조치는 2021년 4월 30일에 만료되며, 1970 리비아 제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가단의 위임 임무는 2021년 5월 15일에 만료된다.

[리비아에 관한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2526(2020년 6월 5일)에서는 국가적으로 혹은 지역 기구를 통해 리비아에서 출항하거나 리비아로 입항하는 선박 중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리비아 인근 공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부여된 권한을 12개월 간 연장했다. S/RES/2510(2020년 2월 12일)에서는 리비아에 대한 베를린 회의의 결론을 추진하였다. 이 안은 찬성 14표와 기권 1표(러시아)로 채택되었다. S/RES/2509(2020년 2월 11일)에서는 1970 리비아 제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가단의 위임 기간을 2021년 5월 15일까지 갱신하고 리비아로부터의 불법 석유 수출과 관련한 조치를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이는 찬성 14표와 기권 1표(러시아)로 채택되었다. S/RES/2491(2019년 10월 3일)에서는 국가적으로 혹은 지역 기구를 통해 밀입국 또는 인신매매에 사용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리비아 인근 공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부여된 권한을 12개월 간 갱신하였다. S/RES/2486(2019년 9월 12일)에서는 UNSMIL의 위임 기간을 2020년 9월 15일까지 갱신하였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13개월간의 전투 끝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유엔이 지원하는 리비아 통합 정부(Libyan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GNA)와 연계된 무장 단체들이 수도인 트리폴리에 대한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 장군의 공격을 중단했다. 리비아 국민군(LNA)으로 알려진 동부 민병대 수장인 하프타와 연합을 이룬 군이 점령하고 있던 트리폴리 내 모든 거점이 6월 4일까지 GNA에 의해 접수되었다. GNA와 LNA 모두 유엔 제재 조치에 반하여 외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고 있다. GNA와 터키는 지난 해 11월에 두 건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하나는 군사 및 안보 문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터키의 지중해 시추권을 포함한 해상 경계 설정과 관련된 협정이었다. 지난 1월 터키 및 러시아가 중재한 하프타르와의 정전 협정 체결 시도가 실패로 끝난 이후, 터키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증대하여 결국 분쟁 상황이 GNA에 유리한 쪽으로 흘렀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2019년 4월 공격 개시 이후 229,295명이 새로 국내 실향민(IDP)이 되어 7월 31일 현재 리비아의 총 IDP 수가 401,836명으로 증가했다.

6월 20일에는 압델 파타 엘-시지 이집트 대통령이 만약 GNA가 이집트 국경에서 약 800km 떨어진 시르테 시로 진격한다면 이집트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시르테는 하프트אר의 지배하에 있으며 리비아 초승달 유전 지대(리비아 석유 수출 터미널의 대부분이 이곳에 위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다. 리비아 석유공사(NOC)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하프트אר와 연합한 민병대와 용병들이 리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을 봉쇄함으로써 석유 제품 수익이 완전히 사라졌다. NOC가 7월 10일에 일시적으로 석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된 후, LNA와 동맹을 이룬 민병대와 용병들이 다시 석유 시설을 장악함으로써 그러한 노력을 무산시켰다. NOC는 7월 12일자 성명을 통해 재봉쇄 명령이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하프트אר의 군사적 지지자)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13일에는 하원(하프트אר과 연합하고 있으며 동부의 토브루크 시에 기반으로 둔 리비아 의회)이 리비아 분쟁에 대한 이집트의 개입을 요청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7월 20일에는 이집트 의회가 이집트 군대의 해외 파병을 승인했다. 보고서 작성 당시에 시르테를 둘러싼 군사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프랑스, 러시아, 터키 및 미국 간의 고위급 양자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발표된 결과는 없었다. 8월 21일에는 리비아 통합 정부(GNA) 수반인 파예즈 알-사라즈(Fayez Al-Sarraj) 총리가 일방적인 정전을 선언했다. 아길라 살레(Aguila Saleh) 하원의장은 GNA와 LNA 양측의 정전을 촉구했다. 엘-시지 이집트 대통령도 알-사라즈 총리의 발표를 지지했다. UNSMIL은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정전 성명을 환영했다. UAE가 회원국으로 있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도 이 같은 조치를 반겼다. 8월 23일에는 LNA가 알-사라즈 총리의 발표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일축했다.

이러한 정치 상황 속에서 1월에 열린 리비아에 대한 베를린 회의의 결과로 리비아 정당 간의 협상이 세 가지 국면(경제, 정치, 안보)에 대해 진행 중인데, 진척도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를린 회의 참석자들은 베를린 회의의 결론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 후속 처리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가 기권한 2월 12일자 결의안 2510에서 베를린 회의의 결론을 지지했다.

UNSMIL은 최근의 “민간인 사상자 보고서(4월 1일~6월 30일)에서 민간인 사상자의 수가 이전 보고서 기간(1월 1일~3월 31일)에 비해 17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UNSMIL은 확인된 민간인 사상자 358명(사망자 106명, 부상자 252명) 중에서 80%는 LNA 연합군에 의해, 11%는 GNA 연합군에 의해 피해를 당했으며 나머지 9%는 원인이 미상이라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공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Heiko Maas 독일 외무장관이 주재). AU, 알제리, 차드, 콩고, 이집트, EU, 그리스, 이탈리아,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

리비아, 모로코, 네덜란드, 카타르, 수단, 스위스, 터키, 아랍에미리트 대표들도 참석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했다. 사무총장은 “전투에 관련된 용병의 수와 고급 장비를 감안할 때 외국의 개입 수준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UNSMIL이 “잠재적 비무장 지대”를 포함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시르테와 알-주프라의 경우 이 같은 아이디어가 여러 안보리 이사국의 공감을 얻었다. 알-사라흐 총리는 8월 21일자 정전 발표에서 시르테의 비무장 지대화를 촉구했다.

1970 리비아 제재위원회는 리비아의 요청에 따라 7월 28일에 리비아, 역내 회원국 및 지역 기구와의 비공개 “비공식”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유엔 제재 조치의 이행을 논의했다.

사무총장은 3월 2일 특별 대표 겸 UNSMIL 단장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가산 살라메(Ghassan Salame)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무총장이 추천한 후보들은 안보리 이사국들로부터 만장일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또한 미국은 이 역할을 두 직책(UNSMIL 단장 및 리비아 특별 대표) 간에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7월 8일의 안보리 브리핑에서 후임자 지명을 통해 UNSMIL의 활동을 대폭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보리가 임명 프로세스를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요청했다.

리비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다. 8월 31일 현재 리비아의 확진자 수는 13,423명에 달했다. ICRC의 추산에 따르면 8월 20일 현재 확진자 수(WHO 보고 수치: 9,463명)가 2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500%나 증가했다. 미화 1억 2980만 달러에 달하는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2020 인도적 대응 계획의 지원액은 85.4% 집행되어 1890만 달러가 남았다.

주요 현안 및 방안

안전보장이사회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UNSMIL의 위임 임무 갱신이다. 리비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무력 충돌과 여러 국제 행위 주체의 무기 금수 조치 불이행이 베를린 회의의 결론 이행과 더불어 안보리의 지속적인 현안이 되어 왔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분쟁 당사자에 압박을 가하고 대리권을 사용하여 무기 금수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고 선의의 정치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및 추가 동향

안보리는 리비아에 대해 계속하여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보리 회의 결과는 일상적으로 리비아 내 양측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만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하프타르의 광범위한 지역 통제와 국가 통합 및 테러 근절에 대한 과거의 요구 때문에 많은 안보리 이사국 및 기타 국가가 정치적 및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프랑스가 하프타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여 온 반면, 가장 큰 군사적 지원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이다.

5월 초 언론에 유출된 1970 리비아 제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가단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민간 군사 업체인 바그너 그룹(Wagner Group)이 하프타르와의 전투를 위해 약 1,200명의 용병을 파견했다. 크렘린은 여러 소식통의 반대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바그너 그룹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몇몇 국가 출신의 용병들이 양측을 위해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를 제외한 모든 해외 후원국이 리비아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역할을 부인하고 있다.

영국이 독일과 함께 리비아에 대한 제재 파일을 작성하는 서기국 역할을 맡고 있다. 독일의 상주 부대표인 귄터 사우터(Günter Sautter)가 1970 리비아 제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시리아

이사회의 예상 조치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에 시리아의 정치 현안, 인도적 지원 상황 및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월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7월 중순 이후 시리아의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증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 7월 23일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브리핑을 한 게이르 페데르센(Geir O. Pedersen) 특사는 북서 지방의 무장 반대 단체들 간에 “지속적인 충돌”이 발생했으며 M4 고속도로(안전 회랑) 남쪽에서는 친정부군의 일시적인 공중 공습이 있었고 시리아 북서 지방에서는 정부군에 의한 폭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와 터키가 3월 5일 정전 협정에 서명한 후 M4 고속도로를 따라 러시아-터키 합동 순찰대에 의한 공격과 도로 폐쇄가 수시로 이루어져 왔다. 8월 13일에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안보상의 우려 때문에 합동 순찰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4일 후 합동 순찰 재개로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8월 17일에는 M4를 감시하는 또 다른 터키-러시아 합동 순찰대가 신원 미상의 공격자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터키 군용 차량이 손상됐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이디브 남서 지역에서 시리아 군의 병력이 증강되었고 시리아군의 로켓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도 보도되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강도 높은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8월 3일에는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 군을 공격해 시리아 군 병사 3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 공격이 시리아에 본부를 둔 미상의 무장 단체들이 골란 고원 근처에 폭발물을 배치하려는 시도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8월 17일에는 미군 헬기 2대가 카미슬리 인근의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시리아 군 검문소를 공격해 시리아 군 병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 18일에 시리아 동부 지역의 데이르예조르(Deir-ez-Zor) 근처를 지나던 러시아 호송 차량 옆에서 급조

폭발물(IED)이 폭발해 러시아 장성 한 명이 사망하고 병사 두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 상황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악화되어 왔으며 시리아의 경제 위기가 식량 안보, 교육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적 지원 담당 사무차장이자 긴급 구호 조정관인 마크 로콕(Mark Lowcock)은 7월 29일에 실시한 브리핑에서 한 행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CH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시리아의 취약한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해외 송금액이 감소하고 실업률도 2019년의 42%에서 50%(8월 현재)로 증가했다. 아이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시리아의 전체 취학 연령 아동 중 1/3에 해당하는 약 250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OCHA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수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리아 보건부가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시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77명에 불과하다. 8월 7일 현재 시리아 북서부의 확진자 수는 40명이고 북동부 지역의 경우는 36명이었다. 그러나 로콕(Lowcock) 조정관은 테스트 역량이 제한적이고 일부 사람의 경우 감염 사실을 인정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실제 확산 규모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확진자 수는 분명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사망 건수를 잠재적 전염병의 대유행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최근의 언론 조사 보도를 포함한 일부 예측치에 따르면, 다마스쿠스 지역에서만 감염자 수가 최대 85,000명에 달할 수 있다.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페데르센 특사는 이사회를 상대로 한 8월 19일자 브리핑에서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mmittee)가 8월 24일부터 제네바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인권 관련 진전 사항

인권이사회(HRC)는 7월 17일 제44차 회기에서 강제 실종, 임의 구금, 고문 및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시리아 정부를 “강력히 비난”한 결의안 44/21을 채택했다. 투표에서 찬성은 22표, 반대는 2표 기권은 17표였다. 또한 결의안에서는 시리아아랍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의 투옥 및 구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46차 회의에서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474에 따라 “무력 충돌 당사자들이 적대 행위로 인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사람들에게 대해 해명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인 책임이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54에 의거하여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특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프로세스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현안 및 방안

12개월 간 바브 알-하와(Bab Al-Hawa) 지역 월경을 재승인하고 바브 알-살람(Bab Al-Salam) 지역 월경에 대해서는 재승인하지 않은 7월 11일자 결의안 2533의 채택에 따라 논쟁을 유발했던 인도적 접근 문제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이사회회의 시급한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로콕(Lowcock)은 지난달 안보리 브리핑에서 그 결정이 시리아의 북서부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적 지원의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다. 바브 알-살람이 폐쇄되고 최근 베이루트의 주요 항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로 인해 인도적 지원 물류의 중심지가 심하게 파괴됨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다른 방안을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밥 알-살람 지역 월경을 재승인하거나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국경을 통한 지원 물품 전달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알 야루비야(Al Yarubiyah)에서 시리아-이라크 국경을 재개방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533의 채택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들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치 진행 상황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8월 19일에 특사가 제네바에서 헌법 위원회 대면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 확인함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 기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2019년 10월 8일에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신뢰성 있고 균형적이며 포괄적인 헌법위원회를 제네바에서 결성하는 방안”과 관련한 시리아 정부와 야당 간의 합의 사실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9월 23일자 발표를 환영한다는 의장 성명서를 채택했다. 헌법 위원회 구성 및 지속 노력이 긍정적인 발전이라는 공감대가 이사국들 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이사국들은 이것이 유엔의 감독 아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적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시리아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간의 이견은 여전히 큰 편이다. 결의안 2533 채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국경을 통한 지원 물품 전달 체계의 중요성뿐 아니라 제재 조치의 영향, 안보리가 국경을 통한 지원에 부여하고 있는 가중치 및 확신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균열이 노출되었다. 최근 발생한 시리아 북서부의 폭력 사태와 데이르에조르(Deir-ez-Zor) 지역에서 발생한 러시아-터키 합동 순찰대 및 러시아 호송 차량에 대한 공격은 시리아 분쟁에 대한 이사국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러시아 및 중국은 시리아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축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리아에서의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벨기에와 독일이 서기국을 맡고 있다.

유엔과 지역 조직 간의 협력: 프랑스어권국제기구(OIF, 프랑코포니)의 역할

이사회의 예상 조치

니제르는 9월에 OIF(프랑코포니)의 역할 중점을 둔 유엔과 지역 조직 간의 협력에 대한 장관급 공개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루이스 무시히키와보(Louise Mushikiwabo) OIF 사무총장, 유엔 사무국 대표, 그리고 시민 사회 대표가 발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념 노트가 배포될 예정이지만 결론은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관련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S/RES/2533(2020년 7월 11일)을 통해 일회성 국경 통과(바브 알 하와 지역)를 통해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12개월 동안 갱신했다. 사무총장 보고서 S/2020/401(2020년 5월 14일)는 유엔의 국경선 및 국가 간 작전을 검토한 것이었다.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S/2020/758(2020년 7월 29일)은 시리아에 대한 7월 29일자 공개 화상 회의(VTC)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이사국의 상수 대표에게 보낸 서한이다. S/2020/743(2020년 7월 23일)은 7월 23일에 열린 시리아에 관한 공개 화상 회의의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유엔 사무총장 및 안보리 이사국의 상수 대표들에게 보낸 서한이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OIF(프랑코포니 또는 프랑스어권국제기구)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84개의 유엔 회원국 및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OIF 설립 50주년이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OIF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웹사이트 참조).

-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 장려
- 평화,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 교육, 훈련, 고등 교육 및 연구 지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협력 추진

루이스 무시히키와보가 2019년 1월부터 OIF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르완다의 외교 협력부 장관을 역임했다. OIF는 1998년부터 유엔에서 옵서버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5년 이상 유엔 평화유지군 중 거의 3분의 2가 프랑코포니 지역에 배치됨에 따라 OIF의 UN 관련 업무 중 상당 부분이 평화 유지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OIF는 프랑스와 제휴하여 운영, 윤리 및 공통 분야 현안에 대응하는 프랑스어 사용 인력의 준비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OIF의 중요 우선순위는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 활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OIF는 아동과 무력 분쟁에 관한 유엔 문서, 사무총장 보고서 S/2020/525(2020년 6월 9일)는 아동과

무력 분쟁에 대한 연례 보고서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S/2020/594(2020년 6월 26일)에는 2020년 6월 23일에 열린 아동과 무력 분쟁에 대한 공개 토론에서 나온 성명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서 SC/14224(2020년 6월 23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심각한 폭력을 규탄하고 아동 관련 상황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안 부문 개혁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지원하는 마다가스카르 소재 조직에 보조금을 제공해 왔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La Francophonie Avec Elles”라고 하는 연대 기금을 설립했다.

여성의 참여는 OIF가 이전부터 주창해 온 주제 중 하나이다. 2017년 10월 27일 당시 OIF 사무총장이었던 미카엘 장(Michaëlle Jean)이 다른 연사와 함께 여성,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연례 공개 토론에 참석했다. 미카엘 장 전 사무총장은 분쟁 종식 프로세스에 대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한 결의안 1325의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제기구, 지역 단체, 시민 사회 및 국가들이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이 분야에서 기울이고 있는 OIF의 노력을 예로 들었다.

OIF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안전보장위원회와 간헐적으로 공식적인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1월 7일에 “비대칭 위협에 직면한 평화 활동”에 대한 장관급 공개 토론을 개최했는데, 거기서도 미카엘 장 당시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실시했다. 또한 OIF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 합동으로 콩고민주공화국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안보리 의제의 대상인 국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과 지역 기구 간의 협력에 관한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서 S/PRST/2019/5(2019년 6월 13일)에서는 아랍국가연맹 사무총장의 연례 브리핑 실시와 안보리 이사국과 아랍국가연맹 사무총장 간의 연례 비공식 회의의 개최를 촉구했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기록 S/PV.8711(2020년 1월 30일)은 유엔과 ASEAN 간의 협력에 대한 브리핑이다. 이는 ASEAN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첫 안보리 회의였다. S/PV.8626(2019년 9월 25일)은 상하이협력기구, 독립국가연합(CIS),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장관급 토론이다. S/PV.8079(2017년 10월 27일)는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IF, 프랑코포니) 사무총장인 미카엘 장(Michaëlle Jean)의 브리핑이 포함된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연례 공개 토론이다.

주요 현안 및 방안

이번 공개 토론에서는 평화 및 안보 현안 해결, 법치주의 강화, 파병국에 대한 전문 교육 및 역량 구축 지원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여 OIF가 수행하는 역할의 다양한 측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안보리 이사국들과 브리핑 실시자들이 분쟁(특히 낙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쟁 선거를 둘러싼 분쟁) 예방과 관련한 OIF의 기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옹호자들에 의하면 OIF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및 추가 동향

안전보장이사회와 지역 조직과의 교류는 지역 분쟁의 해결은 지역 체제 또는 기관의 노력이 유엔의 원칙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한 지역 자체적인 해결을 장려하고 있는 유엔 헌장 8장의 취지하에 이루어져 왔다. “지역 조직”이란 개념은 다소 광범위하다. 파리에 본부가 있는 OIF는 6개의 지역 사무소와 유엔(뉴욕 및 제네바), EU 및 AU에 상주 대표부를 두고 있다. 회원국 또한 국제적으로 광범위하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와 같은 조직에 대한 논의는 지역 조직에 회부되는 항목에 속한다.

AU와 EU는 정기 브리핑 및 방문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장이사회와 가장 발전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해당 지역 출신의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주도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지난 몇 년 동안 지역 조직과의 논의가 더욱 보편화되어 왔다. 쿠웨이트는 2019년 6월 13일에 아랍국가연맹(LAS)과의 협력에 대한 고위급 브리핑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후 채택된 의장 성명서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LAS 사무총장으로부터 연례 브리핑을 받고 안보리 이사국과 LAS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간의 연례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관행을 장려했다. 2019년 9월 25일에 러시아는 테러 대응 노력에서 담당하는 지역 조직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집단안보조약기구, 상하이협력기구 및 독립국가연합(CIS)의 활동에 대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금년 1월 30일에는 베트남의 주재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최초로 유엔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간의 협력에 대한 브리핑 회의를 열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역 또는 기타 국제기구의 대표를 안보리 회의에 초청한다(특히 브리핑 연사로 초청). 예를 들어,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Community of Lusophone-Speaking Countries)의 경우 기니비사우 관련 회의에서 평화 구축에 대해 자주 발언했다.

OIF 지지자들은 OIF의 활동을 대화와 계획에 필요한 다양한 대표단을 모으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OIF가 폭넓은 회원국을 바탕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의제 항목에 대한 논의의 포괄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OIF 회원국들 또한 위기 예방, 위기 해결, 평화 구축 및 개발에 대한 OIF의 광범위한 기여가 더 넓은 무대에서 인정받기를 원할 수 있다.

아동과 무력 분쟁

이사회 의 예상 조치

9월의 안보리 의장국인 니제르는 사헬 지역에 중점을 둔 “학교 공격: 아동의 권리의 중대한 침해”에 관한 공개 VTC 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5월 12일에 채택된 총회 결의안 74/275에 따라 9월 9일로 예정된 제1회 “국제 분쟁지역 교육보호의 날(International Day to Protect Education from Attack)”에 맞춰 열릴 것이다. 버지니아 감바(Virginia Gamba) 아동 무력 분쟁 특별 대표와 GCPEA(Global Coalition for the Protection of Education From Attack)의 대표가 브리핑을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H. Fore) UNICEF 사무총장과 시민 사회 대표 준 한 명도 발언할 수 있다.

아동무력분쟁 실무단의 단장국인 니제르와 벨기에에는 이 토론에 앞서 채택될 수 있는 학교 공격에 대한 의장 성명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다.

배경

학교와 병원에 대한 공격은 2005년에 결의안 1612에 의해 수립된 아동 폭력에 대한 유엔 주도 감시 및 보고 체계에 포함되는 6대 중대 위반 사항 중 하나이다. 2011년에 채택된 결의안 1998에서는 이러한 공격을 위반 당사자가 아동과 무력 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의 부록에 기재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지정했다. 나아가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에 군사적 목적의 학교 사용에 관한 결의안 2143을 채택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루었다. 결의안 2143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학교의 민간 성격을 존중하기를 촉구하고 이사국들이 무장 군인 및 비국가 무당 단체에 의한 학교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독려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및 우루과이가 주관한 2017년 아리아 방식 회의에서 학교 공격 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는 감바 특별 대표, 2014년에 반군 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에 의해 납치되었던 학생인 조이 비사라(Boko Haram), GCPEA(Global Coalition for the Protection of Education From Attack) 공동 의장인 자마 네프(Zama Neff)가 발언했다. 비사라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학교 공격의 피해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사국들은 군사적 사용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아동과 무력 분쟁에 관한 유엔 문서. 사무총장 보고서]

S/2020/525(2020년 6월 9일)는 아동과 무력 분쟁에 대한 연례 보고서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S/2020/594(2020년 6월 26일)에는 2020년 6월 23일에 열린 아동과 무력 분쟁에 대한 공개 토론에서 나온 성명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언론 성명서 SC/14224(2020년 6월 23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심각한 폭력을 규탄하고 아동 관련 상황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2019년에 전 세계에 걸쳐 여러 분쟁 지역의 학교에 대한 공격이 지속됨에 따라 아동의 교육 권리에 위협이 중대한 우려로 남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코로나-19 대유행병으로 인해 학교들이 폐쇄됨에 따라 2020년 들어 크게 악화되었다. 6월 9일 발표된 아동과 무력 분쟁에 관한 연례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2019년에 학교에 대한 공격이 494건, 병원에 대한 공격이 433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보고서에서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치구,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에서 학교 및 병원에 대한 확인된

공격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국가 주체에 의한 그와 같은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두 가지 새로운 우려 상황(부르키나파소 및 카메룬)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사무총장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두 나라 모두 학교 공격이 아동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에 포함되었다.

2019년에 사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 유니세프는 2019년 말까지 폭력으로 인해 버키나파소, 말리 및 니제르에 소재한 3,300개 이상의 학교가 폐쇄되거나 운영되지 않아 65만 명의 어린이와 16,000명의 교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2019년에 폐쇄된 학교의 수가 2017년 4월 이후 6배나 증가했다. 8월 5일에 발표된 교육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유엔 정책 요약 보고서에서는 대유행병에 의해 촉발된 사헬 지역 내 학교 폐쇄가 교육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3일에 아동과 무력 분쟁에 관한 화상 회의를 소집했다. 감바 특별 대표는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유니세프의 포어 사무총장과 아동 관련 시민 사회 단체 소속인 매리엄(보안상 이유로 이름만 소개)도 발언했다. 회의 후 안보리 이사국들은 MRM과 아동무력분쟁 실무단을 설립한 결의안 1612년의 15주년 사실을 언급한 언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사국들은 15만 명 이상의 아동을 학교에 복귀시키고 재통합하는 등 설립 후 이들 두 조직이 보인 성과를 환영하고,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에 대한 대규모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에 포함된 상황과 기타 우려 상황에서 저질러진 6건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6건의 중대한 위반 행위는 아동 징집 및 이용, 살해 및 상해, 납치,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학교 및 병원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인도적 지원 접근 거부이다. 최근 사무총장 보고서는 아동에 대한 중대 위반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수록된 보고서 부록에서 특정 당사자를 제외한 것 때문에 일부 안보리 이사국 및 시민 사회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비판이 집중된 요인 중 하나는 연례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합법정부 지원연합(Coalition to Support Legitimacy in Yemen)이 2019년에 그와 같은 위반 행위를 222건이 저질렀다고 밝혔음에도 이 조직을 명단에서 제외한 사무총장의 결정이었다. 또 다른 비판은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에만 8건의 신규 징집 및 197건의 이용 사례에 대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징집 및 이용이라는 위반 행위를 범한 미얀마 정부군(Tatmadaw)을 명단에서 제외한 결정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습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아동에 대한 위반 행위 감소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 및 이행을 참작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Tatmadaw 제외 결정은 “아동 징집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기소 및 전년도에 식별된 사례의 추적 발표 약속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보고서에서는 두 단체 모두 유엔의 감시 하에 있을 것이며 위반 행위가 추가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 다음 연례 보고서에 해당 위반 행위를 재

등재할 것임을 강조했다.

몇몇 안보리 이사국은 6월 23일에 열린 토론에서 연례 보고서 부록의 등재 및 등재 제외의 공평성과 무결성 유지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벨기에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한 일부 이사국은 당사자의 조기 명단 제외에 대해 얘기했는데, 벨기에는 그와 같은 관행이 위반 당사자에 대한 등재 체계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당사자 등재 및 등재 제외가 보고서의 소견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부록에 대한 사무총장의 접근 방식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에스토니아와 영국은 2010년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 수록된 당사자의 등재 및 등재 제외에 대한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보고서에서는 등재 당사자가 등재 사유가 된 중대 위반 사항을 모두 증명한 것을 유엔이 검증한 경우에 등재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일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회원국들 또한 연례 보고서에 기술된 위반 행위와 부록의 당사자 등재 간의 불일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무총장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6월 22일에는 세 안보리 이사국이 사무총장 비서실장(Chef de Cabinet) 및 감바 특별 대표와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이에 더해 유엔의 5개 지역 그룹을 대표하는 45개 회원국의 비공식 네트워크인 아동 및 무력 분쟁 관련 우호국 그룹은 불공평한 등재 및 등재 제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감시 및 보고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아동에 대한 위반 행위를 유엔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더해, 24개 NGO도 등재 및 등재 제외 프로세스의 투명성 강화와 실사 절차를 통해 연례 보고서 부록이 MRM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반영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아동무력분쟁 실무단의 진전 사항

아동무력분쟁 실무단은 6월부터 6차례의 비공개 화상 회의를 열어 브리핑, 아동 및 무력 분쟁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 소개, 서면 절차에 의해 채택된 결론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실무단은 콜롬비아, 이라크 및 소말리아의 아동 및 무력 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결론을 채택했다. 아동무력분쟁 실무단은 벨기에가 2019년 1월에 실무단 단장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8건의 결론을 채택했다.

주요 현안 및 방안

사헬 지역과 전 세계에 걸쳐 학교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한 우려 사항이다. 사헬 지역 내 국가의 아동 및 무력 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의하면 과도한 무장 단체의 활동이 다른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국경을 넘어 학교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나은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 및 하위 지역의 동향이 아동에 대한 위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사무총장 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안보리 이사국들이 촉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들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과 같은 규범적 체계를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군사 작전 중에 학교를 보호하겠다는 자발적인 정치적 약속인 이 선언은 2015년에 시작되었다. 2020년 현재 104개 국가가 이 선언을 지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언을 아동과 교육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공약과 노력을 확보함에 있어 유용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반면, 중국, 러시아 및 미국과 같은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중요 현안 중 하나는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가 아동 및 무장 분쟁 의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와 부록 등재 제와 간에 존재하는 편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0년 사무총장 보고서에 포함된 등재 제의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 요청에 더해 등재 및 등재 제의 프로세스의 독립적인 검토 또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안보리 이사국들은 아동 및 무력 분쟁 의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력히 지지하는 편이다. 그러나 시리아 및 미얀마와 같이 안보리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의 경우 보조 기구 수준까지 내려가 어느 정도의 결론을 얻기까지 협상이 오래 걸렸다.

원격 근무가 일상화됨에 따라 실무단이 대면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실무단 당사국들은 정기적 접촉으로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왔으며, 이는 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예견되는 의장 성명서 초안에 대한 협상을 보면 원격 회의 및 협상이 실무단 당사국 간의 동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립 크리델카(Philippe Kridelka) 벨기에 대사가 아동무력분쟁 실무단의 단장직을 맡고 있다.

평화 유지 활동

이사회의 예상 조치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9월 20일자 결의안 2378에 의거하여 오는 9월에 유엔 평화 유지 활동 개혁에 대한 연례 종합 브리핑을 받게 된다.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평화 활동 담당 사무차장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결의안 2378에서는 사무총장이 안보리를 대상으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개혁에 대한 종합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요청한 것에 더해, 그와 같은 브리핑의 일환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병력 창출 및 역량의

기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평화유지군이 평화 및 안보 문제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브리핑은 안토니오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A4P)” 이니셔티브의 진전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18년 3월 28일에 사무총장은 “집단적 참여의 획기적인 도약”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유엔의 정치적 의지를 쇄신하기 위한 A4P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154개 회원국과 4개 지역 단체가 다음과 같은 8개 주제 분야에 걸친 45개 세부 서약으로 구성된 A4P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공약 선언”을 지지했다.

- 지속적인 정치적 해결책 추진
-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 이행
- 평화 유지 활동에 의한 보호 강화
- 평화유지단의 안전 및 안보 개선
- 효과적인 성과 및 책임성 지원
- 평화 유지 활동이 지속적인 평화에 미치는 영향 강화
- 평화 유지 활동 협력 관계 개선
- 평화유지단 및 평화유지군의 활동 강화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지난해의 종합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결책을 촉진하기 위한 유엔 평화유지단의 노력, 우선순위에 기반을 둔 순차적인 위임의 중요성, 평화유지단의 안전 및 보안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평화유지단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적합한 개선된 교육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평화유지단이 “부상 지점에서 병원까지 이르는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간병 서비스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구축하는 의욕적인 보건 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의 브리핑 이후 안전보장이사회는 공약 선언에 포함된 현안에 대해 수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예: 2019년 11월 6일에 열린 유엔 경찰 책임자와의 연례 브리핑, 1월 30일에 열린 유엔과 유엔 평화유지군에 약 5,000명의 병력을 파병한 ASEAN의 협력에 관한 브리핑).

[평화 유지 활동에 관한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2538(2020년 8월 28일)은 평화 유지 활동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S/RES/2518(2020년 3월 30일)은 평화유지단의 안전 및 보안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S/RES/2436(2018년 9월 21일)은 평화 유지 활동의 성과에 관한 것이었다.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서 S/PRST/2019/4(2019년 5월 7일)는 평화 유지 활동 교육 및 역량 구축에 관한 것이었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기록 S/PV.8612(2019년 9월 9일)의 내용은 결의안 2378에 의거한 장-피에르 라크루아 평화 유지 활동 담당 사무차장의 브리핑을 포함한 평화 유지 활동 개혁에 대한 토론이었다. S/PV.8521(2019년 5월 7일)의 내용은 “평화에 대한 투자: 유엔 평화유지단의 안전과 성과 개선”에 대한 공개 토론이었다. S/PV.8349(2018년 9월 12일)의 내용은 결의안 2378에 따른 첫 번째 브리핑이었다.

3월의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은 평화유지단의 안전 및 보안 개선이라는 현안의 후속 조치로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토론(역량 구축 강화, 안전 및 보안 개선)”을 계획했다. 당초 3월 24일로 예정됐던 토론은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취소됐다. 중국은 3월 6일에 개념 노트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교육 및 장비/자원 제공을 통해 역량을 구축하는 데 이사국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안전보장이사회, 사무국, 병력 및 경찰력 파견 국가, 수용국이 복잡한 상황과 위험한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 유엔이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균일한 평화유지단 배치 기준을 다룰 공개 토론이 계획되었음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공표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공개 토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3월 30일에 유엔 평화유지단의 안전 및 보안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용국이 위임 임무에 따른 유엔 평화유지단 및 관련 장비의 접근 및 자유로운 이동(의료 목적의 사상자 후송 포함)을 용이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2518을 채택했다. 또한 모든 평화 유지 임무단이 주둔군 지위협정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도록 지시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했다.

7월 7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장국: 독일)가 평화 활동 및 인권 주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개최했다. 공개 토론의 목적은 독일이 작성한 개념 노트에 따라 평화 유지 활동을 통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가장 최근으로는 안보리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평화 유지 활동에서의 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서면 투표 절차의 결과를 발표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 2538에서는 회원국, 사무국 및 지역 단체가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여성 군인/경찰관 및 민간인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참여를 촉진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조명했다. 또한 결의안 2378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종합 연례 브리핑에서 결의안 2538의 이행 진척도를 보고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현안 및 방안

안보리 이사국과 유엔 회원국들은 평화 유지와 관련한 여러 현안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평화유지단의 안전 및 보안과 배치 전 교육 및 역량 구축의 주요한 역할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최근의 결의안 2518에 관한 협상에서는 정보 수집 및 평화 유지 활동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포함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AU 주도의 평화 지원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과 같은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어 왔다. 실제로 이러한 자금 지원 문제로 인해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34)가 2019년도 연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C-34는 지난 3월 “A4P”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보고 체계를 사용하고 다수의 회원국이 찬성한 “주고 받기(Give and Take)” 방식으로 일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연례 보고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다가오는 안보리 브리핑은 A4P 공약 선언의 진척도를 평가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C-34가 보여준 긍정적인 모멘텀과 각각 3월과 8월에 이루어진 결의안 2518 및 결의안 2538을 바탕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은 더 많은 일이 요구되는 분야를 식별하고 이들 공약을 실현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및 추가 동향

대부분의 회원국이 평화 유지 활동 공약 선언을 보편적으로 지지하고 채택한 상황에서 사무국은 이 선언을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생각을 일신하고 재활성화 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해 왔다. 모든 이사국이 쌍무적으로 공약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자체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19년 5월 7일 의장 성명에서는 모든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를 동원하여 '평화 유지 조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 사무총장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및 역량 구축에 대한 선언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 가치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예멘

이사회의 예상 조치

호테이다 협정(UNMHA)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틴 그리피스(Martin Griffiths) 예멘 특사, 마크 로콕(Mark Lowcock) 인도적 지원 담당 사무차장, 아브히짓 구하(Abhijit Guha) 유엔 임무단 책임자와의 VTC가 예정되어 있다. UNMHA의 위임 기간은 2021년 7월 15일에 만료된다.

[예멘 관련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2534(2020년 7월 14일)에서는 UNMHA 위임 기간을 2021년 7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S/2020/808(2020년 8월 18일)은 FSO SAFER 유조선에서 누출된 원유와 유조선 화재로 인한 "재해에 준하는 잠재적 피해"에 관한 사무총장의 서한이다. S/20/648(2020년 7월 3일)은 FSO Safer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특별 회기를 요청하는 예멘 정부의 서한이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기록 S/PV.8753(2020년 7월 28일)은 예멘에 대한 브리핑 기록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언론 성명서 SC/14233(2020년 6월 29일)에서는 더딘 협상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중재안에 신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그리피스 예멘 특사가 정전 협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후티(Houthi)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이 지원하는 예멘 정부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OCHA에 따르면 예멘의 인도적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왔으며 코로나-19 대유행병에 의해 더욱 가중되어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구호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인 정전, 인도적 및 경제적 조치, 그리고 평화 회담에 대한 정부와 후티의 합동 선언을 중재하려는 그리피스 특별 대사의 노력이 지난 몇 개월 간 지속되어 왔다. 일부 경제적 및 인도적 조치(특히 사나 공항 재개, 공무원 임금 지급, 호텔이다 및 살리프 항구로의 수입 원화)가 난항을 보여 왔다. 지상에서 마리브 행정구에 위치한 정부군 본거지에 대한 후티의 공세와 군사적 압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전선에서도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6월에 정부와 분리주의 단체인 남부과도위원회(Southern Transitional Council, STC) 간의 정전 발표에 이어 회담을 중재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발표에 따르면 7월 29일 예멘 남부에서 양측이 2019년 11월에 체결된 리야드 협약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7월 29일자 발표에 의하면 8월 2일부터 둘 다 STC 출신인 아메드 하미드 람라스(Ahmed Hamid Lamlas)와 모하마드 아흐메드 살림 알-하메디(Mohammad Ahmed Salim Al-Hamedi) 장군이 각각 아덴 주 신임 주지사 및 보안 책임자(Security Director)로 임명되었다. STC 대표들을 포함하여 동수의 예멘 북부와 남부 출신 장관으로 구성되는 새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회담이 계속되었다. 8월 25일에 STC는 정전 위반, 군사력 증강, 임금 지급 지연 및 통화 붕괴를 이유로 리야드 협정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8월 18일에 안보리 이사국들은 회원국들은 그리피스 특별 대표, 라메쉬 라자싱감(Ramesh Rajasingham) 인도적 지원 담당 사무총장 보좌관 및 UNMHA의 구하 장군과 함께 비공개 화상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라자싱감 보좌관이 호텔이다 행정구에 계류 중이며 중대한 원유 누출이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환경적, 인도적 및 경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FSO Safer 유조선에 대한 유엔과 후티 반군 측 간에 진행 중인 논의와 관련한 최신 소식을 발표했다. 2015년 3월 이후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이 선박은 5월에 거의 침몰하여 유엔 주도 기술팀이 유조선 상태를 파악하고 가능한 경우 수리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으로 변했다. 라자싱감 보좌관은 후티 측과의 협상에 있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는데, 그에 따르면 후티 반군이 8월 16일에 유엔 팀에 출입 허가를 발급하는 한편 기술팀이 가져와야 할 장비 및 보급품 명세를 제출하고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회의 후에 그리피스 특별 대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하고, 리야드 협정 이행의 재확인에 대한 7월 29일자 발표를 환영하고, 특히 마리브 지역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상황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할 것을 모든 당사국에 요청하는 보도 자료를 공표했다. 이사국들은 자금 지원 부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을 포함한 모든 원조국이 원조를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FSO Safer와 관련하여 이사국들은 유엔 기술 전문가들이 원활하게 유조선 상태를 검사하고 시급할 수 있는 수리 작업을 수행하고 잠재적인 원유 유출에 관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도록 후티 측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입국 허가, 유조선까지의 안전한 경로 및, 기타 제반 물류 수단 제공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8월 29일자 성명에서 특사는 “파괴적이고 광범위한 인도적 피해를 야기”하는 후티 지배 지역 내에서의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특사는 당사자들이 자신과

협력하여 예멘의 연료 필요량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인권 관련 진전 사항

8월 6일 미셸 바첼렛(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성명을 통해 “예멘 전역에 걸쳐 기자에 대한 수많은 인권 침해 사건(살해, 실종, 사형 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얘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4월 초 이후 OHCHR은 1건의 암살, 1건의 납치, 3건의 임의 체포 및 구금,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기자 4명에 대한 사형 선고, 6건의 투옥, 3건의 물리적 폭행, 그리고 다수의 신체적 폭력 위협 등을 보고받았다. 바첼렛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위기의 잔혹성을 조명하려고 노력”하는 기자들이 고의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OHCHR은 2015년 3월에 분쟁이 시작된 이후 357건의 인권 침해 및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기록했다.

제재 관련 진전 사항

8월 14일에 안보리의 2140 예멘 제재위원회는 예멘전문가단과 전문가단의 중간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예상대로 이란 무기를 포함한 외부 무기가 후티 반군에 유입되는 문제가 검토되었다. 미국은 2019년 11월과 올해 2월과 6월에 예멘 해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무기 반입을 저지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단의 권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 폭력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지른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제안이었다. 전문가단은 이 현안을 후티 반군의 통치에 비판적이거나 비판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여성들이 받는 억압을 고발한 1월 보고서에 게재했다.

주요 현안 및 방안

정부와 후티 반군 간의 전국적인 정전 공동 선언 및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1월 정부와 후티 반군 간의 전투가 격화된 이후 안보리 이사국들은 복수의 언론 성명을 통해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코로나-19와 유엔 사무총장의 대유행병 퇴치를 위한 범세계적인 정전 호소로 인해 그리피스 특사의 노력이 더욱 시급해졌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사무총장의 호소를 지지하면서 7월 1일에 의제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한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2532를 채택했다. 마리브 공세는 협상을 저해하고 해당 행정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실형민/피난민에 대한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FSO Safer 유조선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일 것이다. 8월 4일에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폭발과 114만 배럴에 달하는 모리셔스에서 원유 유출에 의해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한편 모리셔스에서 Safer에 의해 현재까지 유출된 원유의 양이 7,000 배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심각한 기름 유출로 인해 수십 년 간에 걸쳐 홍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요 항구인 호데이다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예멘 서부 해안에 거주하는 160만 명과 수많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이 피해를 겪었다.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악화일로에 있는 예멘의 경제(특히 중앙은행 보유액 고갈, 해외로부터의 송금액 감소 및 연료 부족)가 이미 심각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7월 이후 식량 불안 악화를 경고해 온 OCHA는 구호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자금 위기가 걸프 지역 국가들의 급격한 원조 및 지급 감축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동 선언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환영하거나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FSO Safer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기술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후티 반군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향후 성명에서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후티 반군의 이전 약속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보장을 계속하여 지키지 못할 경우 원유 유출 또는 폭발이 환경, 예멘인들의 삶 및 인도적 상황에 파괴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안보리 이사국들은 공히 장전과 정치 프로세스 재개를 희망하며 특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울러 인도적 상황, 예멘에서의 코로나-19 발발 및 FSO Safer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튀니지는 예멘 정부를 지지하는 사우디 주도 연합의 입장을 전통적으로 옹호하는 아랍 지역 안보리 이사국이다. 올해 말에 만료되는 이란 무기 이전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려는 미국은 이란이 예멘의 불안정한 상황에 기여한다고 종종 지적한다.

예멘과 관련해서는 영국이 서기국 역할을 맡고 있다. 잉가 론다 킹(Inga Rhonda King)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대사가 2140 예멘 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단

이사회 의 예상 조치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에 유엔의 수단통합전환지원임무단(UNITAMS) 및 AU/UN 다르푸르 혼성 평화유지군(UNAMID)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1591 수단 제재위원회 위원장인 스벤 유르겐슨(Sven Jürgenson) 에스토니아 대사가 수단 제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분기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UNAMID의 위임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반면 UNITAMS의 위임 기간은 2021년 6월 3일에 만료된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6월 3일에 안전보장이사회는 초기 12개월 동안 임무를 맡게 될 UNITAMS를 설립하고 임무의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결의안 2524를 채택했다. 이들 전략적 목표는 수단의 정치 전환 지원, 평화 프로세스 및 향후 평화 협정 이행 지원, 다르푸르 지역 및 다른 두 지역(남코르도판 및 블루 나일)의 평화 구축/민간인 보호/법치주의 지원, 경제 발전 원조 및 인도적 원조의 조율을 위한 자원 동원 지원 등이다. 또한 결의안에서는 사무총장이 이 결의안 채택 후 60일 이내에 구조적 및 지리적 배치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7월 23일에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당한 과제”를 이유로 들어 30일 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보고서는 9월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3일 채택된 결의안 2525에서는 UNAMID의 위임 기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력 및 경찰력을 유지하였다. 아울러 유엔 사무총장과 AU 집행위원회 공동 위원장에게 2020년 10월 31일 까지 특히 “평화 프로세스가 다르푸르 지역 치안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수단 정부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5월 21일자 서한(S/2020/429)에 명시된 전략과 UNAMID 축소와 관련한 일련의 적절한 조치에 관한 권고에 의거하여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정부의 역량을 평가”한 특별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관한 수많은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6월 이후 수단(특히 다르푸르 지역)의 상황은 악화되어 왔다. 7월 25일에는 서부 다르푸르에 있는 마을(마스테리)을 약 500명의 무장 괴한들이 공격하여 61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되었다. 7월 13일에는 신원 미상의 무장 괴한들이 북부 다르푸르의 쿠틀에 있는 Fata Bornu 국내 실향민 수용소를 공격하여 9명을 살해하고 20명을 상해했다. OCHA에 따르면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서부 다르푸르에서 7건 이상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 당했고, 여러 마을과 집이 불에 타 소실”되는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집을 잃은 실향민의 수가 증가하고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져 생명과 생계를 잃게 만들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 초에 발생한 포트 수단의 바니 아렘(Bani Aarem) 및 누바(Nuba) 부족 간의 폭력 사태로 인해 25명이 사망했으며, 그로 인해 도시 일부가 봉쇄되었다.

8월 초에는 폭우와 홍수가 산사태, 심각한 인프라 및 주택 피해, 농작물 손실, 남부 다르푸르/서부 코르도판 및 엘 게지라 지역에서의 식량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바람에 수단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었다. 185,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8월 6일에 OCHA는 폭력과 홍수로 인해 코로나-19 억제와 관련하여 수단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커졌다고 밝혔다(WHO에 따르면 8월 14일 현재 수단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12,115명이고 사망자 수는 792명이다).

다르푸르에서 증가하고 있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남수단 관련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2521(2020년 5월 29일)에서는 2021년 5월 31일까지 남수단 제재 및 무기

금수 조치를 갱신하고 전문가단 위임 기간을 2021년 7월 1일까지 연장했다. S/RES/2514(2020년 3월 12일)에서는 UNMISS의 위임 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S/2020/582(2020년 6월 25일)는 6월 23일 남수단 관련 안보리 화상 회의에서 이루어진 브리핑 및 성명을 편성한 서한이다.

[수단(다르푸르) 관련 유엔 문서.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S/RES/2525(2020년 6월 3일)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UNAMID의 현재 병력과 경찰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S/RES/2524(2020년 6월 3일)에서는 초기 12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될 유엔의 수단통합전환지원임무단(UNITAMS)을 신설했다. 사무총장의 보고서 2020/202(2020년 3월 12일)는 결의안 2495에 의거한 사무총장 및 AU 집행위원회 공동 위원장의 특별 보고서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S/2020/497(2020년 6월 4일)은 유엔 사무총장 및 안보리 이사국 상주 대표에게 보낸 결의안 2525에 대한 투표 결과가 수록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의 서한이다. S/2020/496(2020년 6월 4일)은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이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이사국 상주 대표에게 보낸 결의안 2524에 대한 투표 결과가 수록된 서한이다. S/2020/336(2020년 4월 28일)에는 UNAMID에 대한 2020년 4월 24일 안보리 화상 회의 공개 부분 동안 이루어진 브리핑 및 성명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다르푸르 관련 문제의 서기국인 영국 및 독일의 요청으로 8월 11일에 “기타 안전(혹은 “기타 의제”)”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7월 29일에 이루어진 이전 “기타 안전” 논의에서 영국과 독일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르푸르 지역의 폭력 증가 사태를 논의하고 UNAMID의 잠재적인 정부 대응 지원 방법을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8월 업무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지지를 이사국들로부터 얻지 못했다.

보고서 작성 시점에 수단의 정치적인 상황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8월 31일에 수단 정부는 주바에서 정의평등운동(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북수단 인민독립운동군(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North)의 일부인 SLA-MN(Sudan Liberation Army-Minni Minnawi), TCM(Transitional Council Movement) 및 수단해방운동연대(Coalition of Sudan Liberation Movement)와 같은 몇몇 반군 단체와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주요 사항은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권력 공유, 수익 배분, 반군의 국군 통합, 과도적 사법 체제 등이다. 수단 해방군-압둘와히드와 SPLM-N의 한 지부는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인권 관련 진전 사항

인권이사회(HRC)는 제44차 회의에서 수단 정부와 인권고등부판무관(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인 나다 알-나시프(Nada Al-Nashif)로부터 HRC 결의안 42/35에 의거한 국가 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진전 사항에 대해 구두 보고를 받았다. 알 나시프 고등 부판무관은 카르툼 사무소가 전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우선순위에 따라 6개 주요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했다. 이들 우선순위는 인권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법치주의

및 책임성 강화, 시민 참여 증진 및 시민 공간 보호, 형평성 강화 및 차별 대처, 위반 행위 예방 및 인권 보호 강화, 국제 인권 체계 이행 증진이다. 알-나시프 고등 부판무관은 수단의 OHCHR 사무소가 UNAMID 인원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안전보장이사회가 위임한 UNITAMS의 인권 위임 사항의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두 보고에서 수단 정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을 칭찬했다.

주요 현안 및 방안

다르푸르에서의 폭력 증가는 안보리 이사국이 면밀히 주시할 현안이다. 일부 이사국은 그와 같은 폭력이 민간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UNAMID의 민간인 보호 임무를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폭력 사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안보리 이사국들이 8월 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협의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

8월 31일 평화 협정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의해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사국들은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안보리가 합의를 지지하는 신호를 보내고 미서명 당사자들이 합의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의장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도 한 가지 선택안이 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입장에서 UNAMID에서 UNITAMS로 전환하는 것도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결의안 2524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최대한 조속히 전면적인 운영 역량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까지 임무단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UNITAMS 계획 및 설립에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었다.

사무총장이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제안된 구조 및 지리적 배치”는 물론 임무단 설립에 미치는 코로나-19와 주요 UNITAMS 지도부 임명 지연의 영향 또한 첨예한 관심사일 것이다. 결의안 2524에서는 수단 특별 대표, UNITAMS 단장, 그리고 유엔 상주 조정관 및 인도적 지원 조정관 역할을 맡을 특별 부대표를 임명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지만,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아직 충원되지 않았다.

안전보장이사회 동향

UNAMID의 축소 및 폐쇄와 UNITAMS 설립은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었다. 6월에 만장일치로 결의안 2524와 2525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 헌법서의 이행 진척도와 법치주의 및 치안 부분 개혁을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와 인권 상황 보고의 기준과 관련한 협상 중에 분명한 의견 불일치가 드러났다.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임무단의 잠재적 임무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다수의 이사국은 새 임무단이 민간인 보호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일부 이사국(러시아, 중국 및 세 아프리카 국가)은 그와 같은 임무를 위임 임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반대했다. 8월에 있었던 수단에서의 폭력 사태 심화에 관한 비공개 협의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수단에 대한 깊은 의견 불일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이 수단 관련 사안의 공동 서기국이다. 1591 수단 제재위원회 위원장직은 에스토니아가 맡고 있다.

남수단

이사회회의의 예상 조치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에 남수단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UNMISS(유엔남수단임무단) 및 남수단 내에서 이루어진 진전 사상에 관한 분기 보고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 대표 겸 UNMISS 단장인 데이비드 시어러(David Shearer)가 브리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2018년 9월의 남수단 분쟁해결재개협정(Revitalized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R-ARCSS)이 상당히 지연된 끝에 당사자들은 주 정부 지도부 배분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다. 당사자들은 6월 17일에 살바 키르(Salva Kirr)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의 수단인민해방운동(SPLM-IG)이 10개 주지사직 중 6개를 차지하고 3개는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제1부통령이 이끄는 반대파 SPLM (SPLM-IO)이 차지하고 나머지 하나는 남수단야당연합(South Sudan Opposition Alliance, SSOA)이 차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8월 10일에는 주 정부 고위직에 대한 또 다른 권력 배분 합의에 도달했는데, 부주지사직을 SPLM-IG, SPLM-IO 및 기타 정당(OPP)에 각각 3개씩 배분하고 SSOA에 1개를 할당하는 데 합의했다.

[남수단 관련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2521(2020년 5월 29일)에서는 2021년 5월 31일까지 남수단 제재 및 무기 금수 조치를 갱신하고 전문가단 위임 기간을 2021년 7월 1일까지 연장했다. S/RES/2514(2020년 3월 12일)에서는 UNMISS의 위임 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S/2020/582(2020년 6월 25일)는 6월 23일 남수단 관련 안보리 화상 회의에서 이루어진 브리핑 및 성명을 편성한 서한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SPLM-IO가 제안한 북나일 주(Upper Nile State) 주지사 후보를 SPLM-IG가 수용하지 않아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이 주의 주지사 임명을 둘러싼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다. 7월 2일에는 대통령실 대변인인 아테니 웨크 아테니(Ateny Wek Ateny)가 한 지역 방송국에서 SPLM-IO의 후보인 존슨 올로니(Johnson Olony) 장군의 경우 그의 병력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여전히 전장에 있을 정도로 전쟁광이기 때문에 주지사로 임명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밝혔다.

7월 14일에는 정부간개발기구(Inter 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가 VTC를 통한 정상 회의를 개최했는데,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해결 과제를 조명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식 성명서에서는 2018년 9월 평화 협정 조항의 이행 결정에 대해 남수단 지도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추가 조치를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한 공식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가 치안 안정화 촉진에 필요한 자금 및 물류 지원을 제공하도록 촉구하였다(특히 국가 통합군의 교육, 제대 및 재배치).
- 무장동원해제위원회(Disarmament and Demobilization Commission, DDRC)가 종합적인 재통합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였다.
- 현재의 국가 과도 의회 7월 26일 이전에 해산하도록 키르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2018년 9월 평화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산 후 7일 이내에 새 의회를 구성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요청하였다.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이러한 조치들이 아직 취해지지 않았다.

최근에 이루어진 남수단 군대의 군축 캠페인은 8월 9일부터 와랍(Warrap) 주의 톤스 지역에서 상당한 폭력 사태와 인명 손실을 유발했는데, 시중의 민간인들이 무기를 군부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8월 14일에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현지 당국의 보고를 인용하여 이번 전투에서 적어도 150명이 사망하고 5,000 가구가 집을 잃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45명의 병력과 2명의 군 참관인, 2명의 지역 사회 연락관을 파견했던 UNMISS가 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화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남수단에서의 정전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위반 사례가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7월 넷째 주 동안 정부군인 남수단 인민방위군(SSPDF)이 중부예콰토리아 주 및 서예콰토리아 주에서 민족구국전선(National Salvation Front, NAS)과 충돌했다.

남수단에서 코로나-19 대유행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 및 경제적 상황도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28일에는 남수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2,514명과 사망자 47명이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남수단의 검사 역량을 감안할 때 수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HRC)의 남수단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South Sudan) 소속 바니 아파코(Barney Afako)는 8월 14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적 지원 인력의 이탈 때문에 원조 주체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고 취약 계층 접근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650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분쟁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고 첨언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6월 23일에 남수단에 대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시어러 특별 대표와 에드문드 야카니(Edmund Yakani) 지역사회역량증진기구(Community Empowerment for Progress Organization, CEPO)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실시했다. 시어러는 코로나-19가 남수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지적한 것에 더해 특히 바이러스가 국가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말라리아, 설사 및 폐렴과 같은 치료 가능한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산모 보건 서비스 또는 일상적인 치료가 중단될 경우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여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예측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시어러는 종레이(Jonglei), 유나이티(Unity), 와랍(Warrap) 및 서에콰토리아(Western Equatoria)와 같은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 간 분쟁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언급하면서 제복을 입은 전투원들이 소전투에 목격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화된 군대가 분쟁에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전 파기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진정으로 통합된 국가 지도부라면 분쟁을 방지하는 대신 억제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하니 사무총장은 남수단에서 적시에 평화 협정을 이행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평화 협정에 기술된 과도 사법 체제의 즉시 수립을 뒷받침하고 당사자들이 남수단에서 정전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지역적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했다.

인권 관련 진전 사항

HRC의 남수단인권위원회 또한 8월 14일에 “수백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살해되거나 부상당하고 80,000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고 말하면서 10개 주 중 6개 주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야스민 수카(Yasmin Souka) 위원장은 “폭력 수준과 특히 여성, 노인층 및 아동이 받는 고통이 심히 충격적이며, 인권에 대한 완전한 경시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화 협정 활성화 노력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020년 2월에 복구된 정부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끔찍할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키르 대통령이 7월 8일 대국민 연설에서 인정한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보도 자료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노력을 인정했지만 “전체적인 책임성 결여”와 “체계적인 수사”의 부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10명의 주지사 중 9명이 임명되었지만, 더딘 지방 정부 수립 및 기능으로 인해 주 권력에 공백이 발생하여 공동체 내부와 사이에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HRC는 6월 22일에 개최된 43차 회의에서 재건 통합 과도 정부(Revitalized Transitional Government of National Unity)가 “재건 협약(Revitalized Agreement)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모든 과도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43/27을 투표 없이 채택하였다. 아울러 남수단인권위원회(Commission on South 수단)의 위임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과도적 사법 체제에 대한 워크숍을 두 번에 걸쳐 개최”

하고 “아프리카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 및 방안

2018 평화 협정 이행의 지연과 관련하여 다수의 심각한 정치 및 치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북나일 주(Upper Nile State)의 주지사 임명과 국회 재구성이다.

또한 여러 가지 치안 문제가 평화 프로세스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통합 국군 형성의 선행 조건인 보안군의 막사 및 교육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재건 합동감시평가위원회(Reconstituted Joint Monitoring and Evaluation Committee, RJMEC)는 보고서(기간: 4월 1일~6월 30일)에서 “식량 및 생필품 부족으로 다수의 막사가 방치되고 있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 협정 이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주요 RJMEC 관계자와 비공식 쌍방향 회담(IID)을 개최하여 당사자들의 평화 협정상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IID는 유엔 이외의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와 달리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서 등의 회담 결과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시급히 치안 체계를 확립하고 북나일 주 주지사 임명과 관련하여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재건 과도 국회 구성의 중요성을 명시
- IGAD의 7월 14일자 공식 성명에 명시된 요구를 반영하여 15개 국가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정전 및 과도 치안 준비 상황 감시 검증 체계(Ceasefire and Transitional Security Arrangements Monitoring and Verification Mechanism, CTSAMVM)”에 대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유엔 회원국에 호소
- 남수단에서 이루어지는 IGAD의 중재 노력에 대한 안보리 지원을 재차 요청

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안보리 이사국들은 2월 22일에 결성된 국가통합과도정부(Transitional Government of National Unity)가 중요한 성과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이사국들은 9월 회의에서 주 수준의 관직 임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화 협정의 핵심 요소(예: 과도적 치안 체제, 새로운 과도 국회 설립)의 이행 지연, 계속되는 지역 사회 간 및 정치적 폭력 사태, 코로나-19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및 인도적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남수단에 대한 유엔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극명한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이사국은 제재 조치가 남수단의 안정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현재 상황에서 제재 조치의 효용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이사국도 있다. 안보리가 5월에 남수단 제재 조치를 마지막으로 갱신했을 때 결의안 2521은 12표의 찬성표를 얻어 채택되었으며 중국, 러시아 및 남아공은 기권했었다.

남수단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서기국 역할을 맡고 있다. 2206 남수단 제재위원회 위원장은 당 딘 꾸이(Dang Dinh Quý) 베트남 대사이다.

환경 악화가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사회의 예상 조치

니제르는 9월에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환경 악화의 인도적 영향에 대한 장관급 공개 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다. 사헬 지역에 중점을 두겠지만, 참석자들이 토론 대상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 고위 관료와 시민 사회 대표로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임원이 브리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식적인 회의 결과는 예상되지 않는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몇 년 동안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현안을 논의했는데, 천연 자원의 불법 개발이 환경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국가 간 수자원 관리, 그리고 가장 현저한 사안인 기후 변화의 안보상 함의가 대표적이다.

지난 2년 동안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환경 보호에 관한 아리아 방식 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2018년 11월 7일의 첫 번째 회의는 쿠웨이트 및 독일이 공동 주최했고, 2019년 12월 9일의 두 번째 회의는 에스토니아, 독일, 쿠웨이트 및 페루가 공동 주최했다. 이들 회의에서는 몇 가지 공통 주제(무력 분쟁 지역 내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성, 환경의 민간적 속성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 유엔 평화유지단이 환경 발자국 축소를 촉진할 필요성)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2017년 3월에 차드호(Lake Chad)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마하마두 이수푸(Mahamadou Issoufou) 니제르 대통령 및 예미 오싱바조(Yemi Osinbajo) 부통령과 같은 인사는 기후 변화가 이 지역의 치안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수푸 대통령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코 하람 반군 단체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차드호를 축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피해를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경 악화가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2531(2020년 6월 29일)에서는 MINUSMA의 위임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갱신했다. S/RES/2524(2020년 6월 3일)에서는 UNITAMS를 설립했다. S/RES/2520(2020년 5월 29일)에서는 2021년 2월 28일까지 AMISOM을 재위임했다. S/RES/687(1991년 4월 3일)에는 쿠웨이트 침공과 관련하여 이라크에 적용되는 정전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서 S/PRST/2020/7(2020년 7월 28일)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병이 서아프리카 및 사헬 지역의 기존 취약 요소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S/PRST/2020/2(2020년 2월 11일)에서는 2020년에 서아프리카 및 사헬 지역(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가나, 기니, 니제르, 말리 및 토고)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고 시의 적절하며 평화로운 선거가 치러줘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S/2020/808(2020년 8월 18일)은 FSO Safer 상황의 업데이트 내용에 관한 것으로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이다. S/2020/751(2020년 7월 28일)은 7월 24일에 열린 “기후 및 안보”에 대한 장관급 공개 토론(공개 VTC 회의)에서 나온 브리핑 및 성명서를 편성한 문서이다. S/2020/721(2020년 8월 17일)은 FSO Safer 유조선에 관한 7월 15일자 브리핑 내용을 담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서한이다.

현장 방문 임무 이후 기후 변화 및 기타 생태학적 요인의 불안정화 효과와 관련한 위험 평가 및 관리 전략의 필요성이 차드호 지역, 말리,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보다 넓게는 중앙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및 사헬 지역과 수단에 대한 안보리의 결론과 2019년 2월에 안보리가 “아프리카 내 분쟁 종식(Silencing the Guns in Africa)”에 대한 주제별 결의안에 통합되었다. 2019년 12월에 유엔의 콩고민주공화국조직 안정화임무단(MONUSCO)의 위임 기간을 갱신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기후 변화, 생태 변화 및 기타 요인이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 개발에 있어 DRC가 보여준 리더십”을 환영했다. 올해에만 기후-안보 현안이 서아프리카 및 사헬 지역에 대한 두 건의 의장 성명, 소말리아 AU 임무단(AMISOM) 재승인, 수단통합전환지원임무단(UNITAMS) 설립에 관한 결의안, 유엔의 말리다각적통합안정화임무단(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Mali, MINUSMA)의 위임 기간 갱신에 관한 결의안에 통합되었다.

7월 24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기후 및 안보에 관한 장관급 공개 토론(공개 VTC 형식)을 개최했다. 이 토론은 10개 안보리 이사국이 공동 주최했다(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니제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튀니지, 영국, 베트남). 발언자는 유럽, 중앙 아시아 및 미주 지역 담당 사무총장보(Assistant Secretary-General)인 미로슬라브 옌차(Miroslav Jenca), Centre National d'Études Stratégiques et de Sécurité(CNESS-Niger) 이사인 니제르의 마하마두 세이두 마가기(Mahamadou Seidou Magagi) 대령, SPC(Sustainable Pacific Consultancy)의 이사인 니우에의 코랄 파시시(Coral Pasisi)였다.

옌차 사무총장보는 기후 변화가 여러 지역에서 분쟁 위험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에 대해 발언했다. 차드호 유역과 관련하여 옌차 사무총장보는 “치안 불안 및 통치 문제가 기후 적응 노력을 저해하여 생계, 사회적 단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쳐 왔으며, 보코 하람 반군이 이를 능숙하게 악용해 왔다”고 얘기했다.

마가기 대령은 사헬 지역의 평화 및 치안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날씨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해 물과 목초지 등의 자원이 감소하여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부 및 말리 중부와 같은 국가 및 지역에 거주하는 농부 및 낙농인 간의 분쟁을 증가시켰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2012년과 2013년의 연속적인 흉수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을 잃은 젊은이들이 보코 하람에 의해 징집되어 극단주의 운동에 동참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CNESS-Niger의 2019년도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

파시시는 기후 변화가 태평양의 여러 작은 도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그녀는 강력한 완화 및 적응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해수 침범, 해안 침식, 산호초 악화”로 인해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집을 잃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15일에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예멘의 라스 이사(Ras Isa)에 계류 중인 FSO Safer 유조선에 관한 공개 및 비공개 화상 회의를 연이어 가졌다.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의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사무총장과 마크 로콕(Mark Lowcock) 인도적 지원 담당 사무차장이 발언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원유가 누출되거나 폭발할 경우 이 지역의 천연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예: 어업 종사자)의 생계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로콕 사무차장은 유엔이 주도하는 기술 임무단의 FSO Safer 평가 및 초도 수리에 대한 후티 반군과의 최신 협상 소식을 전했다.

181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8월 4일의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와 AUB(American University in Beirut)는 환경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폭발로 인한 오염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지침을 개발했다. 이 정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배포되었다.

주요 현안 및 방안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 환경 악화 및 기후 변화가 미치는 인도적 및 치안상 영향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필요성
- 환경 악화와 인도적 및 치안상 위험 간의 연관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유엔 체제의 분석 역량 개발이 가지는 중요성
-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다른 유엔 기구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방법

니제르가 토론의 주요 요소를 망라하는 의장 요약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이사국이 환경 문제가 치안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함에 있어 안보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

에서 이들 이사국이 계속 협력하여 각자가 안보리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평화 및 안보에 대한 그와 같은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Safer 유조선에 관한 7월 회의에서와 같이 특정 분쟁 상황에서의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환경 재해를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일부 이사국은 환경 악화가 과격한 극단주의 및 공동체간 폭력 사태(예: 목축 종사자와 농업 종사자 간의 폭력)를 심화시켜 평화 통합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환경 악화의 인도적 영향에 대해 얘기하고 가뭄, 사막화, 물 및 식량 부족과 같은 요인이 “분쟁 위협의 증폭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 및 안보 위협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이사국의 경우에는 안보리가 환경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 사안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에 더 협조적일 수 있다.

Safer 유조선과 관련하여 유조선 폭발이나 대규모 원유 유출로 인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 간에 광범위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라크(UNITAD)

이사회의 예상 조치

9월에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21일에 만료되는 “유엔 ISIL 범죄 책임 조사팀(UN Investigative Team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Crimes Committed by Da'esh/ISIL, UNITAD)의 위임 기간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UNITAD는 2017년 9월 21일 결의안 2379를 통해 초기 위임 기간 2년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9년 9월 20일 결의안 2490을 통해 1년 간 연장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내에서 전쟁 범죄, 인도적 범죄 및 대량 학살에 준할 수 있는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보관함으로써 이라크 및 레반트 내 이슬람 국가(ISIL)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이라크 국내의 노력을 지원하는 조사팀을 설립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더해 조사팀은 사람들을 테러 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온 ISIL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ISIL에 의해 저질러진 잔학 행위의 책임 소재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책임도 지닌다. 2018년 5월 31일에 사무총장은 카림 아사드 아흐메드 칸(Karim Asad Ahmad Khan)을 특별 보좌관 겸 UNITAD 팀장으로 임명하였다.

7월에는 이라크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1년 간 칸을 재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팀은 2018년 8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칸 특별 보좌관은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안전보장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을 실시했다.

UNITAD는 결의안 2379에 의거하여 “공정성, 독립성 및 신뢰성”을 견지해야 하고, 위임 사항, 유엔 현장, 유엔 실무 지침 및 관련 국제법(국제 인권법 포함)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조사팀에는 주요 인프라 및 필요 인력을 포함하여 2020년에 약 2,100만 미국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에 더해 결의안 2379에 의해 설립된 신탁 기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과 전문 인력 제공을 포함한 현물 기부에 의존한다. 신탁 기금에 대한 현재 기여국은 키프로스, 덴마크, EU, 독일, 네덜란드, 필리핀, 카타르, 슬로바키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및 미국이다. 신탁 기금에 대한 약정 금액은 현재 약 500만 미국달러에 달한다. UNITAD의 전체 인력은 150명 정도이다. 현재 호주, 핀란드, 독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및 UAE의 전문 인력이 각국 정부로부터 파견되어 있다.

결의안 2379에 의거하여 UNITAD는 “UN 실무 지침”에 따라 위임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 즉,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증거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라크 법 체제에는 사형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UNITAD가 조사하도록 위임을 받은 국제 범죄는 아직 이라크 국내 법 체제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반인도적 범죄, 대량 학살 및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현재 테러 범죄로 기소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바르함 살리(Barham Salih) 이라크 대통령이 제안한 이라크 고등법원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이라크 의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ISIL 대원에 대한 국제 범죄 기소를 허용한다.

UNITAD의 조사 전략은 2014년 6월 티크리트 공군사관학교(“스피서 캠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학살, 2014년 8월에 발생한 신자르(Sinjar) 지역의 야지디(Yazidi)에 대한 ISIL의 공격,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모술(Mosul)에서 발생한 ISIL의 범죄, 기독교, 카카이, 샤박, 시아파, 수니파 및 투르크 공동체에 대한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UNITAD의 조사는 지도부 중 책임이 가장 큰 ISIL 대원과 지역 및 중간급 지휘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의안 2379에 의하면 UNITAD가 수집한 증거는 일차적으로 이라크 당국이 수취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라크 당국과 공유된 증거는 없지만 증거 이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결의안에서는 조사팀이 수집한 증거가 “제삼국의 당국에서 요구할 경우 이들 기관에 의해 수행된 조사”를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조사팀은 현재 핀란드, 프랑스 및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지원하고 있다. UNITAD는 여러 국가로부터 다섯 건의 공식 요청을 접수했으며 다른 국가로부터 지원 요청 의사를 전달받기도 했다.

인권 관련 진전 사항

인권이사회(HRC)는 7월 8~9일에 개최된 44차 회기 동안 국내 실향민(IDP) 인권 담당 HRC 특별

보고관인 세실리아 히메네즈-다마리(Cecilia Jimenez-Damary)의 보고서(A/HRC/44/41/Add.1)를 검토했다. 히메네즈-다마리 특별 보고관은 2020년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이라크를 공식 방문하여 바그다드, 에르빌, 니네와(모술 포함) 및 도후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ISIL과의 충돌로 인해 6백만 명이 실항민이 되는 바람에 이라크가 인도적 필요를 지원하고 여전히 실항민 신세에 놓여 있는 140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실현하며 고향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히메네즈-다마리 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인도주의 운동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접근 제한”과 최근의 캠프 폐쇄로 인한 강제 귀환 및 이차 실항민 발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IDP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보고도 다루었다.

주요 현안 및 방안

안전보장이사회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UNITAD의 위임 기간 갱신이다. 만약 이라크 정부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UNITAD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유엔 안보리 입장에서는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UNITAD 위임 기간 갱신이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및 추가 동향

안보리 이사국들은 일반적으로 이라크 정부와 마찬가지로 UNITAD를 지지하는 편이다. 사법 체계상 사형 제도가 없는 이사국의 경우 조사팀이 이라크 당국과 공유한 증거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사 재판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다른 이사국들은 사형제도 운용은 이라크의 주권이라는 의견이며, 이는 이라크가 수시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일부 이사국이 자주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기소가 현재 이라크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관련 정부는 이들 자국민을 기소하기 위해 송환하는 것을 꺼려해 자신의 법적 의무를 아웃소싱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일부 이사국은 UNITAD가 조사를 위임받은 국제 범죄를 이라크 국내 법 체제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UNITAD와 관련해서는 영국이 서기국이다.

[이라크에 관한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2490(2019년 9월 20일)에서는 2020년 9월 21일까지 UNITAD의 위임 기간을 연장했다. S/RES/2379(2017년 9월 21일)에서는 ISIL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국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보존하는 조사팀을 설립했다.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S/2020/547(2020년 6월 17일)은 카림 아사드 아흐메드 칸(Karim Asad Ahmad Khan) 특별보좌관 겸 UNITAD 팀장의 6월 15일자 브리핑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의 서한이다. S/2018/773(2018년 8월 15일)은 사무총장이 7월 13일에 카림 아사드 아흐메드 칸을 특별보좌관 겸 조사팀장 수장으로 임명했으며 조사팀이 2018년 8월 20일부로 업무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는 유엔 사무총장 서한이다. S/2018/118(2018년 2월 9일)은 조사팀의 위임 사항을 수록한 유엔 사무총장의 서한이다.

콜롬비아

이사회 의 예상 조치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25일에 만료되는 유엔 콜롬비아검증임무단(UN Verification Mission in Colombia)의 위임 기간을 9월 중에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주요 진전 사항

콜롬비아는 코로나-19 대유행병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씨름하는 동안 심각한 폭력과 정치적 양극화가 지속됨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8월 31일 현재 보고된 콜롬비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97,938명이고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19,364명이다.

대유행병 이전부터 만연했던 토착민 및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공동체를 포함한 공동체에 대한 폭력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인민군(FARC-EP)의 전 대원, 인권 운동가 및 사회 지도자에 대한 살인과 같은 공동체에 대한 폭력 사태가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26일자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무장 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봉쇄 조치를 전략적 불법 밀수 경로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해 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 무장 단체가 추가적인 봉쇄 및 통행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가혹한 처벌 및 불법 검문소 설치와 같은 승인되지 않은 사회적 통제 조치를 취해 왔다.

8월 10일에서 16일까지 발생한 일련의 폭력적인 공격이 국가의 존재감이 미약한 농촌 지역의 위태로운 치안 상태를 말해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나리뇨 주 남부의 레이바 시에서 교전 중인 무장 단체들 간의 교차 사격에 두 명의 남자 어린이가 사망했다. 8월 11일에는 발레 델 카우카 주 서부의 칼리 시에서 소수계인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 5명이 죽은 채 발견됐다. 8월 16일에는 나리뇨 주의 사마니에고 마을에서 8명이 살해되는 대량 학살이 발생했다.

콜롬비아에 소재한 유엔의 국가별 팀과 검증 임무단(Verification Mission)은 8월 16일에 대량 학살과 전 주에 발생한 다른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올해 초 이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33건의 대량 학살 사건을 기록했고 인권 운동가 97명이 살해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 중 45명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검증 임무단이 41명의 퇴역 전투원 살해를 확인함으로써,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이전 반군 단체인 FARC-EP 간의 분쟁 종식 및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최종 협약 체결 이후 퇴역 전투원 누적 사망자 수가 215명에 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치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한 2016 평화 협약을 시급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평화 협약상 범죄 단체 및 이들의 지원 네트워크 해체에 관한 공공 정책 개발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국가안보위원회(NEC)가 일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8월 12일에는 이반 두케(Iván Duque) 대통령이 1월 9일의 마지막 소집 이후 오랜만에 이 위원회를 소집했다.

8월 7일에는 콜롬비아 대법원이 콜롬비아의 알바로 우리베(Álvaro Uribe) 전 대통령의 구금을 명령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은 사기, 뇌물 수수 및 증거 위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가택 연금되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임했던 우리베 전 대통령에 대한 콜롬비아 사회와 정치인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양분되어 있다. 두케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베 지지자들은 FARC의 반란을 진압한 데 신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베 비판자들은 그가 FARC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령 하에 있는 군의 강압적인 전술을 감독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이 같은 강압적인 전술은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을 야기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마지막으로 7월 14일에 콜롬비아에 대해 논의했는데, 특별 대표 겸 유엔 콜롬비아 검증임무단 단장인 카를로스 루이즈 마시에우(Carlos Ruiz Massieu)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주제에 관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루이즈 마시에우 단장은 평화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미해결 과제를 식별하고 퇴역 FARC-EP 대원, 인권 운동가 및 공동체에 대한 폭력이 “콜롬비아 내에서의 평화 구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역 전투원의 생산성 프로젝트가 대유행병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지원(기술적 지원 및 토지 할당 포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카우카 주 북부에 기반으로 두고 있는 도시여성협회(Municipal Association of Women, ASOM)의 대표이자 인종 및 지역 인권 운동가인 클레멘시아 카라발리 로다예가(Clemencia Carabalí Rodallega)로부터도 브리핑을 받았다. 로다예가는 사회 지도자에 대한 심각한 치안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콜롬비아 정부 및 국제 공동체에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7월 16일에 전직 전투원, 사회 지도자, 토착인,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 및 기타 공동체 인사를 표적으로 삼고 살해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이사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정전을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를 지지한 결의안 2532를 상기시키면서 콜롬비아 내 당사자들이 폭력을 중단하고 대유행병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8월 14일에는 아동무력분쟁 실무단(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이 콜롬비아 내 아동 및 무력 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대상 기간: 2016년 7월~2019년 6월)에 대한 결론을 채택했다. 아동무력분쟁 실무단은 게릴라 단체인 ELN(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 및 다시 무장한 전진 FARC-EP 대원을 포함한 무장 단체들의 영역 확대, 계속되고 있는 아동(토착인,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 피난민 및 이주민의 자녀 포함) 징집 및 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요 현안 및 방안

안보리 이사국 입장에서 9월의 주요 현안은 검증 임무단의 위임 기간 갱신이 될 것이다. 2016년 협약에

규정된 임무단의 현재 위임 사항은 전직 FARC-EP 전투원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재통합과 개인적 및 집단적 안전 보장과 관련된 협약 내용(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의 공동체 및 조직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 포함)을 검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약 이행 진척도에 대응하여 임무단의 위임 사항에 대한 잠재적인 수정을 논의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국들은 2016년 평화 협정에 의해 수립된 과도 사법 체제의 구성 요소인 특별평화재판소(Special Jurisdiction for Peace, SJP)가 선고한 판결의 이행에 대한 감시를 포함하도록 위임 사항을 확대해 달하는 콜롬비아 정부의 6월 16일자 요청을 검토할 수 있다. SJP는 분쟁 기간 동안 자행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자에 대해 제재를 발동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최대 8년 동안 한 지방 자치체에 강제로 소속시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작업 및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콜롬비아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콜롬비아 관련 유엔 문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2487(2019년 9월 12일)에서는 콜롬비아 내 유엔 검증임무단의 위임 기간을 2020년 9월 25일까지 연장했다. 사무총장 보고서 S/2020/603(2020년 6월 26일)은 90일 기간에 대한 보고서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언론 성명서 SC/14255(2020년 7월 16일)에서는 콜롬비아에서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록 S/PV.8749(2020년 7월 14)는 콜롬비아에 관한 분기 회의 기록이다.

SJP가 곧 판결을 내릴 것임을 통보하고 검증임무단이 이 추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SJP 소장의 정부향 서한에 이어 정부측 요청이 뒤따랐다. FARC 정당 구성원들도 임무단이 이 작업을 맡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2016년 협정에 SJP가 유엔의 정치적 임무의 일부로 국제 체제의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SJP가 언제 제재 조치 발동을 시작할 것인지 이전에 불분명했기 때문에 협정의 이러한 측면을 검증임무단의 위임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청은 없었다. 4월에 SJP는 제재 관련 지침과 관할 대상자에 부과할 과제를 발표했으며 2001년 초에 판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된다.

7월 16일에 안보리 이사국들은 언론 성명을 통해 SJP 제재 조치 준수 여부 검증 역할을 검증임무단이 맡아 달라는 당사자들의 요청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더해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 및 영국은 7월 14일 안보리 회의에서 검증임무단이 이와 같은 추가 역할을 맡는 방안을 지지했다.

위임 기간 갱신에 앞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검증임무단 위임 사항의 잠재적인 확대와 관련한 운영상 현안에 대한 추가 정보(예: 검증 대상 제재 조치, 특정한 전문성을 지닌 추가 인력이 필요할지 여부)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사국들은 그와 같은 정보를 사무총장 서한의 형태로 요청할 수 있다. 혹은 위임 기간 갱신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여 사무국 관료로부터 브리핑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우선순위는 콜롬비아에서의 전면적인 평화 협정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콜롬비아의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우리베 전 대통령의 가택 연금에 여당 의원들이 SJP 개혁 조치 도입 의사를 공표함에 따라 이미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6월 26일자 사무총장 보고서에 수록된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을 되풀이하여 콜롬비아 정치 주체들이 분열을 획책하는 발언을 피하고 단합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자 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동향

안보리 이사국들은 콜롬비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통일된 지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가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여러 분쟁 상황 속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개입을 흔치 않은 성과로 계속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대체로 이사국들은 콜롬비아 정부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해 왔으나 그중 일부는 2019년에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몇몇 이사국은 FARC-EP가 평화 협정에 따라 철수했던 지역의 지속적인 치안 공백과 같은 현안과 협정의 다양한 조항에 대한 정부의 불공평한 접근 방식에 관해 콜롬비아 정부를 비판해 왔다.

콜롬비아와 관련해서는 영국이 서기국이다.



08

평화를 위한 경로

(Pathways for Peace)

세계은행
(2018)





평화를 위한 경로
(Pathways for Peace)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본 책자는 곧 출간될 *평화를 위한 경로: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 doi: 10.1596/978-1-4648-1162-3에서 발췌한 개요를 포함하고 있다. 출간된 최종본의 PDF는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8 국제부흥개발은행 / 세계은행 1818 H Street NW, 워싱턴, DC 20433 전화: 202-473-1000; 인터넷: www.worldbank.org

권리의 보유

본 책자는 세계은행과 유엔의 직원들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로서, 참고한 정보, 데이터, 자료의 경우 해당 직원들이 입수했지만 모두 가공하거나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유엔과 세계은행은 이 책자에 포함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본 책자의 지도에 표시된 명칭 및 자료의 표시가 국가, 영토, 도시, 지역 또는 그 당국의 법적 지위에 대해 또는 국경이나 경계의 설정에 대해 유엔 사무국 또는 세계은행의 입장 표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책자에 표현된 결과, 해석, 결론이 반드시 유엔 사무총장, 유엔 회원국 또는 세계은행 상임이사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본 책자의 어떠한 내용도 세계은행의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제한 또는 포기이거나 그렇게 간주되지 않으며, 이 특권 및 면제는 특별히 보장된다.

— 개요(Executive Summary)

최근 몇 년 동안 폭력적 갈등이 급증하면서 인간의 고통과 이주 및 장기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거의 30년 만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폭력적인 갈등을 경험했는데¹ 2016년에 보고된 전쟁(battle)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냉전 이후 2005년의 최저치보다 10배 증가했고, 테러 공격 및 사망자도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GTD 2017).

이러한 폭력의 급증으로 인해 비교적 강력한 제도를 가진 저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가가 달성되면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오랜 가정과 20세기 말을 규정하는 지속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발전에 대한 기대가 의문시되고 있다(Fearon 2010, Humphreys와 Varshney 2004, 세계경제포럼 2016).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위해 국제사회가 정한 지평인 2030년 무렵에는 전 세계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의 폭력에 시달리는 국가에 살게 될 것이다(OECD 2015).

예방 조치의 이점은 자명해 보인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형성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세계 구조는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후대를 구하라(유엔 헌장, 서문)”라는 보편적인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분쟁의 범위와 성격이 변화되면서 이 시스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오늘날 분쟁은 종종 지역적이면서도 초국가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집중화된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은 위기에 처한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분쟁의 발발, 확대, 재발 또는 지속”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유엔 총회 201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16). 하지만 현재 예방을 위한 지출과 활동은 위기 대응 및 재건에 지출되는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² 위기관리 및 대응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집단적인 분쟁 예방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 UCDP(2017). UCDP/PRIO(웁살라 분쟁 데이터 프로그램/오슬로 평화연구소)의 무력분쟁데이터집합 2017은 정부/국가가 연루되어 있고 한 해 25명 이상의 전쟁 사망을 야기하는 국가 기반의 모든 분쟁을 기록하고 있다. 기간은 1946~2016년까지이다. 역년에 25명 이상의 분쟁 관련 사망을 야기하는 비국가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을 기록한 UCDP 데이터는 1989~2016년까지를 포함한다.

2 예를 들어, 분쟁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연간 평균 2억 5천만 달러로 평화 국가에 비해 약간 높지만, 분쟁 중에는 7억 달러, 복구 기간에는 4억 달러로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평화 유지 지원은 위험이 높은 국가의 경우 연간 평균 3천만 달러이며, 분쟁중인 국가의 경우 1억 달러, 복구 기간에는 3억 달러이다. Mueller(2017) 참조.

—— 평화를 위한 경로: 예방에 새롭게 집중하기 위한 기반 마련

*평화를 위한 경로: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은 유엔과 세계은행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예방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두 기관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두 기관은 각기 다른 상호 보완적 임무를 맡고 있지만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 유지에 관한 결의안³ 및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개발협회의 18차 보완⁴에 표현된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에서 수립된 개발을 위한 기여로서 분쟁 예방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그룹과 유엔이 폭력적 갈등 예방에 접근하기 위해 별도의 비교 우위를 가지며, 국제 구조에서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예방 구현에 총체적 체계가 필히 요구된다고 해서 본 연구의 결과와 권고 사항이 모든 기구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갈등의 폭력화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발전 과정이 안보, 외교, 사법, 인권 활동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독자는 국가 정책 입안자 및 다자간 기관 및 지역 기관의 종사자이다. 19개의 사례 연구를 포함하여 배경 연구 및 문헌 검토는 주요 싱크 탱크 및 학술 기관과 협력하여 준비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의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구성원, 지역 기구 대표, 발전 원조 기구, 공여국 파트너와 함께 2016~2017년 동안 지역 협의가 진행되었다.

—— 예방을 위한 8가지 핵심 메시지

연구 결과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 8가지이다.

- 폭력적인 갈등은 수십 년 간의 상대적 감소 이후 증가했다. 전시 직접적인 사망, 실향민 수, 군비 지출, 테러 사건은 모두 세기 초부터 급증했다. 국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국경을 초월하고 분쟁을 복잡하게 만드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은 지역에서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그들의 도구와 수단을 효과적이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3 유엔 총회(201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2016). 본 연구는 유엔과 세계은행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며 이에 기반한다. 여기에는 세계은행(2011, 2017), 유엔(2015a, 2015b, 2016), 유엔여성기구(2015)가 해당된다.

4 국가 정부 및 기타 지역 행위자는 예방 조치의 기초이자 기준점이다(유엔 총회 201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16, 유엔 헌장 제2조 및 제3조 참조). 연속되는 평화 결의안들은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82는 “평화 유지는 정부와 다른 모든 국가 이해 당사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공동 임무이자 책임임을 강조하면서.....평화 유지를 위한 우선순위, 전략, 활동을 파악, 추진, 지지하는데 있어 국가 정부와 당국의 일차적 책임”을 인정한다.

더욱 일치된 노력을 기울일 책임을 갖는다.

-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으로 인한 인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자들이 더욱 협력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발전 행위자들은 보다 집중화되고 유연하며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 및 지역 예방 의제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예방은 비용 효율적이고 생명을 구하며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예방 의제는 발전 정책 및 노력에 통합되어야 한다.
- 사회가 분쟁에 국한되는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사회가 회복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과 배제를 해소하고, 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며, 발전 전략에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 구조가 해체되어 위기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이다.
- 예방 조치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 정책과 다자 체제 거버넌스의 주체인 국가에 있다. 하지만 오늘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국가는 많은 국가들 중 하나의 행위자에 불과하다. 국가는 평화로 가는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점점 더 국가 간 협력과 다른 행위자들과도 협력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 권력, 기회, 서비스, 안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제 당하면, 집단 불만이 폭력에 동원될 수 있는 비옥한 토대가 조성되며, 특히 국가 역량이나 합법성이 취약한 지역 또는 인권이 유린되는 환경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포함하여 국가 및 기타 행위자가 폭력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적한다.
- 성장과 빈곤 완화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폭력을 예방하려면 위험이 누적되거나 높을 때 전통적인 경제 및 사회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폭력 예방은 또한 대화, 거시 경제 정책 채택, 핵심 국가 기능의 제도적 개혁, 재분배 정책을 통해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포괄적인 의사 결정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열망을 다루는 장기 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준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요구된다.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을 대표하는 조직, 운동, 네트워크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달한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평화와 안보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는 유효성에 매우 중요하다.
- 폭력 발생 시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려는 노력과 함께 예방적 행동은 평화롭고 협력적인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립하는 시스템을 육성해야 한다.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방 도구와 수단, 특히 외교 및 중재, 안보, 발전 간의 시너지 효과를 훨씬 더 일찍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예방의 효과를 입증한다. 많은 국가들이 위태로운 분쟁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폭력 사태로 전개되는 것을 피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방을 위한 교훈을 얻고, 이는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각 상황이 개별 사회의 행위자, 기관,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공식은 없지만 이러한 경험에서 공통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예방이 비용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폭력 발생 예방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예방 조치가 거의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평균 순 절감액은 연간 50억 달러에 가깝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순 절감액은 연간 거의 700억 달러에 달한다(Mueller 2017).

—— 폭력적 분쟁의 현황

국가 간 분쟁은 드물지만, 2010년 이후 국가 내 폭력적인 분쟁이 증가했다. 또한 특정 국가의 고강도 전쟁으로 인해 분쟁 사망자 수가 증가했는데, 보고된 전쟁 관련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2014년에는 20년 만에 최고 수치에 도달했다(Allansson, Melander, Themnér 2017; Sundberg, Eck, Kreutz 2012).

이러한 분쟁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추세가 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전쟁 사망자는 소수의 분쟁에서 발생한다. 2016년에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상위 3개국(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아랍 공화국)은 전체 사망자의 76%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전쟁이 감소함에 따라 전쟁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더라도, 이러한 분쟁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발 위험은 여전히 높다(Dupuy의 2017).

이러한 폭력의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에서 여전히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치명적이고 복잡한 분쟁 중 일부는 중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과 부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제네바 선언 사무국 2015, OECD 2016).

무장 단체는 수, 다양성, 범위 등에서 성장한 모습이다. 이러한 단체의 대부분은 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불만, 정체성, 이데올로기, 경제적 또는 정치적 자원에 대한 주장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반란군, 민병대, 무장 밀거래 조직,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 주체가 되고 있다. 더하여 멤버십과 동맹은 자원이나 리더십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은 점점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2016년에 국가기반 폭력분쟁 47건 중 18건이 국제화됐는데, 520건이 국제화된 2015년을 제외하면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고치이다(UCDP 2017).

5 UCDP(2017)는 국제화된 분쟁을 한 쪽이 국가이고 다른 쪽이 비국가인데, 이 중 한 쪽을 대신하여 외부 국가가 개입하는 분쟁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분쟁에 따른 비용은 엄청나다. 전쟁 사망은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 민간인은 점점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와 공공장소에서 폭력 사태가 많이 발생했다(ICRC 2017). 2010~2016년에는 폭력 갈등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UCDP 2017). 특히 의료 미비, 식량 불안정, 대피 시설 부족 또는 수질 오염과 같은 분쟁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더 많은 민간인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소형무기조사 2011, UNESCWA 2017).

폭력적 갈등으로 인해 기록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하고 있다. 현재 약 6,560만 명의 사람들이 폭력으로 인해 강제로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UNHCR 2017), 2005~2016년에 내부 실향민의 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UNDP 2016, UNHCR 2017). 난민의 수는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두 배가 되었고, 다수(55%)의 난민이 아프가니스탄, 남수단공화국, 시리아에서 발생했다(UNHCR 2017). 전 세계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며 그 중 다수가 가족과 헤어졌다(UNHCR 2017).

폭력적 갈등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남성이 분쟁 중 전쟁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폭력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여성도 분쟁 전, 중, 후에 걸쳐 지속적인 불안정에 직면한다(Crespo-Sancho 2017). 여성을 인신 매매, 성 노예, 강제 결혼의 목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폭력과 젠더 기반의 폭력은 갈등 중 및 분쟁 후 환경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Crespo-Sancho 2017, Kelly 2017, UNESCWA 2017, 유엔 사무총장 2015, 유엔여성기구 2015).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이동성은 종종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학교, 취업, 기타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유엔여성기구 2015).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폭력적인 상황에서 폭력 노출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과 일상생활의 역경은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는데(Miller and Rasmussen 2010), 여기에는 나중에 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위협의 증가, 심리적 외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이 해당된다(Betancourt 외 2012, Blattman 2006, Huesmann 및 Kirwil 2007, Leckman, Panter-Brick, Salah 2014, Shonkoff 및 Garner 2012).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가 역량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아프가니스탄의 1인당 소득은 계속 되는 전쟁으로 인해 1970년대 수준을 유지했으며, 소말리아의 1인당 소득은 같은 기간에 40% 이상 감소했다(Mueller 및 Tobias 2016). 이러한 영향은 지역 내 주변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 평균적으로 고강도 분쟁의 인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4%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1.7% 증가한다(Rother 외 2016).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예방의 필요성

폭력적 갈등의 본질은 고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보다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요구가 분출하는 국제 환경에서 폭력적 갈등은 더욱 증가했다. 대리전(Proxy Wars)은 더 이상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다. 동시에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정치, 경제, 문화적 거버넌스를 채택한 사회는 지난 30년 동안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전환은 많은 국가에서 평화롭게 이루어졌지만,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경쟁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

동시에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는 사람과 사회가 작동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ICT)의 발전은 혁신, 성장,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큰 기회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기회와 함께 위험이 따른다. 모두가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위 “디지털 격차”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의 격차를 확대할 위험이 있다. 신기술과 자동화는 산업에서 비숙련 또는 반숙련 노동의 필요성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산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번성하고, 폭력적인 이데올로기가 빠르게 전파되며, 경제가 사이버 범죄에 취약해진다.

기후 변화 역시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와 지역 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Nordas 및 Gleditsch 2007). 기후 변화 자체가 폭력적인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기후 변화는 특히 정부가 인구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은 식량 불안정, 경제 충격, 이주와 같은 요인을 통해 폭력의 위험과 결합되면서 악화될 수 있다(Marc, Verjee 및 Mogaka 2015, Schleussner 외 2016).

이 새로운 국제 환경은 국제 및 국가 시스템에 새로운 스트레스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상당한 인구통계적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미 역사상 다른 어느 때 보다 더 많은 청년(10~24세 18억)이 있고, 대다수의 청년이 저소득 국가에 살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이미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UN DESA 2015).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60%가 25세 미만이다(UN DESA 2015). 증가하는 청년 인구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인구 증가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향후 10년 동안 노동력에 편입될 약 6억 명의 신규 노동자를 흡수해야 하는 노동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ILO 2016).

이러한 인구통계적 변화는 낮은 속도의 불균등한 세계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 무역 가치, 상품 수출, 상업 무역 서비스는 모두 지난 70년 동안 크게 성장하여 2차 세계 대전 후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무역 성장은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장기간 완만히 개선되는 특징을 보였다. 2016년 무역 성장은 5년 연속 3% 미만으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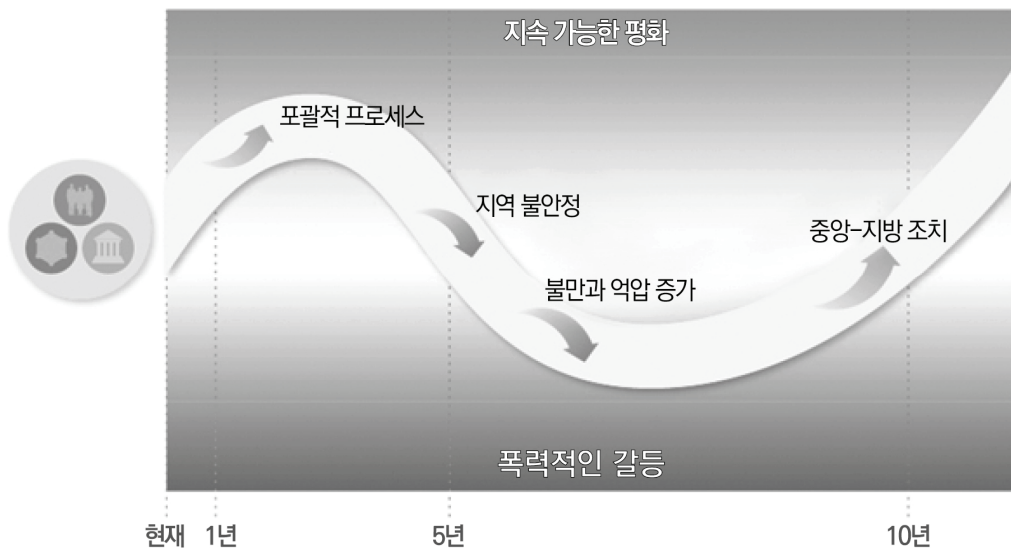
한편 외국인 직접 투자도 감소하고 있어 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Hale 및 Xu 2016). 이러한 경향은 폭력적인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시스템과 사람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불만을 부추겨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평화 체계를 위한 경로

이에 대한 예방 조치는 행위자가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집단 불만을 조기에 인식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은 매우 경로 의존적이다. 일단 폭력이 우세해지면 인센티브와 시스템이 폭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효과적인 예방은 불만이 굳어지기 전에 행동해야 하며, 폭력의 위협은 사회에서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집단인 지도자와 엘리트의 선택의 폭을 좁힌다.

분쟁을 건설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는 폭력을 유발하는 위험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를 진전시킴으로써 스스로의 능력을 끊임없이 검증한다. 이러한 위험과 기회가 사회에, 그리고 사회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시각화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행위자, 제도, 구조적 요인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가 만들어내는 궤적에 대해 “경로”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사회는 그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기회의 여러 차원과 수준에 직면한다.

[그림 1] 지속가능한 평화와 폭력적 갈등 사이의 경로



경로 구성은 예방의 시간적 측면을 개념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내 행위자들의 행동은 사건의 변화와 다른 행위자들의 결정에 적응할 것이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과 불만을 양산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측면은 국제적 조치에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발전 행위자들은 위협이 고조될 때 참여를 줄이거나 완전히 철수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 행위자는 폭력의 위협이 높거나 폭력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폭력 예방을 지원하는 실행 가능하고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는 폭력적인 갈등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한 대립적인 압력을 협상하면서 독특한 경로를 형성한다. 그림은 서로 다른 힘이 경로의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불평등, 배제, 불의

오늘날 폭력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집단 간 불평등에 뿌리를 둔 배제와 불의에 대한 반감을 선동하는 데서 비롯된다(Collier 및 Hoeffler 2004, Cramer 2003, Fearon 및 Laitin 2003, Lichbach 1989, Østby 2013). 불만 세력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배제에 대해 다른 세력이나 국가를 비난하는 경우, 감정, 집단적 기억, 충족되지 않은 기대에 대한 좌절, 폭력을 조장하는 서사는 모두 폭력을 선동할 수 있다(Cederman Wimmer 및 Min 2010, Justino 2017, Nygard 외 2017, Sargsyan 2017).

사람들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다양한 이유로 사회 집단에 참여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감정, 역사 및 굴욕, 좌절, 정체성의 서사를 공유할 수 있다. 선동의 관점에서 집단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실제 불평등과 배제보다 더 중요하다(Rustad 2016, Stewart 2000, 2002, 2009). 이러한 배제의 패턴에는 행정부, 경찰, 군대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집단들 사이에서 정치적 기회와 권력을 이용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불평등이 포함된다. 정치적 배제는 집단의 지도자들에게 변화를 강제(또는 협상)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선동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가 탄압에 의한 배제는 심각한 폭력 갈등의 위험을 초래한다(Bakker, Hill, Moore 2016, Piazza 2017, Stewart 2002). 정부가 고문, 강제 실종, 정치적 투옥, 초법적 살인과 같은 관행을 통해 인권, 특히 신체보전권을 침해하는 국가는 폭력적 분쟁의 위험이 더 높다(Cingranelli 외 2017). 이러한 맥락에서 탄압은 불만과 좌절을 표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폭력을 위한 인센티브를 유발한다.

청년이 정치 및 경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에게 사회 이동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사회는 폭력을 덜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Idris 2016, Paasonen 및 Urdal 2016).

세계적으로 청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의 에너지와 잠재력을 활용하는 능력은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50이 지적하듯이 “고유한 인구 배당”에 대해 강력한 기회를 제공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15).

마찬가지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성 불평등과 젠더에 기반 폭력이 내전 및 국가 간 전쟁에 대한 취약성 증가와 분쟁 시 더 심각한 형태의 폭력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Caprioli 외 2007, GIWPS 및 PRIO 2017, Hudson 외 2009, Kelly 2017). 가정 폭력의 증가 또는 여성의 취약 감소와 같은 여성의 지위 또는 취약성의 변화는 종종 사회 및 정치적 불안에 대한 조기 경고로 간주되며(Hudson 외 2012), 폭력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험과 여성이 정치, 사회,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 평화 협상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 때, 그 합의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O'Reilly, Ó·Súilleabháin 및 Paffenholz 2015, Paffenholz 외 2017, Stone 2015, 유엔여성기구 2015).

——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경쟁 영역

불평등과 배제는 정치권력과 거버넌스의 이용과 관련된 정책 영역(토지, 물, 채굴 자원, 기본 서비스의 제공, 사법과 안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생계와 복지가 규정되고 보호되는 영역으로서 이러한 영역의 이용 가능성은 문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은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세력 균형을 반영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과 종종 개혁에 대한 저항을 낳는다.

권력 투쟁은 분쟁의 오래된 원인으로, 권력의 균형과 불균형은 사회를 폭력의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경험에 따르면 보다 포용적이고 대표적인 권력 공유 방식이 폭력적 갈등의 위협을 낮춘다. 분권화, 권력 이양 또는 하위 국가 지역의 자율성 허용은 다양성을 수용하고 국가 수준에서 폭력의 위협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토지, 물, 광물과 같은 자원은 전통적인 마찰의 원인이 된다.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도시화의 영향은 이러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세계 곳곳에서 폭력적인 갈등과 불안정을 야기했다. 자원과 파생 이익의 공유를 개선하고 지역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제공은 폭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국가의 정당성과 국가의 분쟁 중재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Brinkerhoff, Wetterberg, Dunn 2012, Sacks 및 Larizza 2012, Stel 및 Ndayiragiie 2014).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과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만큼(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Sturge 외 2017).

법치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는 안보 및 사법 기관은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종종 이들에게는 시민에 대한 치안 부대의 책임감, 강력한 지역 사회 치안, 교정 메커니즘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된다.

—— 행위자: 국가가 경쟁을 관리하고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본 연구는 경로 체계를 바탕으로 3가지 주요 영역(평화 행위자의 인센티브 형성,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불만을 조장하는 구조적 요인 해결)에서 국가 행위자들의 경험을 설명한다. 본 보고서를 위해 분석한 사례 연구 결과 특정 처방이 없는 경우에도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예방 조치는 기존의 강점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주도하고 국제 및 지역 지원이 결합된 집단적 노력이다.⁶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국가의 핵심 딜레마는 폭력을 위한 인센티브가 개인이나 집단에 확실하고 구체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평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불확실하고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세계은행 2017).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들은 과도기를 활용하여 구조적 요인을 겨냥한 장기 개혁 또는 투자를 도입하는 한편, 보다 포괄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약속을 뒷받침하는 즉각적인 계획을 실행했다.

더욱 성공적인 사례는 평화를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국내 행위자들의 연합을 동원하여 여성 단체, 신앙 공동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시민 사회의 비교 우위를 유지하면서 긴장을 관리했다. 결정적 리더십은 특히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규범과 가치에 호소하고 그러한 서사를 동원함으로써 평화적 경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세계은행 2011).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전후에 지속가능한 평화로 가는 경로를 찾은 국가들은 결국 제도 개혁이라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과정을 다루었다. 경쟁 영역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을 높이고 배제와 관련된 불만을 완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종종 지속가능한 평화로 이어진 과도기는 안보 주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을 동원하는 보다 광범위한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제도 개혁과 함께 많은 경우에 정부는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고, 사회 경제적 불만을 해소하기

6 이러한 통찰은 배경 국가 사례 연구, 본 연구를 위해 의뢰된 연구, 광범위한 관련 문헌 검토에서 비롯되었다. 사례 연구는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이집트아랍공화국, 가나,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요르단, 케냐,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말라위, 모로코, 네팔, 니제르, 북아일랜드, 시에라리온, 남수단공화국, 튀니지를 포함한다.

7 자연 재해나 세계 경제 충격과 같은 과도기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바뀔 때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자원을 재분배하고, 폭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과거의 피해를 해결하는데 투자했다.

이러한 경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논쟁적인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의 이유 중 일부는 폭력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도적 또는 구조적 조건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미래 지향적인 의사 결정의 선택권을 좁혔기 때문이다. 분쟁은 자원의 황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경찰, 군사 또는 안보 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예방 조치는 때때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가시적인 안보 조치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가 폭력의 원인을 다루는 장기적이고 복잡한 대응보다 우선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치적 합의 또는 최소한 지속적인 합의가 중요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합의가 분쟁의 특정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적용되었고,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조치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목표가 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정치적 합의가 예방 과정의 일부로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국제 시스템

냉전 종식 후 분쟁 예방 및 분쟁 후 평화 구축을 위한 다자 구조는 현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 체계적인 수준에서 전쟁의 도구와 행위를 규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기후 변화, 테러,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를 포함한 세계적인 위협을 다루고, 포괄적인 발전 방식(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을 장려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규범적,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운영상 유엔과 아프리카 연합 및 유럽 연합과 같은 지역 기구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에 맞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 및 지역 포럼을 제공했다. 그 결과 예방 외교, 제재, 평화 유지를 비롯한 중요한 수단들이 분쟁을 예방하고, 휴전 및 평화 협정을 중재하고, 분쟁 후 복구 및 전환 과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 핵심 기관에서 점점 더 분쟁이 발생하여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제 및 지역 계획은 개발, 외교, 안보 노력 간의 조율 및 자원 공동 관리를 강화했다. 분쟁이 더욱 분화되고 복잡해지며 초국가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개는 환영받았지만, 이러한 수단들은 비국가 행위자, 국제인도법과 상충되는 이데올로기의 출현과 대리전에 대한 후원 증가로 인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폭력을 유발하는 내생적 위협 요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지원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포괄적 예방법 구축

예방은 평화를 향한 사회의 경로를 강화하고 조종하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예방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집중적인 관심과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수집했다. 폭력적인 갈등의 위험이 위기로 전환하기 전에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지역, 국제 행위자들이 활동하고 협력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러한 조율, 협업,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오히려 예방 조치는 근본적인 위험에 대한 해결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근본적인 위험에 대처하기보다는 수반되는 위기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평화를 위한 경로는 예방의 3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한다.

- 구조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제도를 강화하며, 행위자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예방이 지속되어야 한다. 예방을 단기와 장기간의 균형으로 보는 것은 쉽지만 잘못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결과를 위해서는 모든 위험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발전 투자는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단기 및 중기 조치를 통해 중요한 전략에 통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조치가 위기관리만 보상하지 않도록 노력과 자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폭력을 유발하는 불만을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예방 조치가 폭력의 수단과 권력의 위치를 통제하는 행위자의 요구를 중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복잡하고 파편화되고 오래된 분쟁에서 포괄적 예방법은 불만 및 기관에 대한 이해를 국가 및 국제적 참여의 중심에 둔다. 포괄적 예방법은 기관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확신, 위험에 대한 인식, 배제와 불의에 대한 경험 등 사람과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 예방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배제 패턴과 제도적 약점을 선제적, 직접적으로 겨냥해야 한다. 성공적인 예방은 폭력 전, 폭력 중, 폭력 후에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조치에 달려 있다. 현대적 분쟁은 집단이 권력, 자원, 서비스, 안보를 두고 경쟁할 때 발생한다. 폭력의 영향과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예방 조치는 주요 위험 영역에서 불만과 배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겨냥해야 한다.

국가예방전략 수립

국가는 분쟁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를 향한 국가의 경로를 형성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다음은 예방을 위한 파트너십에서 효과적인 국가 조치를 위한 몇 가지 권고 사항이다.

분쟁 위험 모니터링

예방 조치에 조기 참여하려면 폭력에 대한 조기 경보에서 위험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실제적이고 인지된 배제 및 불평등을 파악할 것.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지표⁸를 확인, 측정,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다양한 수준의 국가 행위자들의 조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설계 시스템을 강화할 것.
- 정보통신기술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방법의 적용을 포함하여 특히 원격 및 분쟁 피해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활용할 것.
- 설문 조사 및 데이터 수집이 불평등, 배제, 인식을 측정하고 분쟁에 민감하고 역량에 민감하도록 설계할 것.⁹

다양한 차원의 위험 해결

국가 행위자들은 종종 제한된 예산, 정치적 자본,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을 동시에 다룬다.

- 분쟁의 위험을 우선시하는 평화 및 발전 체계 하에 기관과 행위자를 통합할 것.
- 불만과 폭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국경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위험을 겨냥할 것.
- 긴장이 고조될 때 충격의 영향을 관리할 것.
- 권력, 자원, 서비스, 안보, 사법과 관련하여 배제와 불만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파악된 위험에 대해 조치와 자원을 집중하고, 가능한 다른 조치 중에서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쟁과 분쟁을 관리할 것.

8 여러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지표는 수평적 불평등의 위험 평가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핵심 목표에는 SDG5(5.1: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것), SDG10(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또는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에 권한을 부여하고 장려할 것; 10.3: 차별적 법률,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조치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줄일 것), SDG16(16.3: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법치를 장려하고 모두가 사법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16.7: 모든 수준에서 호응적, 포괄적, 참여적, 대표적 의사 결정을 보장할 것).

9 수평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와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및 기타 행위자는 인식, 정체성, 열망에 관한 질문을 활용하여 특정 집단을 파악하고, 안보 목적을 위해 특정 집단을 겨냥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배제 정책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와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개인 및 집단적 권리를 보호 하는데 매우 주의해야 한다.

—— 예방을 위한 평화, 안보, 개발의 조정

평화를 위한 경로의 목표 중 하나는 개발, 평화, 안보의 관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일관된 전략은 발전 및 안보 행위자, 인도적, 정치적 행위자에게 종종 도전 의식을 고취하는 통합 계획 및 실행 수준을 요구한다. 각 수준은 각기 다른 위험 단계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집중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단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다음은 더 나은 조정을 위한 몇 가지 권고 사항이다.

보안 및 발전 접근법이 호환되고 상호 지원되는지 확인할 것.

배제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불만 집단이 빈곤층이 아닐 수도 있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지원을 위해서는 성장 및 안정의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 안보 개입이 보장되는 경우, 사회 복지 사업과 경제적 지원도 제공되어 치안 부대가 국가와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접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만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중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을 할당할 것.

역량 강화는 교육, 지침 개발, 기관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중재에 대한 지원은 지역 차원의 계획 및 프로그래밍에 통합될 수 있다(Rakotomalala 2017).

대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플랫폼에서 국가를 넘어선 행위자를 참여시킬 것.

오늘날 분쟁에 개입한 많은 행위자들은 국가 기관이나 대리인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괄적 예방은 예방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포괄적 예방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사람들과 집단을 포함해야 하는 상향식 과정이며, 연합체는 청년, 여성,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단체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사람 중심 접근법을 채택할 것.

사람 중심의 접근법은 발전 프로그램에 시민 참여를 주류화하고 여성 및 청년과 같은 과소 대표 집단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 분쟁 해결책을 포함해야 한다. 서비스 전달 체계는 폭력적인 갈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의 모든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및 상담 요소를 주류화 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설계 및 전달 과정에서 사람들과 파트너가 돼야 한다.

예방에서 협력의 장애물 극복

개발 기구는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를 조정해야 한다. 국제 발전 행위자와 다자간 발전 은행은 위임, 정부 간 협정, 제도적 문화를 통해 정부와의 민감한 위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발전 기구는 프로그래밍에서 예방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위험 평가 공유

데이터를 공유하는 일관된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 많은 기구는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위험을 평가한다. 데이터는 대부분 기구 내부에 있으며, 주로 이런 정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 또는 기타 관련 국가 행위자와 공유되지 않는다. 또한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론의 경우 개발, 평화, 안보에 대한 다양한 위험을 다루는 공동 매트릭스를 개발하는데 특히 중점을 두어 보다 널리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국가, 하위 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집단 메커니즘에 대한 약속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은 국제 파트너 간의 임시 조치 및 파편화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 위험 평가에서 공동으로 합의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

공동 위험 평가는 시간에 따라 추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합의된 지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엔-유럽연합-세계은행의 복구 및 평화 구축에 대한 공동 평가는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을 제공한다. 현재 주로 분쟁 기간과 분쟁 직후에 사용되는 이 접근법은 보다 상위 수준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공동 플랫폼으로 개발될 수 있다.

보다 강력한 지역 및 국제 파트너십 구축

예방을 위한 지역적 분석 및 전략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 가능한 한 위험 분석을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방을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 모색

예방을 위한 재정 지원은 여전히 위험을 회피하고 위기에 집중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모델은 기회의 창을 포착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예방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노력은 필요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여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임시 자원 동원을 시도하게 되고, 차선책으로 지연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 예방 역량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다양한 재정 지원 형태의 결합, 지역 예방 노력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등이 이에 속한다.

결론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변화는 생명 구조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평화를 위한 경로에서는 국가 및 국제 행위자들에게 관심, 노력, 자원이 예방에 집중될 수 있도록 행동 의제를 제시한다. 오늘날 세계가 함께 행동하지 못한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명백하며 즉각적인 행동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이다.

평화를 위한 경로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

오늘날 폭력적인 갈등은 더 많은 비국가 단체와 지역 및 국제 행위자들이 개입함으로써 복잡하고 점점 더 장기화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해 국제사회가 정한 지평인 2030년 무렵에는 전 세계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의 폭력에 시달리는 국가에 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보 및 통신 기술, 인구 이동, 기후 변화는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동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경로*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유엔-세계은행 그룹의 공동 연구이다. 확대된 예방 조치 시스템은 연간 50억~700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며, 이는 빈곤을 줄이고 복지를 개선하는데 재투자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발전 과정이 갈등의 폭력화를 예방하기 위한 안보, 외교, 중재, 기타 활동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많은 폭력적인 갈등의 근원인 권력, 천연 자원, 안보, 사법에서 배제됨으로써 유발되는 불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방이 성공한 사례들에 대한 검토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는 폭력적인 갈등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국가와 국제사회를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은 예방 노력의 핵심이어야 한다. 위협이 고조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대화를 통한 포괄적인 해결책, 거시 경제 정책 채택, 제도적 개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포괄성이 핵심적이며 예방 조치는 시민 참여를 주류화 하는 사람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의사 결정에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강화하고, 여성과 청년의 열망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평화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Allansson, M., E. Melander, and L. Themnér. 2017. "Organized Violence, 1989–2016." *Journal of Peace Research* 54 (4): 574–87.
- Bakker, R., D. W. Hill, and W. H. Moore. 2016. "How Much Terror? Dissidents,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the Cross-National Study of Terror Attacks." *Journal of Peace Research* 53 (5): 711–26.
- Betancourt, T. S., R. McBain, E. A. Newnham, and R. T. Brennan. 2012.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War-Affected Sierra Leonean Youth: Examining Conflict and Postconflict Factors." *Child Development* 84 (2): 455–70.
- Blattman, C. 2006. *The Consequences of Child Soldier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Brinkerhoff, D., A. Wetterberg, and S. Dunn. 2012. "Service Delivery and Legitimacy i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Public Management Review* 14 (2): 273–93.
- Caprioli, M., V. Hudson, R. McDermott, C. Emmett, and B. Ballif-Spanvill. 2007. "Putting Women in Their Place." *Baker Journal of Applied Public Policy* 1 (1): 12–22.
- Cederman, L.-E., A. Wimmer, and B. Min. 2010. "Why Do Ethnic Groups Rebel? New Data and Analysis." *World Politics* 62 (1): 87–119.
- Cingranelli, D., M. Gibney, P. Haschke, R. Wood, D. Arnon, and B. Mark. 2017.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ent Conflict."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Collier, P., and A. Hoeffler. 2004. "Greed and Grievance in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56 (4): 563–95.
- Cramer, C. 2003. "Does Inequality Cause Conflic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5 (4): 397–412.
- Crespo-Sancho, C. 2017. "Conflict Prevention and Gender."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Dupuy, K., S. Gates, H. M. Nygård, I. Rudolfson, S. A. Rustad, H. Strand, and H. Urdal. 2017. "Trends in Armed Conflict 1946–2016." PRIO Conflict Trends 02/2017,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https://www.prio.org/utility/DownloadFile.ashx?id=1373&type=publicationfile>.
- Fearon, J. D. 2010. "Governance and Civil War Onset." Background paper for *World Development Report 2011*, World Bank, Washington, DC.
- Fearon, J., and D. Laitin. 2003.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 (1): 75–90.
- Geneva Declaration Secretariat. 2015. *Global Burden of Armed Violence 2015: Every Body Counts*. Geneva: Geneva Declaration Secretariat.
- GIWPS (Georgetown Institute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PRIO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2017. *Women, Peace, and Security Index 2017/18: Tracking Sustainable Peace through Inclusion, Justice, and Security for Women*. Washington, DC: GIWPS and PRIO.
- GTD (Global Terrorism Database). 2017. Global Terrorism Database. College Park: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 University of Maryland. <https://www.start.umd.edu/gtd/>.
- Hale, G. and M. Xu. 2016. "FDI Effects on the Labor Market of Host Countries." Working Paper 2016-25,

-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 Hudson, V., B. Ballif-Spanvill, M. Caprioli, and C. Emmett. 2012. *Sex and World Pea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udson, V., M. Caprioli, B. Ballif-Spanvill, R. McDermott, and C. Emmett. 2009. "The Heart of the Matter: The Security of Women and the Security of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33 (3): 7–45.
- Huesmann, L. R., and L. Kirwil. 2007. *Why Observing Violence Increases the Risk of Violent Behavior in the Observ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mphreys, M., and A. Varshney. 2004. "Violent Conflict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iagnosis and Recommendations." Paper prepared fo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overty Task Force Workshop, Bangkok, June.
-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17. *City at War*. Special Report. Geneva: ICRC.
- Idris, I. 2016. Youth Unemployment and Violence: Rapid Literature Review. Birmingham, UK: Governance and Social Development Resource Centre, University of Birmingham.
-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6.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16: Trends for Youth*. Geneva: ILO.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513739.pdf.
- Justino, P. 2017. "Linking Inequality and Political Conflict: The Role of Social Mobilization and Collective Action."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Kelly, J. 2017.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Conflict: Understanding the Links between Political Violence and Personal Violence."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Leckman, J. F., C. Panter-Brick, and R. Salah, eds. 2014. *Pathways to Peac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Children and Families*. Cambridge, MA: MIT Press.
- Lichbach, M. I. 1989. "An Evaluation of 'Does Economic Inequality Breed Political Conflict?' Studies." *World Politics* 41 (4): 431–70.
- Marc, A., N. Verjee, and S. Mogaka. 2015. *The Challenge of Stability and Security in West Africa*. Africa Development Forum. Washington, DC: World Bank; Paris: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 Miller, K. E., and A. Rasmussen. 2010. "War Exposure, Daily Stressors, and Mental Health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ettings: Bridging the Divide between Trauma- Focused and Psychosocial Frameworks." *Journal of Social Science Medicine* 70 (1): 7–16.
- Mueller, H. 2017. "How Much Is Prevention Worth?"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Mueller, H., and J. Tobias. 2016. "The Cost of Violence: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Conflict." Growth Brief, International Growth Centre, London. https://www.theigc.org/wp-content/uploads/2016/12/IGCJ5023_Economic_Cost_of_Conflict_Brief_2211_v7_WEB.pdf.
- Nordas, R., and N. P. Gleditsch. 2007. "Climate Change and Conflict." *Political Geography* 26 (6): 627–38.
- Nygaard, H., K. Baghat, G. Barrett, K. Dupuy, S. Gates, S. Hillesund, S. A. Rustad, H. Strand, H. Urdal, and G.

- Østby. 2017. "Inequality and Armed Conflict: Evidence and Data."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5. *States of Fragility 2015: Meeting Post-2015 Ambitions*. Paris: OECD.
- . 2016. *States of Fragility Report 2016*. Paris: OECD.
- O'Reilly, M., A. Ó Súilleabháin, and T. Paffenholz. 2015. *Reimagining Peacemaking: Women's Roles in Peace Processes*. New York: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 Østby, G. 2013. "Inequality and Political Viol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6 (2): 206–31.
- Paasonen, K., and H. Urdal. 2016. "Youth Bulges, Exclusion, and Instability: The Role of Youth in the Arab Spring." PRIO Conflict Trends,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March. http://files.prio.org/Publication_files/prio/Paasonen,%20Urdal%20-%20Youth%20Bulges,%20Exc%20lusion%20and%20Instability,%20Conflict%20Trends%203-2016.pdf.
- Paffenholz, T., A. Hirblinger, D. Landau, F. Fritsch, and C. Dijkstra. 2017. "Inclusion and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 Thematic paper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Parks, T., N. Colletta, and B. Oppenheim. 2013. *The Contested Corner of Asia: Subnational Conflic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San Francisco: Asia Foundation.
- Piazza, J. A. 2017. "Repression and Terrorism: A Cross-National Empirical Analysis of Types of Repression and Domestic Terrorism."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29 (1): 102–18.
- Rakotomalala, O. 2017. "Local-Level Mechanisms for Violent Conflict Prevention."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Rother, B., G. Pierre, D. Lombardo, R. Herrala, P. Toffano, E. Roos, G. Auclair, and K. Manasseh. 2016. "The Economic Impact of Conflicts and the Refugee Crisi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taff Discussion Note SDN/16/0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Rustad, S. A. 2016. "Socioeconomic Inequalities and Attitudes toward Violence: A Test with New Survey Data in the Niger Delta." *International Interactions* 42 (1): 106–39.
- Sacks, A., and M. Larizza. 2012. "Why Quality Matters: Rebuilding Trustworthy Local Government in Post-Conflict Sierra Leon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021, World Bank, Washington, DC.
- Sargsyan, I. L. 2017. "Narrative, Perception, and Emotion: A Review of Recent Political Science Studies."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Schleussner, C., J. F. Donges, R. V. Donner, and H. J. Schellnhuber. 2016. "Armed-Conflict Risks Enhanced by Climate-Related Disasters in Ethnically Fractionalized Countri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 (33): 9216–21.
- Shonkoff, J. P., and A. P. Garner. 2012. *The Lifelo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and Toxic Stress*. Technical Report. Elk Grove Village, IL: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http://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pediatrics/early/2011/12/21/peds.2011-2663.full.pdf>.
- Small Arms Survey. 2011. *Global Burden of Armed Violence*. Geneva: Small Arms Survey. Stel, N., and R. Ndayiragiie. 2014. "The Eye of the Beholder: Service Provision and State Legitimacy in Burundi." *Africa*

- Spectrum* 49(3): 3–28.
- Stewart, F. 2000. “Crisis Prevention: Tackling Horizontal Inequalities.” *Oxford Development Studies* 28 (3): 245–62.
- . 2002. “Horizontal Inequalities: A Neglected Dimension of Development.” QEH Working Paper 81, Centre for Research on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Queen Elizabeth House, University of Oxford.
- . 2009. “Horizontal Inequalities as a Cause of Conflict.” Bradford Development Lecture, University of Bradford. <https://www.bradford.ac.uk/social-sciences/media/social-sciences/BDLStewart.pdf>.
- Stone, L. 2015. “Study of 156 Peace Agreements,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Quantitative Analysis of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Processes*.” In *Reimagining Peacemaking: Women’s Roles in Peace Processes*, by M. O’Reilly, A. Ó Súilleabháin, and T. Paffenholz, annex I. New York: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 Sturge, G., R. Mallett, J. Hagen-Zanker, and R. Slater. 2017. *Tracking Livelihoods, Services and Governance: Panel Survey Findings from the Secure Livelihoods Research Consortium*. London: Secure Livelihoods Research Consortium.
- Sundberg, R., K. Eck, and J. Kreutz. 2012. “Introducing the UCDP Non-State Conflict Dataset.” *Journal of Peace Research* 49 (2): 351–62.
- UCDP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2017. *UCDP Conflict Encyclopedia*. Uppsala University. www.ucdp.uu.se.
- UN (United Nations). 2015a. *The Challenge of Sustaining Peace*.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of Experts for the 2015 Review of the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Architecture. New York: UN.
- . 2015b. *Uniting Our Strengths for Peace: Politics, Partnership, and Peopl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Peace Oper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June 16.
- . 2016. *Too Important to Fail—Addressing the Humanitarian Financing Gap*.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Humanitarian Financing to the Secretary-General. New York: UN.
- UN 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5. “Population by Age and Sex (Thousands).” UN DESA, New York. <https://esa.un.org/unpd/wpp/DataQuery/>.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6. *Arab Human Development Report: Youth and the Prospects for Human Development in a Changing Reality*. New York: UNDP. <http://www.arab-hdr.org/PreviousReports/2016/2016.aspx>.
- UNESCWA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2017. “The Impact of Conflict over the Life Cycle: Evidence for the Arab Region.” Forthcoming in *Trends and Impacts* 5.
- UN General Assembly. 2016. “Review of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Architecture.” Resolution A/RES/70/262, adopted April 27, New York.
-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17.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6*. Geneva: UNHCR. <http://www.unhcr.org/en-us/statistics/unhcrstats/5943e8a34/global-trends-forced-displacement-2016.html>.
- UN Secretary-General. 2015.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UN Doc. S/2015/203. New York: United Nations.
- UN Security Council. 2015. “Youth, Peace, and Security.” Resolution 2250, adopted December 9, New York.
- . 2016. “Postconflict Peacebuilding.” Resolution S/RES/2282, adopted April 27, New York.

- UN Women. 2015. *Preventing Conflict, Transforming Justice, Securing the Peace: Global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New York: UN Women.
- World Bank. 2011. *World Development Report 2011: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4389> License: CC BY 3.0 IGO.
- . 2017. *World Development Report 2017: Governance and the Law*.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lobal Challenge Insight Report. Geneva: World Economic Forum.

더 읽어보기

- Aall, P., and C. A. Crocker, eds. 2017. *The Fabric of Peace in Africa: Looking Beyond the State*. Waterloo: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 Bøås, M., S. Sundstøl Eriksen, T. Gade, J. H. Sande Lie, and O. J. Sending. 2017. "Conflict Prevention and Ownership: Limits and Opportunities for External Actors."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Bob-Milliar, G. 2017. "Sustaining Peace: Making Development Work for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s: Ghana and Côte d'Ivoire Compared." Case study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Brack, D., and G. Hayman. 2006. "Managing Trade in Conflict Resources." In *Trade, Aid, and Security*, edited by O. Brown, M. Halle, S. Pena-Moreno, and S. Winkler. London: Earthscan.
- Call, C. 2012. *Why Peace Fails: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Civil War Recurrenc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Colletta, N., and B. Oppenheim. 2017. "Subnational Conflict: Dimensions, Trends, and Options for Prevention." Background paper for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DCAF (Geneva Center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2017. "The Contribution and Role of SSR in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Drew, E. 2017. "Assessing the Links between Extractive Industries and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 A Literature Review."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Griffin, M. Forthcoming. "The UN's Role in a Changing Global Landscape." In *The Oxford Handbook on the United Nations*. 2d ed., edited by T. G. Weiss and S. Daw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urr, T. R.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ffrey, S. 2017. "Sustaining Peace: Making Development Work for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s: Case Study: Indonesia." Case study for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Mogaka, S. 2017. "Competition for Power in Africa: Inclusive Politics and Its Relation to Violent Conflict." Background paper for the United Nations–World Bank Flagship Study,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orld Bank, Washington, DC.
- Langer, A., and K. Smedts. 2013. "Seeing Is Not Believing: Perceptions of Horizontal Inequalities in Africa." Working Paper 16, Centre for Research on Peace and Development, Leuven, Belgium.
- Paffenholz, T. 2015. "Beyond the Normative: Can Women's Inclusion Really Make for Better Peace Processes?" Policy Brief, Graduate Institute of Geneva and Centre for Conflict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Geneva.
- UN Secretary-General. 2013. *Securing States and Societies: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Comprehensive Support to Security Sector Reform*. Report A/67/970. New York: United Nations.
- . 2017. *Restructuring of the United Nations Peace and Security Pillar*. Report A/72/525. New York: United Nations.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nd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2016. *Joint UNDP-DPA Programme on Building National Capacities for Conflict Prevention: Annual Report*. New York: UNDP.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conflict-prevention/joint-undp-dpa-programme-on-building-national-capacities-for-con.html>.
- UN (United Nations).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INTERNATIONAL DOCUMENTS OF PEACE)

발행일 2021년 3월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서보혁·용혜민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ISBN 979-11-6589-042-1 93340
가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2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INTERNATIONAL DOCUMENTS OF PEACE



비매품/무료
93340

9 791165 890421
ISBN 979-11-6589-042-1